

제28회

한말연구학회 전국학술대회

발표집

- 때 : 2008년 7월 12일 (토) 10:00-4:40
- 곳 : 공주대학교 산학연구소
- 주제 : 국어 기본법과 국어 정책의 앞날
- 주최 : 한말연구학회 · 국립국어원
- 후원 : 공주대학교,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한글학회 충남지회

■ 학술대회 일정 ■

가. 개회 및 특강

【개회】 사회 : 최홍열 (강원대학교)

10:00~10:30 개회사
 회장 인사
 축사 : 김승곤 (한글 학회 회장), 이상규 (국립국어원 원장)

【특강】 사회 : 리의도 (춘천교육대학교)

10:30~11:10 특강 : 김재현 (공주대학교 총장)

나. 발표 및 토론

【제1부】 사회 : 조남호 (국립국어원)

11:20~11:50 발표 : 박용찬 (국립국어원) 토론 : 이상혁 (한성대학교)
11:50~12:20 발표 : 최용기 (국립국어원) 토론 : 허원욱 (건국대학교)

□ 점심시간 12:20~1:30

【제2부】 사회 : 이준희 (경기대학교)

1:30~2:00 발표 : 전영옥 (상명대학교) 토론 : 김형배 (국립국어원)
2:00~2:30 발표 : 김한샘 (국립국어원) 토론 : 한성일 (경원대학교)
2:30~3:00 발표 : 조태린 (국립국어원) 토론 : 박동근 (건국대학교)

【제3부】 사회 : 박석준 (배재대학교)

3:10~3:40 발표 : 주세형 (서원대학교) 토론 : 김홍범 (한남대학교)
3:40~4:10 발표 : 김주연 (건국대학교) 토론 : 허재영 (단국대학교)
4:10~4:40 발표 : 김은영 (경기대학교) 토론 : 임소영 (한성대학교)

차 례

【특강】

김재현 (공주대학교 총장)

【제1부】

- 박용찬 (국립국어원) 국어 정책 혁신 방향과 ‘국어 기본법’ 11
토론 : 이상혁 (한성대학교)
- 최용기 (국립국어원) 세종의 문자 정책과 한글 진흥 정책의 미래 37
토론 : 허원욱 (건국대학교)

【제2부】

- 전영옥 (상명대학교) 국어 상담 실태 및 국어 상담 정책의 미래 57
토론 : 김형배 (국립국어원)
- 김한샘 (국립국어원) 전문 용어 표준화의 현황과 과제 73
토론 : 한성일 (경원대학교)
- 조태린 (국립국어원) 언어 정책에서 법적 규정의 의미와 한계 91
토론 : 박동근 (건국대학교)

【제3부】

- 주세형 (서원대학교) 국어과 평가 타당도 제고를 위한 문법교육의 방향 109
토론 : 김홍범 (한남대학교)
- 김주연 (건국대학교) 한국어 말하기 평가 등급의 능력 기술 방안 연구 141
토론 : 허재영 (단국대학교)
- 김은영 (경기대학교) 재외 동포를 위한 웹 교재 개발에 관한 기초 연구 153
토론 : 임소영 (한성대학교)

제28회 한말연구학회 전국학술대회
때 : 2008년 7월 12일 (토)
곳 : 공주대학교 산학연구소

【특 강】

김 재 현 (공주대학교 총장)

★ 별 지 참 조 ★

【제1부】

제28회 한말연구학회 전국학술대회
때 : 2008년 7월 12일 (토)
곳 : 공주대학교 산학연구원

국어 정책 혁신 방향과 ‘국어 기본법’

- ‘국어 기본법’의 법률로서의 실효성과 의의를 중심으로 -

박 용 찬 (국립국어원)

□ 차 례 □

1. 들어가는 말
2. ‘국어 기본법’은 법률로서 얼마나 실효성 있는가?
 - 2.1. 동위 법률 검토
 - 2.2. 하위 법령 검토
3. ‘국어 기본법’은 법률로서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는가?
4. 나오는 말

1. 들어가는 말

2005년 1월 27일 ‘국어 기본법’(법률 제7368호)이 제정되고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되었다.¹⁾²⁾ 이로써 명실 공히 국어에 관한 기본적인 법 체계가 마련되어 체계적인 국어의 진흥과 보전을 위한 국어 정책의 법적 환경이 확고하게 조성되었고 할 수 있다. 국어 정책의 수립·시행,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 국어의 국외 보급 및 국어 정보화를 통한 국어 발전의 기틀이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국어 기본법’이 현재 국어 진흥 법률로서의 실효성을 완전하게 확보하고 있는지는 심히 의심스럽다. 이는 ‘국어 기본법’의 법령적 위계 및 그 내용과 관련하여 그러하다. 이 점에 주목하여 본 발표에서는 법률로서의 ‘국어 기본법’의 위상과 그 내용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1) ‘국어 기본법’은 문화관광부가 2002년 10월 9일 한글날을 맞아 발표한 ‘국어 발전 종합 계획(안)’의 별도 추진 과제로 포함되었다. 이후 2003년 1월 1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법 제정 추진 방침을 보고한 후 곧바로 ‘국어 기본법’ 입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초안을 마련(2003년 2월 28일), 여론 수렴(공청회 4회, 2003년 3월~8월), 관계 부처 협의 및 규제 심사입법 예고(2003년 9월~11월), 법제처 및 국회 심의(2003년 12월~2004년 5월) 등의 과정을 거쳐 2005년 1월 27일 공포되었다.

2) ‘국어 기본법’은 2008년 2월 29일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일부 개정(법률 8852호)되고 2008년 3월 28일 일부 내용이 개정(법률 9003호)되어 오늘에 이른다.

2. ‘국어 기본법’은 법률로서 얼마나 실효성 있는가?

2.1. 동위 법률 검토

‘국어 기본법’ 이전에도 국어 관련 법령이 있었다. ‘국어 기본법’은 우선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등을 직접 승계하고 있는 법률이다.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은 한글(국어)과 관련하여 한글 사용의 일반적인 면만을 규정한 법률이고 ‘문화예술진흥법’은 문화 예술의 진흥 전반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한 법률인데, 그 가운데 일부로서 국어와 관련하여 포괄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다. 간접적이지만 ‘방송법’, ‘특허법’, ‘상표법’ 등의 법률도 국어(한글, 한자 포함) 사용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부 공문서 규정→사무 관리 규정’,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의 명령과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의 규칙도 국어(한글, 한자 포함) 사용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어 기본법’이 직접 소급하는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등은 상징적이고 선언적인 의미를 갖는 데 그쳤다. 또한 국어 관련 규정이 방송법, ‘특허법’, ‘상표법’, ‘정부 공문서 규정→사무 관리 규정’,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 각종 법령에 일관성을 잃은 채 산재돼 있어 이러한 법령들이 오히려 국어 정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주었다. ‘국어 기본법’은 바로 이러한 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따라서 ‘국어 기본법’ 제정 후의, 이러한 국어 관련 법령들을 살펴본다면 ‘국어 기본법’의 성격과 의의를 얼마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국어 기본법’이 직접 소급하는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1948년 10월 9일 제정, 법률 제6호)’은 모든 공문서는 한글로 쓰도록 규정하는, 단 한 조로 되어 있다.³⁾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의 공문서(공용 문서)는 한글로 쓴다. 다만, 얼마 동안 필요한 때에는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이 1948년 10월 9일 제정된 이후 이의 실천을 위하여 ‘정부 공문서 규정(1965년 2월 24일 개정, 대통령령 제2056호)’이 마련되었다⁴⁾. 그러나 한글 전용이 잘 되

3)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은 줄여 ‘한글 전용법’이라 하기도 하는데 1947년 7월 24일 조선어학회(1949년 3월 24일 ‘한글학회’ 명칭 변경)에서 국회 문교후생위원회에 제출한 ‘한글 전용법 제정 건의문’에 따라 이루어졌다. 자세한 것은 고길설(2005, 315~331쪽) 참조. 이 법이 제정·공포된 이후 한글 전용론자들은 한글학회를 중심으로 하여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한글 전용법’ 개정 운동을 벌였고, 국한문 혼용론자들은 법률 자체의 폐지를 주장하였다. 한편 일부 국한문 혼용론자는 단서 조항의 ‘병용’을 ‘혼용’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즉, 괄호 안에 한자를 넣어 한글과 나란히 쓰는 것이 아니라, 한글과 한자를 아울러 같이 쓰는 것으로 본다.

지는 않았다. 이에 정부는 1968년 11월 5일 ‘한글 전용 연구위원회 규정’(대통령령 제3625호)을 제정하고⁵⁾, 1968년 12월 24일 ‘한글 전용’(국무총리 훈령 제68호)을 공포하여 ‘정부 공문서 규정’에서 법규 문서에 한해 허용되었던 한자 혼용을 불허하는 등 강력한 한글 전용 정책을 추진하였다.⁶⁾ 그러나 이 또한 잘 되지 않아 ‘한글 전용’은 1991년 12월 31일 폐지되기에 이른다.⁷⁾ 결과적으로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은 2005년 1월 27일 제정된 ‘국어 기본법’(법률 제7368호)에 따라 폐지되기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사문화된 법령에 가까웠다. 이 법률은 한글 정책에 관한 상징성을 갖고 있는 데 머물렀다.

“문화예술진흥법”(법률 제4883호)도 ‘제2장 국어의 발전 및 보급’(제5조 내지 제8조)으로 묶인, 국어 관련 조항 넷을 포함하고 있다.⁸⁾ “국가는 국어 정책을 펴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어문 규범을 제정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국어 심의회를 두어야 한다.”는 내용의 소략한 규정이었다. 소략하지만 ‘국어 기본법’ 제정 이전 가장 종합적이면서도 포괄적인 국어 관련 법률이었다. 그러나 이런 소략한 규정으로는 국어의 발전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없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장 국어의 발전 및 보급

- 4) ‘정부 공문서 규정’은 1961년 9월 13일 각령(閣令) 제137호로 제정되었고 이 규정은 1950년 3월 6일 제정된 ‘공문서 규정’(대통령훈령 제3호)에 소급한다.
- 5) ‘한글 전용 연구위원회’는 문교부 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한글 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문교부 장관 소속하에 두어 ‘한글 전용 추진 방안에 관한 사항’, ‘상용 한자에 관한 사항’, ‘한글의 표기 방법에 관한 사항’, ‘기타 문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조사연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런데 ‘한글 전용 연구위원회’는 문교부 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국어에 관한 중요 사항인 ‘한글 문제에 관한 사항’, ‘한자 문제에 관한 사항’, ‘학술 용어 문제에 관한 사항’, ‘외래어 한글 표기법에 관한 사항’, ‘한글 외래어 표기법에 관한 사항’, ‘기타 문교부 장관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을 조사연구·심의하기 위하여 문교부에 두었던 ‘국어 심의회’와 기능의 일부가 중복되었다. ‘국어 심의회’는 1964년 11월 10일 제정된 ‘국어 심의회 규정’(대통령령 제1977호)에 근거를 둔다. 결국 ‘한글 전용 연구위원회 규정’은 1978년 11월 27일 ‘각종 위원회 정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9210호)에 따라 폐지되었다.
- 6) ‘한글 전용에 관한 총리 훈령’은 ‘한글 전용’을 제목으로 하여 ‘1. 한글 전용’, ‘2. 어휘 및 표기 방법’, ‘3. 서식 정비’, ‘4. 민원 서류’, ‘5. 감독 확인’ 등 다섯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1. 한글 전용’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공문서 작성에 있어서 이미 한글만으로 표기하던 것을 더욱 철저히 지키고 공문서의 별지나 부록, 자료 등 부속 서류도 한글로 쓰도록 한다.
 - 나.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 단서에 불구하고 정부가 발행하는 모든 공문서 기타 표현물(표어, 포스터, 현수막, 아치 및 간판, 정부 간행물, 신문 및 잡지 등에 게재하는 공고, 광고문 등)을 전부 한글로 쓴다. 다만 한자가 아니면 뜻의 전달이 어려운 것은 괄호 안에 상용 한자의 범위 안에서 한자를 표기해도 무방하며, 1970. 1. 1.부터는 완전히 한글로만 표기하도록 한다.
 - 다. 법규 문서도 전항에 따른다(‘정부 공문서 규정’ 제7조 제1항 단서는 폐지).
- 7) ‘한글 전용’은 1991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지시·훈령 정비에 관한 훈령’(국무총리훈령 제256호)에 의하여 폐지되었다.
- 8) ‘문화예술진흥법’은 1972년 8월 14일 법률 제2337호로 제정된 이후, 1982년 12년 28년(법률 제3592호), 1987년 11월 28일(법률 제3975호), 1989년 12월 30일(법률 제4183호), 1993년 3월 6일(법률 제4541호) 등 4차례에 걸쳐 일부 개정되었다. 그러다가 1995년 1월 5일 ‘문화예술진흥법’이 전문 개정(법률 제4883호)될 때 ‘제2장 국어의 발전 및 보급’(제5조 내지 제8조)으로 국어 관련 조항이 새로이 포함되었다.

제5조 (국어 발전 등 계획 수립) 국가는 국어의 발전 및 보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국어 심의회) ① 문화체육부 장관(→문화관광부 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국어 발전 및 보급을 위한 제반 시책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부(→문화관광부)에 국어 심의회를 둔다. ② 국어 심의회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어문 규범) ① 국가는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사항(이하 “어문 규범”이라 한다)을 국어 심의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문 규범을 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 (어문 규범의 준수) ①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는 공문서 기타 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어문 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교육 또는 공공용에 제공하기 위한 인쇄물, 방송 광고물 등을 작성함에 있어서 예술 창작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문 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문화예술진흥법’에 국어 관련 조항이 처음으로 포함된 것은 이 법률이 1995년 1월 5일 전문 개정(법률 제4883호)되면서부터이다. 이후 ‘문화예술진흥법’은 7차례에 걸쳐 일부 내용이 개정되었다. 그러나 국어 관련 내용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1998년 2월 28일 정부 조직 개편(문화관광부 발족, 법률 제5529호)에 따라 2000년 1월 12일 뒤늦게, 일부 개정된 ‘문화예술진흥법’(법률 제6132호)에서 제6조 제1항 “문화체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국어발전 및 보급을 위한 제반시책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부에 국어 심의회를 둔다.”의 ‘문화체육부장관’ 및 ‘문화체육부’가 ‘문화관광부장관’ 및 ‘문화관광부’으로 바꾸었을 뿐이다. 그러다가 2005년 1월 27일 ‘국어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제2장 국어의 발전 및 보급’(제5조 내지 제8조) 전체가 삭제되는 등 ‘문화예술진흥법’은 일부 개정(2005년 1월 27일 일부 개정, 법률 제7364호)이 있었다.

‘문화예술진흥법’의 국어 관련 조항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제6조이다. ‘문화예술진흥법’ 제6조에 의해 비로소 국어 심의회가 문화체육부(→문화관광부) 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국어 발전 및 보급을 위한 제반 시책과 어문 규범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얻었기 때문이다. 그 이전에는 1964년 11월 10일 제정된, 법률 아닌 명령인 ‘국어 심의회 규정’(대통령령 제1977호)에 의해 문교부 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국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조사·연구·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국어 심의회가 설치·운영되었다.⁹⁾

이 밖에도 국어 사용과 관련된 규정은 부분적이거나 ‘방송법’, ‘호적법(2007. 5. 17. 폐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대체), ‘특허법’, ‘상표법’ 등의 법률에도 포함돼 있다. 간접 국어 관련 법률이라 할 만하다.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나누어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① 일반법

9) ‘국어 심의회 규정’은 1964년 11월 10일 제정(대통령령 제1977호)되고 1993년 3월 6일 일부 개정(대통령령 제13869호)되기까지 5차례 일부 개정되어 계속 유지되었다. 그러다가 “문화예술진흥법”(1995년 1월 5일 전문 개정, 법률 제4883호)에 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1995년 7월 13일 전문 개정, 대통령령 제14727호)이 제정되면서 폐지되었다.

<방송법>

제6조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⑧ 방송은 표준말의 보급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언어 순화에 힘써야 한다.¹⁰⁾

<가족 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호적법)>

제44조 (출생 신고의 기재 사항) ③ 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통상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¹¹⁾

<특허법>

제193조 (국제 출원) 국제 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어 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언어로 작성한 출원서·명세서·청구의 범위·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¹²⁾

<상표법>

제9조의 2 (출원일의 인정 등) ① 특허청장은 상표 등록 출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상표 등록 출원에 관한 출원서가 특허청에 도달된 날을 상표 등록 출원일로 인정하여야 한다.

5. 국어로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¹³⁾

<형사 소송법>

제180조 (통역)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자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제182조 (번역) 국어 아닌 문자 또는 부호는 번역하게 하여야 한다.¹⁴⁾

<출입국 관리법>

제48조 (용의자의 출석 요구 및 신문) ⑥ 국어에 통하지 못하는 자나 청각 장애인 또는 언어 장애인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청각 장애인 또는 언어 장애인에게는 문자로 묻거나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⑦ 진술 중 국어 아닌 문자 또는 부호가 있는 때에는 이를 번역하게 하여야 한다.¹⁵⁾

<중재법>

제23조 (언어) ① 중재 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고,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 관정부가 지정하며, 중재 관정부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한국어로 한다.¹⁶⁾

<공증인법>

제26조 (사용어) ① 공증인이 작성하는 증서에는 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촉탁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국어와 이에 병기한 외국어의 내용이 서로 다른 때에는 국어로 기재된 내용이 우선하는 것으로 한다.

제28조 (통역인의 사용) 촉탁인이 국어를 해독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농자(聾者), 아자(啞者) 기타 언어를 발언하지 못하는 자로서 문자도 해독하지 못하는 경우에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하기 위하여는 통역인을 사용하여야 한다.¹⁷⁾

<국적법>

제5조 (일반 귀화 요건) 외국인인 귀화 허가를 받기 위하여서는 제6조나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제6조 및 제7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5. 국어 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¹⁸⁾

<국제 민사 사법 공조법>

제12조 (공조의 요건) 외국으로부터의 촉탁에 대한 사법 공조는 그 촉탁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6. 국어로 작성된 번역문이 첨부되어 있을 것¹⁹⁾

<군사 법원법>

제222조 (통역) 국어가 통하지 아니하는 자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제224조 (번역) 국어 아닌 문자 또는 부호는 번역하게 하여야 한다.²⁰⁾

<법원 조직법>

제62조 (법정의 용어) ① 법정에서는 국어를 사용한다. ② 소송 관계인이 국어에 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통역에 의한다.²¹⁾

<수표법>

제1조 (수표 요건) 수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증권의 본문 중에 그 증권의 작성에 사용하는 국어로 수표임을 표시하는 문자²²⁾

<어음법>

제1조 (어음 요건) 환어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증권의 본문 중에 그 증권의 작성에 사용하는 국어로 환어음임을 표시하는 문자

제75조 (어음 요건) 약속 어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증권의 본문 중에 그 증권의 작성에 사용하는 국어로 약속 어음임을 표시하는 문자²³⁾

<재외 공관 공증법>

제12조 (용어) 증서는 국어로 이를 작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영어나 주재국어에 의한 번역문을 첨부할 수 있다.

제15조 (통역인) 촉탁인이 국어를 해독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청각 장애인·언어 장애인 기타 말을 하지 못하는 자로서 문자도 해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통역인을 사용할 수 있다.²⁴⁾

<종자 산업법>

제163조 (사용 문자) 이 법에 의한 모든 서류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한자 및 외국 문자의 표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이를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물부령(←농림부령←농림수산물부령←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²⁵⁾

<지방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87조 (투표 용지) ② 기호는 투표 용지에 게재할 후보자의 순위에 의하여 “1, 2, 3”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한자를 함께 기재한다.²⁶⁾

<공직 선거법>

제150조 (투표 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 순위 등) ② 기호는 투표 용지에 게재할 정당 또는 후보자의 순위에 의하여 “1, 2, 3”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정당명과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한자를 함께 기재한다.²⁷⁾

<해양 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7조의 3 (심판정의 용어) ① 심판정에서는 국어를 사용한다. ②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자의 진술은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제48조의 2 (증거 자료의 한글 사용) 심판원에 증거로 제출하는 항해 일지 등의 문서는 한글(국·한문 혼용을 포함한다)로 작성된 것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²⁸⁾

<지뢰 등 특정 재래식 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²⁹⁾

제9조 (지뢰 생산 정보의 표시) 지뢰를 생산하는 자는 생산하는 지뢰의 표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0) '방송법'은 1987년 11월 28일 법률 제3978호로 제정되었는데 2000년 1월 12일 법률 제639호로 폐지 제정될 때 이 항이 추가되었다. 그 이후 '방송법'은 17차례 일부 개정(최근 2008년 2월 29일 일부 개정, 법률 제 8867호)되었으나 이 항의 내용은 바뀌지 않은 채 그대로 존속되고 있다.

11) '가족 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은 기존의 '호적법'을 폐지하는 대신 2007년 5월 17일 제정(법률 제 8435호)된 법률이다. 이 법률은 2007년 7월 23일 일부 개정(법률 제 8541호)되어 운용되고 있다. '호적법'에도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

제49조 (출생 신고의 기재 사항) ③ 자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통상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12) '특허법'이 1998년 9월 23일 일부 개정(법률 제 5576호)부터 2006년 3월 3일 일부 개정(법률 7871호)까지 똑같은 내용으로 들어가 있다. 그 이전 및 이후는 “제193조 (국제 출원) 국제 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언어로 작성한 출원서와 명세서·청구의 범위·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들어가 있다. '국어'가 명시되지 않았거나 삭제되었다.

13) 이 조는 '상표법'이 2001년 2월 3일 일부 개정(법률 제 6414호)될 때 새로이 들어간 것이다.

14) 이 조항들은 '형사 소송법'이 1954년 9월 23일 제정(법률 제 341호)될 때부터 들어가 있었다.

15) 이와 관련된 조항은 1977년 12월 31일 전문 개정(법률 제 3044호) 될 때 처음으로 들어간 이후 약간의 표현을 가다듬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재와 똑같은 내용은 1992년 12월 8일 전문 개정(법률 제 4522호)될 때 들어갔다.

① 1977년 12월 31일 전문 개정(법률 제 3044호)

제52조 (용의자의 출석 및 신문) ⑥ 국어에 통하지 못하는 자 또는 농자(農者)나 아자(啞者)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농자(農者) 또는 아자(啞者)에게는 문자로 묻거나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⑦ 국어 아닌 문자 또는 부호는 번역하게 하여야 한다.

② 1983년 12월 31일 전문 개정(법률 제 3694호)

제47조 (용의자의 출석 요구 및 신문) ⑥ 국어에 통하지 못하는 자나 귀머거리 또는 병어리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귀머거리 또는 병어리에게는 문자로 묻거나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16) 이 조항은 1999년 12월 31일 전문 개정(법률 제 6083호)에 처음으로 들어간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17) 이와 관련된 조항들은 1961년 9월 23일 제정(법률 723호)될 때부터 들어가 있었다. “제26조 (사용어) 공증인은 국어를 사용하는 증서가 아니면 작성할 수 없다.”가 1985년 9월 14일 일부 개정(법률 제 3790호)될 때 현재의 것으로 대체되었을 뿐이다.

18) 이 내용은 1997년 12월 13일 전문 개정(법률 5431호)될 때 처음 들어갔고 2008년 3월 14일 일부 개정(법률 8892호)될 때 약간의 내용이 바뀌었다.

19) '국제 민사 사법 공조법'은 1991년 3월 8일 제정(법률 4342호)된 법률이다.

20) 1987년 12월 4일 전문 개정(법률 제 3993호)된 '군사 범죄법'은 '군법 회의법'(1962년 1월 20일 제정, 법률 1004호)에 소급하는데 이들 조항은 조항 번호만 바뀌었을 뿐 그 내용은 똑같다.

21) 이 조항은 1987년 12월 4일 전문 개정(법률 제 3992)될 때 처음으로 들어갔다.

22) 이 조항은 1962년 1월 20일 제정(법률 1002호)될 때부터 들어가 있었다.

23) 이 조항들은 1962년 1월 20일 제정(법률 1001호)될 때부터 들어가 있었다.

24) 이 조항들은 1963년 12월 7일 제정(법률 제 1479호)될 때부터 들어가 있었다. 다만 그때에는 제15조의 내용이 “촉탁인이 국어를 해독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농자(農者)·아자(啞者) 기타 말을 하지 못하는 자로서 문자도 해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통역인을 사용할 수 있다.”였었다. 1993년 12월 7일 일부 개정(법률 제 4603호)될 때 현재와 같은 용어로 일부 바뀌었다.

25) 이 조항은 1995년 12월 6일 제정(법률 제 5024호)될 때부터 들어가 있었다.

이상의 정리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국어 기본법’은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등의 법률을 직접 승계하고 있으며 간접 국어 관련 법률들의 국어 관련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간접 국어 관련 법률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적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국어 기본법’이 내용상 간접 국어 관련 법률들과 상충될 때 그러하다. 모든 법률은 동위에 있다. 즉, 대등한 관계에 있다. 일반적으로 한 법률이 다른 법률을 규율하지 못한다. ‘국어 기본법’도 간접 국어 관련 법률들을 규율할 수 없다. ‘국어 기본법’이 법률로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간접 국어 관련 법률들과의 내용적인 상충이 해소되어야만 한다. 예를 들어, 아래 3개 법률의 밑줄 친 부분은 ‘국어 기본법’과 내용적인 상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p><종자 산업법> 제163조 (사용 문자) 이 법에 의한 모든 서류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한자 및 외국 문자의 표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이를 표기하여야 한다. <u>다만, 농림수산물부령(←농림부령←농림수산부령←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u></p> <p><해양 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2 (증거 자료의 한글 사용) 심판원에 증거로 제출하는 항해 일지 등의 문서는 <u>한글(국·한문 혼용을 포함한다)</u>로 작성된 것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p> <p><지뢰 등 특정 재래식 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지뢰 생산 정보의 표시) 지뢰를 생산하는 자는 생산하는 지뢰의 표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표시하여야 한다.</p>
--

더구나 이들 3개 법률 가운데 ‘종자 산업법’과 ‘해양 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은 ‘국어 기본법’의 제정·시행 이후에도 여러 차례 개정된 바 있다. 이러한 내용적 상충의 문제 때문에 ‘국어 기본법’에는 다음의 조항이 들어가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을 통하여 대등한 관계에 있는 법률들에서 ‘국어 기본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거나 다른 법률을 구속·규율할 수 있는 당위성을 제공받을 수 있을지는 심히 의심스럽다. 현재로서는 관계 부처 간의 협의를 통하여 내용적인 상충을 해소할 길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p><국어 기본법>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어의 사용과 보급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

- 26) 이 조항은 2000년 1월 28일 전문 개정(법률 제6216호)될 때 들어갔다가 2006년 12월 20일 전부 개정(법률 제8069호)될 때 빠졌다.
- 27) 이 조항은 1994년 3월 16일 제정(법률 4739호)된 ‘공직 선거 및 선거 부정 방지법’에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으로 그대로 들어가 있었다. ‘공직 선거 및 선거 부정 방지법’은 2005년 8월 4일 법령 변경에 따른 일부 개정(법률 제7681호)으로 법령이 ‘공직 선거법’으로 바뀌었다.
- 28) 이 조항은 1999년 2월 5일 일부 개정(법률 제5809호)될 때 신설되어 들어갔다.
- 29) ‘지뢰 등 특정 재래식 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2001년 5월 24일 법률 제6476호로 제정된 법률이다.

또한 ‘국어 기본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국어 기본법’과 내용적으로 상충하는 법률의 제정도 그리 어렵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예로, 아래의 ‘재외 국민의 교육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들 수 있다.³⁰⁾ ‘재외 국민의 교육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제1조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재외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지원을 위하여 2007년 1월 3일 제정(법률 제8164호)되었다. ‘국어 기본법’ 제정 이후이다. 그런데 이 법률은 ‘한국교육원’의 첫 번째, 두 번째 기능으로 ‘한국어 등의 보급’, ‘한글학교의 교육 활동 지원’ 등을 적시하고 있어 사실상 ‘재외 동포를 대상으로 한 국어 보급’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더구나 이 법률도 제4조를 통하여 ‘재외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어의 보급’에 있어서의 우선적 적용을 적시하고 있다. ‘재외 동포를 대상으로 국어의 보급’과 관련해서는 ‘국어 기본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재외 국민의 교육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재외 국민에 대한 학교 교육 및 평생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되는 한국학교 등 재외 교육 기관과 재외 교육 단체의 설립·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재외 국민의 교육 및 그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어 기본법>

제19조 (국어의 보급 등) ① 국가는 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과 ‘재외 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외 동포(이하 “재외 동포”라 한다)를 위하여 교육 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국어의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문화관광부 장관)은 재외 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고자 하는 자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 및 자격 부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듯 ‘국어 기본법’과 내용적으로 상충되는 법률의 제정이 그리 어렵지 않다. 그리고 일단 제정되고 나면 그 법률은 동위의 법률로서 ‘국어 기본법’의 구속·규율을 받지 않는다. 지난 2008년 3월 21일 제정(법률 제8937호)된 ‘다문화 가족 지원법’의 일부 내용도 ‘국어 기본법’과 내용적 상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³¹⁾ 최근 각 부처에서 사업 추진의 근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법률을 제정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재외 국민의 교육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교육과학기술부(←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제정하였고, ‘다문화 가족 지원법’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제정하였다. 각 부처가 사업 예산을 늘리고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법률 제

30) ‘재외 국민의 교육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2007년 1월 3일 제정(법률 제8164호)로 제정되었고 2차례 일부 개정[2008년 2월 29일(법률 제8852호), 2008년 3월 21일(법률 제8913호)]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31) ‘다문화 가족 지원법’의 제6조(생활 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제10조(아동 보육·교육), 제12조(다문화 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의 지원 사업의 실시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 등이 ‘국어 기본법’의 제22조(국어 능력의 향상을 위한 정책 등)과 직접 관련된다.

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법률 제정 추진 과정에서 부처 간의 협의도 쉽지 않고 제정 후에는 법률 간의 내용적 상충을 해소하기도 쉽지 않다. 그것은 고스란히 국민들 고통으로 이어진다. 많고 많은 법률의 내용을 속속들이 다 알기도 어렵거니와 어느 법률에 우선적으로 적용받아야 하는지 판단하기도 어렵다. 국민의 편의를 위해 제정된 법률이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어학자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국어 기본법’의 제정을 반대했었던 것으로 발표자는 기억하고 있다.

‘국어 기본법’이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률 간 조화를 꾀하는 방향으로 ‘국어 기본법’의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내용적으로 ‘국어 기본법’과 상충되지 않도록 부처 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다른 법률의 개정 및 제정을 유도해야 한다. 그리 되지 않으면 ‘국어 기본법’도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등처럼 상징적이고 선언적인 의미를 갖는 법률에 그칠 것이다. 게다가 동위의 법률에 속하지만 일반법인 ‘국어 기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아래의 예와 같은, 간접 국어 관련 ‘특별법’의 제정은 ‘국어 기본법’의 법률상의 지위를 아주 위태롭게 하고 있다. 향후 ‘외국어 서비스 강화’, ‘외국어(영어) 상용화 추진’, ‘영어 교육 도시 조성’ 등과 관련하여 적지 않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특별법들의 제정이 특히 그러하다.

② 특별법

<경제 자유 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경제 자유 구역의 입주 외국인 투자 기업 및 외국인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공문서를 외국어로 발간·접수·처리하는 등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의 제공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³²⁾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 (외국어 교육 지원) ① 국가는 제주자치도의 외국어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제 자유 도시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제주자치도는 외국어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채용되는 외국인 교원의 인건비 등에 소요되는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3조 (외국어 서비스 제공) ① 국가 및 제주자치도는 외국인 투자자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제주자치도 안에서 외국어로 작성된 공문서를 접수·처리하는 등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³³⁾

2.2. 하위 법령 검토

32) 이 법의 제20조 제1항은 2007년 12월 7일 일부 개정(법률 제8667호)될 때 현재처럼 바뀐 것이며 2002년 12월 30일 제정(법률 6835호)될 때에는 “시·도지사는 입주 외국인 투자 기업 및 외국인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공문서를 외국어로 발간·접수·처리하는 등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었다.

33) 이 조항은 2006년 2월 21일 제정(법률 제7849호)될 때부터 들어가 있었다.

‘국어 기본법 시행령’은 ‘국어 기본법’에 근거한 하위 법령인데, ‘국어 기본법 시행령’과 직접 관련된 법령으로는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 있다. ‘국어 기본법 시행령’과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은 둘 다 법령의 하나인 명령(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대통령령임)으로 제정되었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은 제3장(제11조 내지 제13조)과 제4장(제14조 내지 제22조)에 걸쳐 ‘국어의 발전 및 보급’과 ‘국어 심의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 1995년 1월 5일 전문 개정된 ‘문화예술진흥법’(법률 제4883호)에 의하여 1995년 7월 13일 전문 개정(대통령령 제14727호)되면서 이들 규정이 포함되었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장 국어의 발전 및 보급

제11조 (국어 발전 계획의 수립)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어의 발전 및 보급을 위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어문 규범의 제정 및 개정
2. 국어의 정보화 및 과학화
3. 한국어의 세계적 보급

제12조 (한글날 행사 등) 정부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한글날 기념행사를 행하고, 한글날이 속하는 주간을 “한글만을 사용하는 주간”으로 선포하여 이 기간 중에 작성하거나 발행하는 각종 문서·일간 신문 기타 간행물의 전면 또는 일부면을 한글로만 표기하도록 지방 자치 단체·정부 투자 기관 및 언론 기관 등에 권장할 수 있다.

제13조 (세종 문화상의 시상) ① 국가는 세종 대왕의 한글 창제의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민족 문화 창달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세종 문화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 세종 문화상의 시상은 정부 표창 규정(→「정부 표창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시상 분야·수상 인원 기타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부 장관(→문화관광부 장관)이 정한다.

제4장 국어 심의회

제14조 (기능)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어 심의회(이하 이 장에서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한글 맞춤법에 관한 사항
2. 표준어 규정에 관한 사항
3. 한자 사용에 관한 사항
4. 국어의 정보화 및 과학화에 관한 사항
5. 국어 순화에 관한 사항
6. 외래어의 한글 표기법에 관한 사항
7.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관한 사항
8. 교육부 장관(→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부의하는 국어 교과용 도서에 관한 사항
9. 기타 문화체육부 장관(→문화관광부 장관)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5조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국어·언어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문화체육부 장관(→문화관광부 장관)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

을 때에는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 위원회의 위원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문화체육부 장관(→ 문화관광부 장관)으로부터 회의의 소집을 요구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분과 위원회) ① 제14조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 위원회를 둔다.

1. 한글 분과 위원회
2. 한자 분과 위원회
3. 국어 정보화 분과 위원회
4. 표기법 분과 위원회
5. 국어 순화 분과 위원회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분과 위원회는 심의회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 위원회별 위원의 정수와 배정은 문화체육부 장관(→문화관광부 장관)이 정한다. ③ 분과 위원회에 분과 위원장 1인을 두고, 분과 위원장은 분과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분과 위원회의 위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제16조 제1항 및 제17조의 규정은 분과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부 장관(→문화관광부 장관)”은 “위원장”으로, “위원장”은 “분과 위원장”으로, “심의회”는 “분과 위원회”로 본다.

제19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심의회는 직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단체 또는 당해 분야의 관련 전문가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 (간사 및 서기) ① 심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 및 서기는 문화체육부(→문화관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부 장관(→문화관광부 장관)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④ 분과 위원회의 사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사와 서기가 이를 처리한다.

제21조 (수당 및 여비)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운영 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부 장관(→문화관광부 장관)이 정한다.³⁴⁾

이후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은 7차례에 걸쳐 일부 개정이 있었다. 그러나 그 내용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1998년 2월 28일 정부 조직 개편(문화관광부 발족, 법률 제5529호)에 따라 2000년 10월 23일 뒤늦게, 일부 개정(대통령령 제16990호)될 때 ‘문화체육부’ 및 ‘문화체육부 장관’을 각각 ‘문화관광부’ 및 ‘문화관광부 장관’으로 바꾸고, 교육부의 명칭 변경에 따라 2001년 1월 29일 일부 개정(대통령령 제17115호)될 때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바꾸고, 법령 변경에 따라 2005년 6월 13일 개정(대통령령 제18861호)될 때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 ‘정부표창규정’을 각각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정부표창규정」’으로 바꾸었을 뿐이다.³⁵⁾ 그러다가 2005년 7월 27일 ‘국어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18973

34) 이에 따른 ‘국어 심의회 운영 세칙’은 1995년 12월 23일 곧바로 제정(문화체육부 훈령 제55호)되었고 1998년 7월 28일 1차례 개정(문화관광부 훈령 제28호)되었다. 이 세칙은 아직 폐지되지 않은 채 그대로 유지되어 있다.

호)이 제정됨에 따라 제3장(제11조 내지 제13조)과 제4장(제14조 내지 제22조)에 걸친 ‘국어의 발전 및 보급’과 ‘국어 심의회’와 관련된 규정이 모두 삭제되는 등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이 있었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가운데 ‘제4장 국어 심의회(제14조 내지 제22조)’는 ‘문화예술진흥법’ 제6조에 의하여 마련된 것으로 그 내용은 ‘국어 심의회 규정’에 소급한다. ‘국어 심의회 규정’은 1964년 11월 10일 제정(대통령령 제1977호)된 이후 1969년 12월 4일(대통령령 제4389호), 1976년 11월 15일(대통령령 제8279호), 1990년 1월 3일(대통령령 제12895호), 1991년 10월 18일(대통령령 제13491호), 1993년 3월 6일(대통령령 제13869호) 등 5차례 일부 개정이 있었다. 이 가운데 1990년 1월 3일 일부 개정(대통령령 제12895호)될 때 문화부가 신설됨에 따라 국어 심의회의 소관 부서를 ‘문교부’에서 ‘문화부’로 바꾸고, 1991년 10월 18일 개정(대통령령 제13491호)될 때 국어 심의회의 업무 및 기능을 ‘조사·연구·심의’에서 ‘심의’로 바꾸었다. 이는 1991년 1월 23일 국립국어연구원(국립국어원 전신)이 발족됨에 따른 것이다. 또한 1993년 3월 6일 개정(대통령령 제13869호) 때 문화체육부가 발족됨에 따라 국어 심의회의 소관 부서를 ‘문화부’에서 ‘문화체육부’로 다시 바꾸었다. 그러다가 ‘문화예술진흥법’(1995년 1월 5일 전문 개정, 법률 제4883호)에 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1995년 7월 13일 전문 개정, 대통령령 제14727호)이 제정되면서 ‘국어 심의회 규정’은 폐지되었다.³⁶⁾

<국어 심의회 규정(1993년 3월 6일 일부 개정, 대통령령 13869호)>

제1조 (목적) 문화체육부 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국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부에 국어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6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국어 또는 언어학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문화체육부 장관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3조 (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며, 심의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심의회의 직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한글 문제에 관한 사항.
2. 한자 문제에 관한 사항.
3. 학술 용어 문제에 관한 사항.
4. 외래어 한글 표기법에 관한 사항.
5. 한글 외래어 표기법에 관한 사항.
6. 기타 문화체육부 장관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문화체육부 장관으로부터 회의의 소집 요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5) 이때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도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으로 법령이 변경되었다.

36) ‘국어 심의회 규정’은 1953년 7월 7일 제정된 ‘국어 심의 위원회 규정’(문교부령 제31호)에 더 소급한다. 이 규정은 그때 당시 커다란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던, 한글 간소화 개정의 학술적인 근거를 마련하게 하기 위하여 국어 심의 위원회의 설치할 것을 규정한 법령이다.

제6조 (분과 위원회) ① 심의회에 다음의 분과 위원회를 둔다.

1. 한글 분과 위원회
2. 한자 분과 위원회
3. 학술 용어 분과 위원회
4. 표기법 분과 위원회
5. 국어 순화 분과 위원회

② 제1항의 분과 위원회는 심의회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위원의 분과 위원회별 배속 정원은 문화체육부 장관이 정한다. ③ 각 분과 위원회에 분과 위원장1인을 두되, 그 분과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각 분과 위원장의 직무에 관하여는 제3조 제1항과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분과 위원장”으로, “심의회”는 “당해 분과 위원회”로 하고, “문화체육부 장관”은 “위원장”으로 한다. ⑤ 분과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분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분과 위원회의 회의) 각 분과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관계자 등과의 협조 요청) 심의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당해 분야의 관계자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직원) ① 심의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문화체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부 장관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④ 각 분과 위원회의 사무는 제1항의 간사와 서기가 이를 담당한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과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관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 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앞에서 잠시 언급한 ‘정부 공문서 규정’도 대표적인 국어 관련 법령(명령)이다. ‘정부 공문서 규정’은 1949년 7월 15일 제정된 ‘정부 처리 규정’ 중 제3장 ‘문서 처리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정부 공문서 규정’은 1991년 6월 19일 제정된 ‘사무 관리 규정’(대통령령 제13390호)에 의해 폐기되기에 이르기까지 14차례에 걸쳐서 전문 개정 또는 일부 개정을 하였다.³⁷⁾

국어 관련 규정은 1961년 9월 13일 ‘정부 공문서 규정’ 제정부터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내용은 조금씩 바뀌었다. 제정 및 마지막 개정 때의 국어 관련 규정과 주요 개정 내용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정부 공문서 규정(1961년 9월 13일 제정, 각령 137호)>

제15조 (일반적 요소) ① 모든 공문서는 표준말인 한글 국어체로 간명하게 기술하고 정자로서 가로쓰되 띄어 쓸 것이며 숫자 표시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뜻의 전달이 곤란한 것은 괄호 안에 한자를 넣어 쓸 수 있다. ② 공문서 작성상의 용어는 상급 관청에 발한하거나 상관에게 제출하는 것은 보통

37) 1962년 11월 7일 일부 개정(각령 제1033호), 1963년 11월 20일 전문 개정(각령 제1645호), 1964년 4월 24일 일부 개정(대통령령 제1788호), 1965년 2월 24일 일부 개정(대통령령 제2056호), 1965년 9월 14일 일부 개정(대통령령 제2215호), 1966년 5월 21일 전문 개정(대통령령 제2538호), 1967년 8월 21일 일부 개정(대통령령 제3188호), 1969년 5월 2일 전문 개정(대통령령 제3923호), 1970년 9월 18일 일부 개정(대통령령 제5338호), 1973년 11월 9일 일부 개정(대통령령 제6926호), 1974년 4월 19일 일부 개정(대통령령 제7113호), 1984년 11월 23일 전문 개정(대통령령 제11547호), 1986년 12월 27일 일부 개정(대통령령 제12020호), 1987년 8월 1일 일부 개정(대통령령 제12222호) 등.

경어를 쓰고 기타 문서는 과격하고 불손한 감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어를 생략한다.

보기

1. 하달 문서체

○○○임, ○○○함, ○○○할 것, ○○○시킬 것

2. 상신 문서체

○○○입니다, ○○○바랍니다, ○○○합니다

④ 공문서상의 시간 표시는 24:00시간제로 하며 시분 표시는 약하고 점을 찍어 구분한다. ⑨ 고유 명칭은 정확한 공식 명칭을 쓰되 뜻의 전달이 곤란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넣어 쓴다. ⑩ 공문서상의 외국어 사용은 고유 명사에 한한다. 단, 외국어로만 표시될 수 있는 용어는 예외로 한다.

<정부 공문서 규정(1987년 8월 1일 대통령령 제12222호)>

제11조 (문서의 용어) ① 문서의 용어는 한글로 띄어서 가로쓰되, 표준말로 쓴다. ② 문서에 쓰는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한다. ③ 문서에 쓰는 날짜의 표기는 숫자로 하되, 연·월·일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사이에 점을 찍어 연·월·일을 구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문서에 쓰는 시·분의 표기는 24시간제에 따라 숫자로 하되, 시·분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사이에 두점(:)을 찍어 시·분을 구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정부 공문서 규정’의 주요 개정 내용>

① 1961년 9월 13일 제정(각령 137호)

제15조 (일반적 요소) ① 모든 공문서는 표준말인 한글 국어체로 간명하게 기술하고 정자로서 가로쓰되 띄어 쓸 것이며 숫자 표시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뜻의 전달이 곤란한 것은 괄호 안에 한자를 넣어 쓸 수 있다.

② 1963년 11월 20일 전문 개정(각령 1645호)

제10조 (용어) ① 문서는 표준어를 사용하여 한글로 띄어서 가로 쓰되, 뜻의 전달이 곤란한 것은 괄호 안에 한자 또는 외국어를 넣어 쓴다. 다만, 법규 문서는 한자를 혼용할 수 있다.

③ 1966년 5월 21일 전문 개정(대통령령 제2538호)

제7조 (문서의 용어) ① 문서는 표준어를 사용하여 한글(모아쓰기 및 풀어쓰기)로 띄어서 가로쓰되, 뜻의 전달이 곤란한 것은 괄호 안에 한자 또는 외국어를 넣어 쓴다. 다만, 법규 문서는 한자를 혼용할 수 있다.

④ 1969년 5월 2일 전문 개정(대통령령 제3923호)

제7조 (문서의 용어) ① 문서는 한글로 띄어서 가로쓰며 표준어를 사용한다. 다만, 법규 문서는 뜻의 전달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괄호 안에 한자를 넣어서 쓴다.

⑤ 1970년 9월 18일 일부 개정(대통령령 5338호)

제7조 (문서의 용어) ① 문서는 한글로 띄어서 가로쓰되, 표준말을 사용한다.

⑥ 1984년 11월 23일 전문 개정(대통령령 제11547호)

제11조 (문서의 용어) ① 문서의 용어는 한글로 띄어서 가로쓰되, 표준말로 쓴다.

‘정부 공문서 규정’을 승계한 ‘사무 관리 규정’(1991년 6월 19일 제정, 대통령령 제13390호)도 국어 관련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사무 관리 규정’은 2008년 현재까지 총 23차례에 걸

쳐서 일부 내용이 개정되었으며 국어 관련 내용도 4차례 바뀌었다. 주요한 개정 내용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p><‘사무 관리 규정’의 개정 주요 내용></p> <p>(1) 1991년 6월 19일 제정(대통령령 제13390호) 제10조 (문서 작성의 일반 사항) ① 문서는 쉽고 간명하게 한글로 작성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 맞춤법에 따라 가로로 쓴다.</p> <p>(2) 1999년 8월 7일 일부 개정(대통령령 제16521호) 제10조 (문서 작성의 일반 사항) ① 문서는 쉽고 간명하게 한글로 작성하되, 올바른 뜻의 전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기타 외국어를 넣어 쓸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 맞춤법에 따라 가로로 쓴다.</p> <p>(3) 1999년 12월 7일 일부 개정(대통령령 제16609호) 제10조 (문서 작성의 일반 사항) ① 문서는 쉽고 간명하게 한글로 작성하되, 올바른 뜻의 전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기타 외국어를 넣어 쓸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 맞춤법에 따라 가로로 쓴다. 제25조 (외국어로 된 문서 등에 대한 특례) ① 외국어로 된 문서에 대하여는 제10조 내지 제13조 및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고, <u>법규 문서 중 법률에 관한 문서에 대하여는 이 영의 적용을 받는 기관 외의 기관에서 다른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u></p> <p>(4) 2002년 12월 26일 일부 개정(대통령령 제17811호) 제10조 (문서 작성의 일반 원칙) ① 문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어문 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되, 쉽고 간명하게 표현하고,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그 밖의 외국어를 넣어 쓸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로로 쓴다. 제25조 (외국어로 된 문서 등에 대한 특례) ① 외국어로 된 문서에 대하여는 제10조 내지 제13조 및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고, 법규 문서 중 법률에 관한 문서에 대하여는 이 영의 적용을 받는 기관 외의 기관에서 다른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p>
--

이 밖에도 국어 사용과 관련된 규정은 법률 아래의 수많은 명령(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규칙, 규정 및 지침 등에도 포함돼 있다.³⁸⁾ 너무 많아서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지경이다. 그러나 이는 빙산의 일각이다.

① 대통령령

국새 규정(2008년 2월 29일 일부 개정, 대통령령 제20741호) 국제 우편 규정(2008년 2월 29일 일부 개정, 대통령령 제20678호) 국제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년 2월 29일 일부 개정, 대통령령 제20720호) 담배 사업법 시행령(2008년 2월 29일 일부 개정, 대통령령 제20720호) 대외 무역법 시행령(2008년 2월 29일 일부 개정, 대통령령 제20678호)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년 4월 4일 일부 개정, 대통령령 제20764호)

38) 아래는 2008년 7월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유효한 법령만을 대상으로 하였음을 밝혀 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2008년 7월 3일, 대통령령 제20893호)
 여권법 시행령(2008년 6월 25일 전부 개정, 대통령령 제20857호)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2008년 2월 29일 일부 개정, 대통령령 제20741호)³⁹⁾
 유사 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0년 3월 13일 제정, 대통령령 제16749호)
 재외 공관 공증법 시행령(2007년 10월 31일 일부 개정, 대통령령 제20353호)
 재외 국민의 교육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년 2월 29일 일부 개정, 대통령령 제20740호)
 주민 등록법 시행령(2008년 2월 29일 일부 개정, 대통령령 제20741호)
 증권 거래법 시행령(2008년 2월 29일 일부 개정, 대통령령 제20653호)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년 2월 29일 일부 개정, 대통령령 제20679호)
 측량법 시행령(2008년 2월 29일 일부 개정, 대통령령 제20722호)
 호적법 시행령(1984년 12월 27일 일부 개정, 대통령령 제11563호)
 ※포획 심판령(1952년 10월 4일 제정, 대통령 긴급명령 제12호)
 ※기류법 시행령(1962년 3월 20일 제정, 각령 제538호)

② 총리령

특정 물품 등의 조달에 관한 계약 사무 처리 특례 규칙(1996년 12월 31일 일부 개정, 총리령 제603호)
 ※ 공무원 윤리 헌장 실천 강령(1982년 11월 1일 제정, 국무총리훈령 제180호)

③ 부령

가축 가금 전용 의약품 등 취급 규칙(1962년 4월 25일 일부 개정, 농림부령 제94호)
 검찰 보고 사무 규칙(2006년 9월 14일 일부 개정, 법무부령 제597호)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2008년 3월 3일 일부 개정, 지식경제부령 제1호)
 관세법 시행 규칙(2007년 12월 31일 일부 개정, 재정경제부령 제596호)
 국립 및 공립 각급 학교 관인 규칙(2003년 12월 31일 일부 개정,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23호)
 국적법 시행 규칙(2008년 4월 4일 법무부령 제638호)
 국제 동보무선 통신 규칙(1959년 11월 10일 제정, 체신부령 제123호)
 국제환 규칙(2008년 3월 3일 일부 개정, 지식경제부령 제1호)
 군 검찰 사무 처리 규칙(2004년 12월 10일 일부 개정, 국방부령 제566호)
 군 표창 규칙(2005년 9월 6일 일부 개정, 국방부령 제583호)
 농산물 품질 관리법 시행 규칙(2008년 6월 20일 일부 개정,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2호)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2008년 4월 4일 일부 개정, 행정안전부령 제13호)
 도로 표지 규칙(2008년 3월 14일 일부 개정, 국토해양부령 제4호)
 도시가스 사업법 시행 규칙(2008년 3월 11일 일부 개정, 지식경제부령 제4호)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 규칙(2008년 5월 19일 일부 개정, 농림수산식품부령 제9호)
 디자인 보호법 시행 규칙(2007년 6월 29일 일부 개정, 산업자원부령 제405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 규칙(2008년 7월 3일 일부 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제7호)
 반도체 집적 회로의 배치 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2007년 11월 8일 전부 개정, 산업자원부령 제428호)

39) 제13조 (광고물 등의 일반적 표시 방법) ① 광고물의 문자는 한글 맞춤법·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과 병기하여야 한다.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2008년 3월 3일 일부 개정,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호)
 보안 관찰법 시행 규칙(2006년 7월 27일 일부 개정, 법무부령 제592호)
 사료 관리법 시행 규칙(2008년 3월 3일 일부 개정,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호)
 사무 관리 규정 시행 규칙(2008년 3월 4일 일부 개정, 행정안전부령 제1호)
 사법 경찰 관리 직무 규칙(2007년 12월 31일 일부 개정, 법무부령 제629호)
 사회 안전법에 의한 군 관계 보안 처분에 관한 규칙(1976년 3월 9일 제정, 국방부령 제286호)
 산업 안전 보건법 시행 규칙(2008년 6월 27일 일부 개정, 노동부령 제303호)
 상표 등록령 시행 규칙(2007년 12월 11일 일부 개정, 산업자원부령 제436호)
 상표법 시행 규칙(2007년 6월 29일 일부 개정, 산업자원부령 제404호)
 석유 사업법 시행 규칙(2005년 2월 2일 일부 개정, 산업자원부령 제254호)
 선박법 시행 규칙(2008년 3월 14일 일부 개정, 국토해양부령 제4호)
 수산물 품질 관리법 시행 규칙(2008년 3월 3일 일부 개정,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호)
 수의사법 시행 규칙(2008년 3월 3일 일부 개정,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호)
 수형자 등 교육 규칙(2004년 11월 22일 전부 개정, 법무부령 제558호)
 실용 신안법 시행 규칙(2007년 6월 29일 일부 개정, 산업자원부령 제403호)
 약사법 시행 규칙(2008년 4월 18일 일부 개정,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2호)
 어선법 시행 규칙(2008년 3월 3일 일부 개정,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호)
 외국 유학 여행권 교부 신청자 자격 심사 규정(1949년 9월 26일 제정, 외무부령 제6호)
 외국 전보 규칙(1962년 2월 1일 일부 개정, 체신부령 제184호)
 외무 관인 규칙(1999년 5월 17일 일부 개정, 외교통상부령 제11호)
 우편법 시행 규칙(2008년 3월 3일 일부 개정, 지식경제부령 제1호)
 의료법 시행 규칙(2008년 4월 11일 전부 개정,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1호)
 재외 국민의 교육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2008년 3월 4일 일부 개정,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
 정보 통신 기기 인증 규칙(2007년 1월 10일 일부 개정, 정보통신부령 제210호)
 정부 투자 기관 문서 규정(1973년 10월 19일 제정, 재무부령 제985호)
 종자 산업법 시행 규칙(2008년 3월 3일 일부 개정,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호)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2004년 11월 29일 일부 개정, 건설교통부령 제411호)
 지도 도식 규칙(2002년 7월 24일 일부 개정, 건설교통부령 제323호)
 축산물 가공 처리법 시행 규칙(2008년 3월 3일 일부 개정,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호)
 출입국 관리법 시행 규칙(2008년 7월 3일 일부 개정, 법무부령 제642호)
 특정 물품 등의조달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특례 규칙(2003년 12월 29일 일부 개정, 재정경제부령 제336호)
 특허법 시행 규칙(2007년 12월 11일 일부 개정, 산업자원부령 제435호)
 학교 법인 및 사립 학교 직인 규칙(1992년 8월 14일 제정, 교육부령 제618호)
 화장품법 시행 규칙(2008년 3월 3일 일부 개정,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
 회계 관계 공무원 직인 규칙(1999년 7월 1일 일부 개정, 재정경제부령 제99호)

④ 규칙

공직 선거 관리 규칙(2008년 3월 24일 일부 개정,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94호)
 군사 법원 사무 규칙(2000년 4월 29일 일부 개정, 대법원규칙 제1650호)
 방송 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2008년 6월 24일 제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 제20호)⁴⁰⁾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2008년 6월 18일 제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9호)⁴¹⁾
 법원 사무 관리 규칙(2007년 7월 31일 일부 개정, 대법원규칙 제2096호)

법원 재판 사무 처리 규칙(2007년 10월 29일 일부 개정, 대법원규칙 제2109호)
 상업 등기 규칙(2007년 12월 24일 제정, 대법원규칙 제2129호)
 선거관리위원회 사무 관리 규칙(2007년 4월 26일 일부 개정,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77호)
 헌법재판소 사무 관리 규칙(2008년 2월 15일 일부 개정, 헌법재판소규칙 제210호)

⑤ 규정 및 지침

국회 사무 관리 규정(2002년 3월 13일 신규 제정, 국회규정 제520호)
 등기부의 기재 문자에 대한 사무 처리 지침(2007년 6월 22일 전부 개정, 대법원 등기예규 제1187호)

헌법, 법률, 명령(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규칙, 규정 및 지침 등은 법령상의 위계가 있다. 그리하여 상위법은 하위법을 규율하게 되어 있다. 헌법은 법률을 규율하며, 법률은 명령을, 명령은 규칙을, 규칙을 규정 및 지침을 규율한다. 명령 자체도 대통령은 총리령을, 총리령은 부령을 규율한다. 따라서 하위법은 상위법을 위반할 수 없다.

이러한 법령상의 위계에 근거하여 대부분의 법령은 제정된다. ‘국어 기본법 시행령’도 ‘국어 기본법’에 근거하여 제정되었다. ‘국어 기본법’은 ‘국어 기본법 시행령’의 직접적인 근거 법령이다. 그런데 수많은 명령(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규칙, 규정 및 지침 등은 일반적으로 직접적인 근거 법령만을 규율받는 것처럼 보인다. 간접적인 관계에 있는 상위법과는 규율 관계가 느슨한 편이다. 법령 제·개정 시 관계 부처의 의견만 조회하는 정도에 그친다. 법령 제정자나 개정자의 무지에 의해 간접적인 관계에 있는 상위법을 참조하지 않더라도 별문제가 안 된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간접적인 관계에 있는 상위법에 위반하는 법령의 제정이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해당 법령은 다른 법령의 상위법이 될 수 있고 그 법령은 또 다른 법령의 상위법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국어 사용 측면이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국어 사용 관련 법령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 수가 적지 않다. 위에서 살펴본 것은 그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소홀히 했다간 국어 사용 관련 법령들 간에 내용상의 일관성을 잃어 국어 사용의 합법적인(?)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기류법 시행령’은 “제18조 (기류부 기재의 문자) ② 수자의 기재는 한자를 사용한다.”로 되어 있고 ‘가축 가금 전용 의약품 등 취급 규칙’은 “제22조 (국문표시) 표시서는 한글 또는 한자(漢字)로써 기재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도 ‘국어 기본법’의 규정

40) 제22조 (언어) ① 방송 광고는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한글 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방송 광고는 국민의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비속어·은어·저속한 조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방송 광고는 상품명, 상품 표어, 기업명, 기업 표어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필요한 외국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단, 외국어 방송 채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외국인 어투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41) 제51조 (방송 언어) ① 방송은 바른말을 사용하여 국민의 바른 언어생활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② 방송 언어는 원칙적으로 표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특히 고정 진행자는 표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방송은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억양, 어조 및 비속어, 은어, 유행어, 조어, 반말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2조 (외국어 등) 방송은 외국어를 사용할 때는 국어 순화의 차원에서 신중하여야 하며, 사투리를 사용할 때는 인물의 고정 유형을 조성하여서는 아니된다.

에 맞게 개정되지 않았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사무 관리 규정’은 ‘국어 기본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여러 차례 개정이 있었지만 여전히 “문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어문 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이러한 혼란은 국어 진흥법으로서의 ‘국어 기본법’의 실효성을 크게 떨어뜨린다. 법령의 위계상 간접적인 관계에 있는 법령까지도 ‘국어 기본법’과 내용적으로 상충되는 것은 없는지 꼼꼼이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새로 제정될 법령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국어 기본법’이 상위법인 헌법에 저촉되는 것은 없는지도 재검해 볼 필요가 있다. 지난 2006년 6월 ‘표준어 규정’에 대한 헌법 소원이 청구되어 올 10월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결을 내린다. 또한 대법원은 그동안 한자로 된 성을 한글로 쓸 때 반드시 두음법칙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인 인격권 또는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어두 ‘ㄱ’을 표기할 수 있도록 호적예규를 개정했다. 이는 ‘국어 기본법’도 상위법인 ‘헌법’에 저촉되지 않고 조화롭게 운용될 수 있을 때에만 법률로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 주는 사례라 할 만하다. 법률도 대국민 서비스의 하나로서 시대정신의 흐름을 좇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3. ‘국어 기본법’은 법률로서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는가?

이 장에서는 ‘국어 기본법’이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등을 포함하여 이전의 국어(사용) 관련 직·간접의 법령을 한데 모아서 정리·종합한 법률이라는 데 초점을 맞추어 ‘국어 기본법’이 내용적으로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다. 특히, ‘국어 기본법’이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등을 직접 승계하고 있다는 점을 중시하여 이들 법률에서의 규정 내용이 ‘국어 기본법’에서 어떻게 바뀌어 수렴되었는지 주밀하게(?) 살펴보는 과정을 통하여 ‘국어 기본법’의 법률로서의 의의를 확인하도록 하겠다.⁴²⁾

① 국어 발전 기본 계획의 수립·시행

문화예술진흥법	국어 기본법
제5조 (국어 발전 등 계획 수립) 국가는 국어의 발전 및 보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국어 발전 기본 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국어 발전 기본 계획(이하 “기본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국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기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어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어문 규범의 제정 및 개정의 방향에 관한 사항 3. 국민의 국어 능력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42) ‘국어 기본법’은 총 5장 27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조항별 내용과 의의에 대해서는 김세중(2005)를 참고할 수 있다.

	<p>4. 국어 정책과 국어 교육의 연계에 관한 사항</p> <p>5. 국어의 선양과 국어 문화 유산의 보전에 관한 사항</p> <p>6. 국어의 국외 보급에 관한 사항</p> <p>7. 국어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p> <p>8. 남북한 언어 통일 방안에 관한 사항</p> <p>9. 정신·신체상의 장애에 의하여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및 국내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p> <p>10.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p> <p>11. 그 밖에 국어의 사용·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p> <p>제7조 (시행 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기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 계획(이하 “시행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시행 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제8조 (보고) 정부는 2년마다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 및 그 시행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당해 연도 정기 국회 개시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	---

‘국어 기본법’이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국어 발전 기본 계획’을 수립·시행하고(제6조) 이 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제7조) 한 것은 종전의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의 선언적 조항보다 진일보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립국어원은 2006년 말 ‘문화 창조 역량 강화와 한국어의 세계화를 위한 국어 발전 기본 계획(2007~2011)’을 수립하였고⁴³⁾ 2007년 2월에는 ‘국어 발전 기본 계획’에 따른 ‘국어 발전 세부 시행 계획’도 수립하였다.

또한 ‘국어 발전 기본 계획’과 ‘국어 발전 세부 시행 계획’에 따른 시행 결과 보고서를 2년마다 국회에 제출하도록 한 것도 진일보한 내용이다. ‘국어 발전 기본 계획’의 시행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 것은 국어 정책의 계획과 시행 결과에 대하여 행정부(문화관광부)와 입법부(국회) 모두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중요 사안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② 국어 심의회

문화예술진흥법	국어 기본법
제6조 (국어 심의회) ① 문화관광부 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국어 발전 및 보급을 위한 제반 시책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에 국어 심의회를 둔다.	제13조 (국어 심의회) 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어 심의회(이하 “국어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국어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3) ‘국어 발전 기본 계획’의 전문은 국립국어원(2007)을 참고할 수 있고 ‘국어 발전 기본 계획’의 수립 경위 및 내용에 소개는 조남호(2007)을 참고할 수 있다.

<p>② 국어 심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2. 어문 규범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③ 국어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국어·언어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촉한다. ⑤ 제2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어 심의회에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어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

‘국어 심의회’ 조항의 내용은 종전의 ‘문화예술진흥법’에 비해 크게 확장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문화예술진흥법’은 단순히 ‘국어 심의회’의 설치 근거만을 제공해 준 데 반해 ‘국어 기본법’에서는 ‘국어 심의회’의 설치 근거를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어 심의회의 ‘기능’, ‘구성’, ‘분과 위원회의 설치’ 등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어 심의회’의 ‘기능’, ‘구성’, ‘분과 위원회의 설치’ 등은 이전에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었던 것들이다. 법률 아닌 명령(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결과적으로 ‘국어 기본법’은 ‘국어 심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크게 강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게다가 ‘국어 기본법’에 따른다면 ‘국어 심의회’는 ‘문화관광부 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국어 발전 및 보급을 위한 제반 시책을 심의’하는 수동적인 기능에 머무르지 않고 능동적으로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중요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국어 심의회’가 ‘국어 발전 기본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까지 심의하도록 한 것도 이와 관련된다.

③ 어문 규범의 제정

문화예술진흥법	국어 기본법
<p>제7조 (어문 규범) ① 국가는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사항(이하 “어문 규범”이라 한다)을 국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문 규범을 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p> <p>제8조 (어문 규범의 준수) ①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는 공문서 기타 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어문 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교육 또는 공공용에 제공하기 위한 인쇄물, 방</p>	<p>제11조 (어문 규범의 제정 등)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국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어문 규범을 제정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제12조 (어문 규범의 영향 평가) 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어문 규범이 국민의 국어 사용에 미치는 영향과 어문 규범의 현실성 및 합리성 등을 평가하여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항목·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8조 (교과용 도서의 어문 규범 준수)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초·중등 교육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용 도서를 편찬하거나 검정 또는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문 규범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p>

<p>송 광고물 등을 작성함에 있어서 예술 창작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문 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p>	<p>제14조 (공문서의 작성) ① 공공 기관의 공문서는 어문 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문자를 쓸 수 있다.</p>
---	---

어문 규범의 제정 절차에 대한 규정은 종전의 ‘문화예술진흥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⁴⁴⁾ 그러나 어문 규범의 개정도 어문 규범의 제정 절차와 똑같이 하도록 명시적으로 드러낸 점이 눈에 띈다. 이는 어문 규범이 ‘국민의 국어 사용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큰 점을 고려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문 규범이 국민의 국어 사용에 미치는 영향’과 ‘어문 규범의 현실성 및 합리성’을 평가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기도 하였다. 어문 규범의 영향 평가를 정책에 반영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현실성이 없거나 합리성이 없는 어문 규범을 개정하여 국민의 언어 생활을 편안하게 해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불필요한 어문 규범의 개정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어 기본법 시행령’은 제4조 제3항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어문 규범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어문 규범에 관한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추가하였다.

이렇게 제·개정된 어문 규범은 공문서를 작성하거나 교과용 도서를 편찬하거나 방송을 제작할 때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위에 제시한 내용만을 보면 어문 규범의 준수 규정이 ‘문화예술진흥법’에 비하여 약간 후퇴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듯싶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는 ‘국어 기본법’ 제15조 제2항으로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등의 대중 매체는 국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가 포함되어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 조항은 방송을 포함한 대중 매체가 국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에 대한 훨씬 더 포괄적인 책임을 지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④ 공문서의 작성(한글 전용)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	국어 기본법
<p>대한민국의 공문서(공용 문서)는 한글로 쓴다. 다만, 얼마 동안 필요한 때에는 한자를 병용할</p>	<p>제14조 (공문서의 작성) ① 공공 기관의 공문서는 어문 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문자를 쓸 수 있다. ② 공공 기관</p>

44) 어문 규범의 제정 절차는 1995년 1월 5일 전문 개정된 ‘문화예술진흥법’(법률 제4883호)이라는 법률에 의해 비로소 규율받게 되었다. 즉, 어문 규범을 제정할 때에는 ‘문화예술진흥법’[법률 제4883호(1995년 1월 5일 전문 개정), 법률 제5014호(1995년 12월 6일 일부 개정), 법률 제5454호(1997년 12월 13일 일부 개정), 법률 제6132호(2000년 1월 12일 일부 개정), 법률 제6589호(2001년 12월 31일 일부 개정), 법률 제6634호(2002년 1월 26일 일부 개정), 법률 제6883호(2003년 5월 27일 일부 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했다.

그 이전에는 법률 아닌 명령(대통령령)인 ‘국어심의회 규정’[대통령령 제1977호(1964년 11월 10일 제정), 대통령령 제4389호(1969년 12월 4일 일부 개정), 대통령령 제8279호(1976년 11월 15일 일부 개정), 대통령령 제12895호(1990년 1월 3일 일부 개정), 대통령령 제13491호(1991년 10월 18일 일부 개정), 대통령령 제13869호(1993년 3월 6일 일부 개정)]에 근거하여 문교부(→문화부→문화체육부)에 설치된 국어심의회의 심의결정을 거쳐야 했다. 관보 고시에 관한 규정은 따로 없었다.

수 있다.	이 작성하는 공문서의 한글 사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국어 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비록 한 항이지만 두 가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공문서(공용 문서)는 어문 규범에 맞추어 작성해야 한다는 것과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자는 바로 앞에서 살펴본 내용이다. 후자는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글 전용의 실효성을 더 높이기 위하여 한자와 더불어 다른 외국 문자의 병용을 적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자 산업법’(1995년 12월 6일 제정, 법률 제5024호),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1991년 1월 8일 제정, 대통령령 제13242호), ‘정부 공문서 규정’(1963년 11월 20일 전문 개정, 각령 1645호), ‘사무 관리 규정’(1999년 8월 7일 일부 개정, 대통령령 제16521호) 등 이전의 여러 법령은 다른 외국 문자의 병용을 인정했다.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이 상징성을 갖는 데 그친 것도 이러한 법령의 운용과 무관치 않다. 따라서 ‘국어 기본법’이 다른 외국 문자의 병용을 정식 인정함으로써 국어 사용 현실을 얼마간 수용하면서도 이를 통하여 한글 전용의 실효성을 좀 더 높인 것으로 볼 수 있겠다.

<p><중자 산업법>(1995년 12월 6일 제정, 법률 제5024호)</p> <p>제163조 (사용 문자) 이 법에 의한 모든 서류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한자 및 외국 문자의 표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이를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물부령(←농림부령←농림수산부령←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1991년 1월 8일 제정, 대통령령 제13242호)</p> <p>제13조 (광고물 등의 일반적 표시 방법) ① 광고물의 문자는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과 병기하여야 한다.</p> <p><정부 공문서 규정>(1963년 11월 20일 전문 개정, 각령 1645호)</p> <p>제10조 (용어) ① 문서는 표준어를 사용하여 한글로 띄어서 가로 쓰되, 뜻의 전달이 곤란한 것은 괄호 안에 한자 또는 외국어를 넣어 쓴다. 다만, 법규 문서는 한자를 혼용할 수 있다.</p> <p><사무 관리 규정>(1999년 8월 7일 일부 개정, 대통령령 제16521호)</p> <p>제10조 (문서 작성의 일반 사항) ① 문서는 쉽고 간명하게 한글로 작성하되, 올바른 뜻의 전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기타 외국어를 넣어 쓸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 맞춤법에 따라 가로로 쓴다.</p>

⑤ 한글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국어 기본법
제12조 (한글날 행사 등) 정부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한글날 기념행사를 행하고, 한글날이 속하는 주간을 “한글만을 사용하는 주간”으로 선포하여 이 기간 중에 작성하거나 발행하는 각	제20조 (한글날) ① 정부는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성을 국내외에 선양하고 범국민적 한글 사랑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행한다. ② 제1항

종 문서·일간 신문 기타 간행물의 전면 또는 일부를 한글로만 표기하도록 지방 자치 단체·정부 투자 기관 및 언론 기관 등에 권장할 수 있다.	의 규정에 의한 기념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국어 기본법’은 한글날 관련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규정은 이전에는 ‘문화예술진흥법’이 아닌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 들어가 있었다. 이는 ‘국어 기본법’이 제정될 당시 ‘한글날’이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국민적 관심이 크게 낮아진 것과 관련하여 바라볼 수 있다.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성을 국내외에 선양하고 범국민적 한글 사랑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한글날 기념행사의 개최를 ‘국어 기본법’에 직접 명시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⁴⁵⁾

⑥ 기타

그 밖에도 ‘국어 기본법’은 국어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실태를 조사하고(제9조), 공공 기관에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 책임관’을 두고(제10조), 국가 및 대중매체가 바람직한 국어 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규정하였다(제15조).

또한 국민이 국어를 통하여 지식·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국어 정보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벌이고(제16조),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각 분야의 전문 용어를 표준화·체계화하여 보급하고(제17조), 외국인과 재외 동포가 손쉽게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한국어 보급 사업을 적극 시행하고(제19조),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다(제22조).

특히,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국어 능력도 검정하고(제23조), 국민의 국어 능력을 높이고 국어와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국어 문화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제24조) 점이 눈에 띈다.

4. 나오는 말

◇ 참고 문헌 ◇

- 고길섭(2005), 『스물한 통의 역사 진정서』, 도서출판 엘피.
- 국립국어원(2003), “국어 발전 종합 계획(안)”.
- 국립국어원(2007), “국어 발전 기본 계획”.
- 김세중(2005), “국어 기본법 시행의 의의”, 『새국어 생활』 제15권 제3호(2005년 가을호), 국립국어원.
- 문화관광부(2004), “국어 기본법 제정(안) 이렇게 마련되었습니다”.
- 조남호(2007), “국어 발전 기본 계획의 수립 경위 및 내용”, 『새국어 생활』 제17권 제23호(2005년 여름호), 국립국어원.

45) 1990년 11월 5일 전문 개정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3155호)에 의하여 관공서의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다가 2005년 12월 29일 일부 개정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법률 제7771호)에 의하여 5대 국경일의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관공서의 공휴일에서는 제외되어 있다.

“국어 정책 혁신 방향과 ‘국어 기본법’에 대한 토론문

이 상 혁 (한성대학교)

박용찬(국립국어원) 선생님의 “국어 정책 혁신 방향과 ‘국어 기본법’ - ‘국어 기본법’의 법률로서의 실효성과 의의를 중심으로 -”에 대한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법률에 문의한인 토론자인 제가 궁금해 하는 아래의 몇 가지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현재 이 법률의 명칭이 “국어 기본법”으로 돼 있습니다. 예전에도 논란이 된 적이 있는 줄로 아는데, “한국어 기본법(우리말 기본법)”으로 명칭 개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토론자의 생각입니다.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2. 국어 기본법과 같은 규범을 선언적인 문화 규범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면 이러한 문화 규범이 지니는 강제성 및 행정적 제재의 수준과 범위를 법률 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역시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3. 기타 일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어 관련 법률 조항을 삭제하고, 좀 더 세세하게 국어기본법에 그러한 내용을 반영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에 대한 답변도 듣고 싶습니다.
4. 3번 질문과 모순될 수도 있습니다만, 국어 기본법과 다른 일반 법률 사이에 상충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법, 신법 우선의 원칙, 법률 사이의 순위 및 법령 간의 논리적 해석으로 얼마든지 조화로운 해석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상충된 문구를 가진 법령이 존재하더라도 현실에서는 그리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상충은 법령의 정비를 통해서보다는 현실적인 운영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 견해에 대한 발표자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종의 문자 정책과 한글 진흥 정책의 미래

최 용 기 (국립국어원)

□ 차 례 □

1. 머리말
2. 세종의 민본 정신과 문자 정책
 - 2.1. 세종의 자주 정신과 민본 정신
 - 2.2. 세종의 문자 정책
3. 훈민정음 창제 이후의 문자생활
4. 한글 진흥 정책의 미래
 - 4.1. 국어 정서법과 한글 표기의 개선
 - 4.2. 한글 글자꼴의 개선
 - 4.3. 컴퓨터 한글 코드의 개선
 - 4.4. 한글 문화권 확장의 꿈
5. 맺음말

1. 머리말

훈민정음이 1443년(세종 25년)에 창제되고 그 3년 뒤인 1446년(세종 28년)에 공식적으로 반포되었다. 이때에 반포된 ‘훈민정음’은 문자의 이름이며 동시에 책 이름이기도 하다. 이 책에 최초로 ‘국어’(國語)라는 명칭(훈민정음 해례본 ‘합자해’, 且國語雖不分輕重, …於國語無用)이 나타나는데 오늘날의 ‘표준어’(우리말)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그 이후에 훈민정음이 정부의 공식 문서에 대표적인 표기 형식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은 1894년(고종 31년) 11월 21일에 공포된 ‘칙령’ 제1호 공문식 제14조에서부터이다. 곧 “法律勅令 總以國文爲本 漢文附譯 或混用國漢文”(법률 칙령은 다 국문으로 본을 삼고 한문 번역을 붙이며 또는 국한문을 혼용한다.)이라 한 것이 그것인데 이 가운데 ‘국문’이란 오늘날의 한글을 가리키며 한글은 이때부터 말 그대로 나라를 대표하는 글자(나라글자)로서의 지위를 얻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 칙령은 공문서의 대표 형식을 ‘한문’에서 ‘국문’으로 바꾸는 데는 커다란 공헌을 하였지만 그 뒤에 이것은 우리의 공식적인 문자생활에 또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계기를 만들었다. 그것이 ‘국한문 혼용’인데 공문서에서의 국한문 혼용은 1908년(순종 2년) 2월 6일

자 관보에 처음 나타난다. “各官廳의 公文書類는 一切히 國漢文을 交用하고 純國文이나 吏頭나 外國文字의 混用함을 不得함”이 그 내용이다. 이와 같은 상황 변화는 오랫동안의 한자 위주의 굳어진 문자생활의 버릇에서 비롯하는데 이미 굳어진 버릇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우리의 문자생활에 큰 변화가 찾아온 것은 일제의 식민 시대에서 벗어나 광복을 맞게 되면 서부터이다. 한글이 나라글자로서의 지위를 확고하게 자리 잡은 것은 1948년 10월 1일(공포는 10월 9일, 법률 제6호)에 국회를 통과한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이었다. 이 법률은 비록 한 줄밖에 한 되는 내용(대한민국의 공문서는 한글로 쓴다. 다만, 얼마 동안 필요한 때에는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이지만 그 파장은 대단하였다. 그러나 이것에 반대하는 세력도 만만치 않아 1949년 9월에 ‘한자 사용에 관한 건의안’이 제안되어 가결되었다. 그 이후에 한글 전용 정책과 한자 교육 정책은 혼란을 빚게 되었다. 정부 당국도 이런 논쟁에 휘말리어 갈피를 잡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문자 정책에 관해 정부가 분명한 태도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런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아울러 2005년에는 ‘국어기본법’과 시행령을 제정하여 공포하였지만 ‘한글 진흥 정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지 못하고 포괄적인 면에서만 제시하고 있다. 아직까지 국어 정책과 한글 정책을 구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쉽기만 하다.

이 글은 세종 대왕의 훈민정음 창제 정신과 그동안의 여러 가지 경위를 알아보고 우리의 문자 정책은 무엇이 문제인지, 미래의 한글 진흥 정책에 대한 방향은 무엇인지 모색해 보고자 한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인접 학문과의 연계 문제, 관련 부처와의 업무 조율 문제, 학자들 간의 이견 조율 문제 등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문자 개혁은 비록 작은 변화일지라도 국민들에게 또 다른 문제를 가져다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2. 세종의 민본 정신과 문자 정책

2.1. 세종의 자주 정신과 민본 정신

세종 대왕은 훈민정음의 머리말에서

“우리나라 말은 중국과 달라서 중국말을 적는 글자인 한자로써는 우리말을 적을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 백성은 말하려는 일이 있어도 자기의 뜻을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이 훈민정음 머리말에서 중요한 사실을 몇 가지 확인할 수 있다.

첫째는, 세종 대왕의 민족 자주정신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말이 중국말과 다르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 글자인 한자로써는 우리말을 적을 수 없음을 먼저 내세우고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우리나라는 중국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우쳐 주고 있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평범한 일인 것 같으나 그때의 지식인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조류를 생각해 볼 때는 반드시 당연한 일이라고만 보아 넘길 수 없는 일일 것이다. 그때의 지식인들은 중국에 대해 극히 저자세이었고 모화사상에 흠뻑 젖어 자기 자신

을 잃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극단적인 표현이 최만리, 신석조, 정창손 등의 훈민정음 반대 상소문에 나타나 있으니 그 몇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찍부터 지성으로 중국을 섬기어 한결같이 중국의 제도를 따랐는데, 이제 (중국과) 글자도 같게 하고 수레바퀴의 규격도 같게 할 때를 당하여 언문을 만듦은 보고 듣기에 놀랍습니다.”

“만약 (언문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중국으로 들어가 이를 비난하는 일이 있다면 어찌 사대 모화에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역대 중국이 모두 우리나라를 중국과 비슷하다고 하였는데 이제 따로 언문을 지어 중국을 버리고 스스로 오랑캐와 같아지려 하니, 어찌 문명의 큰 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들은 중국 사람이 되고 싶어 못 견디는 무리이었음을, 우리는 이 글에서 분명히 알아차릴 수 있다. 이런 사대 모화의 거센 소용돌이 속에서, 세종 대왕은 우리말은 중국말과 다르다는 것을 첫 마디에 내세우고 있으니 세종 대왕의 민족 자주정신은 항상 뼈에 사무쳐 있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세종 대왕의 이러한 정신은 동북아시아의 국경선을 확정하여 근세적인 개념을 확립하는 데에도 강하게 나타나 있고 중국 음악을 부흥시켜 새 음악을 작곡한 데 이어 우리나라의 향악을 작곡하여 그것을 기보하기 위해 ‘정간보’(井間譜)를 창안한 데에도 나타나 있다.

둘째는, 이 머리말에서 우리는 세종 대왕께서 백성을 위해 정치를 하려는 민본 정신을 읽을 수 있다.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려 해도 말할 수 없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많음을 딱하게 여겨 훈민정음을 만든 것이다. 이것은 세종 대왕의 민본 정신을 나타낸 것이며 이 정신은 오늘날의 민주주의 정신과도 통한다고 할 수 있다. 훈민정음이 쉽고 조리 있게 만들어진 까닭을 바로 여기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모든 백성이 이른 시일 안에 다 배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글자는 되도록 쉬어야 했던 것이다.

이러한 세종 대왕의 밑바닥 정신은 인도주의 정신으로 이끌어진다. 아기 낳은 관비의 휴가 기간을 연장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하게 한 일, 감옥 안에 물동이를 두어 죄수들이 한더위를 견디기 쉽도록 해 준 일, 죽을죄는 반드시 3심을 받도록 한 일, 그리고 노비에 대해 사사형벌을 금한 일 따위는 모두 세종 대왕의 이러한 민본 정신과 인도 정신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심지어, 훈민정음 창제에 강력히 반대하던 최만리 일파에 대해서도 누누이 타이르며 설득하려고 했지만 그래도 지나치다고 생각하여 의금부에 가두었으나 그 이튿날 풀어 주도록 명령을 내리기도 하였다.

2.2. 세종의 문자 정책

세종 대왕의 훈민정음 창제는 과감한 실천력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실로 위대한 결단과 놀라운 글자 혁명이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는 훈민정음의 머리말에서 세종 대왕의 민본 정신을 읽을 수 있었고 나아가서 새 글자를 만들었다는 사실에서 세종 대왕이 매우 독창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

세계의 여러 글자의 뿌리를 살펴보면 불과 몇 개로 집약이 된다고 한다. 이 몇 가지의 글자

에서 모든 나라들이 그 글자를 빌려 쓴 것이다. 그리고 이 몇 가지의 글자도 대부분 어떤 개인에 의해 창조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의 글자 한글만이 세종 대왕과 그의 신하(또는 학자)들이 힘을 합하여 만들어 낸 것이다. 그것도 세계의 여러 문자 가운데 매우 과학적이면서도 그 밑바닥에는 동양 철학의 원리를 깔고 있고 아주 쉬운 글자를 창조한 것이다.

세종 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웬만한 독창적인 두뇌로써는 도저히 이루어 낼 수 없는 위대한 창조였다. 세종 대왕은 이러한 정신과 성격을 글자로 승화시키기 위하여 있는 정성을 다하여 몸소 연구에 골몰하였다. 어떤 분은 세종 대왕은 언어 정책만 세웠을 뿐이지 실질 연구는 신하들이 하였다고 하는 일이 있으나 그렇지 않다는 것은 최만리의 상소문에 잘 나타나 있다.

“이번에 청주 조정에 거동할 때에 특히 농사 형편이 좋지 않은 것을 염려하시어 시종의 모든 사무를 간략히 하여 앞날에 비하면 옆에 열아홉을 줄이고, 계품하는 공무까지도 또한 정부에 맡겼는데 저 언문은 국가에 시급한, 꼭 해야 하는, 시일을 정한 일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찌 홀로 행재에서 급급히 이것을 놓지 않고 임금이 조섭하는 때를 번거롭게 합니까?”

이 표현에서 우리는 세종 대왕이 언어 정책을 세운 데에만 그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훈민정음이 조선 한자의 소리나 중국말의 소리를 적기 위해서 만들기 시작한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도 배제해야 할 것이다.

훈민정음은 우리말을 적기 위해서, 세종 대왕이 몸소 연구에 관여해서 만들어 낸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중국의 언어학(운학)에서 많은 것을 애써 배웠으니, ‘홍무정운역훈’과 ‘동국정운’은 그 결실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세종 대왕은 훈민정음을 만들고 난 뒤에 그 보급에도 관심을 두었다. 훈민정음을 보급하는 방편으로, ‘효데례의’(孝悌禮義)라는 별전(別錢)을 만들어(출전, 고전대감(古錢大鑑) 훈민정음을 돈처럼 널리 쓰이게 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경하전’(慶賀錢)으로 다루었다고 한다. (이 별전을 재구하여 지난 2006년에는 한글날 기념주화로 제작하였으며, 2008년에는 세계주화책임자회의(DMC)에서 세계 최고 주화로 선정, ‘가장 기술적인 은화’ 부문 대상 수상, 참고 문헌 뒤에 첨부) 또, 관리 등용 시험에도 훈민정음을 한 과목으로 삼도록 하였고 신하들에게도 문서를 훈민정음으로 만들게 하기도 했다고 한다.

또한, ‘용비어천가’, ‘석보상절’, ‘월인천강지곡’과 같은, 운문과 산문에도 훈민정음을 사용하여 표본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 세 책 중에 ‘월인천강지곡’은 세종이 직접 지은 것(이 사실에 대해서도 의심을 하는 사람이 있으나)이며, 그 표기법에 주목할 만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한자말을 적는 데 있어서 ‘석보상절’에서는 한자가 위에 놓이고 그 밑에 그보다 작은 한글로 소리를 적어 놓았는데 ‘월인천강지곡’에서는 그 자리와 크기가 바뀌어 있다. 곧 한글을 먼저 내세우고 그 밑에 그보다 작은 한자를 붙여 놓았다.

삼천千때대천千이 불며 룡樓殿이 일어늘 안쥬 견노매 어마님 모르시니.
(월인 기 16)

이러한 표기 방법으로써, 우리는 세종 대왕의 한자말 표기의 근본정신을 알 수 있다. 곧 세종 대왕은 한자말도 훈민정음으로 적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글자 적기의 큰 혁명이니 여기에서 우리는 세종 대왕의 혁신적인 성격을 아울러 엿볼 수 있다.

둘째, ‘석보상절’의 표기는 소리대로 적기이다. 그런데 월인천강지곡의 표기는 오늘날의 표기법과 비슷한 형태소의 기본형을 밝혀 적는 것이다.

날 들이 츠겨늘 어마님이 𠵼𠵼람藍원園을 보라 가시니 (월인 기 17)

여기에서도 우리는 세종 대왕이 우리말에 대한 문법 의식을 소유한 분임을 알 수 있다. 곧 그때의 다른 사람들에 비해 세종 대왕은 현대의 언어학자들과 비슷한 수준에서 우리말을 분석하였던 것이다. 그 당시 최고의 학자인 최만리가 훈민정음으로 중국 저서를 번역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주장하자 세종 대왕은 “너희가 운서를 아느냐? 또 너희가 사성 칠음과 자모가 몇인 줄 아느냐”라고 묻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한다.

세종 대왕의 훈민정음 창제는 우리 겨레의 문자 생활을 새롭게 시작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훈민정음 이전에 글자의 기록을 남겼다. 그러나 이 기록들은 우리 조상들이 살아 움직이는 모습과 그 마음가짐을 잘 전해 주지 못하고 있었다. 향가와 이두 같은 우리말의 기록은 그 분량이 너무나 적은데다가 그것마저 그 당시의 언어로 복원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많은 한문 서적이 전해져 오고 있으나 이 기록들은 마치 중국 사람의 눈에 비친 우리 조상들의 모습과 감정을 그려 놓은 것같이 느껴지는 것들이다. 한 민족의 언어와 그 민족의 사고방식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한문의 기록은 중국적인 사고방식에 끌리지 않을 수 없도록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 겨레의 역사 기록은 훈민정음 창제와 더불어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우리 조상들이 살아 움직이는 모습이 바로 우리 눈앞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바로 훈민정음 창제는 세종의 문자 정책을 그대로 보여 준 대표적인 것이며 우리 겨레 역사상 가장 중대한 사건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훈민정음(한글)에 대하여 외국 학자들이 평가하는 극찬의 글이다(참고 자료).

- (1) 한글은 음소적이고도 음절적인 장점을 지닌 아마도 세계에서 실제로 쓰이고 있는 어느 나라 문자보다도 가장 과학적인 문자 체계일 것이다.(라이샤워와 페어뱅크, 미국 하버드대학 교과서)
- (2) 한국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알파벳을 발명하였다. (포스, 네덜란드 라이센 대학)
- (3) 한글은 자못 수준 높은 조음 음성학적 분석의 기초 위에서 창조적으로 만들어진 알파벳이다. (맥콜리, 미국 시카고 대학)
- (4) 한글은 음성 같은 계열 안에서 조직적인 모양 변화를 갖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동시에 발성기관과 소리의 상호 관계를 묘사하는 합리성까지 갖추고 있어 세계 문자사에서 유례가 없는 문자학적 놀라운 업적이다. (레드야드,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 (5) 한글의 문자 체계는 문자 디자인의 관점에서 볼 때 단위 기호의 부분들이 음성의 분석적 자질을 대표하는 문자 체계로, 세계에서 유일하다. (차오, 중국 언어학자)
- (6) 한글은 단순성과 편의성에 감탄할 만하며 표음문자이지만 새로운 차원의 자질 문자 체

- 계로서, 인류의 가장 위대한 지적 성취의 하나로 평가된다. (샘슨, 영국 언어학자)
- (7) 한글은 인간이 개발한 문자 체계 중에서 가장 뛰어난 과학적 표기법 체계이다. (다이아몬드, 미국 과학자)

3. 훈민정음 창제 이후의 문자생활

훈민정음 창제 이후의 문자생활을 정리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사실상 문자 정책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에 관한 문헌을 찾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다행히 외솔 최현배 교수의 ‘고친 한글갈’(1961)과 안병희 교수의 ‘한글의 창제와 보급’(2000)이 있어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외솔은 ‘한글 쓰기의 변집(한글 사용의 진흥)’을 한글의 창제 시기, 정착 시기, 변동 시기, 간편화 시기, 각성 시기, 대성 시기의 여섯으로 나누고 각 시기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창제 시기는 임금이 직접 한글을 지어 쓰던 시기이요, 정착 시기는 양반 계급이 한글을 쓰기 비롯한 시기이요, 간편화 시기는 한글이 아주 평민의 손에 만만히 쓰이던 시기이요, 각성 시기는 독립된 나라 정부가 백성과 함께 한글을 높여 쓰기 비롯한 시기이요, 대성 시기는 모든 장애를 없애 버리고 자유로이 그 과학적 성능을 발휘하는 시기이다.

이렇게 말하면, 한글이 그 탄생 이후로 무난히 자라서 임금의 손에서 양반에게로, 양반의 손에서 평민에게로, 평민의 손에서 나라와 백성에게로 순조로이 번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아니다. 그 창제시기에 있어서는 완고한 낡은 사대주의 세력의 맹렬한 반대에 봉착하였으며, 정착 시기에는 연산군의 책 태우는 약정이 있었으며, 변동 시기에는 왜란의 참화가 훈민정음의 원본까지 영영 인멸의 운명으로 몰아넣었으며 간편화 시기에는 비교적 널리 쓰이기는 그 쓰는 법이 한글 본연의 성능을 크게 불구자로 만들었으며 순조 때부터 갑오경장에 이르는 한 백 년 동안에는 한글이 아주 침체 부진의 상태에 빠졌던 것이며 각성 시기에는 실로 현대적 비약을 할 만한 좋은 시기였지만 그 악운은 더욱 극악하였다.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은 우리 겨레와 함께 한글을 아주 말살하려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원체 높은 이상과 씩씩한 과학다운 건강성을 타고난 한글은 그 첩첩한 액운과 난관을 개척 돌파하여, 드디어 대성 시기를 획득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액운은 한글의 발전 계단에 번번이 찾아들기를 잊지 아니하고 계속 생기었으니 이른바 정부의 ‘한글 간소화’, ‘구 철자법으로의 환원’이란 것이 곧 그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한글은 용감히 승리를 관철하였으니 이는 온 민중이 한글의 과학성, 위대한 이상에 깊은 각성과 신념을 가지고 분투한 결과라고 하겠다.

안병희 교수는 훈민정음 창제 이전에 우리의 문자생활은 주로 한자로 이루어지는데 한자를 가지고 한 문자생활은 다시 순수한 한문 곧 고전 한문으로 하는 문자생활과, 우리나라의 한자음과 새김을 이용한 한자 곧 이두로 우리말을 적은 문자생활의 두 가지로 나눈 뒤, 삼국 시대 이후의 문자생활도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에도 상당 기간 한문으로 계속되었다고 하였으며 한글 창제 이후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한글은 한자에 비하면 배우고 사용하기가 여간 쉬운 문자가 아니다. 한글로 쓴 글은 한문이나 이두문으로 나타내기 힘든 감정이나 사실도 쉽고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다. 정인지가 말한 것처럼, 지혜로운 이는 하루아침에 배우고 어리석은 이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는 한글이다. 한

자로는 엄두도 못 내던 사람들에게도 한글의 창제로 문자생활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그러나 한글은 한자에 의한 문자생활을 완전히 대신하지는 못하였다. 공적인 문자 생활은 여전히 한자로 행하였다. 공적이 아닌 문자생활에 제한되어 한글이 사용되었다. 한자나 한문을 공부하기 위하여나 백성의 교화나 불교의 포교를 위한 문헌에서 소설과 시가의 창작이나, 아녀자들과 또는 그들끼리 주고받는 편지에서, 한글이 사용되었다. 한글이 창제된 뒤로 우리 문자생활에서는 한자와 한글에 의한 이러한 주종의 역할 분담이 있었음을 이해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한자와 한글에 의한 문자생활의 이중 구조는 조선 초기에 이루어져서 19세기 말까지 계속되었던 것이다.

그 후에도 이런 이중 구조는 계속되었으며 한글 전용 정책의 기본 정신은 1948년에 제정된 이른바 ‘한글전용법’(법률 제6호)에 바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문자 생활은 그것이 공적이건 사적이건 가릴 것 없이 모두 한글로만 쓰는 데 있다. 그러나 반대 세력도 만만치 않아 바로 다음 해인 1949년 9월에 ‘한자 사용에 관한 건의안’이 제안되어 그것이 가결됨으로써 한글 전용 정책과 한자 교육 정책은 지금까지 혼란을 거듭하게 되었다.

4. 한글 진흥 정책의 미래

4.1. 국어 정서법과 한글 표기의 개선

훈민정음 창제는 우리 역사상 매우 중요한 사건이지만 현대 국어의 정서법 관점에서 한글 표기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를 개선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가 국어 4법이라고 하는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이 있는데 한글 맞춤법 중에서 띄어쓰기와 고유 명사의 표시를, 표준어 규정에서 표준어의 정의와 사정 방법을, 그리고 외래어의 표기, 로마자의 표기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띄어쓰기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는 없었고 적어도 19세기 중반까지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러다가 갑오경장 이후에 권점(圈點)과 빈칸에 의한 두 가지 띄어쓰기 방안이 나타난다. 권점 띄어쓰기는 ‘독립경고문’(1894년)의 국문, 한문본에 흑점이 찍혀 있음을 볼 수 있고, 이봉운의 ‘국문정리’(1897)에는 권환(동그라미)이 쳐져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주시경의 저서에는 띄어쓰기가 많이 나타나는데 ‘국문초학’(1909)에는 흑점을, ‘국어문법’(1910)에는 권환을 썼고 ‘말의 소리’(1914)에 와서는 흑점, 권환과 아울러 겹침표(>)를 썼음을 볼 수 있다. 매우 정밀하게 형태론적, 통사론적 사실들을 분석하여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옛날에도 권점법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다. 가령, 용비어천가는 국문 가사와 한문 문장에서 구절에 권환을 쳤다.)

이에 대하여 빈칸 띄어쓰기는 ‘독립신문’(1896)이 채택함으로써 보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영어를 비롯한 서양 언어의 맞춤법 영향을 받은 것임에 틀림없다. 서재필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였으므로 우리말에 이 방법을 택한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는 ‘독립신문’의 창간호 ‘논설’에서 ‘귀절을 쉼여’ 쓸 것을 주장하고 이를 시행하였다.

20세기에 들어 와서 위의 두 가지 방법 중에서 빈칸 띄어쓰기가 점차 세력을 얻어 드디어 1933년 조선어학회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 이것이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 빈칸

띄어쓰기도 주로 순국문체에서만 시행되었고 국한문혼용체는 이를 따르지 않았다.

오늘날의 띄어쓰기는 전반적으로 잘 시행되고 있으나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국어사전, 교과서, 신문, 잡지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맞춤법의 규정을 잘 지키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국민이 쉽게 언어생활을 할 수 있도록 띄어쓰기 규정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령, 의미 단위로 붙여 쓸 수 있도록 하고 의존 명사나 단위 명사 등도 붙여 쓰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북한의 띄어쓰기 규정도 참고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둘째, 고유 명사의 표시는 가독성을 높여 주고 암기력을 도와주는 효과가 있다. 한글 표기에서 고유 명사임을 표시한 것도 ‘독립신문’이었는데, 오른쪽에 방선(傍線)을 그어서 표시하였다. 국명(國名)이나 지명(地名)에는 복선을, 인명에는 단선을 그어서 구별하였다. 그런데 이 신문은 제1권 102호까지만 이 복선법을 사용하였고, 그 다음 호부터는 그것을 폐지하였는데 그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이 복선법은 중국에서 간행된 ‘태서신사’(泰西新史)를 학부에서 번역한 국문본(1897)에서도 발견된다. 이 책에서는 국명과 지명은 오른쪽에 복선을, 인명은 왼쪽에 복선을 그어 구별한 점이 다르다. 20세기에 들어와서도 이 방법이 계승되었는데 최남선이 간행한 잡지 ‘소년’(少年)이 그렇다. 그런데, ‘청춘’(靑春)에서는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

이렇듯 고유 명사의 방선 표시법은 널리 행해지지 않았는데 1933년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부록 2. 문장 부호)에서 “고유명사를 표시하고자 할 적에는 종서에서는 좌방에 단선을 긋고, 횡서에서는 하선을 긋는다.”라고 규정한 점이 주목된다. 그 방법이 번거롭고 보기에 좋지 않음에도 그 뒤의 개정판에서도 이 규정이 유지되었음은 고유 명사 표시의 필요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요즘의 간행물들을 살펴보면 고유 명사의 표시는 거의 포기하고 있다. 국어사전도 예외는 아니다. 간혹 인용부(낫표, 작은따옴표)를 한 글을 보기도 하나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특수한 예로서, 한국판 ‘리더스 다이제스트’는 인명이 처음 나올 때 고딕체로 표기하고 있다. 현대 국어의 정서법에서도 고유 명사와 보통 명사를 식별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표준어의 정의와 사정 방법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표준어의 정의를 살펴보면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로 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교양 있는 사람’의 기준과 ‘서울말’의 경계, 그리고 ‘현대’의 개념 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국어학자들이 상당히 있다. 즉, 서울의 행정적, 지리적 팽창으로 수도권 전체가 ‘서울’의 개념으로 확장되어 지리적으로 규정하기가 불가능하고 서울 사람끼리 결혼한 가족도 찾기 어렵고 교육 수준도 일정하지 않아서 그 기준을 정하기가 막연하기만 하다. ‘교양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가릴 수 있는 기준이 없고 ‘두루 쓰는’이라는 표현도 모호하기만 하고 ‘~로 정함’이라는 표현도 본래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인위적이거나 작위적이라는 것임을 나타낸다. 더구나 ‘~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함으로써 현대 서울말이면서 표준어가 아닌 말이 있을 수 있고 현대 서울말이 아니지만 표준어가 될 수도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가령, ‘부주, 삼촌, 사돈’은 전자에 해당하고 ‘명계, 영글다’는 후자에 해당할 것이다. 그래서 표준어의 정의에서 ‘서울말’을 빼고 ‘공통어’를 넣자는 주장이 나오지만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표준어의 사정 방법도 개선해야 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발음 변화와 어휘 선택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제시된 표준어가 약 700여 개에 지나지 않아서 제시되지 않은 어휘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문제이다. 구체적인 사례는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이형태와 변종 어형이 있는 것들도 많다. 가령, 곰살궂다-곰살맞다, 복사뻘-복숭아뻘, 섬뜩하다-섬찝하다, 엉큼하다-웅큼하다, 떨어뜨리다-떨구다, 굵실거리다-굵신거리다, 으스스하다-으시스스하다 등은 어느 한쪽만 표준어인지 이에 대한 언급이 없고, 오순도순-오손도손, 만날-맨날, 야멸치다-야멸차다, 맨송맨송-맹송맹송, 바동바동-바둥바둥 등은 표준어가 현실 언어보다도 현저히 사용 빈도가 낮은 경우이다. 그런데 무슨 근거로 한쪽 어형만을 표준어로 제시하였는지 확실하지가 않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언어 사용 실태 조사가 필수적인데 이들을 일일이 조사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는 말뭉치(코퍼스) 자료를 이용하여 사용 빈도를 조사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넷째, 외래어의 표기도 여전히 문제가 많다. 현행 외래어는 원음주의와 관용을 존중한다고 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우선 파열음 표기에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은 국어의 특성에 맞고 국어를 사용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편리하도록 하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지만 원음과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한다고 하였는데 굳어진 외래어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일반 국민들은 일일이 국어사전을 찾아보아야 알 수가 있으며, 원어를 알고 있어도 외래어 표기를 정확히 알기는 쉽지가 않다. 외래어 표기 세칙을 살펴보아도 외래어 용례로 나와 있는 외래어는 절반이 외국어이다. 외래어 용례로 제시된 104개 중에 국어사전에 표제어로 오른 것은 59개에 불과하다. 외래어 발음도 보완이 필요하다. 국어사전이나 외래어 표기 용례집에도 외래어 발음에 관한 정보는 없다. 아무런 언급이 없다면 예사소리(평음)로 발음해야 하겠지만 현실음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또 약어(略語)나 두문자어(頭文字語)의 외래어 표기에 대해서도 언급이 필요하다. 가령, ASEM, APEC, ANZUS'의 표기가 '아셈, 에이펙, 앤저스' 등으로 음운 구조는 비슷한데 외래어 표기는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금처럼 각 언어권별 외래어 표기 세칙을 추가로 제정하는 것도 문제가 심각하다. 만약 전 세계의 언어권별로 외래어 표기 세칙을 제정한다면 수천 개에 해당하는 표기 세칙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현재 21개의 외래어 표기 세칙(3개 언어 추가 고시 검토 중)이 있는데 외래어의 표기 방법도 문자를 달리 적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로마자 표기는 한글을 모르는 외국인을 위해 한글을 국제 사회에 널리 사용되는 로마자로 음역(音譯)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로마자 표기법은 일차적으로 한국인을 위해 만든 표기법이라기보다는 외국인을 위해 만든 표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로마자 표기법이 외국인을 위한 표기법이라고 할 때 어느 정도까지 외국인을 위한 것일까 하는 문제는 그리 단순하지가 않다. 흔히, 외래어 표기와 반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잘못이다. 외래어 표기법은 일단 자국어의 하나로 받아들인 상태로 표기하는 체계인데 반해 로마자 표기법은 외국어 상태를 그대로 표기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표기 체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행 로마자 표기법은 지난 2000년에 개정되었는데 표음주의 방식을 반영한 전사법을 사용하고 있어 발음과 표기가 다를 수밖에 없다. 또한, 모음의 표기와 자음의 표기가 쉽지 않으며 내국인을 위한 것인지 외국인을 위한 것인지 그 경계가 모호하다. 특히, 모음 중에 종전 표기법과 달라진 것은 '어, 으, 의' 3가지이다. 이 중에서 '어'와 '으'는 특수 부호를 없애고 'eo'와 'eu'로 하였고, '의'는 '으+이'의 구성이나 'ui'로 한 것이 특이하다. 자음 중에서 달라진 것은 'ㄱ, ㄷ, ㅂ, ㅈ'을 'g, d, b, j'로 적도록 한 것인데 종전 표기법에서는 단어 첫머리에서는 무성음으로 발음되는 점을 반영하여 'k, t, p, ch'로 적고 유성음 환경에서는 'g, d, b, j'로 적

도록 했었다. 그래서 외국인에게 혼란을 초래하였고 내국인도 성명과 기관명 등 기준에 사용해 왔던 표기를 바꾸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현행 로마자 표기법은 정보화 차원에서도 입력 시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이다. 가령 ‘여의도’를 로마자로 전환하면 ‘Yeouido’가 되어 과거의 로마자 표기보다도 느리다는 것이다.

아무튼 한글이 세계의 많은 글자들 가운데 조직성이나 체계성 면에서 우수한 것은 인정받고 있지만 한글은 완벽한 글자는 결코 아니다. 이에 우리는 자만하지 말고 한글의 특징을 최대한 살려서 누구라도 쓰기 편하고 편리한 문자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4.2. 한글 글자꼴의 개선

한글은 글자꼴이 다른 문자들과 전혀 다른 과정으로 결정된 문자이다. 따라서 한글의 제자 원리가 유별난 만큼 글자꼴에 관한 것도 역시 유별날 수밖에 없다. 한글의 글자꼴에 대한 논의는 여러 각도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한글 글자꼴이 생겨난 유래나 역사도 논의될 수 있고 한글 글자꼴이 지닌 형태상의 특징도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글의 글자꼴이 정해진 것은 이미 제자 원리에 다 설명이 되어 있다. 한글의 제자 원리가 곧 글자꼴의 유래인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한글 글자꼴의 특징을 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글(자모)의 글자꼴은 두 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는 각각의 글자꼴이 특정한 의미를 지닌다는 점이고, 둘째는 각각의 글자꼴이 독립된 것이면서도 실제 표기에서는 전체의 한 부분으로서 기능한다는 점이다. 한글 글자꼴이 일정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은 독특한 제자 원리 때문이다. 글자의 모양을 정할 때 소리의 특징(자질)을 연구하여 그것을 글자꼴에 반영했기 때문에 글자꼴이 여러 가지 정보를 지니게 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이름을 정할 때도 그냥 짓는 경우와 돌림자를 넣어 짓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 두 가지 이름은 그것이 나타내는 정보와 기능면에서 차이가 있다. 그냥 짓는 경우는 단순히 한 개인을 다른 사람과 구별해 주는 것뿐이지만 돌림자를 넣어 짓는 경우는 그 외에 다른 정보(돌림자 속에 입력되어 있는 정보)도 나타내 준다. 한글의 글자꼴이 바로 후자의 경우에 해당한다. 한글의 글자꼴에는 음운론적인 정보와 철학적인 정보 등이 본래 입력되어 있는 것이다. 각 글자들이 나타내는 소리의 단위는 로마자와 같이 음소이지만, 로마자와는 구분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다.

두 번째 특징은 각각의 글자들이 고유의 꼴을 지니면서도 그것이 실제로는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단위의 한 요소라는 점은 모아쓰기라고 하는 표기 원리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모아쓰기라는 표기 원리는 글자꼴이 결정되고 난 후에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렇게 모아쓰는 것을 전제로 하여 각각의 글자꼴들이 결정된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모아쓰기라는 표기 원리는 각 글자꼴의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에 틀림이 없다.

초성과 중성의 글자꼴이 처음부터 분명하게 구분되어 만들어진 것도 그것을 합쳐서 쓸 것임을 미리 염두에 두었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로마자처럼 표기하는 경우에는 자음과 모음이 형태상으로 특별히 구별되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개개인이 독립적인 존재이면서도 가족 등의 집단을 구성할 경우에는 집단의 한 구성원이 되기도 한다. 가장이나 주부, 자식 등의 신분은 개체로서보다는 집단의 구성 요소로서의 신분을 말한다. 마찬가지로 초성이나 중성 등도 독립된 소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의 한 요소(부분)를 뜻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초성을 적기 위해 만들어진 문자 역시 그것만으로는 완전한 것이 될 수 없다. 결국 한글의 글자꼴에 관한 논의는 문자(자모) 차원의 논의만으로는 완전한 것이 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실제로 같은 초성자라고 하더라도 초성에 쓰일 때와 종성에 쓰일 때 서로 모양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 바로 한글의 글자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대의 ‘한글 맞춤법’에 규정되어 있는 자모 순서는 한글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훈민정음)의 순서와는 다르다. 예컨대, 초성의 경우 현재는 ‘ㄱ ㄴ ㄷ ㄹ ㅁ ㅂ ……’의 순서이지만 훈민정음에서는 ‘ㄱ ㅋ ㆁ ㄷ ㅌ ㄴ ……’의 순서로 되어 있다. 훈민정음에서의 자모 순서는 당시의 이론에 근거해서 정해진 것이다. 그 당시에는 초성을 조음 위치(아/설/순/치/후)와 조음 방법(전청/차청/불청불탁)으로 분류하였으므로 그런 기준에 의해 순서도 결정한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모 순서가 이론적이라는 점인데 이론적인 자모 순서를 익히는 것은 단순히 순서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내재된 이론을 함께 익히는 것이다.

현대의 자모 순서는 ‘훈몽자회’부터 나타나서 조금씩 변해 온 전통적인 순서를 그냥 따른 것이다. 문제는 표기 원리는 전통적인 것을 따르지 않고 바꾸면서 그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모 순서는 그대로 두었다는 점이다. 즉 맞춤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자모 순서가 표기법과 관련하여 이론적 근거를 지니던 것이었는데 맞춤법이 바뀌므로 해서 그 이론적 근거와 논리를 잃게 된 것이다. 훈몽자회에서는 한글 자모를 세 부류로 나누었다. 초성과 종성에 함께 쓰는 여덟 자와 초성에만 쓰는 여덟 자 그리고 중성을 구분한 것이다. 그와 같은 분류는 종성에는 여덟 자만 써도 되는 당시의 표기법을 고려할 때 수긍할 수 있는 것이다. 현대의 자모 순서는 훈몽자회의 그것과도 조금 달라졌다. 즉 훈몽자회에서는 ‘ㄱ ㅋ ㆁ ㅌ ㅍ ㅎ (△ ㅅ) ㅈ ㅎ’의 순서이었는데 지금은 ‘ㅈ ㅊ ㅋ ㅌ ㅍ ㅎ’으로 바뀌어 있다. 이것은 ‘아/설/순/치/후’라는 순서도 깨져 버린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자모 순서는 초심자나 전문가나 할 것 없이 모두 기억하기가 힘들고 무조건 외워야만 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한글의 특성을 간과하고 무시한 데서 야기된 결과이다. 한글은 과학적인 이론에 근거해 만들어진 문자로 글자꼴 하나하나에 이론적인 정보가 담겨져 있는데 현재의 자모 순서는 그것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가령, ㄴ ㄷ ㅌ ㅍ 등의 문자가 나타내는 소리는 서로 공통점이 있는데 이것은 발음 위치가 모두 같다는 것이다. 한글은 그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그것을 반영하여 만든 문자이므로 글자꼴에도 그 점이 나타나 있다. 따라서 자모 순서를 정할 때도 이들 문자들을 나란히 배열하게 되면 자형을 익히기도 쉽고 한글의 제자 원리도 익히고 음성 이론도 저절로 배우게 될 것이다.

이 밖에도 한글 표기와 관련하여 문자의 모양을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세종 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할 때에는 글자가 이렇게 작아지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요즘 신문이나 사전을 보면 ‘흥’인지 ‘홍’인지 ‘홍’인지 도무지 구별할 수 없을 때가 있다. 심지어 ‘학장실’과 ‘화장실’도 구분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 한글의 정확한 특징을 알고 있다면 네모꼴 안에 갇혀 있는 문자의 모양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탈네모꼴의 한글꼴이 아름다운 문자 모양을 보여 주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어학자들은 이런 연구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 앞으로의 한글 글자체 연구는 실용과 아름다움을 함께 아우르는 창의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한글을 대표하는 글자꼴과 크기는 무엇인지, 공문서나 공공 기관에서 사용하는 대표 글자꼴과 크기는 무엇인지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양한 글자꼴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최소한의 표준은 언제 어디에서나 필요하기 때문이다.

4.3. 컴퓨터 한글 코드의 개선

한글의 특성과 관련하여 그 범위와 코드 체계를 생각해 보면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한글 문제는 컴퓨터마다 서로 다른 코드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자료의 호환성 여부로 큰 어려움과 불편이 따랐으나 이제는 컴퓨터에서의 한글 코드 체계가 거의 통일이 되어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다. 아직도 사용되고 있는 한글 코드의 두 형태인 완성형 한글 코드와 조합형 한글 코드의 장단점을 살펴본다.

먼저, 완성형으로 되어 있는 한글 코드는 한글의 개념에서 보면 결코 납득하기 어려운 방식이다. 완성형 한글은 현대 국어에서 사용되고 있는 2350자, 한자 4888자, 특수문자 986자 합계 8224 글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글 자모의 정상적인 결합에 의한 모든 한글 자형들을 수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글자 수의 제약은 있는 글자만 사용하고 없는 글자는 사용하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나중에 코드의 개선이나 확장에 심각한 문제가 따른다는 점도 단점이라고 할 수 있다. 완성형이란 이름도 자모가 결합된 하나하나를 독립된 글자로서 코드화하고 한글의 모양도 독립적으로 처리한다는 뜻인데 이 코드 체계는 어떠한 개선이나 변경이 가해질 수 없음을 전제로 한 완성된 체계인 것이다. 원래는 국제적인 정보 교환을 위한 글자 수의 제약에 의하여 한글의 글자 수가 이렇게 줄어든 것으로 실용적인 면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국어학적인 면에서는 문제가 있다.

완성형 한글은 현행 한글 맞춤법과 국어 낱말들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 이 맞춤법이나 국어 낱말은 시간이 지나면 맞춤법이 바뀌고 새로운 낱말이 생겨나게 마련인데 그때마다 새로운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또 다시 한글 코드를 바꾸어야 하거나 새 낱말을 적당히 추가하여야 하는데 그러면 한글 배열이 맞지 않는 한글 코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겹이 난다’를 ‘겹시 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깨끗이’를 ‘깨끄치’라고 발음하는 사람이 있는데, 만약 언젠가 이러한 발음들이 표준어로 규정된다면 그때는 이들을 문법에 맞게 표기하기 위하여 ‘겹’과 ‘끗’이라는 글자가 필요하지만 완성형에는 이러한 글자가 없으니 표기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러한 글자들을 한글 배열에 맞도록 추가할 수도 없는 것이다. ‘겹’과 ‘끗’ 사이에 ‘겹’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 사이에는 이미 빈칸이 없다. 한글자라도 중간에 넣게 되면 다음 글자부터 순차적으로 코드값이 바뀌게 되어 전체적으로 다른 코드 체계가 되는데, 어느 한 순간에 한글 코드를 바꾸게 되면 그동안 축적된 수많은 자료들을 이용할 수 없게 되고 한글 배열이 맞지 않아 정보 교환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한글 코드의 체계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가장 타당한 방식이 선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에 완성형 한글 코드는 국어 자료 처리나 일상적인 문자 생활과도 결코 조화되기 어려운 방식이다.

조합형 한글도 완성형 한글보다는 우수하다고 하더라도 국어학적인 면에서 볼 때는 문제가 있다. 첫째는 한글의 수효에 관한 문제이다. 한글 코드 문제로 인식되어 온 완성형 한글과 조합형 한글의 본질도 바로 이 문제이다. 완성형 한글은 한글의 사용 빈도수를 근거하여 가려 뽑은 2,350자의 음절만을 사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며 조합형 한글은 현행 맞춤법에서 규정된 초성, 중성, 종성의 결합에 의한 11,172자의 한글 전부를 사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국어학

적인 면이나 일상 언어생활 면에서도 글자의 수요가 풍부한 조합형 한글이 우수하다는 것은 이미 언급하였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한글의 수요는 맞춤법에 규정된 11,172자를 넘어서 고문헌에 사용된 옛글자, 어간 형태의 옛글자, 방언 형태의 글자, 개화기 문헌의 글자 등 현행 맞춤법에 벗어난 한글 형태가 상당히 있기 때문이다. 이들 자모들의 숫자는 이미 현행 2바이트 조합형 코드 구조가 수용할 수 있는 초성, 중성, 종성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므로 자모별 조합형은 기대할 수가 없다. 따라서 현행 조합형 한글 바탕 위에 옛글자는 한자와 같은 방식의 완성형을 가미하여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둘째는 한글 코드 체계의 문제이다. 조합형 가운데 코드화할 자모 단위와 그 배열 순서의 문제이다. 자모 단위에 있어서 ‘나, 거, 니 ……」와 같은 겹모음이나 ‘나, 리 ……」 등과 같은 겹받침들을 하나의 단위로 할 것인가 두 개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한글의 기본 자모는 자음 14자, 모음 10자 합계 24자, 옛글자를 포함하더라도 자음 17자, 모음 11자 합계 28자밖에 안 되므로 이들 문자에만 코드값을 부여하면 될 것이다. 즉, 기본 문자가 아닌 겹자모들을 모두 단자모 형식으로 풀어서 코드화하면 되는 것이지만 이것은 컴퓨터의 효율성이나 우리 문자 생활의 실용적인 측면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2바이트 조합형은 초성 19자, 중성 21자, 받침 27자로서 이들의 산술적인 결합에 의한 글자 수요는 모두 11,172자가 된다. 한글의 자모들이 이렇게 선정된 것은 현행 한글 맞춤법에 따른 것이지만 컴퓨터에서 한글을 실현하는 기준은 한글 맞춤법과는 무관하게 컴퓨터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문자 생활의 실용성과 효율성에 입각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셋째는 한글 실현의 방식이다. 한글 실현 방식에는 하드웨어 방식과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드웨어 방식은 컴퓨터에 하드웨어 장치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만큼, 개인 사이에 컴퓨터의 동일한 한글 환경을 보장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하드웨어 개량판이 나올 때마다 새로운 장치를 교체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요즘은 컴퓨터의 기억 장치 용량이 넉넉하여 소프트웨어 한글을 사용하더라도 불편은 없다. 이러한 소프트웨어 한글 방식에도 한글 도스 방식, 프로그램 내장 방식, 램(RAM) 상주 방식이 있는데 여전히 문제점이 있다. 한글 도스 방식은 완성형 한글이기 때문에 실용적이지 못하고, 프로그램 내장 방식은 자료의 호환성에 문제가 있고, 램 상주 방식은 영문 소프트웨어 사용에 문제가 있다.

아울러, 컴퓨터에서의 한글 코드 문제는 한자나 특수 문자 등과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한글 단독으로만 이야기할 수 없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 아무튼 어느 방식을 채택하여도 문제는 있지만 현행 한글 맞춤법의 한계를 벗어나서 컴퓨터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실용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개선된 한글 문자 코드를 서둘러 개발해야 할 것이다.

4.4. 한글 문화권 확장의 꿈

어느 젊은 영문학자가 대한민국의 대표 브랜드를 ‘한글’로 지정해야 한다고 하였고, 한국이 미지커뮤니케이션연구원(CICI)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대한민국 국가 이미지 설문 조사 결과 ‘한글’이 1위로 나타났다고 발표하였다. 이제 한글은 우리 한민족의 고유 문자만이 아닌 것은 틀림이 없다.

세계 어디서나 ‘USA’가 미국을 상징하는 국가 이미지가 되듯이 대한민국의 상징은 ‘한글’이 되도록 한글 문화권의 원대한 꿈을 꾸어야 할 것이다. 결코 ‘다이나믹코리아’(Dynamic Korea)

가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없으며 국가 이미지도 될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이제 외국인 ‘한글’은 대한민국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과거에 미국의 자원 봉사단인 ‘평화 봉사단’(Peace Corps)이 개발도상국을 찾아다니며 교육과 문화, 의료 활동을 하며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였듯이 이제는 우리도 아시아가 동반 성장하도록 ‘문화 나눔 운동’을 펼쳐야 할 것이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언어가 있고 언어 가운데 우리의 ‘한글’이 우뚝 솟을 수 있도록 한글 문화권 확대의 꿈을 가져야 할 것이다.

한글 문화권 확대의 꿈은 과거에 열강의 제국주의가 강요한 언어 침탈의 방식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으며, 문자가 없는 민족을 대상으로 그들이 문자의 필요성을 느낄 때에 우리는 ‘한글 나눔 운동’을 함께 펼쳐야 할 것이다. 말(언어)은 있지만 기록할 문자가 없는 소수 민족 국가나 개발 국가인 아프리카 등 어디든지 기록할 문자를 원하는 곳을 찾아가야 한다.

한글 세계화나 한글 수출의 방안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자칫 문화 우월주의나 한글의 우수성만을 강조하다 보면 그들이 굽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한글 표기의 실용성과 편리성을 내세워 스스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문화와 언어를 강요하는 방식보다는 문화 상호주의 방식을 내세워 그들의 우수한 전통 문화를 ‘한글’로 기록하여 영원히 남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름다운 생각을 가져야 할 것이다. 구전되는 그들의 전통 가요와 설화 등을 기록하여 후세에 남길 수 있는 길을 알려 주어야 하며 그 방안의 하나로 ‘한글’을 공유하도록 일깨워 주어야 할 것이다.

이제 한글 문화권의 영역을 아시아를 중심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21세기는 아시아 태평양의 시대라고 하는데 그 선구적 역할을 대한민국이 해야 한다. 일찍이 오스왈드 스펜글러(Oswald Spengler)가 서구의 몰락을 경고하였고 새로운 시대가 온다고 예언한 바 있듯이 영원한 로마도 영원한 미국도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억압받아 왔던 아시아가 일어나고 있다. 일본, 한국의 발전에 이어 중국, 인도, 싱가포르가 일어나고 아시아 각국이 일어날 것이다. 아시아에는 풍부한 인적, 물적 자원이 있으므로 희망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은 남의 나라를 침략한 바 없는 약소국가이지만 평화를 애호하는 민족으로서의 장점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한때는 열강의 침략 대상이었지만 지금은 신흥 대국으로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다. 반 만 년의 역사와 문화 민족, 경제 발전, 민주화의 성취, 근면한 국민성 등이 세계인을 깜짝 놀라게 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소통의 수단인 ‘한글’이 있었기에 모두 가능했던 일이다.

전 세계 6,000여 언어 중에 한국어는 사용 인구 측면에서 10위권의 대국 언어라는 발표도 한글 문화권 확대에 대한 꿈을 부풀게 하고 있다. 2007년도 유엔(UN)이 발표한 세계 주요 언어 분포와 응용력 조사 자료에서 한국어는 세계 9위에 속한 언어라는 보고도 있었고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국제특허협력조약(PCT)에서 한국어를 9번째 국제 공개어로 채택하기도 하였다.

한국에 대한 세계인의 이미지는 그 어느 시기보다도 좋은 때이다. 한국인의 정신 문화사적 가치와 한국인의 잠재적 능력을 좋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인은 평화를 사랑하고 문화 민족이므로 아시아 국가들과 협력과 연대가 가능하다고 믿고 있으며 민주화를 최단 시간에 이루었기에 대단히 우호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한국 바로 알기와 한국어 학습 열풍도 우리에게 더없이 좋은 기회이다. 한글 문화권 확대에 대한 꿈은 우리가 노력만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5. 맺음말

지금까지 세종 대왕의 문자 정책과 21세기의 한글 진흥 정책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여러 가지 내용을 한꺼번에 다루다 보니 약간 산만한 점도 있으나 세종 대왕의 정신과 그 업적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오늘에 이어받아 올바른 21세기의 한글 진흥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세종 대왕은 강한 민족 자주 정신을 가지신 분이였다. 모화사대사상에 젖어 있는 많은 관료들에게 중국에 대한 ‘나’를 분명히 밝히려 하였다. 중국의 강한 압력 속에서도 우리 겨레의 독자성을 지키려고 무한히 노력하였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한자와 전혀 판판인 과학적이고 편리한 훈민정음을 만들지 못했을 것이다.

세종 대왕은 백성 위주의 정치를 펼쳐 민본과 인도주의 사상을 가지신 분이였다. 한문만으로 문자 생활을 누리려는 특권층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리석은 백성을 위해서 훈민정음을 만든 것이다. 또한, 세종 대왕은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성격을 가지신 분이였다. 훈민정음을 만든 것만으로도 위대한 창조였지만 이 글자를 돈에 새기고 관리 등용의 시험 과목으로 채택하고 ‘월인천강지곡’과 같은 문학 작품을 쓴 일 등은 그런 정신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1세기 한글 진흥 정책에서는 국어 정서법, 한글의 글자꼴, 컴퓨터의 한글 코드, 한글 문화권의 꿈과 관련하여 개선해야 할 점들을 살펴보았다. 특히, 한글 맞춤법과 관련하여 띄어쓰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람직한 규정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고 고유 명사 표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문자의 모양과 관련해서도 한글 글자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표준어의 개념도 바뀌어야 한다고 하였고 외래어 표기와 로마자 표기도 현실에 맞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하였다.

한글의 글자꼴과 관련하여 자모 순서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컴퓨터상의 한글 코드와 관련하여 완성형과 조합형 모두 문제점이 있으므로 컴퓨터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실용성과 효율성을 감안하여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소중한 것은 세종 대왕의 정신을 이어받아 그것을 지금에 살리는 길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첫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민족 자주 정신을 살려 나가는 일이다. 이 정신은 오늘날에 이어가는 길은 우리말과 글을 곱고 바르게 쉽게 다듬는 일일 것이다. 민족의 주체성을 살리는 길은 곱고 바르고 쉬운 우리말을 창조적으로 부려 쓰는 데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둘째, 세종 대왕의 민본과 인도주의 정신을 이어가야 할 것이다. 이 땅에 민주주의를 뿌리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모든 글들이 한글만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일부 지식인들이 어려운 한자를 써서 자신의 지식 정도를 과시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셋째, 세종 대왕이 분석한 국어의 근본 원리를 오늘날의 국어학자들이 이어받아 한글 맞춤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도 한글 맞춤법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문 규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한글 맞춤법에 관한 한 국민의 입장에서 과감하게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정부의 기구 가운데는 한글을 비롯하여 문자 정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진흥하는 전문 연구 기관이 없다. 따라서 문자 정책에 대한 대처 방안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다. 국립국어원이 있지만 사실상 문자 정책에 대해서는 그 미치는 힘이 너무도 미약하다. 그래서 국립

국어원을 확대 발전시키거나 별도의 전문 기관 설치(가칭, 한글진흥원)가 필요하다.

다섯째, 문자 정책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식견이나 지식을 가진 학자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국가적인 문제에 그 분야의 전문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며 국가가 정상적으로 문자 정책을 펼치지 않는다면 개선을 요구할 필요도 있다.

◇ 참고 문헌 ◇

- 강창석(1996). 「한글의 제자 원리와 글자꼴」. 『21세기의 한글』. 문화체육부
- 김미경(2006).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한글』. 자유출판사
- 김민수(1973). 『국어정책론』. 탑출판사
- 김정수(1990). 『한글의 역사와 미래』. 열화당
- 남광우(1973). 『개정 현대 국어국자의 제문제』. 일조각
- 안병희(1983). 『한국어문의 제문제』. 일지사
- (2000). 「한글의 창제와 보급」. 『겨레의 글, 한글』 (특별전 도록). 국립중앙박물관
- 이기문(1996). 「현대적 관점에서 본 한글」. 『21세기의 한글』. 문화체육부
- 임용기(2000). 「문자 정책 분야」. 『21세기의 국어 정책』. 국립국어연구원
- 정인상(1996). 「국어학에서 본 컴퓨터와 한글」. 『21세기의 한글』. 문화체육부
- 최용기(2003). 『남북한 국어 정책 변천사 연구』. 도서출판박이정
- (2006). 「세종의 언어 정책과 21세기 한글」. 국립국어원 학술 발표 자료집
- 최현배(1947). 『글자의 혁명』. 군정청 문교부
- (1961). 『고친 한글갈』. 정음사
- 한재준(2007). 『곰고 바른 한글 활자꼴 개발의 필요성 연구』. 국립국어원
- 허웅(1997). 「세종조의 언어 정책과 그 정신을 이어받는 길」. 세종대왕 탄신 600돌 기념 학술대회 자료집.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560돌 한글날 기념주화 / 세계주화책임자회의에서 세계 최고 주화로 선정)



별 문자 각인



□ 토 론 □

“세종의 문자 정책과 한글 진흥 정책의 미래”에 대한 토론문

허 원 욱 (건국대학교)

이 논문은 ‘한글 진흥 정책’의 일환으로, 현행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의 문제점을 살피고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한 글이다. 발표자가 제시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 토론자의 의견을 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항목	문제점	개선 방안
띄어쓰기	띄어쓰기가 어려워서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음.	의미 단위로 붙여 쓰기. 의존 명사나 단위 명사 등의 붙여 쓰기. 북한의 띄어쓰기 규정 참고.
고유명사의 표시	고유 명사 표시는 거의 포기.	고유 명사와 보통 명사를 식별하는 방법 필요.
표준어 정의	‘교양 있는 사람’의 기준과 ‘서울말’의 경계, 그리고 ‘현대’의 개념 등이 모호.	명확한 개념 설정 필요
표준어 사정 방법	발음 변화와 어휘 선택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음. 제시된 표준어가 약 700여 개에 지나지 않음.	말뭉치(코퍼스) 자료를 이용하여 사용 빈도를 조사.
외래어 표기	원음주의와 관용을 존중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음.	개선 필요
로마자 표기	표음주의 방식을 반영한 전사법을 사용하고 있어 발음과 표기가 다름.	
자모 순서	한글은 과학적인 이론에 근거해 만들어진 문자로 글자꼴 하나하나에 이론적인 정보가 담겨져 있는데 현재의 자모 순서는 그것을 무시하고 있다.	
글자꼴 개선	활자가 작아짐에 따라 구별 어려움. ‘홍/홍/홍’, ‘학장/화장’	탈네모꼴의 한글꼴. 실용과 아름다움을 함께 아우르는 창의적 연구 필요.
컴퓨터 한글 코드 개선	완성형, 조합형 모두 문제.	현행 한글 맞춤법의 한계를 벗어나 컴퓨터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실용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개선된 한글 문자 코드를 서둘러 개발.

▶ 토론자 의견

<띄어쓰기> 통일 대비, 북한의 띄어쓰기와 합리적 절충 필요.

<표준어 정의> 표준어 구역 재정비 필요.

<표준어 사정 방법> 제시 표준어 확대. 사용 빈도 조사

<자모 순서>

아설순치후, 진청,차청,불청불탁 순(반설,반치 포함)

: ㄱ, ㅋ, ㅇ / ㄷ, ㅌ, ㄴ, ㄹ / ㅂ, ㅃ, ㅍ, ㅍ / ㅈ, ㅉ, ㅅ, ㅆ / ㅎ, ㅎ, ㅇ

아설순치후, 제자순

: ㄱ, ㅋ, (ㅇ) / ㄴ, ㄷ, ㅌ, (ㄹ) / ㅍ, ㅂ, ㅃ, ㅍ, ㅈ, ㅉ, (ㅅ, ㅆ) / ㅇ, ㅎ, ㅎ ※ (); 無加劃之義

소멸 문자 제외(발표자 제안?)

: ㄱ, ㅋ / ㄴ, ㄷ, ㅌ, ㄹ / ㅍ, ㅂ, ㅃ, ㅍ, ㅈ, ㅉ / ㅇ, ㅎ

거센소리 뒤로

: ㄱ, ㄴ, ㄷ, ㄹ, ㅍ, ㅂ, ㅃ, ㅍ, ㅈ, ㅉ, ㅇ, / ㅋ, ㅌ, ㅍ, ㅉ, ㅎ

터짐마찰(과찰) 뒤로

: ㄱ, ㄴ, ㄷ, ㄹ, ㅍ, ㅂ, ㅃ, ㅍ, ㅈ, ㅉ / ㅋ, ㅌ, ㅍ, ㅉ, ㅎ

/ㅈ/을 /ㅉ/ 뒤로(현행 자모 순)

: ㄱ, ㄴ, ㄷ, ㄹ, ㅍ, ㅂ, ㅃ, ㅍ, ㅈ, ㅉ, ㅈ, ㅉ, ㅈ, ㅉ, ㅎ

▶ 질문 사항

1. 발표자가 제안하는 자모 순서는 무엇입니까?

현행 자모순도 많은 이유와 고민 끝에 탄생한 것일 터이고, 자모순을 바꾸는 데에는 상당한 혼란이 뒤따를 터인데, 그러한 혼란을 감수할 만한 장점은 무엇입니까?

2. 발표자가 제안하시는 개선 글자꼴은 어떠한 것입니까?

지금까지 가로쓰기를 위한 흘림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제안되었으나 모두 실패하였습니다. 한글이 모아쓰기를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발표자께서도 이야기하신 바 있는데, 그렇다면 발표자께서 제안하시는 ‘탈네모꼴’은 어떠한 꼴인지 알고 싶습니다. 활자가 작아짐에 따라 혼란을 야기하는 몇몇 글자들(흥, 흥, 흥)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경비가 허비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2부】

제28회 한말연구학회 전국학술대회
때 : 2008년 7월 12일 (토)
곳 : 공주대학교 산학연구원

국어 상담 실태 및 국어 상담 정책의 미래

전 영 옥 (상명대학교)

□ 차 례 □

1. 머리말
2. 국어기본법 제정과 국어상담소
3. 국어상담소와 국어 상담의 현황
4. 국어문화원과 국어 상담의 미래
5. 맺음말

1. 머리말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국어기본법이 2005년 1월 28일 공포, 2005년 7월 28일 '시행령'과 함께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국민의 국어 사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상생활에서 부딪치는 언어 문제를 전문적으로 상담해 주는 기관(권재일 2006:31)인 국어상담소가 전국 14곳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국어상담소 설치에 관한 법 규정의 미비점과 이에 따른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국어상담소의 역할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곧 국어상담소의 주된 업무를 상담으로 한정시켜 활동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하였고, 국민의 국어 사용 향상을 위한 여러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활동에 제한을 받기도 하였다.

최근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되었다. 2008년 3월 28일 국어기본법을 개정하면서, 국민의 국어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운영되는 국어상담소가 소극적으로 국어 관련 전화 상담만을 하는 시설로 인식되는 오해를 피할 수 있도록 명칭을 국어문화원으로 변경한 것이다.

따라서 국어문화원의 역할 규명이 새로이 요구되어 국어 상담을 비롯한 여러 사업 수행의 방향과 과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국어기본법에서의 국어상담소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 국어 상담과 관련한 국어상담소의 현황과 국어문화원으로서의 미래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2. 국어기본법 제정과 국어상담소

국어기본법에 따라 국어상담소가 설치된 지 만 3년이 되어 간다. 올해는 국어기본법이 개정되면서 국어상담소가 국어문화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역할도 달라지게 되었다. 국어기본법에서 국어상담소와 관련한 제정안과 개정안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국어기본법의 제정과 개정안 비교>

구분	국어기본법 제정	국어기본법 개정
일자	2005년 1월 27일(법률 제 7368호)	2008년 3월 28일(법률 제 9003호)
내용	<p>국어기본법 제24조(국어상담소의 지정 등)</p> <p>①문화관광부장관은 국민들의 국어 능력을 높이고 국어와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국어 관련 전문기관·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부설기관 등을 <u>국어상담소</u>로 지정할 수 있다.</p> <p>②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u>국어상담소</u>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p> <p>③문화관광부장관은 지정된 <u>국어상담소</u>가 전문인력과 시설을 유지하지 못하여 국어상담소로서의 기능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p> <p>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u>국어상담소</u>의 지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시행령> 제19조(국어상담소의 지정 등)</p> <p>①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어상담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p> <p>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상담전문인력을 갖추는 것 가. 국어국문학·국어교육학 또는 언어학 등의 분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거나 박사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대학의 국어 관련 학과와 그 부설 연구소·상담소, 국어 관련 단체나 학회에서 8년 이상 강의·연구·상담 또는 연구 경력이 있는 상근 책임자 1인 나. 국어국문학·국어교육학 또는 언어학 등의 분야에서 석사 학위를 소지하거나, 대학의 국어 관련 학과와 그 부설 연구소·상담소, 국어 관련 단체나 학회에서 6년 이상 강의·연구·상담 또는 근무 경력이 있는 상근 상담원 2인 이상</p> <p>2. 상담실 및 행정실과 통신 장비를 이용하여 상담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것</p>	<p>제24조(국어문화원의 지정 등)</p> <p>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들의 국어 능력을 높이고 국어와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국어 관련 전문기관·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부설기관 등을 <u>국어문화원</u>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08.3.28></p> <p>② 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u>국어문화원</u>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08.3.28></p> <p>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된 <u>국어문화원</u>이 전문인력과 시설을 유지하지 못하여 <u>국어문화원</u>으로서의 기능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08.3.28></p> <p>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u>국어문화원</u>의 지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3.28></p>
의의	<p>1. 국민들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국어 상담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p> <p>2. 국어기본법의 취지를 가장 잘 살릴 수 있고, 국민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사업으로 국어상담소개설을 법령화하였다.</p> <p>3. 각 지역에 개설된 국어상담소를 통해 지역민의 국</p>	<p>1. 국민의 국어 능력을 높이기 위해 운영되는 국어상담소가 소극적으로 국어 관련 전화상담만을 하는 시설로 인식되는 오해를 피할 수 있다.</p> <p>2. 국어 상담을 주된 사업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여겼던 국어상담소의 역할 수정의 계기를</p>

	어 생활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마련하였다.
한계	<p>1. 24조 ③항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는 국가의 재정적 지원의 한계를 드러낸다.</p> <p>2. 시행령 제19조에서 국어상담소는 상담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규정에 의하면 국어상담소로 지정받으려면, 이미 상근 상담원을 고용할 예산과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운영에 대해 국가에서 지원할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은 각 국어상담소의 재정적 자립이 어려운 상황에서 실효성이 없는 것이며, 국어상담소의 활동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사유가 된다.</p>	<p>1. 국어기본법의 한계인 1과 2를 그대로 가지고 있음. 다만 21조의 조항에서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민간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주체가 '국가'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역시 '지원할 수 있다'의 문구로 권고사항이다.</p> <p>2. 24조 ①항의 국어상담소의 역할에 대한 수정 없이 '국어문화원'으로의 명칭 변경만 되어 있다. 명칭은 '국어문화원'이고, 주된 일은 역시 국어상담소일 때와 마찬가지로 '국어 상담'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p>

3. 국어상담소와 국어 상담의 현황

3.1. 국어상담소(국어문화원)의 사업 현황

국어기본법에 의거하여 현재 전국 14곳에 국어상담소가 개설되어 있다. 2005년 9월 16일에 11곳을 지정하였고, 2006년 12월 29일에 3곳을 추가 지정하였다. 현재 국어문화원 14곳을 지역에 따라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국어문화원

서울:	국어단체연합 국어문화원(소장: 남영신) 이화여자대학교 국어문화원(소장: 박창원) KBS 한국어상담소(소장: 박영주)
강원도:	강원대학교 국어문화원(소장: 최홍열)
충청북도:	충북대학교 국어생활연구소(소장: 조항범) 청주대학교 국어문화원(소장: 김희숙)
충청남도:	상명대학교 국어문화원(소장: 구현정)
전라북도:	전주대학교 한국어문화원(소장: 소강춘)
광주·전라남도:	전남대학교 국어문화원(소장: 서상준)
대구·경상북도:	경북대학교 한국어문화원(소장: 백두현) 영남대학교 국어문화원(소장: 최동주)
부산·경상남도:	동아대학교 국어문화원(소장: 최낙복) 경상대학교 국어문화원(소장: 김용석)
제주도: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소장: 강영봉)

지역을 안배하여 전국에 국어문화원이 소재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민의 국어 생활 향상을 위한 중심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그동안 국어상담소(국어문화원)가 해 온 일들을 보면, 국어 상담을 비롯하여 교육, 연구, 국어 사용 실태 조사, 각종 국어대회 개최 등의 활동을 해 왔다.

2005년에 지정된 11곳의 국어상담소는 국어 상담과 국어상담소 홍보 활동을 시작으로, 국어 상담 및 교육 활동을 수행하였다. 2006년도 사업 역시 국어 상담 활동을 비롯하여 각종 국어 교육, 연구 활동, 국어 사용 실태 조사, 각종 국어 대회를 개최하여 국민들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다. 2007년도 역시 활발한 활동을 펼쳤는데, 국어상담소 홍보전단지에 나타난 활동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2007년도 전국 국어상담소 활동>

사업 분류		사업 수행 기관
국어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정 관련 문의 상담 - 문법, 화법 문의 상담 - 문장 교정, 교열 상담 - 기타 국어 관련 궁금증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 누리집(인터넷)을 이용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국어와 관련한 상담: 모든 상담소(무료) - 논문, 기고문, 발표문 또는 출판을 위한 원고 등의 교정, 교열: 모든 상담소(유료)
(한)국어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 능력 향상 교육 - 글쓰기 지도 교육 -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사 양성 교육 - 국어 자원 봉사자 국어 교육 - 소외 계층 자녀 국어 지도 - 여성 결혼 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지도 - 여성 결혼 이민자 자녀 한국어 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전주대, 영남대, 이화여대(이주민 대상) - 한국어 능력 검정 시험 대비반: 전주대 ○ 성인 대상 국어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인을 위한 국어문화 학교: 충북대, 제주대 - 우리말 시민 강좌: 제주대 - 문장사 양성 동영상 강좌: 국어단체연합 - 한글학교: 동아대 -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전체 상담소 ○ 초중고 학생 대상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고 학생 국어 교실: 강원대, 전주대 ○ 취업 준비생 대상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 능력 인증 시험 특강: 청주대 - 국어 능력 향상 프로그램: 이화여대 - 방송작가 양성 과정: 전주대 - 학예사 준비 과정: 전주대 ○ 외국인 대상 한국어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실: 강원대, 국어단체연합, 동아대, 상명대, 영남대, 전주대, 청주대, 충북대 - 여성결혼이민자 자녀를 위한 한국어 배움터: 국어단체연합, 전주대 -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방문 학습지 운영: 상명대 -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능력시험 대비반: 전주대 - 다문화 가족 캠프: 상명대, 전주대
국어 관련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사투리 대회 - 말하기 대회 - 황금사전 선발 대회(중학생 대상) - 토론왕 선발 대회(대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황금사전 선발 대회: 전체 상담소 - 전국 토론왕 선발 대회: 전체 상담소 - 아름다운 우리말 가게 이름 공모전: 경북대, 경상대 - 외국인 한국어 대회: 강원대, 충북대, 제주대, 상명대 - 우리말 실력 겨루기: 국어단체연합(초등), 경북대(재학생), 경

	대상)	상대(재학생), 동아대(재학생), 상명대(대학생, 이주민), 영남대(대학생), 충북대(중고생, 대학생, 일반인) - 고등학생 논술 대회: 제주대 - 제주어 말하기 대회: 제주대 -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백일장: 청주대
언어 환경 개선 사업	- 길거리 언어 경관 개선 - 외래어, 외국어 남용 개선 - 외래어, 로마자 표기 개선 - 정부, 언론 등 공공기관의 언어 활동 감시 - 국민의 언어 의식 개선 홍보	- 로마자 표기 실태 조사: 전체 상담소 - 외래어 인지도 이해도 사용의식 조사: 전체 상담소 - 국어 정보지 <월요 메일> 발송: 경북대 - 우리말글 바로 알기 홍보 자료 게시: 상명대
지역어 사업	- 지역어 조사 - 지역어 관련 학술대회 개최 - 지역어로 하는 수업 자료 발간	- 제주어 보전을 위한 여러 학술 대회 개최(제주대)

2007년도 국어상담소 활동을 보면, 전체 국어상담소가 국어 상담 활동뿐만 아니라 각종 국어 교육 활동, 국어 관련 행사, 언어 환경 개선 사업 등을 수행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동안의 국어상담소 활동을 보면, 전국 국어상담소가 공통으로 수행한 사업과 지역 특성을 살려 개별적으로 수행한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06년도의 언어 경관 실태 조사 사업, 2007년도의 로마자 표기 실태 조사와 외래어 인지도 이해도 사용의식 조사 사업 등은 전국적으로 추진한 공통 사업이었다. 전국적인 국어 사용 실태 조사 사업은 각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국어상담소를 거점으로 활용하면 효율적인 실태 조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전국적으로 수행한 각종 국어대회는 올바른 국어 사용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국어상담소의 활동 가운데 최근에 부각된 것이 이주민을 위한 한국어 교육이다. 특히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이 지역 사회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면서, 2007년도에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이 여러 상담소에서 이루어졌고, 2008년도에는 법무부 사회통합이수제를 대비한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국어·문화 이해 교육 사업’을 각 국어문화원에서 수행하고 있다. ‘한국어·문화 이해 교육 사업’은 이주민이 한국어 및 문화적 배경 지식을 체계적으로 갖추어 지역 사회에 적응하고 사회통합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범 운영하는 사업이다. 사업 유형이 4가지로 나누어져 있고, 한국문화 교육과 참여 프로그램은 전국의 지방문화원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진행할 수 있다. 사업 유형은 <표 3>, 사업 수행 기관은 <표 4>와 같다.

<표 3: 한국어·문화 이해 교육 사업 유형>

구분 유형	유형 내용
A형	▪ 한국어교육+한국문화교육+참여프로그램
B형	▪ 한국어교육+문화교육(또는 참여프로그램)
C형	▪ 참여프로그램 운영
D형	▪ 강사양성 프로그램 운영

<표 4: 한국어·문화 이해 교육 사업 수행 기관(국어문화원)>

소속(국어문화원)	유형	권소시업 단체
동아대	A,D	부산금정
이화여대	A,D	동두천
충북대	A	조치원
상명대	A,D	아우내
경상대	A	남해
전주대	A,D	완주
영남대	A	경주
경북대	B,D	대구팔공
전남대	B	
제주대	B	
KBS	B	
청주대	A	
강원대	A	화천

위와 같은 국어문화원의 활동을 보면 단순히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국어 상담 활동만 해 온 것이 아니라 다방면에서 국민(지역민)의 국어 사용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이주민의 한국어 교육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면서, 국어 능력 향상을 피해야 하는 대상을 내국인에서 외국인으로까지 확대하고 있다.

3.2. 국어 상담과 국어문화원

국어상담소(국어문화원) 지정 이전에 국어 상담은 국립국어원(www.korean.go.kr), 한글학회(www.hanguel.co.kr), 국어문화운동본부(www.barunmal.com), 서울대학교 교수학습 개발센터 글쓰기 교실(writing.snu.ac.kr), 숙명여자대학교 의사소통능력개발센터(sookmyung.ac.kr/~codecenter) 등에서 이루어졌다(박동근 2006).

현재 국어 상담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국립국어원이고, 한글학회는 2006년부터 상담 활동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각 지역에 소재한 국어문화원에서도 상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립국어원에 비해서는 그 활동이 미약하다.

본 논의에서는 국립국어원, 각 국어문화원의 홈페이지에 나타난 상담 건수, 유형, 사례를 중심으로 국어 상담의 실태를 밝혀 보겠다. 상담 건수는 2006년부터 2008년 6월까지의 홈페이지 상담 건수를 조사하였으며, 상담 유형은 2007년도 상담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1) 상담 건수

(1) 국립국어원 온라인 가나다 상담 건수

2006년도에는 8,044개의 상담이, 2007년에는 6,848개의 상담이 이루어졌다. 박동근 (2006: 89)에서 조사한 2000년부터 2005년까지의 통계 자료에 연결시켜 보면 다음과 같다.

<표 5: 국립국어원 온라인 가나다 상담 건수>

연도	2000 (8/2-)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6/30)
게시판 번호	1-658	659- 3153	3154- 7742	7743- 13274	13275- 21275	21276- 34043	34044- 50132	1-6848	6849- 10622
질문/대답	658	2493	4588	5531	8000	12767	16088	13694	7548
질문	329	1247	2294	2766	4000	6384	8044	6848	3774
1년 환산	658	1247	2294	2766	4000	6384	8044	6848	3774
1일 평균	1.8	3.4	6.3	7.5	10.6	17.5	22	18.8	20.7
증가율		82.0%	84.0%	17.1%	30.9%	33.7%	24%	-15%	10%

* 게시판 번호는 2005년까지는 질문과 대답에 각각 번호가 따로 매겨졌지만, 2007년부터는 질문과 대답의 쌍에 번호가 매겨져 있다.

국립국어원의 온라인 가나다는 담당자 2명이 질문에 답변을 올리고 있다. 상담 전문 요원이 있고, 지속적인 상담이 이루어고 있어 상담 건수는 하루에 20여 건에 이르고, 한 해에 6,000건이 넘는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2) 전국 국어문화원의 홈페이지 상담 건수¹⁾

연도	상담건수
2006	880
2007	600
2008. 6.	298
합 계	1,778

전국 국어문화원의 홈페이지 상담 건수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는 각 국어문화원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가 높지 않고, 국립국어원과 같이 전문 상담원을 두고 관리하기에는 지원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국어문화원의 상담원(연구원) 활동에서 국어 상담 활동은 1차적인 업무가 아닌 보조적인 업무로만 수행되고 있다.

2) 상담 유형

1) 전국 국어문화원 홈페이지 가운데 현재 열리지 않는 3곳의 상담 건수는 포함되지 않았다.

국립국어원 온라인 가나다 상담 가운데 2007년 1월부터 6월까지 이루어진 상담과 전국 국어문화원 2007년 홈페이지 상담 사례를 분석해 보았다.

(1) 국립국어원 온라인 가나다 상담 유형

유형		건수		순위	
어문규정	한글맞춤법	1663(53%)	713	1	1
	표준어		451		2
	표준발음		237		3
	외래어표기법		218		4
	로마자표기법		44		5
문법		425(14%)		2	
의미		410(13%)		3	
어원		70(2%)		7	
화법		105(3%)		6	
문장 교정		238(8%)		4	
글쓰기 지도		25(1%)		9	
국어 순화		67(2%)		8	
기타		131(4%)		5	
합 계		3134(100%)			

어문규정에 관한 상담이 전체의 약 50%를 차지하고, 그 외에는 문법 > 의미 > 문장 교정 > 화법 > 어원 등의 순으로 상담이 이루어졌다. 어문규정 가운데는 한글 맞춤법, 표준어, 표준발음에 관한 상담이 많이 이루어졌다.

(2) 전국 국어문화원 2007년도 홈페이지 상담 유형

유형		건수		순위	
어문규정	한글맞춤법	161(49%)	51	1	1
	표준어		63		2
	표준발음		29		3
	외래어표기법		14		4
	로마자표기법		4		5
문법		31(9%)		3	
의미		45(14%)		2	
어원		17(5%)		7	
화법		20(6%)		5	
문장 교정		25(8%)		4	
글쓰기 지도		3(1%)		9	
국어 순화		12(4%)		8	
기타		17(5%)		6	
합 계		331(100%)			

전국 국어문화원의 홈페이지 상담 유형과 국립국어원의 상담 유형에서 큰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표준어, 한글맞춤법, 표준발음과 관련한 어문규정에 관한 상담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의미 > 문법 > 문장 교정 > 화법 등의 순으로 상담이 많이 나타났다.

국어문화원의 국어 상담 활동은 국립국어원과 비교하여 볼 때, 활동이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국립국어원에 비해 국어문화원이 일반 국민에게 널리 홍보되지 않았다는 점, 상담원에 대한 인건비 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이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홈페이지 상담 건수의 적음이 국어문화원의 상담 활동을 평가하는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국어문화원의 상담은 대면상담 등의 다른 통로를 이용하여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글쓰기 지도와 같은 상담은 따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국어 사용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어문화원의 상담은 어문규정이나 문법에 근거한 상담만이 아니라 국어 사용의 전반에 걸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국립국어원 온라인 가나다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상담도 이루어지고 있다.

(2) 상담 사례

<질문>

1. 글을 읽을 때 자꾸 오독합니다.

평소에는 국어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사람들 앞에서 글을 읽을 일이 늘면서 오독이 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군사시설을 "해제"한다 - 에서 단어를 '해체'라고 읽습니다.

'총성이 들렸다'를 '총성을 들었다'이런식이 되거나

말이 되는 것같으면서도, 우후죽순으로 틀립니다.

학창시절에는 공부하느라 책을 많이 읽지는 못했지만, 어릴 때 책을 꽤나 읽었습니다. 하지만 책을 약간 늦게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능 때 언어영역이 다른 영역 점수보다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이런 것과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 발표능력 (프레젠테이션)이 부족합니다.

대학 때 발표를 망쳐서 학점이 안 좋았던 적이 많았습니다. 취업하는데 프레젠테이션이 점점 중요해 지는데, 앞에 나가면 머리가 하얘집니다.

성격은 외향적인 편이고, 어디 데려다 놔도 적응 잘하고 친구사귀곤 합니다.

하지만 앞에 나가면 무슨 말을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 언어장애란 언어를 담당하는 뇌신경이 손상되거나, 실제적인 발화를 담당하는 조음기관의 신경이나 근육이 잘못 되었을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질문자가 겪고 있는 현상은 평소의 연습 부족으로 인한 심리적인 부담에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평소 이에 관한 교정에 관심을 가지고 연습하시면 훌륭하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1. 글을 읽을 때 자꾸 오독합니다.

답>> 사람들 앞에서 글을 읽는다 생각하고, 혼자서 글을 소리 내어 읽는 연습을 하십시오. 한 번만 연습하지 말고, 발음이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 몇 번씩 연습하십시오. 그 후에 사람들 앞에서 읽는 상황을 맞이하십시오. 이러한 경험이 축적되면, 나중에는 미리 연습하지 않아도 사람들 앞에서 잘못 읽는 버릇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2. 발표능력 (프레젠테이션)이 부족합니다.

답>> 발표 능력과 외향적인 성격 혹은 다변성 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은 주어진 주제에 관해 논리적으로 보고하거나 설득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잘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논리적인 과정을 충분히 엮어 보아야 합니다. 준비 없이 프레젠테이션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잘 하는 사람은 내용의 준비를 완성한 후, 사전에 원고 읽듯이 하기 위해 몇 번이고 연습을 합니다.

논리적인 사고와 준비 그리고 연습만이 오독을 줄이고, 발표 능력을 키우게 할 것입니다.

4. 국어문화원과 국어 상담의 미래

국어상담소의 명칭을 국어문화원으로 변경한 국어기본법 개정은 국어문화원의 정체성과 역할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다.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지정된 국어상담소의 역할 수정이 불가피해지면서 국어문화원이 어떻게 자리매김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이다.

앞에서 국어문화원이 해온 국어 상담, 국어 교육, 언어 환경 개선 사업, 각종 국어 대회 개최 등의 활동을 보면, 국어문화원은 지역민의 국어 생활 능력 향상을 위한 기관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이미 국어문화원의 역할과 정체성을 명시하고 있는 국어문화원 누리집 (<http://www.korean.go.kr/kadvice/>, 국립국어원 운영)에 잘 나타나 있다. 국어문화원 누리집에서는 국어문화원을 ‘지역민의 언어 생활향상을 돕는 곳’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국어문화원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3) 국어문화원 누리집에서의 ‘국어문화원’의 역할

- 상담 기관: 국민이 국어생활을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언어에 관한 제반 문제에 대한 상담을 하여 언어능력 향상을 꾀하려고 한다.
- 지역의 문화교양센터: 지방화 시대에 국어문화원이 지역의 문화교양센터로 자리매김하고 문인, 학자 등 지식인들이 지역민들의 문화 수준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게 하고 국어문화원이 사회인 대상 평생교육의 사례로서 좋은 본보기가 되게 한다.
- 문화정책 수립의 기초 작업 기관: 국민의 국어생활에 대한 불편, 요구를 분석하여 언어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삼고 국어문화원 운영을 통해 문화정책의 한쪽 날개 역할을 담당하게 한다.

결국 국어문화원은 지역민의 국어 생활 향상을 위한 각종 상담, 교육을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국어 사용 실태 조사 등을 통해 국어 정책 수립의 기초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곳으로 보고 있다.

국어문화원이 지역 사회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중심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국어문화원 내부에서의 노력과 정책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민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어야 하는 일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올바른 국어 사용의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

국립국어원의 국어 상담 실적과 전국 국어문화원의 국어 상담 실적을 비교해 보면, 국민에게 올바른 국어 사용에 대한 필요성과 국어문화원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국민은 국어 상담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였고, 심지어 제대로 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면서도 자신의 국어 사용 능력을 의심하지 않으며, 국어를 사용하는 데 있

어서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국어문화원이 이러한 국민의 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역할까지 담당하기에는 규모, 인력, 재정 면에서 역부족이다. 국민들에게 올바른 국어 사용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려면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과 같은 국가기관이 나서서 언론 매체를 통한 대국민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국어문화원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국어문화원의 국어 상담 실적이 저조한 이유 가운데는 상담원 인건비가 확보되지 않은 것도 있다. 각 국어문화원이 지역민을 위한 국어 상담과 교육 활동,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본 운영비를 지원해 주어야 한다.

현재 상명대학교 국어문화원에서는 지역민을 위해 ‘소외계층 자녀 학습 도우미 사업’과 ‘우리말글 바로 알기 홍보 자료 게시 사업’을 하고 있다. 특히 ‘우리말글 바로 알기 홍보 자료 게시 사업’은 상명대학교 교내와 천안시 5개 초등학교에 매주 200장의 홍보 자료를 게시하고 있다. 한글 맞춤법, 표준어를 중심으로 틀리기 쉬운 말을 1주일에 하나씩 제시하여, 올바른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 실제 초등학교에서는 이 자료를 가지고 우리말글 바로 알기 수업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은 크지만, 홍보 자료 만드는 작업, 홍보물 전달 작업, 유인물비 등에 들어가는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 사업 추진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지역민을 위한 봉사 활동의 영역을 넓히고 싶어도 이에 따른 예산 지원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선뜻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민을 위한 국어 사용 능력 향상과 관련한 사업 추진을 위해 기본 사업비와 운영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어야 한다.

(3) 국어기본법 법령 강화

국민의 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국어기본법의 취지에 맞게 그 실효를 거두고 국어문화원을 운영하려면, 국어 사용에 대한 검증을 법제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법령도 권고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정하여 국어기본법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각종 문건을 작성해서 배포하거나 구두로 발표, 또는 방송으로 내보내려면 국어문화원을 거쳐서 검증을 받도록 하는 조항도 만들어야 한다.

(4) 국어책임관 제도의 활성화

국어기본법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국어책임관이 하는 일은 국민들이나 지역 주민들에게 알릴 정책을 정제된 국어 사용을 통해 간단 명료하게 알리고 공무원들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현재 국어책임관은 형식적인 자리이고, 취지에 맞게 역할을 하는 곳은 거의 없다. 국립국어원은 임의 조항으로 돼

있는 국어책임관 설치 규정을 의무조항으로 바꿔 국어 전공자를 두도록 하는 쪽으로 법률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하지만(경향신문, 2008. 2. 4.), 이번 개정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국어책임관 제도를 제대로 살려, 공공기관에서의 잘못된 국어 사용부터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의 중요 문서는 국어문화원에 의뢰하여 검증받는 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무조항이 되어야 하는 법규의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국어책임관과 국어문화원의 협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립국어원에서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거나, 각 지역에서 만날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어야 한다.

(5)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 발굴

국어문화원이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해야 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 과제를 공모하는 방법도 좋을 것이다.

(6) 다문화 사회를 준비하는 정책 수립 필요

현재 지역민의 국어 능력 향상에는 이주민의 한국어 능력 향상이라는 새로운 과제가 대두되었다. 여성결혼이민자들과 자녀들의 한국어 능력 향상 문제는 다문화 사회를 준비해야 하는 우리들이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다. 앞으로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에 대한 정책은 내국인과 이주민으로 구분하여 세워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이주민의 한국어 교육, 그 자녀들이 국어 능력 향상 정책, 그리고 지속적인 관리 등이 필요하다. 이주민의 한국어 상담 창구를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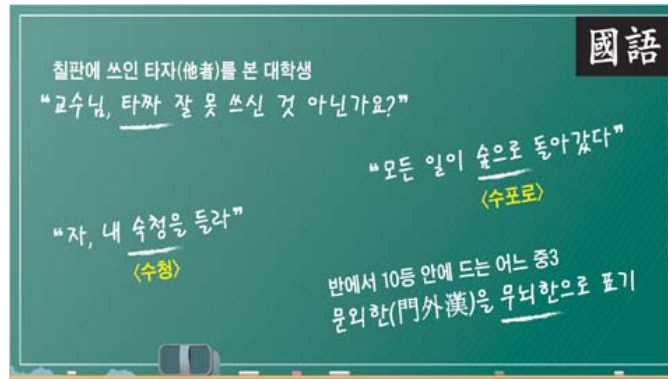
위에서 국어문화원이 지역민의 국어 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중심 기관으로 자리잡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하는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였다.

이와 함께 국어문화원이 지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 우선은 지역민의 국어 사용 능력 향상을 이끌어 지역 사회 발전을 도모한다는 자부심을 가져야 하고, 지역민에게 국어문화원을 홍보하여 지역민이 국어 상담, 국어 교육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지역에 맞는 사업을 개발하여 지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전국 규모의 사업 발굴은 국립국어원과 협의하고, 지역에 맞는 개별 사업 발굴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구체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수준 높은 국어 상담과 국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원 자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역 사회에 봉사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해야 할 것이다.

5. 맺음말

며칠 전 ‘말이 안 되는 국어 실력(조선일보, 2008. 7. 3.)’이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그림 12: 말이 안 되는 국어 실력(조선일보. 2008. 7. 3.)



이 기사에서는 중학교 ‘국어 우수 학생’ 비율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고, 성인들 독해 능력도 OECD 국가 중 바닥권이라고 하였다. 국어 실력이 낮아진 가장 큰 이유를 한자 교육의 소홀로 들었고, 독서량 부족도 그 원인으로 들었다. 그러나 국민의 국어 능력 저하의 근본 원인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사소통에 별 무리가 없으면 문제 없다.’ 생각하거나 ‘우리나라 말이니까 공부 안 해도 된다.’는 사고방식에 있다. 올바른 언어 사용에 대한 교육이나 상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올바른 우리말글 사용에 대한 홍보가 시급하며, 올바른 국어 사용에 대한 상담과 교육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가기관과 각 지역 국어문화원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 참고 문헌 ◇

구현정·전정미, 2007, “국어 연구와 국어 상담”, 한말연구 제20호, 한말연구학회, 27-51쪽.
 권재일, 2006, “국어 정책과 국어 상담”, 2006 국어상담, 전국 국어상담소 연합회, 13-35쪽.
 김형배, 2007, “현행 한국어 어문규정의 문제점-국어 상담 사례를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22집, 31-58쪽.
 박동근, 2006, “국어 상담의 현황과 실태”, 2006 국어상담, 전국 국어상담소 연합회, 69-97쪽.
 박석준, 2006, “국어 상담의 방향과 과제”, 2006 국어상담, 전국 국어상담소 연합회, 98-117쪽.
 ‘국어책임관제를 살리자’, 경향신문, 2008. 2. 3.
 ‘말이 안 되는 우리 국어 실력’, 조선일보, 2008. 7. 3.
 ‘국어 실력’, 매일일보, 2008. 7. 4.
 국립국어원 <http://www.korean.go.kr/>
 국어문화원 <http://www.korean.go.kr/kadvice/>
 강원대학교 국어문화원 <http://www.kwnu.net>
 경북대학교 한국어문화원 <http://knukorean.knu.ac.kr>
 경상대학교 국어문화원 <http://ckc.gsnu.ac.kr/>
 국어단체연합 국어문화원 <http://www.barunmal.org>
 동아대학교 국어문화원 <http://korean.donga.ac.kr>

상명대학교 국어문화원 <http://www.smkorean.net>
영남대학교 국어문화원 <http://ccrk.yu.ac.kr>
이화여자대학교 국어문화원 <http://munjang.net>
전남대학교 국어문화원 <http://kor.chonnam.ac.kr>
전주대학교 한국어문화원 <http://korean.jj.ac.kr>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http://malguel.cheju.ac.kr>
청주대학교 국어문화원 <http://koreanlab.or.kr>
충북대학교 국어생활연구소 <http://korean.chungbuk.ac.kr>
KBS 한국어상답소 <http://korean.kbs.co.kr/main.php/>

“국어 상담 실태 및 국어 상담 정책의 미래”에 대한 토론문

김 형 배 (국립국어원)

1. 2008년 3월 28일 국어기본법을 개정하여 ‘국어상담소’를 ‘국어문화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국어상담소’라는 명칭으로 인해 활동에 제약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국어문화원’으로 명칭을 바꿨다고 해서 그 역할이 달라지지 않는 것이다. (<표1: 국어기본법의 제정과 개정안 비교> 참조.) 국어문화원의 위상이나 역할은 국어문화원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국민에게 다가가느냐에 달렸다고 본다.
2. 국어문화원은 설립 취지에 맞게 ‘지역민의 국어 사용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최근 들어 국어문화원이 수행한 다문화 가정 등 소외 계층에 대한 맞춤형 (한)국어 교육, 전국적인 국어 사용 실태 조사 등은 그 좋은 예라 할 수 있겠다.
3. 국립국어원의 국어 상담 건수 통계에 착오가 있는 듯하여 통계 수치를 아래에 제시한다.

<국립국어원 국어 상담 건수>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6월까지)
온라인 게시판	1,866	2,620	3,577	4,859	4,982	6,047	7,463	6,957	3,772
가나다 전화	12,608	17,530	15,773	20,510	28,278	36,338	40,821	37,749	15,359
전자 우편						366	312	393	332

※ 상담 건수는 답변 건수 기준임.

※ 온라인 게시판은 현재 2명, 가나다 전화는 2회선에 3명의 상담원이 상담하고 있음.

4. 온라인 상담은 전국 어디에서나 이용할 수 있고 여러 상담 기관 사이에 상담 내용이 중복되므로, 국립국어원의 ‘온라인 가나다’로 단일화하는 것이 좋겠다. 다만, 국어문화원에서는 국립국어원에서 수행하지 않는 형태 즉, 대면 상담이나 찾아가는 국어 상담, 글쓰기 지도와 같은 상담을 주로 하면 될 것이다.
5. 각 국어문화원이 지역민을 위한 국어 상담과 교육 활동, 언어 환경 개선 활동 등을 성실히 수행한다는 전제에서 기본 운영비 지원은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6. 국어기본법의 내용을 의무사항으로 강제하는 것은 규제 완화라는 큰 흐름에 맞지 않는다. 국어기본법이 실효성을 거둘 방법을 여러 각도로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공공 기

관을 중심으로 언어 사용에 대하여 전문가의 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법제화 또는 제도화하는 일은 필요한 일이다.

7. 다문화 가정의 한국어 교육과 국어 능력 향상 정책, 그리고 지속적인 관리 등은 국가 및 관련 단체 등이 함께 준비해 나가야 할 과제이다. 또한, 이주민의 한국어 상담 창구를 마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데 동감한다.

8. 질의 사항

8-1. 일선에서 지역민의 국어 사용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국어 상담원’에게 자부심이나 보람을 느끼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가. (스스로 자부하며 지역 사회에 봉사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는 일.)

8-2. 상담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가.

8-3. 언론 매체 등을 통해 국민에게 올바른 국어 사용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는 등의 국가 차원의 홍보 이외에, 각 국어문화원이 지역민에게 국어문화원을 홍보하는 구체적인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가.

8-4.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 개발의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가.

8-5. 국어문화원의 자체 예산 확보 방안은 있는가. 각 국어문화원이 상담원의 인건비 마련 등을 위해 수익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8-6. 현재의 14개 국어문화원 이외에 여러 지역에서 개원을 희망하는 곳이 있는 줄 아는데, 국어문화원 증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전문 용어 표준화의 현황과 과제

김 한 샘 (국립국어원)

□ 차 례 □

1. 머리말
2. 전문 용어 표준화와 국어기본법
3. 전문 용어 표준화의 현황
 - 3.1. 전문 용어 표준화의 기존 성과
 - 3.2. 국립국어원의 전문 용어 관련 사업
4. 전문 용어 표준화의 과제
 - 4.1. 전문 용어 표준화에 대한 인식 제고
 - 4.2. 전문 용어 표준화 협력 체계 구축
 - 4.3. 전문 용어 표준화 성과물의 보급 확대

1. 머리말

국제 표준화 기구(ISO)는 전문 용어 작업을 위한 어휘집에서 ‘한 전문 분야에 속하는 일반 개념에 대한 언어 명칭’이라고 ‘용어’를 정의했다. 많은 자료에서 ‘용어’와 ‘전문 용어’를 구분 없이 섞어 쓰고 있는데 ‘용어’와 ‘전문 용어’는 어떻게 변별되는 ‘용어’인가? ‘용어’라는 말 자체가 단지 ‘쓰는 말’이 아니라 ‘전문 분야에서 쓰는 말’을 의미하므로 ‘용어’와 같은 의미로 쓰인 ‘전문 용어’의 ‘전문’은 잉여적이다. 한편 ‘일반 용어’와 대응되는 의미의 ‘전문 용어’는 전문 분야에서 쓰는 말 중에서도 전문가들이 주로 사용하는 말을 가리킨다. 이 글의 제목과 내용에 등장하는 ‘전문 용어’는 ‘용어’와 바꾸어 쓸 수 있는 넓은 의미의 표현이며 ‘전문 용어의 표준화’는 전문 분야의 용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통일함을 의미한다. 전문 용어는 언어 명칭이므로 표준화의 기준도 사회 언어학, 심리 언어학, 국어학 등 언어학적 관점에서 정립된다. 또한 일의성, 투명성, 일관성, 간결성 등 용어학적 기준에 적합한가도 검토의 대상이다.

전문 용어의 표준화는 한 개념을 나타내는 서로 다른 용어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하나의 개념을 위해 다양한 표현이 생성되는 주요 원인으로는 분야, 사용자, 언어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인접 분야에서 같은 개념에 대해 서로 다른 전문 용어를 쓸 수 있고, 같은 분야 안에서도 학자, 기술자, 일반 사용자에 따라 다양한 전문 용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국외에서 생성된 전문 용어가 국내에 유입되어 우리말로 정착될 때까지 음차어, 한자어, 순우리말 등의 다양한 형태가 공존하게 된다. 이렇게 여러 관점에서 다양하게 생성되고 사용되는 전문 용어를 표준

화하는 것은 소통성, 경제성,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전문 용어는 지식을 전달하고 교육하고 국제적으로 교류하는 매개체의 기능을 수행한다. 전문 용어를 표준화함으로써 획득하게 되는 산업 현장의 균일성, 호환성, 능률성은 경제적 이익으로 이어지며 사고나 오류를 방지하여 안전을 유지하게 된다.

이 글에서는 국어기본법에 명시됨으로써 중요성이 강조된 전문 용어 표준화가 지금까지 어떻게 이루어져 왔으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논의한다.

2. 전문 용어 표준화와 국어기본법

국어기본법은 국어 정책에 대해 규정한 최초의 법은 아니다. 기존의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진흥법도 국어 정책에 관한 조항을 담고 있다. 국어기본법의 의의는 기존 법의 선언적인 성격에서 한걸음 나아가 실질적인 의무 조항을 담고 있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전문 용어 표준화와 관련한 시행령 조항에서는 국가의 의무를 제도적인 관점에서 명시했다. 전문 용어 표준화에 대해 언급한 국어기본법과 국어기본법 시행령의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17조 (전문용어의 표준화 등) 국가는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국어기본법 조항>

제12조 (전문용어의 표준화 등)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를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에 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두며, 그 협의회는 해당 기관의 국어책임관·관계분야 전문가 및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전문용어를 표준화 및 체계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요청된 전문용어 표준안을 국어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후 이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회신하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정안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전문용어를 소관 법령의 제정·개정, 교과용 도서 제작, 공문서 작성 및 국가 주관의 시험 출제 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학술단체 및 사회단체 등 민간부문에서 심의 요청한 관련 분야의 전문용어 표준안에 대하여 국어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확정안을 고시할 수 있다.

<국어기본법 시행령 조항>

국어기본법의 제1조에서는 ‘이 법은 국어의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법의 목적을 밝혔다. 국어기본법의 각 조항

들을 살펴보면 제1조에서 밝힌 대로 국어의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하는 주체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국가, 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등이 국어기본법 각 조항의 내용을 실행할 주체로 지정되어 있다. 전문 용어의 표준화 관련 조항인 제17조에서는 이 중 가장 광범위한 주체인 ‘국가’를 선택했으며 이는 전문 용어 표준화가 특정 기관이나 기관장의 의지만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과업이 아님을 시사한다.

전문 용어와 표준화에 대한 인식은 기존의 법에서도 간접적으로 드러난다. 전문 용어 표준화의 기본적인 목적은 소통성과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이지만 전문 용어를 표준화하는 기준은 언어학적인 관점으로 수립될 수 있다. 전문 용어의 표준화는 언어 명칭의 통일로 완성되므로 국어기본법에 전문 용어 표준화에 대한 조항이 명시적으로 포함된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하겠다. 다음은 국가표준기본법, 과학기술기본법의 개요 및 전문 용어 표준화 관련 조항이다.

1. 국가표준기본법(1999. 2. 8, 법률 제5930호)

- 국가 표준 제도의 확립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 기술의 혁신과 산업 구조 고도화 및 정보화 사회의 촉진을 도모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국민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 제18조 (산업 표준의 제정 및 보급)
 - ① 정부는 광공업품의 품질 고도화 및 관련 서비스 향상, 생산 효율 및 생산 기술의 향상, 거래의 단순·공정화 및 소비의 합리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산업 표준을 제정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 ② 산업 표준의 제정 및 보급 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표준화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 ※ 산업 표준: 광공업품의 종류, 형상, 품질, 생산 방법, 광공업품에 관한 시험·검사 방법 및 제품·서비스의 기술에 관한 용어 등을 통일화하고, 단순화하기 위한 기준

2. 과학기술기본법(2001. 1. 16, 법률 제6353호)

- 과학 기술의 발전과 국가 경쟁력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 제26조(국가 과학 기술 지식·정보의 관리·유통)
 - ① 정부는 과학 기술 지식·정보의 생산·유통·관리 및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1. 과학 기술 지식·정보의 수집·분석·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 2. 과학 기술 지식·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 3. 과학 기술 지식·정보의 관리·유통 기관의 육성 등
 - ② 정부는 과학 기술에 대한 지식·정보가 원활하게 관리·유통될 수 있도록 지적 재산권 보호 제도 등 지식 가치를 평가하고 보호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제1항의 과학 기술 지식·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원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국어기본법에 조항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대응하는 시행령이 있는 것은 아니며 시행령을 동

반하는 조항은 대부분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문구를 포함한다. 전문 용어 표준화 관련 조항인 국어기본법 제17조에는 시행령 제정에 대해 따로 언급한 문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전문 용어 표준화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와 관련해 시행령을 따로 제정한 것은 국어기본법의 선언적인 조항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시행령에서 제시한 전문 용어 표준화의 제도적 절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3. ㄱ. 전문 용어 표준안 제안

: 정부(중앙행정기관)/ 민간(학술단체 및 사회단체)

ㄴ. 전문 용어 표준안의 심의 및 확정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국어심의회)

ㄷ. 표준 전문 용어 확정안의 고시

: 중앙행정기관장(정부부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민간부문)

ㄹ. 표준 전문 용어의 활용

: 중앙행정기관장

결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위 절차의 전 과정에 걸쳐 국립국어원이 수행해야 할 역할이 있다. 표준안 제안의 단계에서는 전문 용어 및 표준화 과정에 대한 연구 성과를 공유하여 표준안의 제안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정부 기관과 민간단체에서 표준안을 작성할 때 표준안을 도출하는 과정에 대한 자문과 표준안의 개별 항목을 확정하는 작업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된다. 국어심의회의 표준안 심의와 확정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의무로 되어 있는데 국어심의회의 운영을 국립국어원에서 맡고 있으므로 전문 용어 표준안의 심의, 확정을 위한 행정적 지원 및 심의 기준의 확립, 구체적인 고시안의 작성에 이르기까지 국립국어원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국어기본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국립국어원은 ‘법조문의 문장 실태 조사’, ‘법령문의 국어학적 검토’, ‘쉽게 고쳐 쓴 우리 민법’ 등의 연구를 통해 법령의 제정 및 개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교과서 제작, 각종 국가고시의 출제 및 운문에 소속 연구원을 파견하여 지원해 왔다. 전문 용어 표준화 관련 시행령에서 법령의 제정·개정, 교과용 도서 제작, 공문서 작성 및 국가 주관의 시험 출제를 표준 전문 용어의 활용을 염두에 두고 수행할 것을 중앙행정기관장의 의무로 명시함으로써 국립국어원에서도 지원 활동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2008년 7월. 2005년 7월에 국어기본법 시행령이 제정된 지 3년이 지난 현재, 시행령에서 명시한 전문 용어 표준화의 제도적인 절차가 얼마나 정착되었는지를 돌아보면 아쉬운 점이 많다. 전문 용어 표준화에 대한 인식은 확산되고 있으나 제도적 절차의 미비로 전문 용어의 표준화보다 전문 용어의 산발적 정비에 그치는 것이 현실이다. 국어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전문 용어 표준화의 제도적 절차에 문제점은 없는지, 전문 용어 표준화를 위해 규정한 제도가 실효성을 잃은 원인은 무엇인지 짚어봐야 할 시점이다. 이를 위해 다음 장에서는 전문 용어 표준화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3. 전문 용어 표준화의 현황

3.1. 전문 용어 표준화의 기존 성과

머리말에서 언급한 대로 ‘전문 용어의 표준화’는 전문 분야의 용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통일’하는 것이다. 전문 용어 표준화는 통일된 안을 만드는 데에서 한걸음 나아가 통일된 용어의 사용이 정착됨으로써 완성된다고 할 수 있다. 용어의 통일된 사용이라는 엄격한 관점에서 본다면 국내에서 전문 용어의 표준화가 구현된 분야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전문 용어의 표준화가 지식의 소통 및 경제적 손실 방지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인식은 일반화되어 있고 정부와 민간에서 꾸준히 전문 용어 표준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어 대표적인 전문 용어 표준화 성과를 소개한다.

3.1.1 한국 산업 규격(KS) 용어 관리(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1963년에 한국 산업 규격(KS) 표시 허가 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확대 개편을 거듭하여 현재 한국 산업 규격은 아래 표1과 같이 16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 분류	중 분류
기본부문(A)	기본 일반/포장 일반/공장 관리/방사선(능) 관계/기타
기계부문(B)	기계 기본/기계 요소/공구/공작 기계/측정 계산용 기계 기구 물리기계/ 일반 기계/산업 기계/농업 기계/열사용 및 가스기기
전기부문(C)	전기 일반/측정 및 시험용 기계 기구/전기 재료/전선, 케이블 및 전로용품/전기 기계 기구/통신 전자기기 및 부품/진공관 및 전구/조명 배선 전기 기구/전기 응용 기계 기구
금속부문(D)	금속 일반/분석/원재료/분석/강재/주강 및 주철/신동품/주물/신재/2차 제품/가공 방법/기타
광산부문(E)	일반 정의 및 기호/채광/채광 및 광산물/보안/선광 및 선탄/운반포장
토건부문(F)	일반 구조/시험 검사 측정/재료 및 부재/시공
일용품부문(G)	문방구 및 사무용품/잡품 가정용품/가구 및 실내 장식품/운동용품/특수 공예품
식료품부문(H)	농산물가공/축산물가공/수산물가공/첨가물
섬유부문(K)	일반 시험 및 검사/면직/마제품/편직물/피복/직물 편물 제조기
요업부문(L)	도자기/유리/내화물/점토제품/시멘트 석면제품/연마재 특수요업제품/요업용 특수기기/기타
화학부문(M)	일반/공업약품/유지 광유/플라스틱 사진재료/염료 폭약/안료 도료 잉크/고무 피혁/종이 펄프/시약
의료부문(P)	일반/일반의료기기/치과재료/의료용설비 및 기기/의료용구
수송기계부문(R)	자동차일반/시험 검사 방법/공통부문/기관/차체/전기 장치 계기/수리 조정 시험/수리 기구/자전거/철도용품
조선부문(V)	일반/선체/기관/전기기/항해용 기기 계기
항공부문(W)	일반/전용재료/표준 부품/기체(장비 포함)/발동기/계기
정보산업부문(X)	정보기술용어 일반/문자세트 보안 부호화/정보기술용 언어 소프트웨어공학/컴퓨터그래픽스/데이터통신망/정보기기 데이터 저장매체 /IT응용

<표1. 한국 산업 규격의 분류 체계>

한국 산업 규격은 제품의 향상·치수·품질 등을 규정한 제품 규격, 시험·분석·검사 및 측정 방법, 작업 표준 등을 규정한 방법 규격, 용어·기술·단위·수열 등을 규정한 전달 규격의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 산업 분야의 표준 용어라 할 수 있는 한국 산업 규격(KS) 용어는 위의 16가지 부문을 망라하여 총 12만여 항목이 지정되어 있고 국가표준종합정보센터 (<http://standard.go.kr>)에서 규격 번호 및 명칭과 함께 검색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기술표준원에서는 정부 규격 간 용어, 단위, 종류, 등급, 품질, 성능, 시험 방법, 표시 사항의 불일치를 한국 산업 규격(KS)을 중심으로 통일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용어 부문의 최근 사업은 아래 4와 같다.

4. 가. 장례 용어 표준화(2004년): 조문→문상, 부음→부고, 영안실→안치실
- 나. 색깔 명칭 표준화(2005년): 살색→살구색, 병아리색, 국방색
- 다. 골프 용어 표준화(2006년): 프런트, 락카룸
- 르. 이러닝 관련 용어 표준화(2006년): 사이버 교육·원격 교육→이러닝

한국 산업 규격(KS) 용어는 산업표준화법에 의거하여 산업표준심의회 심의를 거쳐 국가의 인증을 받은 규격 용어이므로 공공성을 확보하게 된다. 2008년 5월 기준으로 한국 산업 규격(KS)을 인터넷으로 열람한 회수가 4년 만에 총 280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었다. 한국 산업 규격(KS) 용어로 한번 정해지면 국가 표준으로 등록이 되고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홍보가 되는 만큼 오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부정적 파급 효과가 크다. 4ㄷ에서 예로 든 ‘프런트, 락카룸’은 모두 어문 규정에 어긋난 표기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 ‘front’는 ‘프린트’로 등재되어 있으며 외래어 표기 용례집에서는 ‘locker room’을 ‘라커 룸’으로 표기하고 있다. 한국 산업 규격(KS)을 선정하여 발표하기 전에 언어학적인 검토 과정이 필요하다.

3.1.2 학술 전문 용어 정비 및 표준화(학술단체총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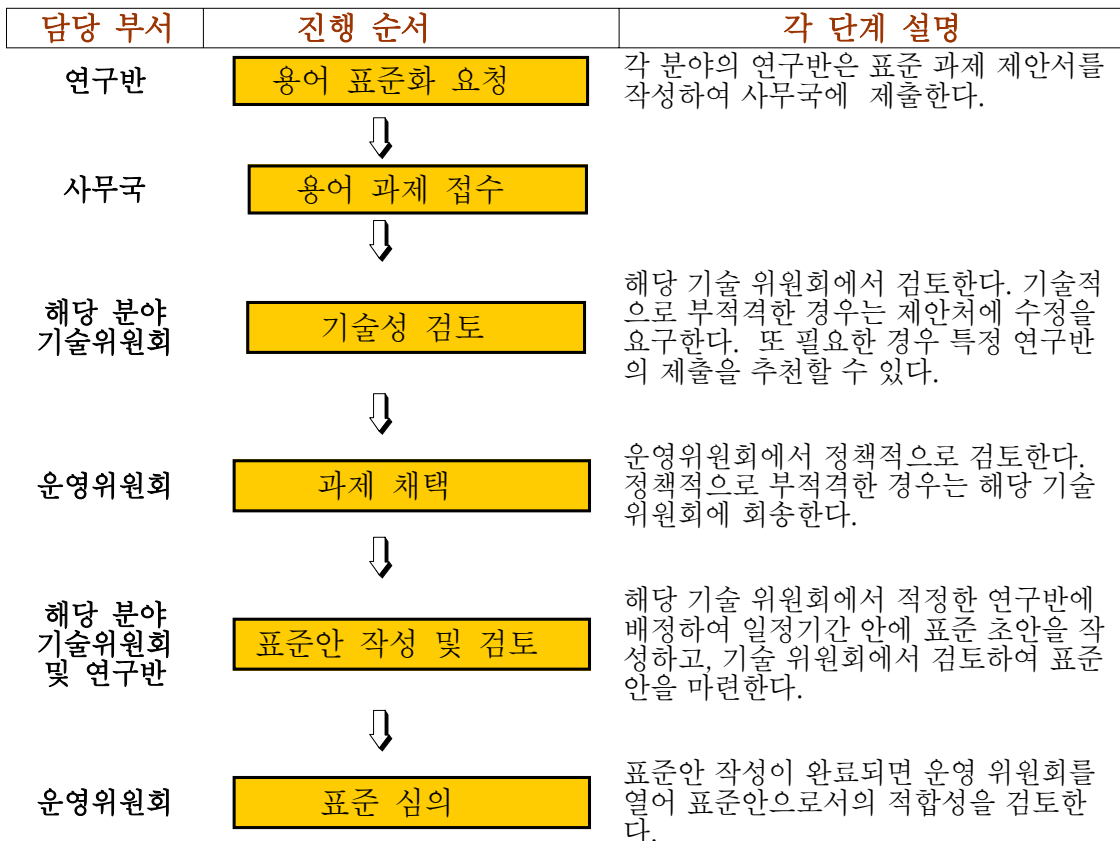
학술단체총연합에서는 2003년 11월부터 한국학술진흥재단(교육과학기술부)으로부터 연구비를 받아서 학술 용어 정비 및 표준화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기술표준원의 한국 산업 규격(KS) 용어가 산업 용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학술단체총연합의 사업은 학술 용어를 대상으로 했다. 학술단체총연합 사업의 단계별 참여 학문 분야는 아래 표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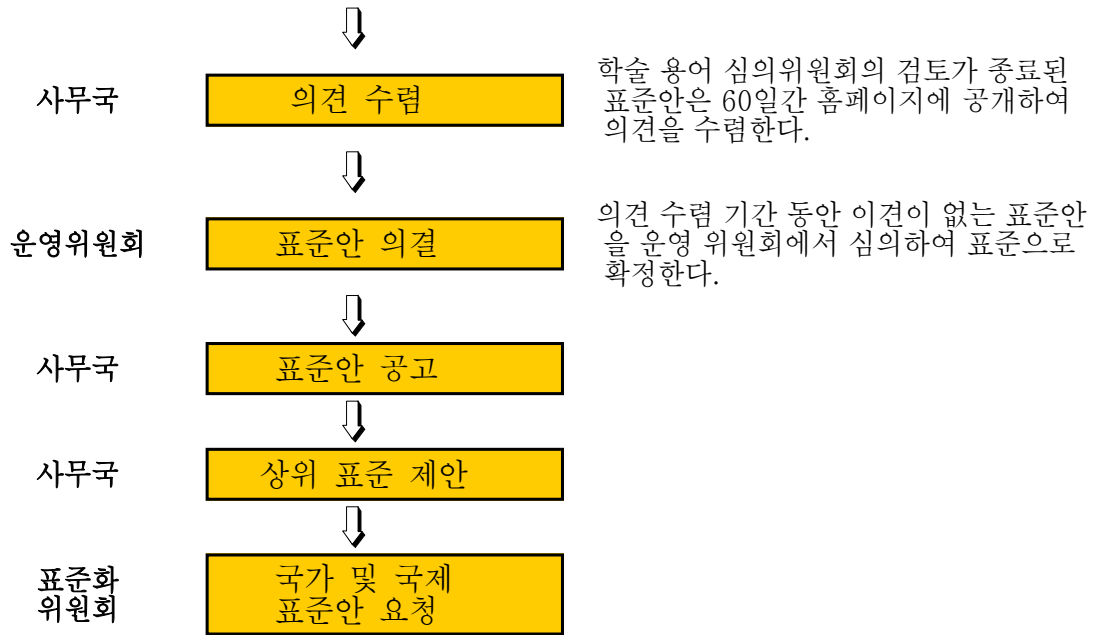
기간	분야 수	참여 분야
2003.12 ~ 2005.11	18	한국사, 철학, 언어학, 문학,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가정학, 금속재료, 전기, 자동차, 전자, 수의학, 간호학, 한의학, 심리학, 미술
2005.11 ~ 2006.10	11	서양사, 기호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토목공학, 약학, 치의학, 조경학, 체육학, 음악, 만화애니메이션

2006.07 ~ 2008.06	40	<계속> 서양사, 기호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토목공학, 약학, 치의학, 조경학, 체육학, 음악, 만화애니메이션
		<신규> 동양사, 종교학, 고고학, 정치외교학(지역학 포함), 경제학, 무역학, 경영학(회계학 포함), 사회학(사회복지학, 인류학 포함), 교육학, 법학, 행정학, 신문방송학, 지리학, 지질학, 천문학, 대기과학, 해양학, 항공우주공학, 자원공학(원자력공학 포함), 컴퓨터학(소프트웨어), 건축(공)학, 의학(뇌과학 포함), 무용학, 연극학, 영화학, 인지과학, 농림학, 수산학, 과학기술학(기술정책 포함)

<표2. 학술 전문 용어 정비 및 표준화 사업 참여 분야>

학술단체총연합 사업의 의의는 인접 학문 분야에서 사용되는 중복 용어를 추출하여 표준화한 데에서 찾을 수 있다. 2003년에서 2005년에 이루어진 1차 사업을 통해 18개 분야별 연구반에서 총 24만 여개의 용어를 정비, 수집했으며, 그 중 6만 여개가 중복되어 사용되는 용어임을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 전문 용어 정비 사상 최초의 중복 용어 표준화 작업이다. 2003년에서 2008년까지 6년 동안 이루어진 3단계의 사업을 통해 총 58개 분야의 학술 용어를 포함하여 학술진흥재단에서 분류한 학문 분야의 대부분을 망라하였으니 기존의 분야별 정비 사업에 비할 수 없이 광범위하다. 학술단체총연합에서 설정한 전문 용어 표준화의 진행 절차는 다음 표3과 같다.





<표3. 학술단체총연합의 표준화 진행 절차>

표준 및 규정을 심의, 의결하는 표준화위원회, 용어위원회 및 연구반 활동 지원하는 운영위원회, 사업 진행을 지원하는 사무국, 학술 용어 표준화의 원리와 방법 제정하는 표준화 원리위원회, 분야별 연구반을 구성하여 표준화 업무를 처리하는 분야별 기술 위원회, 분야별 용어 수집 및 정리하여 표준 초안을 작성하는 연구반 등이 역할을 분담하여 체계적으로 표준화 작업을 진행한다. 국립국어원도 어문 규정에 따른 용어의 적절성을 심의하는 협력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아무리 체계적인 절차를 걸쳐 표준화한 용어라 하더라도 표준화의 실제 수혜자인 각 학문 분야의 연구자들이 활발히 사용하여 정착시키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된다. 학술단체총연합회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인 인접 학문 분야 공통 용어의 표준화는 결과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가장 큰 과제가 된다. 원어는 같으나 다른 학문 분야에서 다른 용어로 현지화된 경우, 기본 의미는 같지만 세부적인 용법이 달라진 용어 등을 어떻게 표준화하고 정착시킬 것인가가 앞으로 남은 숙제이다.

3.2. 국립국어원의 전문 용어 관련 사업

국어정보화 중장기 사업인 21세기 세종계획에서 ‘전문 용어의 정비’ 사업을 시작한 1998년 이후 국립국어원은 다양한 각도에서 전문 용어와 관련된 연구 및 지원 성과를 축적해 왔다. 이 절에서는 국립국어원의 전문 용어 관련 사업을 전문 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 방향 정립, 전문 용어의 수집 및 정리, 전문 용어 표준안 작성 지원, 전문 용어 통합 관리 환경 구축 등으로 분류하여 소개하기로 한다.

3.2.1 전문 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 방향 정립

전문 용어는 전문 분야의 개념을 담고 있는 말이므로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이 바탕이 되어야 전문 용어의 표준화를 진행할 수 있다. 전문 용어가 각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어떤 분야의 전문 용어이든지 언어 명칭으로서 갖추어야 할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전문 용어를 수집하여 정리하는 방법과 절차가 모든 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정립되어 있어야 전문 분야, 사용자의 계층 등을 아우르는 표준화 작업이 가능할 것이다. 국외에서는 ‘전문 용어’만을 본격적으로 연구하는 용어학(terminology)이 학문으로써 인정받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제대로 뿌리 내리지 못했다. 국립국어원은 전문 분야에서 전문 용어의 표준화 작업을 진행할 때 기본이 될 사항에 대해 연구 과제를 진행하여 책으로 펴냈다. ‘전문 용어 연구(2007)’에서는 전문 용어 정리를 위한 이론적 배경, 전문 용어의 정리의 국내외 사례, 전문 용어의 사례 분석, 전문 용어 정리 방법론 등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했다.

통용되고 있는 전문 용어, 특히 학술 용어는 국외에서 국내로 유입된 용어의 비율이 매우 높다. 전문 용어의 국제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학문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국외에서 들여온 말을 우리말로 제대로 번역하는 작업은 필수적이다. ‘외래 전문 용어 번역 및 조어법 연구(2007)’에는 이런 관점에서 전문 용어 형성의 일반 원칙, 사례를 바탕으로 한 전문 용어의 실제 조어 유형, 외래 전문 용어 번역의 기준 등에 대해 연구한 결과가 실려 있다. 연구 결과 전문 용어의 조어 방식은 일반 어휘와 커다란 차이를 보였다. 일반 어휘에 비해 유동적이고 열린 방식으로 접사 및 일 음절 한자어를 활용하여 전문 용어를 만들어 낸다. 따라서 전문 용어의 조어 방식에 맞는 분석틀과 도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3.2.2 전문 용어의 수집 및 정리

앞서 언급한 대로 국립국어원은 학술단체총연합회의 전문 용어 표준화 사업에 어문 규정에 따른 용어의 적절성을 심의하는 협력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전문 용어 표준화 작업에 소극적으로 참여한 예이지만 국립국어원은 이미 1998년부터 전문 용어의 정비 사업을 주관하고 추진한 바 있다. 국어정보화 중장기 사업인 21세기 세종계획의 세부 사업으로 9년간 진행된 ‘전문 용어의 정비’ 사업은 각 분야 전문 용어 관련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 전문 용어의 정비 모형 개발, 전문 용어 통합 검색 시스템 개발, 국제 표준 규격을 준수한 전문 용어 작업 공정 확립, 전문 용어 관련 국내외 정보 교류, 전문 용어의 교육 및 홍보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한국과학기술원의 전문용어언어공학연구센터(<http://www.korterm.or.kr>)에서 수행한 ‘전문 용어의 정비’ 사업의 성과는 표4와 같다.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합계
경제학	말뭉치	1,000,000								1,000,000
	한영일 대응DB	10,000								10,000
물리학	말뭉치	500,000								500,000
	한영일 대응DB	10,000	5,000							15,000
화학	말뭉치		1,000,000							1,000,000
	한영일 대응DB		5,000	10,000						15,000
생물학	말뭉치			1,000,000						1,000,000
	한영일 대응DB			10,000	5,000					15,000
의학	말뭉치				1,000,000					1,000,000
	한영일 대응DB				15,000					15,000

수학	말뭉치						1,000,000				1,000,000
	한영일 대응DB						10,000				10,000
전산학	말뭉치							1,000,000			1,000,000
	한영일 대응DB						10,000	20,000			30,000
전자 전기 공학	한영일 DB							15,000			15,000
기계 공학	한영일 DB							5,000	10,000		15,000
산업 공학	한영 DB								5,000		5,000
화학 공학	한영 DB								10,000	5,000	15,000
재료 공학	한영 DB								5,000		5,000
환경 공학	한영 DB								5,000		5,000
건축 공학	한영 DB								5,000		5,000
토목 공학	한영 DB								5,000		5,000
합 계	말뭉치	0	1,5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0	0	6,500,000
	한영(일) 대응DB	10,000	10,000	10,000	20,000	20,000	20,000	40,000	45,000	5,000	180,000

<표4. 전문 용어의 정비 데이터베이스 구축 현황>

위의 표4를 분석해 보면 이 사업의 성과와 미흡한 점을 도출해 낼 수 있다. 양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9년의 사업을 통해 15개 분야 18만 항목의 전문 용어가 수집, 정리되었으며 이를 위해 650만 어절의 전문 분야 말뭉치가 구축되었다. 전문 분야 구성을 살펴보면 첫 해에 경제학부터 정비를 시작하였으나 사업 기간과 예산의 한계로 인해 과학 분야에 국한해 사업을 진행했음을 알 수 있다. 전문 용어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전문 분야의 개론서, 논문 등을 말뭉치로 구축하여 추출하는 방법과 기존 용어 사전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전문 용어의 정비’ 사업의 중기까지는 이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여 다양한 용어를 수집하였으나 2005년 이후에는 따로 전문 분야 말뭉치를 구축하지 못했다. 전문 용어의 정비에 있어 주요 학문 교류 국가의 언어로 된 대응 용어 목록은 기본 자료이다. 이 사업에서는 ‘한국어-영어-일본어’ 혹은 ‘한국어-영어’의 대응 목록을 구축했다. 2005년 이후에 일어 대응 목록과 말뭉치 추출 용어 목록이 누락된 것은 아쉬운 점이나 주어진 여건에서 다양한 분야의 대응 목록을 확보하기 위한 선택적 전략이었다.

21세기 세종계획이 1998년부터 2007년까지 10년에 걸친 사업임에도 세부 과제인 ‘전문 용어의 정비’ 사업이 2006년에 종료된 것은 최근 들어 전문 용어 표준화와 관련한 제반 상황이 변화했기 때문이다. 2003년부터 앞서 소개한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진흥재단에서 지원하는 ‘학술 전문 용어 정비 및 표준화’ 사업이 전 학문 분야를 망라하여 진행되면서 과학 분야의 전문 용어 표준화 사업이 중복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제도적 장치가 수반되지 않아 사업의 결과가 ‘전문 용어의 표준화’가 아니라 ‘전문 용어 표준안의 작성’에 그치게 되면서 사업의 성격이 모호해진 것도 사업을 종료하게 된 계기이다. ‘전문 용어의 정비’ 사업 계획 수립과 국어 기본법 제정 간의 시간 차 때문에 전문 용어의 수집과 정리 작업이 제도적 절차로 이어지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 미흡한 점이 있지만 21세기 세종계획의 ‘전문 용어의 정비’ 사업은 과학 분야 전문 용어 자료의 집적만으로도 의의가 있다. 사업 결과물은 21세기 세종계획에서 아래 그림1과 같은 형태로 서비스되고 있다. 각 분야의 전문 용어를 한눈에 검색해 볼 수 있으

며 전문 용어가 쓰인 용례 및 분야별 분포도 제공된다.



<그림 1. '전문 용어의 정비' 사업 결과물 검색 서비스>

21세기 세종계획에서 본격적으로 전문 용어를 정비하기 이전에도 국립국어원에서는 간접적으로 전문 용어의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1999년에 발간된 표준국어대사전에 49개 전문 영역의 전문 용어 19,872 항목이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올라 있는 전문 용어는 기존 국어사전의 표제어 등재 여부,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다를 수 있는 수준, 영역별 전문어 사전과 전문 서적의 분포 등을 기준으로 하여 등재되었다.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전문 용어를 선정했고 각 영역의 학회 및 전문가 감수를 받았으며 어문 규정에 맞는 표기를 적용했으므로 표준국어사전의 전문 용어 등재는 일종의 전문 용어 정비 작업이라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일반인들이 많이 참고하는 국가 편찬 국어사전에 등재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활용하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표지	전문 영역	표지	전문 영역	표지	전문 영역	표지	전문 영역
[건]	건설	[법]	법률	[미]	미술	[출]	출판
[운]	운동/오락	[공]	공업	[동]	동물	[교]	교육
[화]	화학	[약]	약학	[물]	물리	[언]	언론
[연]	연영	[가]	가톨릭	[기1]	기계	[지2]	지명
[음]	음악	[생]	생물	[문]	문학	[항]	항공
[식]	식물	[지1]	지리	[사]	사회	[고1]	고적
[컴]	컴퓨터	[천]	천문	[경]	경제	[종]	종교
[교]	교통	[통]	통신	[광]	광업	[정]	정치
[의]	의학	[수3]	수공	[기2]	기독교	[책]	책명
[군]	군사	[예]	예술	[철]	철학	[불]	불교
[전]	전기	[역]	역사	[심]	심리	[언]	언어
[수1]	수학	[수2]	수산	[농]	농업	[동]	동물
[민]	민속						

<표5. 표준국어대사전 등재 전문 영역>

앞서 전문 용어의 표준화는 한 개념을 나타내는 서로 다른 용어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전문 용어는 일반적으로 전문 분야, 사용자의 계층, 원어 등에 다양한 양상을 띠지만 우리는 여기에 한 가지 특수한 요소를 더 고려해야 한다. 같은 전문 분야, 같은 사용자 계층, 같은 기원이라 해도 남측과 북측의 용어가 다르기 때문이다. 전문 용어의 생성과 변화가 활발한 정보 기술 분야에서는 이미 2002년에 남북한 정보 기술 용어 통일안 마련 사업 산업자원부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국립국어원에서도 최근 남북 전문 용어의 통일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7년 2월에 중국 연길에서 ‘남북 체육 용어 통일을 위한 국제 학술회의’를 개최했으며 2007년에서 2008년에 걸쳐 ‘남북 교과서 학술 용어 비교 연구’ 사업을 진행 중이다. ‘남북 교과서 학술 용어 비교 연구’ 사업은 남북의 교사, 학자 간의 지식 공유 및 정보 소통을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남북한의 중고등학교 교과서 비교를 통해 분단 이후 이질화된 교육 체제와 언어 규정으로 인해 양산된 학술 용어의 대응 양상 파악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다음 표6은 ‘남북 교과서 학술 용어 비교 연구’ 보고서에서 발췌한 남북한 수학 용어 비교 목록의 일부이다. 예를 살펴보면 남북 간에 전문 용어의 차이가 나타나는 요인을 어문 규정과 고유어 사용 비율의 차이로 요약할 수 있다. ‘순열/순렬’, ‘스펙트럼/스펙트르’, ‘시컨트/세칸스’, ‘아크사인/아크시누스’, ‘아크코사인/아크코시누스’, ‘아크탄젠트/아크탕겐스’ 등은 어문 규정의 차이 때문에 남북의 용어가 달라진 예이고 ‘순환소수/되풀이소수’, ‘승수/곱하는 수’, ‘십진법/열올림법’은 고유어인지 한자어인지에 따라 달라진 예이다. 한편 ‘승표/횡십자’는 고유어 여부도 다르지만 남한의 ‘승표’는 기호의 기능을 살린 표현이고 북한의 ‘횡십자’는 기호의 모양을 살린 표현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남한 용어	북한 용어	한자	외국어
순열	순렬	順列	permutation
순허수	순허수	純虛數	pure imaginary number
순환소수	되풀이소수	循環小數	repeating (periodic / recurring) decimal
스펙트럼	스펙트르		
승수	곱하는 수	乘數	multiplier / multiplicator
승표	형십자	乘標	
시컨트 (sec)	세칸스	〈正割〉	secant
실수	실수	實數	real number
십진법	열올림법	十進法	decimal system / denary scale
쌍곡선	쌍곡선	雙曲線	hyperbola
쌍곡포물선	쌍곡포물선, 쌍곡팔매선		
쌍대	쌍대	雙對(性)	duality
아크사인 (arcsin)	아크시누스	〈逆正弦〉	arcsine
아코사인 (arccos)	아크코시누스	〈逆餘弦〉	arccosine
아크탄젠트 (arctan)	아크탕켄스	〈逆正接〉	arctangent

<표6. 남북 교과서 비교 자료 예시>

3.2.3 전문 용어 표준안 작성 지원

각 전문 분야에서 전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할 때 국립국어원의 자문을 구하는 것은 어문 규정에 맞는 표현을 최종 표준안으로 삼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변이 형태가 있는 전문 용어를 통일하는 데에 있어 어문 규정은 형식적인 통일을 기하는데 기초가 되지만 실제로 현행 어문 규정을 따르는 전문 용어 사전이나 용어집은 회귀하고 전문 용어의 특성을 살리면서 어문 규정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운영되는 국립국어원에서 수많은 전문 분야의 전문 용어 개별 항목이 어문 규정에 맞는지 여부를 일일이 검토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국립국어원에서는 각 전문 분야에서 전문 용어를 표준화할 때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전문 용어 표준화 관련 어문 규정 지침’을 작성했다. 전문 용어와 관련해 문제가 되는 어문 규정 조사하고 문제가 되는 어문 규정별 사례 정리 및 유형화하여 전문 용어의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원칙과 일관성을 잃지 않는 방안 모색했다. 2007년에 초안을 만들었고 내용을 보완하고 용례를 추가하여 2008년 연내에 배포할 예정이다. ‘전문 용어 표준화 관련 어문 규정 지침’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두음 법칙

- ㄱ. 단어 첫머리 이외에서는 본음대로 적는다.
- ㄴ. 데이터 전송률(O), 데이터 전송율(X)

5. 사이시옷

- ㄱ. 한자어만으로 이루어진 합성어에서는 사이시옷을 넣지 않는다.
- ㄴ. 초점(O), 훗점(X)

6. 표준어

- ㄱ. ‘아래, 위’의 대립이 없는 단어는 ‘웃’으로 발음되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아 적는다.
- ㄴ. 웃돈(O), 윗돈(X)

7. 띄어쓰기

- ㄱ.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오해할 소지가 없는 것은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한다.
- ㄴ. 디지털 이동 전화(O), 디지털이동전화(O)

8. 외래어 표기법

- ㄱ. 짧은 모음 다음의 어말 무성 파열음([p], [t], [k])은 받침의 위치에 ‘ㅃ’, ‘ㅆ’, ‘ㄱ’으로 적는다.
- ㄴ. 디스켓(O), 디스켄(X)

9. 기호

- ㄱ. 하나의 용어에 둘 이상의 인명이 관계될 때 그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 사용한다.
- ㄴ. 가우스-조르당 소거법(O), 가우스조르당소거법(X)

국립국어원은 국내 단체의 전문 용어 표준안 작성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국제 표준화 기구(ISO)의 전문 용어 및 기타 언어 자원 분과(TC37)의 구축 지침 및 용어집 설계 원칙 제정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3.2.4 전문 용어 통합 관리 환경 구축

부처별, 전문 분야별로 다양한 각도에서 전문 용어의 정비 작업이 추진되면서 분산된 전문 용어를 통합하여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국립국어원은 개별적으로 수행된 전문 용어 구축 작업의 결과 검색, 전문 용어 표준화의 시간에 따른 이력 및 메타 데이터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이미 구축된 전문 용어 자료의 검색뿐만 아니라 새롭게 구축하는 전문 용어 자료를 심의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었다. 전문 용어 표준화를 위해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심의하는 것이 힘들다는 데에 착안하여 온라인 심의 체계를 구축하고 심의 단계별 통계 정보 등 심의 현황 관리를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시스템은 웹상에서 전문 용어의 등록, 심의, 검색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전문 용어 관리 시스템’은 일반 공개를 앞두고 오류 수정과 검색용 전문 용어 데이터베이스 수집을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확보한 전문 용어 자료는 아래 10과 같다.

- 10. ㄱ. 21세기 세종계획 자료: 15개 분야 18만 항목
- ㄴ. 학술단체총연합회 자료: 11개 분야 15만 항목
- ㄷ.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자료: 13개 분야 17만 항목
- ㄹ. 기술 표준원 한국 산업 규격(KS) 표준 용어 자료: 16개 부문 12만 항목
- ㅁ.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자료: 정보 통신 용어 3만 항목
- ㅂ. 특허청 자료: 지적재산권 관련 용어 1900 항목
- ㅅ. 한국 IT 산업 세계화 학회(KIGO) 자료: IT 일반 용어 1000 항목

이와 같이 다양한 경로로 수집한 전문 용어 데이터베이스는 통합 검색을 위해 재구성되어 시스템에 탑재된다. ‘전문 용어 관리 시스템’의 전문 용어 통합 데이터베이스는 표7과 같이 설

계되었다.

항목	필드명	항목	필드명
일련 번호	TermID	원어	SouTerm
히스토리 ID	IntRef	참고 자료	RefData
기존 일련 번호	OldTermID	영어 약어	EngShort
한국어	KorTerm	동의어	SynTerm
정의문	Definition	한국어 번역	KorTrans
국제 출처	IntSource	한자 표기	Hanja
국내 출처	KorSource	비고	Remark
대분야	Cat1	작업자	UserID
중분야	Cat2	작업일	WorDay
소분야	Cat3	작업내용	WorContents
고유어	NatTerm	상태	Status
관련어	RelTerm	불어	FreTerm
오표기	ErrTerm	독어	GerTerm
영어	EngTerm	기타 외국어	EtcTerm
중국어	ChiTerm	기타 필드	...
일본어	JapTerm	북한어	NorTerm

<표7. 전문 용어 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 구조>

4. 전문 용어 표준화의 과제

4.1. 전문 용어 표준화에 대한 인식 제고

전문 용어는 생성과 사용 주체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타난다. 학자들이 만들어 내고 사용하는 학술 용어, 해당 산업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만들어 쓰는 산업 용어, 산업의 결과물인 제품의 명칭과 부속물, 사용 방법 등에 관련된 제품 용어, 전문 분야에 종사하지 않는 일반인들이 만들어 내어 유행시키는 사용자 용어 등이 있다. 이들은 서로 겹치기도 하고 영향을 미치기도 하면서 공존하는 관계이다. 인접 분야의 전문 용어를 표준화하는 데에 앞서 같은 분야 내의 전문 용어들을 표준화해야 하는 것은 당연해 보이지만 유형별로 용어 사용자들이 전문 용어 표준화에 반하는 각기 다른 이유를 들어 전문 용어 표준화가 지연되는 측면이 있다. 학술 용어를 사용하는 학자들은 전문성과 국제성을 이유로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고 산업 종사자들은 급박하게 돌아가는 현장에서의 빠른 의사소통을 위해 은어화된 축약어나 음차어, 일본어투의 어휘를 고집한다. 제품 용어 경제적인 문제와 결부되어 표준화의 난이도가 높다. 다른 회사의 제품이라 할지라도 같은 부속품, 같은 기능이라면 동일한 명칭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일단 한번 붙여진 명칭을 바꾸려면 그에 상응하는 비용이 들게 되므로 쉽지 않다. 또한 제품의 용어에 대한 정보가 회사의 자산이라 판단하여 일반에 공개하거나 다른 회사와 공유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진정한 전문 용어의 표준화는 전문 용어의 표준화가 장기적으로 학문의 자생력 확보, 산업의 경제성 증진, 업계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확산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이와 관련해 정보 기술(IT) 분야의 움직임은 좋은 본보기가 된다. 지난 3월에 정보 기술 업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제1회 마이크로소프트 IT 용어 포럼'을 열어

학계, 업계, 언론, 국립국어원 등의 참석자와 함께 올바른 정보 기술 용어 사용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용어 표준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비공개로 관리해 오던 제품 용어를 공개하여 동종 업계와 일반인들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용어와 정의, 출처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6월에 열린 ‘한국 IT 산업 세계화 컨퍼런스’에서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한국 오라클, 한국 HP 등 외국 IT 기업과 삼성, 엘지, NHN(네이버), 한글과 컴퓨터 등의 국내 기업, 라이온브리지, SDL, JTE, 이포넷 등 현지화 및 세계화 업체가 한 자리에 모여 IT 용어 관리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논했다. 개별 회사의 이익 창출을 떠나 업계의 발전을 위해 IT 용어의 표준화가 절실하다는 인식을 함께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그러나 공개 토의를 통해 접수한 질의 중에 국외에서 유입된 IT 용어의 음차 사용을 주장하거나 우리말화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내용이 가장 많았다는 점은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4.2. 전문 용어 표준화 협력 체계 구축

국립국어원에서는 전문 용어 표준화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06년 12월에 처음 ‘전문 용어 표준화 협의체 회의’를 개최한 이후 총 3회의 협의체 회의를 소집했다. 전문 용어 표준화 협의체의 역할은 다음 11과 같다.

11. ㄱ. 소속된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전문 용어를 표준화, 체계화하는 과정에서 국립국어원(또는 문화체육관광부)이나 타 부처와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논의한다.(세부적인 사항은 국어 상담소 활용, 붙임 참조)
- ㄴ. 각 부처에서 표준화한 전문 용어에 대하여 국립국어원을 통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국어 심의회)에게 심의를 요청한다.
- ㄷ. 국어 심의회에서 심의·확정하여 전문 용어 협의체를 통하여 보급된 전문 용어를 타 부처에 알려 법령의 제정·개정, 교과용 도서 제작, 공문서 작성, 국가 주관의 시험 출제 등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ㄹ. 전문 용어 협의체를 통하여 타 부처에서 표준화한 전문 용어 정보를 교환하고 이를 소속된 부처에 널리 전파한다.

전문 용어 표준화 협의체가 위와 같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명시한 중앙 행정 기관의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가 실질적인 기구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한다. 전문 용어 표준화 협의체는 각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의 대표가 모여 거시적인 관점에서 전문 용어 표준화에 대해 논의해야 할 단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앙행정기관의 국어책임관, 관계 분야 전문가 및 공무원이 실제로 모여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를 구성하고 활동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는 국어기본법 시행령에서 제시한 전문 용어 표준화의 제도적 절차가 정착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과제가 많음을 시사한다.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가 구성되어 표준안이 작성되더라도 국어심의회에서 각 전문 분야의 용어를 심의하는 것은 쉽지 않다. 전문 지식 없이 언어학적 소양만으로는 표준안에 제시된 용어가 표준 용어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전문 분야의 개념을 나타내기에 적합한지를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어심의회에서 각 전문 분야의 용어를 심의할 때마다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구성원 외의 해당 분야 전문가를 심의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4.3. 전문 용어 표준화 성과물의 보급 확대

전문 용어 표준화의 제도적 절차가 완성된다 하더라도 표준안을 심의하여 고시하는 것이 최종 목표는 아니다. 전문 용어 표준화는 표준화의 핵심인 용어의 통일적인 사용을 통해 완결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표준화한 전문 용어를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하고 교과서에 반영하여 교육에 활용해야 한다. 교과서에 표준화 전문 용어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일반인에게 전문 용어를 전파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처 및 법제처와 협의하여 관련 법률을 제정할 때 전문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한국 산업 규격 용어와의 접점을 찾아 산업 분야에서도 활용되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다.

◇ 참고 문헌 ◇

- 국립국어연구원. 2002. 「표준국어대사전」 연구 분석
- 국립국어원. 2007. 남북 교과서 학술 용어 비교 연구
- 국립국어원. 2007. 외래 전문용어 번역 및 조어법 연구.
- 국립국어원. 2007. 전문 용어 연구. 태학사.
- 국립국어원. 2007. 전문 용어 통합 관리 및 심의 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최종 보고서.
- 권성아. 2007. 남북 교과서를 통해 본 전문 용어의 공통점과 차이점. 새국어생활 17-1
- 김세중. 2005. 국어기본법 시행의 의의. 새국어생활 17-3.
- 김수업. 2007. 전문 용어의 순화 방안. 국립국어원. 새국어생활 17-1
- 최기선. 2007. 전문 용어의 표준화. 국립국어원. 새국어생활 17-1
- 학술단체총연합회. 2006. 학술 전문용어 정비 및 표준화 사업 연차 보고서. 학술진흥재단
- 황건. 2007. 의학 용어의 순화와 미래. 국립국어원. 새국어생활 17-1

□ 토론 □

“전문 용어 표준화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토론문

한 성 일 (경원대학교)

★ 별 지 참 조 ★

언어 정책에서 법적 규정의 의미와 한계

- 국어기본법 다시 보기 -

조 태 린 (국립국어원)

□ 차 례 □

1. 머리말
2. 언어 정책과 관련한 법적 규정의 형식
 - 2.1 헌법
 - 2.2. 언어 관련 특별법 또는 기타 법률
3. 언어 문제에 대한 법적 개입의 영역
 - 3.1. 세계 각국의 언어 문제에 대한 법적 개입의 영역
 - 3.2. 언어 문제 관련 법적 개입이 가능한 영역
4. 언어 정책과 관련한 법적 규정의 필요성과 문제점
 - 4.1. 언어 관련 법적 규정의 필요성
 - 4.2. 언어 관련 법적 규정의 문제점
5. 국어기본법의 언어 문제에 대한 개입, 그 의미와 한계
 - 5.1. 국어기본법의 법적 개입 영역과 의미
 - 5.2. 국어기본법의 법적 개입 방식과 한계
6. 맺음말

1. 머리말

이 글은 언어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언어 문제와 관련한 법적 규정이 갖는 의미와 한계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언어 정책과 관련한 법적 규정이 나라별로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각국의 언어 관련 법 규정이 다루고 있는 내용을 몇 가지의 영역으로 나누어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를 통해 언어 문제에 대한 법적 개입의 일반적 영역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이러한 법적 규정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다면 그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 일반론적인 차원에서 검토해 보고자 하는데, 이는 국어기본법의 의미와 한계를 짚어보기 위한 기본 원칙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국어기본법이 언어 문제에 대해 개입하는 영역과 그 의미, 그리고 동법이 취하는 개입의 방식과 한계를 짚

어보고자 한다.

2. 언어 정책과 관련한 법적 규정의 형식

‘언어 정책’이 글자 그대로 ‘언어 문제에 대한 정치 주체의 시책’이며, 이때의 정치 주체는 한 나라의 국가권력을 장악하여 일정한 권위와 강제력을 갖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때(조태린 1998: 4), 그 구체적인 시행 방식 중의 하나가 바로 언어 정책적인 사항을 법으로 규정하고 적용하는 것이다. 법은 근대적 국민국가가 언어 정책을 비롯한 모든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안정적이고 확실한 근거이자 동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어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언어 정책이 수립·시행되는 모든 국가에서 언어 관련 사항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법령 언어 관련 사항을 법으로 규정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법적 규정의 형식은 헌법, 특별법, 시행령, 판례, 훈령, 행정규칙 등으로 다양할 수 있다.

2.1. 헌법

스폴스키(Spolsky 2004: 11-13)에 따르면, 세계 각국의 헌법들¹⁾ 가운데 약 125개에서 언어에 관한 특정한 정책이 표현되고 있다. 그는 특히 헌법에서의 언어 관련 조항이 특정 언어 사용의 특권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는데, 이처럼 공용어(official language)나 국민어(national language)의 지정 여부를 기준으로 각국의 헌법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²⁾

공용어 또는 국민어의 지정 여부	언어 관련 조항이 있는 헌법							
	1개 지정	2개 지정	3개 지정	4개 지정	6개 지정	7개 지정	11개 지정	미지정
헌법의 수	78	18	5	4	1	1	1	18
총합	125							

<표 1> 공용어 또는 국민어를 지정한 헌법의 수

단 하나의 공용어 또는 국민어를 지정하고 있는 헌법이 78개로 가장 많은데, 그 대표적인 예는 프랑스의 헌법으로 제2조에 “공화국의 언어는 프랑스어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오스트리아, 알제리, 이란, 인도네시아, 터키 등의 헌법이 단 하나의 언어를 공용어 또는 국민어로 지정하고 있다.

2개의 언어를 공용어 또는 국민어로 지정하고 있는 헌법으로는, 아랍어와 쿠르드어를 공용

1) 현재 존재하는 국가의 수는 국제연합(UN) 가입국을 기준으로 하면 191개국이고, 세계 지도 상에 표기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면 230여 개국인데, 이 중 불문 헌법만을 가지고 있는 몇몇 국가들(영국, 오만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에는 성문 헌법이 존재한다.

2) 세계 각국의 헌법 전문은 미국 버지니아주 리치몬드(Richmond) 대학 법학과의 존 폴 존스(John Paul Jones) 교수를 중심으로 운영·관리되는 웹사이트인 ‘Constitution Finde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어로 규정한 이라크 헌법을 비롯하여, 아일랜드어를 국민어이자 제1 공용어로 규정하고 영어를 제2 공용어로 규정한 아일랜드 헌법, 벨라루시어와 러시아어를 공용어로 지정한 벨라루스 공화국 헌법, 영어와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지정한 카메룬 헌법, 스와힐리어와 영어를 공용어로 지정한 케냐 헌법 등이 대표적이다.

벨기에 헌법에서는 공용어 또는 국민어라는 표현이 명시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프랑스어 사용 지역, 네덜란드어 사용 지역, 독일어 사용 지역, 이중언어 사용 지역 등을 분명하게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이들 3개 언어의 특정적 지위를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좀 더 명시적으로는 비스라마어를 국민어로 규정하고 비스라마어와 함께 영어와 프랑스어 등의 3개 언어를 공용어로 규정하고 있는 바누아투 헌법이 3개의 언어를 공용어 또는 국민어로 지정하고 있는 헌법으로 대표적이며, 4개를 지정하고 있는 헌법으로는 아랍어, 폴라르어, 소닌케어, 윌로프어 등 4개 언어를 국민어로 규정하고 이중 아랍어를 다시 공용어로 규정하고 있는 모리타니 헌법이 대표적이다.

이밖에도 콩고 공화국 헌법은 키콩고어, 링알라어, 스와힐리어, 칠루바어 등을 국민어로 지정하고 프랑스어와 영어를 공용어로 지정하는 등 총 6개의 언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세네갈의 헌법은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지정하고 디올로어, 말린케어, 폴라르어, 세레르어, 소니케어, 윌로프어 등을 국민어로 지정하는 등 총 7개의 언어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헌법은 세페디어, 세조토어, 세촐라어, 시촐티어, 취벤다어, 시츄가어, 아프리카נס어, 영어, 이신테벨레어, 이시쇼사어, 이시줄루어 등 총 11개의 언어를 공용어로 규정하고 있다.

한 국가의 체제 및 운영과 관련한 기본 원칙과 국민의 기본 권리를 명시하는 가장 근본적 법 규범인 헌법에 언어 관련 조항이 들어가는 이유는 그다지 단순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헌법에 언어 관련 조항이 명시되는 국가는 그 내부에 언어로 사회적 문제와 갈등이 발생하거나 내재하고 있는 경우들이다. 하지만 그러한 문제와 갈등이 현존하는 국가라고 해도 그 헌법에 언어 관련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 가장 대표적인 다언어·다인종 국가인 미국의 연방 헌법이 좋은 예이다.

2.2. 언어 관련 특별법 또는 기타 법률

앞 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세계 각국의 모든 헌법에 언어 관련 조항이 명시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아르헨티나, 호주, 덴마크, 미국, 가나, 일본, 모로코, 멕시코, 네덜란드, 태국, 토고, 우루과이, 자이레 등 40여 개국의 헌법에는 언어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으며(Gauthier et al. 1993: XV), 이는 결코 무시할 만한 정도의 수가 아니다.

그렇다고 이들 국가에 언어 관련 문제에 대한 법적 규정과 적용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별도의 언어 관련 특별법이 존재하거나 다양한 내용과 형식의 법률들에 몇 가지의 언어 관련 조항이 들어가곤 하기 때문이다. L'Aménagement linguistique dans le monde - Lois linguistiques³⁾에 수집·정리된 자료에 따르면, 세계 70여 개국에 450개가 넘는 언어 관련 법률이 존재한다.

물론 이 법률들 중에는 언어 관련 특별법은 아니면서 단지 언어 관련 조항을 포함할 뿐인

3) 캐나다 퀘벡의 라발(Laval) 대학교의 자크 르클레르(Jacque Leclerc) 교수를 중심으로 운영·관리되는 웹사이트로 세계의 언어정책에 관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한다.

법률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미 폐지되거나 애초부터 채택조차 되지 못한 법률도 있지만, 그 역사적 가치가 크기 때문에 포함된 것들이다. 이 중에서 헌법에 언어 관련 조항이 없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각국 중앙정부 차원의 대표적인 언어 관련 특별법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가	언어 관련 특별법	비고
안도라	공용어 사용에 관한 조직법(1999)	
앙골라	없음	
사우디아라비아	없음	
아르헨티나	언어법(안)(1991)	비채택
	카스티아어 보존에 관한 법(안)(1994)	비채택
호주	없음	
방글라데시	없음	
부탄	없음	
카보베르데	없음	
칠레	없음	
대한민국	국어기본법(2005)	
쿠바	없음	
덴마크	없음	
지부티	없음	
미국	영어 진흥법(안)(1996)	비채택
	이중언어 교육법(1965, 1994)	폐지
	사법 관련 통역에 관한 법(1978)	
	영어 통합법(안)(2005)	비채택
에티오피아	없음	
가나	없음	
기니	없음	
기니비사우	없음	
아이슬란드	없음	
일본	없음	
마다가스카르	없음	
모로코	없음	
멕시코	없음	
뉴질랜드	마오리어에 관한 법(1987, 1991)	
오만	없음	
네덜란드	없음	
폴란드	폴란드어에 관한 법(1999)	
도미니카 공화국	없음	
영국	없음	
산마리노	없음	
스위스	국민어와 언어 공동체 간의 소통에 관한 법(2001)	
대만	없음	
탄자니아	없음	
차드	아랍어 교육에 관한 법률(1962)	
태국	없음	
토고	없음	
통가	없음	
우루과이	없음	
바티칸	없음	
자이레	없음	

잠비아	없음	
짐바브웨	없음	

<표 2> 헌법에 언어 관련 조항이 없는 국가의 언어 관련 특별법

위의 <표 2>를 보면, 헌법에 언어 관련 조항이 없는 국가들은 중앙정부 차원의 언어 관련 특별법도 없는 경우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국가들의 경우에는 언어 관련 규정들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내용과 형식을 가진 법률들의 일부로 들어가 있다. 반면 헌법에 언어 관련 조항이 있는 국가들 중에는 중앙정부 차원의 언어 관련 특별법도 존재하는 경우가 많은데, 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스페인, 인도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한편, 중앙정부 차원이 아니라 한 국가 내의 지역 자치정부 또는 연방 소속정부 차원의 언어 관련 법들도 적지 않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는데, 벨기에, 스페인, 영국, 미국 등과 같은 다언어 사용 국가들에서의 예를 몇 가지씩만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국가	지역 자치정부 또는 연방 소속정부 차원의 언어 관련 법
벨기에	프랑스어 보호에 관한 법령(1978)
	네덜란드어권 선거에서의 언어 사용에 관한 법령(1994) 독일어권 교육에서의 언어 사용 및 언어 지식 전달에 관한 법령(2004) 등
스페인	아라곤의 언어들에 관한 법(안)(2001)
	발레아레스 언어 규범에 관한 법(1986)
	카탈로니아 언어 정책에 관한 법(1998)
	바스크어 사용의 규범화에 관한 기본법(1982) 발렌시아어 사용 및 교육에 관한 법(1983) 등
영국	웨일즈어에 관한 법(1993)
	스코틀랜드 게일어에 관한 법(2005) 등
미국	캘리포니아주 이중언어 서비스에 관한 법(1973)
	아이다호주 영어 공용어 지정에 관한 법(2007)
	칸사스주 영어 공용어 지정 법(2007)
	매사추세츠주 초심 재판에서의 사법 통역에 관한 법(1988)
	뉴욕주 영어를 공용어로 하는 법(2001) 몬타나주 영어의 공용어로서의 지위에 관한 법(1995) 등

<표 3> 지역 자치정부 또는 연방 소속정부 차원의 언어 관련 법의 몇 가지 예

3. 언어 문제에 대한 법적 개입의 영역

국가가 언어 문제에 대해 개입하는 방식의 하나가 법의 제정 및 적용이라고 할 때, 그러한 법적 개입의 영역은 해당 국가의 사회언어적 환경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

3.1. 세계 각국의 언어 문제에 대한 법적 개입의 영역

먼저, 앞에서 소개한 것처럼 각 국가의 헌법에서도 다양한 영역의 언어 관련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다. 고티에 등이 조사한 172개 주권국가의 헌법 중에서 언어 관련 조항을 포함하는 헌법 130개에 나타나는 언어 관련 조항을 그 영역에 따라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Gauthier et al. 1993: XV).⁴⁾

법적 개입의 영역	관련 조항의 수 (최소값 또는 근사값)	채택 국가의 수
입법 영역에서의 언어(들)의 사용	115	41
언어(들)의 법적 지위	113	87
사법 영역에서의 언어(들)의 사용	100	43
소수자 및 토착민의 언어적 권리	50	29
교육 영역에서의 언어(들)의 사용	50	27
공공 행정 영역에서의 언어(들)의 사용	25	17

<표 4> 각국 헌법에 나타나는 언어 관련 조항의 영역

헌법에 나타나는 입법 영역에서의 언어(들)의 사용과 관련한 조항들은 특히 법률의 제정 및 공포를 시행할 때 사용하는 문제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캐나다, 인도, 아일랜드, 벨기에 등과 같은 다언어사용 국가들에서 많이 나타난다. 다언어사용 국가들의 헌법에서는 언어(들)의 법적 지위와 관련한 조항도 많다. 언어의 지위와 관련한 조항의 수는 입법 영역과 관련한 조항의 수에서는 뒤지지만, 전자의 조항을 채택한 국가의 수에서는 후자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은데, 언어의 지위 관련 조항의 거의 대부분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언어가 공용어이거나 국민어임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법 영역과 관련한 조항도 입법 영역과 관련한 조항에 못지않을 만큼 많은데, 체포, 재판, 징역 등의 과정에서 사용되는 언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소수자 및 토착민의 언어적 권리에 관한 조항이 헌법에 들어가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지만, 최근 들어 이러한 내용의 조항이 헌법에 명시되는 경우가 늘어나는 경향에 있다. 그 한 예로, 프랑스 국민의회(하원)는 지난달 ‘각 지역 언어들도 프랑스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헌법에 포함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⁵⁾ 프랑스 상원도 이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자 프랑스어의 절대적 지위를 중시하는 아카데미 프랑세즈 등에서는 반발하고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민주 국가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언어·문화적 다원주의가 대세인 듯하다.

교육 영역 및 공공 행정 영역에서의 언어 관련 조항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이 두 영역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각각을 별도로 특화된 법률에서 훨씬 더 구체적인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근대적 국민국가로 성립하고 유지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국민 교육 체계와 공공 행정 체계를 주요 법률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4) 이 자료는 시기적으로 좀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구소련의 붕괴 이후 등장한 신생 독립국 등의 헌법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지만, 헌법에 나타나는 언어 관련 조항의 대표적 영역들을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5) “프랑스 ‘언어전쟁’ 불붙나 - 방언 헌법상 지위 인정에 지역·보수단체 찬반 논란” 한국일보(인터넷판) 2008년 6월 18일자.

실제로 연방 헌법에는 언어 관련 조항이 전혀 없는 미국에서도 1968년에 제정된 ‘이중언어 사용 교육법’을 비롯하여 언어적 정체성이나 평등한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한 언어적 접근권 등의 문제와 관련한 여러 가지 법률이 제정되었고 적용되고 있다(Kibbee 1998: 2-6).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언어(들)나 상품 설명, 안전 표시, 계약, 간판 등과 같은 상업 활동에 사용하는 언어(들)를 공인하는 문제도 다양한 형식의 법률에 주요 조항으로 들어가고 있다(Kibbee 1998: 7-9, 13-15).

3.2. 언어 문제 관련 법적 개입이 가능한 영역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언어 문제와 관련하여 법적 개입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거나 가능한 영역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대 영역	중·소 영역
언어의 지위	공용어 국민어
입법	법 제정 및 편집에 사용되는 언어 법 공포 및 출판에 사용되는 언어 국회 토론 및 의결에 사용되는 언어 소수자 언어 사용자의 비례대표 참여
사법	체포 단계에서의 통역 재판 전 진술 단계에서의 통역 및 번역 재판 단계에서의 통역 및 번역 수감 단계에서의 통역 및 번역
공공 행정	행정 업무용 언어 출판용 언어 공공 서비스 언어 국가 공무원 선발에 사용되는 언어 각종 선거 및 투표에서 사용되는 언어 시민권·영주권 획득을 위한 언어 신문·방송 등 언론에 사용되는 언어
경제	상품 설명에 사용되는 언어 안전 표시에 사용되는 언어 계약에 사용되는 언어 광고 및 간판에 사용되는 언어
교육	모어 교육 외국어로서의 자국어 교육 이중언어 교육 제2 언어 및 외국어 교육 초·중·고 단계별 언어 교육
언어적 권리	소수자 언어 토착민 언어 지역어 및 방언 이민자 언어

<표 5> 언어 문제 관련 법적 개입이 가능한 영역

4. 언어 정책과 관련한 법적 규정의 필요성과 문제점

지금까지 언어 정책과 관련한 법적 규정의 형식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언어 문제에 법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어떠한 영역들에서 가능한지 등을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언어 정책과 관련하여 이러한 법적 규정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다면 그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4.1. 언어 관련 법적 규정의 필요성

법이 개인과 공동체 사이의 관계를 증대하는 것이고 언어 행위는 개인적 창의성의 측면과 사회적 약속의 측면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언어는 법이 관리하고자 하는 인간 행위의 중요한 한 측면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Kibbee 1998: 1). 그렇다면 언어 정책의 수립과 적용 과정에서 법적 규정을 활용하게 되는 실질적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법적 규정이 언어 정책이 추구하는 여러 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한 가장 확실하고 안정적인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지향하는 바를 지원하고 장려하며 지양하고자 하는 바를 억제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의 강제력을 동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먼저, 하나의 국가가 언어를 통해 국가적 정체성을 드러내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고자 할 때, 헌법을 통해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국민어를 천명하거나 입법, 사법, 교육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영역에서 사용되는 언어(들)의 문제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상징적인 측면과 실질적인 측면 모두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 행위가 된다.

다음으로, 헌법을 통해 공용어를 지정하고 신문, 방송 등의 언론에서 사용하는 언어의 문제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원활한 의사소통체계의 전 국민적 구축이라는 언어 정책적 목표를 명확히 하는 것이고, 입법 과정과 사법 과정에서의 언어 사용 문제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동시에 안정적 사회 체제의 유지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중언어 교육, 모어 교육, 제2 언어 교육 등의 언어 교육 문제나 공정하고 안전한 상업 거래를 위한 언어 사용 문제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해당 국민의 평등권과 행복권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한 출발점이며, 토착민, 지역어 및 방언 화자, 이주민 화자 등의 언어적 권리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다수자만이 아니라 소수자를 포함하는 전 국민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겠다는 정책적 의지의 표현이 될 수 있다.

4.2. 언어 관련 법적 규정의 문제점

법적 규정이 언어 정책이 추구하는 여러 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한 가장 확실하고 안정적인 근거가 됨을 인정한다고 할 때, 그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일까? 언어 관련 법적 규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것이 과도한 국가 개입주의를 불러 올 수 있다는 점이다. 특정 정책과 관련한 법의 제정과 적용은 전형적인 국가 개입주의 방식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국가 개입주의’는 사회적 언어 문제를 국가의 공권력에 기대어 타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그 해결을 민간의 자율에 맡기는 ‘방임주의’와 대비되는 방식이다.⁶⁾ 일반적으로 한 언어가 강자의 위치에서 자생력을 확보한 경우에는 방임주의가 요구되고 약자의 위치에서 생존이 위협받을 때는 보호의 차원에서 국가 개입주의가 요구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이광석 2006: 179-180), 국가 개입주의는 자국어의 보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자국어의 해외 보급 및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도 요구될 수 있다. 영어의 국내외적 영향력 확대로부터 프랑스어의 위상을 지켜냄과 동시에 아직도 남아 있는 프랑스어의 국제적 영향력을 지속하고 확대하기 위한 프랑스의 언어 정책이 헌법을 비롯한 다양한 법으로 뒷받침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하지만 법적 규정의 제정 및 적용을 통한 국가의 개입은 언어 문제의 해결을 국가의 입장에서 편의적으로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언어 사용자로서의 국민이 자발성과 창의성을 퇴색시키고 수동적인 존재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할 필요가 있다. 국가적 정체성과 사회적 통합만을 강조하면서 한두 개의 공용어나 국민어만을 지정하고 다른 소수자 언어들의 지위와 권리를 무시한다거나 언어 사용자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언어 사용을 규범의 이름으로 규제하려 한다면, 그러한 법적 규정은 차라리 없느니만 못한 골칫덩어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언어 관련 법적 규정이 이처럼 과도한 국가 개입주의의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특정 언어 및 언어 사용자의 배타적 특권만을 보장하거나 소수자 언어 및 언어 사용자의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되며, 비현실적이고 경직된 언어 규범의 적용을 언어 사용자에게 강제해서도 안 된다. 언어 관련 법적 규정이 그 필요성과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언어 사용의 사회성과 효율성뿐만 아니라 다원성과 자율성, 그리고 창의성에 대한 인식과 배려가 늘 함께 해야 하는 것이다.

5. 국어기본법의 언어 문제에 대한 개입, 그 의미와 한계

이 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국어기본법이 언어 문제에 대해 개입하는 영역과 방식을 살펴보고, 그 의미와 한계를 짚어보고자 한다.

5.1. 국어기본법의 법적 개입 영역과 의미

국어기본법(2005. 1. 27. 제정, 2008. 3. 28. 개정)에 구체적 조항으로 다루어진 법적 개입의 영역을 <표 5>의 ‘언어 문제 관련 법적 개입이 가능한 영역’ 틀에 넣어보면 다음과 같다.

대 영역	국어기본법 상의 조항
언어의 지위	제3조 제1항. “국어”라 함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6) 이광석(2004: 325-326)은 국가 기능(법과 질서의 유지에 있는가, 경제 발전의 강화에 있는가, 사회 복지의 제공에 있는가)을 한 축의 기준으로 삼고, 국가 권력의 구성과 행사 권한(모든 시민에게 개방되어 있는가, 소수의 통치 엘리트에게만 가능한가)을 다른 축의 기준으로 삼아 네 가지의 국가 유형을 나누고 그것이 ‘정복/약탈 국가’, ‘발전 국가’, ‘민주 국가’, ‘복지 국가’의 단계로 발전한다고 하는데, 근대의 발전 국가 단계에서는 국가의 개입이 특징적이고 정당화되는 반면에, 현대의 민주 국가 단계에서는 국가의 개입이 사적 분야에서는 물론이고 공적 분야에서도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입법	없음
사법	없음
공공 행정	<p>제14조 제1항. 공공기관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문자를 쓸 수 있다.</p> <p>제15조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람직한 국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p> <p>제15조 제2항.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등의 대중 매체는 국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경제	없음
교육	<p>제18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용 도서를 편찬하거나 검정 또는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문규범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p> <p>제19조 제1항. 국가는 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외동포(이하 “재외동포”라 한다)를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국어의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p>
언어적 권리	<p>제4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변화하는 언어사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국어능력의 향상과 지역어의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표 6> 국어기본법의 법적 개입 영역

위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국어기본법에는 입법, 사법, 경제 영역과 관련한 조항이 전혀 없으며, 언어적 권리 영역과 관련해서는 지역어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보다는 그 보전을 소극적으로 인정하는 정도의 매우 약화된 조항이 있을 뿐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얼마 전까지는 입법과 사법의 영역에서 한국어 이외의 언어가 사용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별로 없었으며, 경제 영역에서도 한국어가 아닌 언어의 사용은 극히 일부 집단으로 제한되었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일 수 있다. 언어적 권리 영역에서도 방언 등의 지역어에 대한 차별적 사고가 일반화되어 있었고, 이주민의 언어 문제를 이야기할 만큼 한국 사회의 인적 구성이 다양하지 않았다는 점이 약화된 조항을 만들어 내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국어기본법에는 다른 나라의 언어 관련 특별법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영역의 조항이 몇 가지 보인다. 먼저, 제6조의 ‘국어발전기본계획의 수립’과 제9조 ‘실태조사 등’에 관한 조항은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언어 정책의 제도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로 제시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음으로, 제11조의 ‘어문규범의 제정 등’, 제12조의 ‘어문규범의 영향평가’, 제18조의 ‘교과용 도서의 어문규범 준수’ 등의 조항은 언어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규범주의적 인식과 태도를 반영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23조의 ‘국어능력의 검정’이나 제24조의 ‘국어문화원의 지정 등’과 같은 조항은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는 별도의 제도 또는 조직 관련 법률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5.2. 국어기본법의 법적 개입 방식과 한계

위의 4.2절에서는 언어 관련 법적 규정이 과도한 국가 개입주의의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언어 사용의 사회성과 효율성뿐만 아니라 다원성과 자율성, 그리고 창의성에 대한 인식과 배려가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국어기본법이 언어 문제에 대해 개입하는 방식을 비판적으로 검토해보면 몇 가지 한계 또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사실, 국어기본법이 지닌 한계 또는 문제점은 그 법이 제정·공포되기 이전부터 많은 논란을 일으켰는데, 현재의 국어기본법은 그러한 논란의 과정에서 많은 부분 수정된 결과이다. 2003년 국어기본법 초안이 공개되었을 당시에 나온 비판의 주요 핵심은 국어기본법이 경직된 규범주의와 폐쇄적 민족주의에 기반한 순화의 논리로 언어의 창조적 사용을 억제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며(고길섭 2003:43-45), 어려운 전문용어나 외국어의 남용으로 발생하는 국민들의 언어 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나 지역어 사용자나 이주 노동자 등의 소수자 집단의 언어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부재하다는 것이었다(문성준 2003: 76-79).

이러한 비판의 과정에서 2003년 1월에 공개된 초안은 그해 7월에 중요한 수정을 겪은 후, 2005년 1월에야 현재의 모습을 갖게 되었는데, 그 변화의 주요 사항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03년 1월 초안	2003년 7월 수정안	2005년 1월 제정안 (2008년 3월 부분 개정안)
부재	제3조(국어의 명칭) 대한민국의 국어는 한국어(이하 “국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어”라 함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②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펴는, 국어의 보전과 발전을 위한 시책에 협력하고 일상 언어생활에서 아름답고 쉬운 우리말을 널리 쓰도록 힘써야 한다.	제7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② 국민은 일상 언어생활에서 바르고 쉬운 국어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삭제
제13조(국어의사용과 순화) ① 국민의 모든 언어생활은 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어문 규범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불필요한 한자어, 외래어, 새로 들어오는 외국어에 대하여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는 등 올바른 국어 사용 태도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워야 한다.	제14조(국어의 사용) 국민의 언어생활은 국어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국어의 순화) 국가는 어려운 한자어, 잘못 표기된 외래어, 분별없이 사용되는 외국어 등을 바르고 쉬운 국어로 순화하여야 한다.	삭제
제16조(교과용 도서) ①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국어에 관한 교과용 도서를 편찬·검정 및 인정	삭제	제18조(교과용 도서의 어문규범 준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9조의 규정에 의

하는 경우에 어문 규범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문화관광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한 교과용 도서를 편찬하거나 검정 또는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문 규범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제17조(어문 규범의 준수) ① 문화관광부 장관은 올바른 국어생활을 위하여 개인, 기업, 언론기관 등에 대하여 어문 규범을 적극적으로 준수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어문 규범에 어긋나는 국어 사용을 발견하였을 때에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 등의 대중 매체에서는 국어를 올바르게 사용하여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시정 요구)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공공기관 및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기간행물을 발간하는 언론사 등에 국민의 국어 사용과 관련하여 이를 권장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시정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 언론사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삭제
제22조(국제국어진흥원의 설립) ① 문화관광부 장관은 국어의 국외보급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제국어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함.)을 둔다.	제24조(국제국어진흥원의 설립)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국어의 국외보급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제국어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함.)을 둔다.	삭제
제23조(국어진흥기금의 설치) 국가는 국어 진흥을 위한 사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어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을 설치한다.	삭제	삭제
제2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삭제	삭제
제25조(기금의 관리·운용·용도) ① 기금은 문화관광부 장관이 관리·운용한다.	삭제	삭제
부제	제29조(지방 언어의 존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 언어를 존중하고 그 사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변화하는 언어사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국어능력의 향상과 지역어의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표 7> 국어기본법(안) 변화의 주요 사항

국어기본법이 제정·공포되기 이전의 비판이 규범주의적 강제와 언어 사용의 창조성과 자유 억압이라는 측면에서 주로 제기되었다면, 이 법이 제정·공포된 이후의 비판은 법조항의 추상성

과 수의성으로 인한 법 집행의 실효성 상실이라는 측면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되었다.

예를 들어, 제15조의 ‘국어 문화의 확산’은 그 조항이 너무나 선언적이고 모호해서 구체적인 효과가 의심스럽고, 제16조의 ‘국어 정보화의 촉진’은 그에 따라 취해야 할 조치를 명시하는 시행령이 없다는 점에서 역시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며, 이 법을 통해 새롭게 만들어진 제도의 대부분이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강력한 정책 추진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김세중 2005: 19-21).

이에 대해 국어기본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법에 근거한 정책의 추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 적용의 의무화하고 위반 시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특히, 송기형(2005: 213)은 상품화 분야를 중심으로 프랑스어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그 위반을 처벌하는 규정이 명시된 ‘프랑스어 사용법’과 비교하면서, 국어기본법에는 ‘공공기관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제14조 외에는 인위적인 규제가 없음을 지적하고, “국어 사용 유해 환경이 심각하게 악화된다면 인위적인 규제 또는 처벌을 추가하는 방향의 개정을 고려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제안한다.

하지만, 인위적 규제와 처벌 추가가 국어기본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할지는 의심스럽다. 상대적으로 인위적 규제와 처벌의 측면이 강한 프랑스어 사용법의 경우에도 ‘재화, 제품 또는 용역의 명칭, 제공, 소개, 사용법, 보증 기간과 조건의 기술 그리고 송장과 영수증에서 프랑스어를 의무적으로 사용한다.’고 규정한 상품화 관련 조항(제2조 제1항)에 대한 위반만이 처벌되었으며, 다른 조항들에 대한 위반을 처벌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다고 한다(송기형 2005: 197).

더구나 상품화 관련 조항의 경우에도 단속 대비 적발 비율이 감소하고 검찰 이첩의 건수도 대폭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데(송기형 2008: 77),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프랑스어 사용법이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오히려 프랑스어 사용법 위반에 대한 적발 및 처벌의 현실성이 떨어지고 그 의지도 감소한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소비자보호법에 의거해 상품화 분야에서의 프랑스어 사용의무 위반을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프랑스어 사용법이 필요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며, 1996년부터 매년 작성되는 ‘프랑스어 사용에 관한 대 의회 보고서’에서 프랑스어 사용법과 관련한 내용의 비중이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프랑스어 사용법의 위상과 실효성이 감소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6. 맺음말

법은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이라는 사전적 정의에서 예상되는 것처럼 그 자체로 인위적 규제와 그 위반에 대한 처벌을 포함하게 마련이다. 여기서 문제는 인위적 규제와 처벌이 필요한 부분과 제도적 지원과 장려가 필요한 부분을 제대로 가리는 것이 될 것이다. 과도한 규범주의가 언어 사용의 창조성과 자유를 억압한다는 점과 민간 부분에 대한 처벌 중심의 법적 개입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언어 관련 법적 규정의 기능을 다시 한 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어기본법이 적극적으로 참고했다는 프랑스어 사용법은 중요한 시사점을 주

고 있다. 프랑스어 사용법은 기본적으로 프랑스어, 더 나아가 프랑스의 지역어 사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것이지, 프랑스어의 규범적 사용을 강제하고 그 규정에서의 이탈을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프랑스어 사용법을 모범 사례로 하여 국어기본법에서도 규범주의적 강제력을 강화하고 처벌 규정을 삽입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프랑스어 사용법의 기본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다.

정작 국어기본법에서 강제력을 강화해야 할 부분은 언어의 규범적 사용이나 민간 부분의 언어 사용에 대한 처벌이라기보다는 한국어 사용자가 이해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공공 영역에서의 한국어 사용을 보장하는 것과 이주 노동자, 지역어 사용자 등의 언어적 소수자가 자신의 모어를 유지하고 언어로 인한 차별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 밖의 부분은 언어 사용자의 자율성과 창조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유연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 참고 문헌 ◇

- 고길섭(2003). “문화관광부의 언어정책 개혁방안.” 『“언어정책 60년 평가와 언어정책 개혁의 방향” 공개정책토론회 자료집(문화연대 등 주최, 2003. 8. 18. 국회의원회관)』 33-66.
- 김세중(2005). “국어기본법 시행의 의의.” 『새국어생활』 15-3, 7-23.
- 김세중 외(2005). “국어기본법과 그 시행령으로 도입되는 제도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하여.” 『새국어생활』 15-3, 67-112.
- 김진수(2001). “프랑스어 사용 관련법.” 『프랑스어문교육』 11, 27-51.
- 문성준(2003). “언어관련 법령 제정의 비판과 대안 - 국어기본법 제정(안)을 중심으로.” 『“언어정책 60년 평가와 언어정책 개혁의 방향” 공개정책토론회 자료집(문화연대 등 주최, 2003. 8. 18. 국회의원회관)』 67-107.
- 송기형(1999). “불어 사용법 연구 - 시행 지침을 중심으로.” 『교육한글』 11·12, 163-194.
- 송기형(2003). “프랑스어사용법 시행의 성과와 문제점.” 『프랑스학연구』 25, 487-504.
- 송기형(2005). “국어기본법과 프랑스어 사용법의 비교 연구.” 『한글』 269, 189-218.
- 송기형(2008). “프랑스어 사용에 관한 2007년도 대 의회 보고서’ 연구” 『한국프랑스학논집』 61, 69-90.
- 송기형·장친현(1999). “프랑스의 언어정책과 불어 사용법.” 『한국프랑스학논집』 27, 391-411.
- 이광석(2004). “어문정책, 민간화의 탐색.” 『한국행정학회 2004년도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324-343.
- 이광석(2006). “정책학의 관점에서 본 국어 정책의 의미와 방향.” 『한글』 271, 161-204.
- 이광석(2007). 『국어책임관 제도의 활성화 및 한국어진흥재단 설립방안』 서울: 국립국어원.
- 조태린(1998). 『일제시대의 언어정책과 언어운동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 조항록(2007). “국어기본법과 한국어교육 - 제정의 의의와 시행 이후 한국어 교육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18-2, 401-422.
- 진재교(2006). “‘국어기본법’과 한문교육의 방향 - 언어 내셔널리즘을 넘어.” 『한문교육연구』 27, 361-396.

- Gauthier, F., Leclerc, J. et Maurais, J. (éd.)(1993). *Langues et Constitutions - Recueil des clauses linguistiques des constitutions du monde*. Québec: Publications du Québec.
- Kibbee, D.A.(1998). *Legal and linguistic perspectives on language legislation*. in Kibbee, D.A.(ed.)(1998). *Language Legislation and Linguistic Rights*.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1-23.
- Marek, Y.(1998). *The philosophy of the French language legislation: Internal and international aspects*. in Kibbee, D.A.(ed.)(1998). *Language Legislation and Linguistic Rights*.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341-350.
- Spolsky, B.(2004). *Language Polic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wann, J.(1998). *Towards consensus? Standard English in the National Curriculum*. in Kibbee, D.A.(ed.)(1998). *Language Legislation and Linguistic Rights*.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68-83.

<Constitution Finder>, <http://confinder.richmond.edu/index.php>

<International Constitutional Law>, <http://www.servat.unibe.ch/law/icl/index.html>

<L'Aménagement linguistique dans le monde - Lois linguistiques>, <http://www.tlfq.ulaval.ca/axl/Langues/LOIS-LINGUISTIQUES-index.htm>

“언어 정책에서 법적 규정의 의미와 한계”에 대한 토론문

박 동 근 (건국대학교)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존의 기반을 마련해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어기본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시행 초기부터 그 실효성에 적지 않은 회의와 의구심이 제기된 바 있는데, 실제로 시행 3년이 지난 지금 국어 사용을 촉진하겠다는 당초이 목적이 얼마나 큰 성과를 거두었는지는 현재 주변의 국어 사용 실태를 보면 매우 회의적입니다. 국어의 현실적인 문제를 모두 <국어기본법>의 한계로 매도할 수는 없겠지만, 당초 취지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 문제점을 되짚어 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특히 본 연구에서 다른 나라의 언어 관련 입법 사례를 제공·분석한 것은 우리의 시야를 넓혀 주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전반적인 발표 내용은 요지의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지만, 토론자와 다소 생각이 다르거나, 발표자의 좀더 구체적인 고견을 듣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결론에서 발표자께서는 “과도한 규범주의가 언어 사용의 창조성과 자유를 억압한다는 점과 민간 부분에 대한 처벌 중심의 법적 개입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언어 관련 법적 규정의 기능을 다시 한 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언어 정책의 법적 규제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표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4.1의 언어 관련 법적 규정의 필요성에서 밝히고 있듯이 법은 지양하고자 하는 바를 억제하고 처벌할 수 있는 강제력이 동원될 때 정책적 효력이 드러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다분히 선언적인 현행 <국어기본법>은 실효를 거두는 데 한계가 있었고, 법 시행 3년이 지난 현재의 상황에서 국어 사용 실태나 국민의 언어에 대한 의식을 보면 그 한계가 어느 정도 증명되었다고 봅니다. 개인의 언어 사용을 법이 제재하는 것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에 위배되며 창조성을 제약한다는 점에서 부정적이지만 적어도 신문·방송·행정·교육 등의 공공 언어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높은 법적 제재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발표자께서는 법적 처벌의 부당한 근거로 <국어 기본법이> 참고한 프랑스어 사용법의 처벌 조항의 취지를 들고 계십니다. 즉 프랑스어 사용법에서 처벌 조항은 프랑스어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에 처벌을 규정한 것이지 프랑스어의 규범적 사용을 강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공공 언어에서 외래어·외국어를 오남용하거나 어려운 한자어의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일등 알 권리의 접근을 막는다는 점에서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듯합니다.

둘째, 2.1.에서 헌법에 언어 관련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국가는 그 내부에 언어로 인한 사회적 문제와 갈등이 발생하거나 내재하고 있는 경우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언어 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골이 깊은 축에 속하는 나라인지 아닌지에 대해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언어 사용에 대한 규정이 없지만 외국의 사례처럼 언어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적은지는 다소 의심스럽습니다. 적어도 다민족 단어로 사용에 대한 갈등은 없지만, 한글전용/한자 사용에 대한 지리한 논쟁이나 최근 영어 공용화 문제와 같은 현실적 문제나 남북한 언어 이질화 문제 등과 같은 잠재적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국어 기본법>이 갖는 근본적인 한계는 이 법이 한국인의 바람직한 언어 사용 환경에 대한 거시적인 규정이 아니라 ‘국어’에 한정된 미시적인 언어 사용에 대한 규정이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국어 기본법> 내에는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일련의 규정이 있으나, 얼마전 논란이 되었던 인수위의 영어 몰입식 교육에 대한 주장이나, 영어 몰입식 교육을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영어 공용화 추진과 같이 ‘국어 사용 촉진’에 결정적인 위해가 되는 주장에 대해서 <국어 기본법>의 국어에 한정된 규정은 아무런 방패막이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국어 기본법에 명시된 공용어로서 한국어의 지위는 상위법인 헌법에 명시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발표자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3부】

국어과 평가의 타당도 제고를 위한 문법 교육 방향

주 세 형 (서원대학교)

□ 차 례 □

1. 문제 제기
2.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연구 현황 개괄
3. '성취기준 - 평가 기준'의 비교 및 분석
4. 문항의 내용 타당도 분석: 문법 문항을 중심으로

1. 문제 제기

본 연구는 세 개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

첫째, 국어과 평가의 본질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평가가 교육에 종속적인 것으로 생각되어 온 적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교육이 평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경우가 더 많다. 평가가 교육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며 교육의 목표와 내용, 방법까지 지배하기도 한다. 심지어는 평가가 없으면 교육도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평가가 후속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의 세환 효과(washback effect)라고 하는데(이완기, 2007:29),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대학 입학에 관련된 평가의 중등교육에 대한 세환효과는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실로 심대하다.

그런데 이와 같은 비인간적인 입시 평가 제도를 비판만 하고 있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Heaton(1988:171)이나 Baker(1989:100)의 언급대로, 평가를 교육의 방향을 바꾸는 데 가장 유익하게 작용하는 힘으로, 또한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바꾸기 위한 효과적 방법으로 간주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이처럼 현실적으로 발상을 전환함으로써 교육의 질 개선에 성공한 사례가 있기도 하다¹⁾.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국어과 평가는 '실천을 제대로 견인할 수 있는 이론적 위상'을 지니도록 한 후, 국어과 본질에 부합하는 타당도 있는 평가 이론을 구체화²⁾할 필요가 있다.

1) 이스라엘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각 교육청별로 진단평가 실시를 기획하고 있는 것은, 평가의 세환 효과를 노려 공교육의 위기를 타개하고자 하는 의도도 일면 있다고 본다.

2) 그동안 평가 연구가 '연구'로서의 위상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이 근본 원인이었다(박인기, 2000). '현실적인 필요에 의거하여', '새로운 연구 경향이나 방법이 발견되면 이를 국어교육 각 영역에 적용해 보는' 방식으로 평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대단위로 시행된 검사 도구를 고찰하거나, 학교 현장의 시험 현황에 대해 조사하는 등 극히 실천적 국면을 기술하는 차원에 머물 뿐이었다는 한계도 지닌다. 즉, 또 다른 실천 장면을

교과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내용 타당도’는, 특정 평가 도구가 가르치고 배워야 할 내용을 정확히 평가하고 있는지(성태제, 1996:197)와 관련되는 타당도를 의미한다.

국어과는 평가 도구의 내용 타당도를 확보하기 어려운 교과로 간주된다. 국어과 평가 도구가 ‘타당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어 능력’ 이외의 다른 것을 측정해서는 안 되는데, 바로 이 평가해야 하는 ‘국어 능력’의 실체와 구성 요소를 확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어과 평가에서는 보통 차선책으로,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성취 기준 - 평가 기준’을 개발하고 그에 따라 평가 도구의 타당도를 높이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 도구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교수 학습 목표인 ‘성취 기준’을 적시하고 그에 따라 ‘평가 기준’을 타당하고 적확하게 설정하는 것이다.

본고에서 국어과 평가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성취 기준 - 평가 기준 분석 및 개발’에 무엇보다도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내려고 노력해 온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에 주목하려 하는데, 바로 이와 같은 현황에 기인한다.

둘째, 국어과 평가 연구는 전반적으로 부족한 형편이나, 기존의 연구물들은 한결같이 영역별로 구체성 있는 연구 성과물을 축적함으로써 평가 이론을 구축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국어과 영역 중에서도 ‘문법’은 평가 관련 연구가 가장 취약한 영역이다³⁾. 이제부터라도 국어과 평가 도구 개발에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 수준의 이론을 차분히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본고에서는 문법 영역을 출발점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문법 평가의 현황은 한마디로 이러하다. ‘시험’은 있었으나 평가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였고, 평가 도구를 제작하기 전에 점검해야 할 이론들이 없었던 셈이다. 즉 평가해야 할 문법 능력은 무엇이며, 그에 따라 어떠한 평가 도구를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다⁴⁾.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성취 기준 - 평가 기준’ 설정과 관련된 이론 구축이다.

셋째, 문법 영역만의 특화된 평가 연구도 중요하겠으나, 국어과 평가 전반의 연구가 취약한 현 시점에서는, ‘국어과 평가 맥락 전반을 고려할 때 문법 영역이 할 수 있는 역할’ 역시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문법 교육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은 그 자체로도 ‘국어과 평가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어과 평가 전반에 문법 영역의 역할을 강화하는 하나의 효율적인 방안으로, ‘국어과 전반의 성취 기준 - 평가 기준 개발’에 문법 교육 내용 요소를 적극적으로 포함시킬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로써 국어과 평가의 내용 타당도와 전문성을 제고하고, 문법 교육 입장에서 교과 내 위상을 강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개정 교육과정은 성취 기준과 내용 요소를 분리하여 제시하였기 때문에, 성취 기준에 부합하는 내용 요소를 얼마

해석할 수 있는 이론이 없기 때문에, 연구들이 일회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3) 이관규(2008)가 지적했듯이 아직도 ‘문법 교육의 필요성 및 위상’에 대한 연구들이 나오고 있는 현황이며, 교육 내용·교수 학습 방법에 대한 연구도 다양하지 못하다. 그나마 출간된 문법 평가 연구들도 ‘선발 도구로서의 평가’ 연구가 대부분이며, 평가의 본질 회복·평가 방법 다각화를 논의하고 있는 연구를 찾기 어렵다. 학습자의 국어 능력에 대한 정보를 얻음으로써 교수 학습 목표와 내용, 방법과 연계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제안되고 있는 ‘수행 평가’도 문법 영역 내에서는 보기 어려운 연구 주제이다.

4) 이러한 노력은 문법 교육 혁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문법 교육 혁신이 그동안 ‘문법 교육의 목표와 성격에 대한 필요성’ 및 ‘교수 학습 방법 혁신’에 대해 역설하며 현장 접근성을 높이려고 하였으나, 여전히 그 효과는 미미하다. 이에 좀 더 현실적인 방법을 취할 필요가 있는데, 문법 영역에서의 평가 내용과 방법을 구체화·다양화 하는 것이다.

든지 새로이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오히려 열어 놓았다고 보며, 이에 문법이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된다고 본다.

이제까지 논의한 문제의식들을 집약하여 관찰할 수 있는 연구 대상이 바로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이다.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성취 기준과 평가 기준을 개발·합의한 후 평가 도구가 개발되는 대표적인 평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이다. 국가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평가가 여러 종류가 있으나, 그 중에서 ‘학업 성취도 평가’에 주목하는 것은, 성취도 평가 그 자체의 취지가 교육과정 본질에 가장 부합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상적 평가 도구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국어과 평가의 본질을 회복하고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업 성취도 평가’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평가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⁵⁾⁶⁾,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평가 역시 이를 출발점으로 삼아 개혁해야 한다고 본다. 본고에서 ‘학업 성취도 평가’ 분석부터 연구 문제를 구성하기 시작한 것은 이에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지닌다.

첫째, 국어과 성취도 평가의 근거가 되는 성취 기준-평가 기준을 분석하고, 평가의 타당도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해 낸다.

둘째, 국어과 성취도 평가 문법 기출 문항을 분석하고, 평가의 타당도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해 낸다.

각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2005년~2007년도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연구 체계 현황을 개괄한다. 3장에서는 현 성취도 평가가 근거하고 있는 국어과 성취 기준 - 평가 기준을 비교 분석한다. 4장에서는 문법 기출 문항을 중심으로 대표성 있는 것 골라, 내용 타당도 및 문항 유형의 다양성을 분석·논의하게 될 것이다.

2.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연구 현황 개괄⁷⁾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어과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는, 김명숙 외(1998)에 의해 수립된 ‘국가수준 교육성취도 평가 기본 계획’ 및 이양락 외(2005)에서 확정된 국어과 평가틀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이후 2002년에 명칭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로 변경하였고 2003년(국어과는 2004년이 기준 원년)에 척도점수 체계를 통한 성취도 추이 파악 방법을 취하게 되었고, 2006년에 초·중·고 표집 비율이 3%로 증가⁸⁾하였다⁹⁾. 그러나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변함

5) 국어교육학에서도 이제 ‘평가 전반’에 대한 연구는 어느 정도 축적되었다고 보고 있으니, 여기에서는 논외로 하려 한다. ‘영역별 구체적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는 문제의식을 구성하려고 한다.

6) 교육의 정상화가 ‘교육과정의 제대로 된 실행’임을 전제할 때, ‘평가 이전까지는 교육과정을 고려했다가, 평가에서는 교육과정과는 상관이 없는 수능보다는(수능의 경우는 평가가 학교 현장을 왜곡하는 대표적인 경우) 학업성취도 평가가 현장을 제대로 견인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

7) 이 장의 내용은 현재 학업성취도 평가를 직접 주관하고 있는 연구자의 논문(남민우, 2008)을 참고하여 요약, 정리한 것이다.

8) 2008년 표집 비율은 초중고 각각 4.5-5%가 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 없다(조지민 외, 2007).

- ① 초·중·고 학생의 국어과 학업성취도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진단하여 학생성취도의 변화 추이를 파악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개발하는 기본적 증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 ② 교육과정에 규정된 국어과 교육목표에 비추어 학생들이 어느 정도 그 목표에 도달하였는지 파악함으로써 교육과정의 문제점과 정착 정도를 파악하고 교육과정 개선에 기초가 되는 참고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③ 문항 분석, 학업성취도와 배경변인과의 관련성 분석을 통해 교수·학습 방법 개선 및 장학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산출한다.
- ④ 참신하고 타당한 평가도구를 개발하여 공개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평가 방법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국어과 평가도구는 2002년에 확정(정구향 외:2003)되고 2004년에 수정(이양락 외:2005)된 성취기준 및 평가틀에 입각하여 학교급별 출제위원·검토위원(2007년까지 각각 4명, 3명, 2008년에는 각각 5명, 3명)이 재택 출제 및 합숙 선제·수정 과정을 통해 개발된다(조지민 외, 2007).

국어과 학업성취도 평가틀은 다음과 같다.

■ 내용 영역

구분	듣기	읽기	쓰기	국어지식	문학	계
문항수 (선다/수행평가형)	6(4/2)	12(10/2)	6(4/2)	6(4/2)	10(8/2)	40(30/10)

■ 행동 영역

영역	듣기, 읽기				쓰기				국어지식						문학							
	항목	말 이해	내용 확인	추론	평가와 감상	내용 생성	내용 조직	표현	고쳐 쓰기	국어의 본질	음운	어휘	문장	의미	담화	국어 규범과 적용	문학의 본질	작품의 미적 구조	작품의 창조적 재구성	작품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상황	문학의 창작	문학 수용의 태도

9) 특히 연도 간 학업성취도 변화 추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2003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기준 연도로 설정하고, 2004년에 척도화 및 검사 동등화를 위한 방법과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2005년은 연도 간 학업성취도 변화 추이 분석이 3년째에 이르는 해로, 이제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시행 및 분석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 2005년 자료부터 분석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 그 밖의 사항

- 2종의 평가지(A, B형) 개발
- B형의 13개 문항을 연도간 동등화를 위한 공통 문항(link items)
- 예비검사(7월 시행)를 거쳐 매년 10월 확정된 평가도구 시행
- 시험 시간: 초등학교 60분,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70분.
- 점수 배점: 만점은 70점 기준, 선다형 30개 모두 1.5점, 수행형 10개 중 2점과 3점 문항이 각각 5개

3. '성취기준 - 평가 기준'의 비교 및 분석

진술했듯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¹⁰⁾는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그에 따라 개발된 성취 기준을 평가의 준거로 삼았다. 정구향 외(2001)에 의하면, 교육과정에 근거한 성취 기준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과별 교육 목표와 내용을 일반적으로 이수한 해당 학년 학생의 대다수가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평가의 목표를 구체화한 것인데, 그는 '교과 교육의 목표에 비추어 학생들이 알아야 할 것과 할 수 있는 것의 범위와 깊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성취 기준을 정의하고 있다. 성취 기준의 개발 절차는 다음과 같다.

성취 기준의 개발 절차

1) 교육과정의 분석(교육 내용 본질 규명) → 성취기준 개발 영역(대상) 설정 → 성취기준의 개발(초안 작성) → 성취기준에 대한 합의 도출

최미숙 외(1998)에서는 교육과정 항목에서 성취기준을 도출하는 세 가지 방법을 제안한다.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방법, 교육 '내용'에 제한을 가하는 방법, '행동' 용어를 제한하거나 구체화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제7차 국어과 성취 기준은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 체계를 해석하여, '내용 + 행동'의 성취 기준 형태로 재진술하는 쪽으로 개발되었다. 재진술의 방향은 교육과정의 상세화(교수 활동의 지침이 되기에는 단위가 큰 경우 상세화), 구체화(내용만 제시된 경우나 '내용 + 행동'으로 진술되어 있어도, 그 의미가 명료하지 않은 경우 명료화), 그리고 통합화(교육과정상에서는 다른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어도 실제적인 교수 학습 상황에서는 분리될 수 없는 학습 요소의 통합, 지나치게 세분화된 성취 기준의 통합)로 요약될 수 있다.

성취도 평가를 위한 성취기준 역시 대체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구체화되었는데, 이를 그대로 평가기준으로 쓰기에는 여전히 적절치 않다. 성취기준은 교사와 학생의 교수 학습 과정을 안내하는 지침 역할을 할 수는 있으나, 개별 학생이 어떤 영역에서 어느 정도 성취했는가를 판단하는 데 구체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 평가할 수 있는 내용 요소 및 행동 요소를 평가

10) 이하 '성취도 평가'

기준에서는 더욱 정확히 적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성취기준에 따른 평가가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취기준과 더불어 개별 학생들이 이를 어느 정도 성취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준거, 즉 평가기준이 필요하다.

평가기준이란 평가 영역별로 학생들의 성취정도를 판정하는 데 실질적인 지침이 되도록 평가 영역별 성취기준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재구성하여 진술한 것이다. 교육과정에 근거해 개발된 평가 기준은 학생들 간의 상대적인 비교를 지양하고, 교육과정에 근거를 둔 교수 학습 활동과 평가 활동을 지향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따라서 평가기준은 1) 평가 활동의 실질적인 기준 2) 수업의 효과 판단 3) 성취 정도의 수준별 차별화 기준, 4) 평가 결과의 해석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될 필요가 있다¹¹⁾. 평가 기준의 일반적인 개발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성취 기준을 분석하여 평가 내용의 본질을 규명한다.
- 2) 평가하고자 하는 평가 영역을 결정한다.
- 3) 교수 학습과 평가 환경을 분석한다.
- 4) 평가 기준을 개발한다.
- 5) 평가기준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다.

국어과 성취기준과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개발되었다(이하 조지민 외, 2006:24).

- ①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지향하는 교육목표에 기초하여 개발하도록 하였다.
- ②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설정하고 있는 평가 영역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여 성취기준을 개발하도록 하였다. 국어과 교육 내용과 목표를 분석하여 이를 평가 영역과 적절하게 연계시킴으로써 국어과의 교수 학습 상황을 제대로 진단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준이 되도록 하였다.
- ③ 성취기준은 국어과에서 반드시 평가하여야 할 교육목표와 교육 내용의 수량을 고려하여 그것이 제대로 평가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국어과에서는 초, 중, 고등학교 모두 듣기와 읽기, 쓰기, 국어지식, 문학의 5개 평가 영역에서 각 6-12개를 개발하여 합계 40개의 성취기준을 개발하였다. 듣기 영역을 내용 확인, 추론, 평가와 감상 3개 영역으로 세분, 읽기 영역은 낱말 이해, 내용 확인, 추론, 평가와 감상 4개 영역으로 세분화하였다. 쓰기 영역은 내용 생성, 내용 조직, 표현, 고쳐 쓰기의 4개 영역으로 세분하였으며, 국어지식은 국어의 본질, 어휘, 문장, 의미, 담화, 국어 규범과 적용의 6개 영역으로 구분하였고, 문학에서는 문학의 본질, 미적 구조, 창조적 재구성, 사회 문화적 양상, 문학 창작의 5영역으로 세분하

11) 평가 기준은 ‘채점기준’보다는 포괄적으로 개발된다. 평가 기준은 평가의 세부 활동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진술되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실질적인 기준의 역할을 한다는 의미는 모든 활동에 대한 ‘세부적’ 지침을 제공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일련의 세부 활동들의 방향을 정하여 주고 선택에 대한 근거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예컨대, 채점 기준은 구체적인 채점 활동의 지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세세하게 모든 예측 가능한 사태를 포괄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하나, 평가기준은 채점 기준을 작성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필수요건, 강조점, 평가 목표 등에 대한 기본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해줌으로써 채점기준 설정의 이론적 혹은 경험적 근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진술되어야 하는 것이다.

여 무엇을 평가하려고 하는지를 보다 구체화하여 제시하였다. 평가 기준은 성취기준별로 그 수준을 구분하여 상·중·하의 3개 등급으로 진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¹²⁾.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학업성취도를 위한 성취 기준·평가 기준이 설정되었는데, 이를 [부록]에 학교급별로 정리해 두었다¹³⁾.

국어과 학업 성취도 평가를 위한 성취 기준 - 평가 기준 일람표를 참고해 보면, 성취기준과 평가기준을 비교해 볼 때, 많은 부분이 재진술·구체화되었다. 성취기준과 달라진 부분이 발견되는 평가 기준을 식별해 내고, 그 차이점을 유형화해 보았다. 그 결과, 평가 기준은 성취 기준에 비해 세 가지 특성을 지닌다고 판단된다. 객관적으로 식별할 수 없는 행위를 식별 가능하고 평가 문항화 할 수 있는 행위로 구체화하거나, 평가 대상 언어 자료나 활동의 조건을 구체화하거나, 내용 요소(지식)를 구체화하여 평가할 내용을 적시하고 있었다. 평가 기준을 유형화한 것이 아니라 ‘성취기준과 비교 되는 차이점과 특성’을 대상으로 유형화한 것이기 때문에, 개개의 평가 기준은 두 개 이상의 특성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1) 확인 가능한 평가 행위 요소로 구체화

확연히 관찰될 수 있는 행위가 진술된 평가 기준이 주어지면, 평가 문항 제작자가 타당한 문항을 제작하기가 수월해진다. 따라서 성취 기준에서 포괄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행동 요소를, 평가 기준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행위 요소로 재진술하게 된다. 특히 문법 영역 성취 기준의 경우, 문법 내용 요소와 행동 요소가 단순히 결합한 경우가 많다. 게다가 행동 요소가 평가 문항으로 제작하기에는 여전히 포괄적이어서, 행동 요소가 재진술된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경우를 몇 개를 제시해 보았다.

①	초- 국어 지식	28. (의미) 낱말과 낱말 사이의 유의 관계, 반의 관계, 하의 관계를 이해한다.	유의 관계와 반의 관계, 하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낱말을 찾아 말할 수 있다.
---	----------------	--	--

①의 경우 성취 기준에 기술된 행동 요소는 ‘이해’로, 학습자의 이해 정도를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는 없으므로 구체적으로 관찰 가능한 행위로 바꾸어 진술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자료를 주고 ‘찾아 말하라’는 행위로 바꾸어 평가 기준을 진술하고 있다.

②	초- 국어 지식	30. (국어 규범과 적용) 표준 발음법에 맞게 발음할 수 있다.	표준 발음법에 맞게 발음하고, 잘못된 발음을 찾아 고칠 수 있다.
---	----------------	--------------------------------------	--------------------------------------

②의 경우 성취 기준에 기술된 행동 요소인 ‘발음하다’는 평가 문항에서 구현될 수 없는 행

12)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에 대해서는 깊이 분석하지 않았다.

13) 실제 문항 개발 과정에서는, 2004년에 도입된 학업성취도 추이 분석을 위한 동등화 설계 방법(김경희 외:1999, 박정 외:2006)에 따라 문항 난이도를 유지할 필요성 때문에, 성취기준보다 구체적인 평가기준에 준거한다. 예를 들어, 고1의 성취기준1에 대해 2004년에 개발된 문항이 평가기준 ‘중’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후에서는 성취기준1의 문항은 성취기준1의 평가기준 ‘중’에 준거하여 개발하고 있다. 다른 성취기준들도 마찬가지이다(남민우, 2008).

위이다. 그러므로 평가 기준에서는 ‘잘못 발음한 언어 자료’를 제시하고 이를 ‘고치도록’ 진술하고 있다.

③	중- 국어지 식	27. (날말) 품사의 분류 기준과 각 품사의 특성을 이해한다.	품사의 분류 기준에 따라 날말을 분류할 수 있다.
---	----------------	-------------------------------------	-----------------------------

③은 ①과 마찬가지로 행동 요소가 ‘이해’이다. 내용 요소인 ‘품사의 분류 기준과 각 품사의 특성’을 ‘이해’하게 되면 ‘분류’가 가능하게 되므로 이를 평가 기준으로 진술하였다.

④	고- 국어지 식	28. (담화) 담화 장면에 따라 표현 방식을 달리 할 수 있다.	담화 장면에 따라 표현 방식을 달리하고, 그 효과를 설명할 수 있다.
---	----------------	--------------------------------------	--

④의 경우, 문면에는 드러나지 않았으나 성취 기준의 행동 요소는 ‘사용하다’이며, 이 행동 요소에는 ‘지식 이해’가 포함되어 있다. ‘담화 장면에 따라 표현 방식을 달리 사용할 수 있다’는 행위는 평가 장면에서는 관찰될 수 없다. 그렇기에 평가 기준에서는 ‘달라진 표현 방식의 효과를 설명하는 것’을 추가한 것이다. 효과를 설명하게 되면 학습자가 이에 대해 지니고 있는 지식 역시 활용하게 되므로, ‘지식에 대한 이해’ 역시 측정하게 되는 것이다.

⑤	중- 쓰기	19. (내용 생성) 필요한 자료를 선별하고 정리하여 글을 쓸 수 있다.	글쓰기의 상황을 고려하여 자료를 수집, 선별, 정리해서 글을 쓰고, 자료 선정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다.
---	----------	--	---

문법 영역 이외에도 이러한 특성은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쓰기 영역에 해당하는 ⑤의 경우, 성취 기준에서 기술하고 있는 행동 요소는 ‘선별→정리→쓰다’로, 하나의 평가 문항에서 이를 모두 제대로 관찰하고 측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평가 기준에서 ‘자료 선정의 적절성을 판단하도록’ 하는 행동 요소로 재진술하여, 평가 문항을 구성하기 수월하게 한 것이다.

2) 평가 문항에서 구현할 언어 자료·활동 조건을 구체화

1)에서 살펴보았듯이, 평가 기준은 평가 문항 출제자가 측정 및 식별이 가능한 행동 요소로 재진술해야 한다. 그런데 행동 요소의 구체화로도 평가 문항 구성이 여전히 모호한 경우가 있다. 이 때 행동 요소의 재진술과 동시에 언어 자료나 활동 조건을 구체화하는 경우가 있다. 이로써 문항 출제자는 평가 기준을 통하여 구성해야 할 평가 문항에 대한 정보를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 낼 수 있다.

①	초- 국어지 식	25. (문장) 문장 성분의 기능을 이해한다.	여러 문장에서 같은 기능을 담당하는 성분을 찾아 그 구실을 설명할 수 있다.
---	----------------	---------------------------	--

②	초- 국어지 식	26. (문장) 시제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	주어진 글에서 시간을 표현하는 말을 찾아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눌 수 있다.
---	----------------	----------------------------	---

①과 ②의 성취 기준은 ‘문장 성분의 기능, 시제’라는 문법 내용 요소가 ‘이해, 바르게 사용’이라는 행동 요소와 단순히 결합한 경우이다. 1)에서 설명된 사례와 같이 성취 기준의 행동 요소가 ‘이해, 사용’이므로 평가 기준에서 이를 재진술해야 한다. 그러나 이에 더하여 여기에서는 평가 문항이 구성해야 할 언어 자료 및 활동 조건을 구체화하고 있다. ①에서는 ‘여러 문장’을 언어 자료로 제공해야 하는 지침과, ‘같은 기능을 담당하는 성분을 찾으려’ 하는 문항에서 제공되어야 할 활동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②에서는 ‘글’을 언어 자료로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③	초-읽기	7. (낱말 이해) 국어사전에서 낱말의 뜻을 찾을 수 있다.	어려운 낱말을 국어사전에서 찾고, 여러 가지 뜻 중에서 문맥에 가장 적절한 의미를 골라 낼 수 있다.
---	------	-----------------------------------	--

③의 경우 성취 기준에서의 행동 요소인 ‘찾다’가 측정 불가능한 행위이므로 그에 따라 평가 기준의 행위를 ‘가장 적절한 의미 고르기’로 재진술하면서, 평가 문항에서 구현할 언어 활동의 조건 역시 성취 기준에 비해 훨씬 구체화된 경우이다.

④	중-문학	31. (문학의 본질) 한국 문학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이해한다.	한국 문학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대표적인 작품을 예로 들어 설명할 수 있다.
---	------	--------------------------------------	--

④의 경우 성취 기준에서 지나치게 포괄적인 범위의 언어 자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평가 기준으로 하기는 어렵다. 그리하여 ‘대표적인 작품을 예를 들 것’으로 언어 자료의 범위를 한정하여 평가 기준을 재진술하고 있다.

⑤	고-문학	35. (작품의 창조적 재구성) 다양한 시각과 방법으로 문학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할 수 있다.	같은 작품을 다양한 시각과 방법으로 해석하고 평가한 후, 각 관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다.
---	------	--	---

⑤의 경우는 성취기준을 그대로 평가기준으로 설정한다고 하면, 평가 요소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며 불분명하게 된다. 문학 작품의 해석·평가 행위 자체가 정답을 확정하거나 수행형 문항의 채점 기준을 확정하기 어려운 데다가, ‘다양한 시각과 방법’을 활용할 것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언어 자료와 활동 조건을 구체화하여 평가 기준을 재진술함으로써 문항 구성 방향의 틀을 정확히 제공하고 있다.

⑥	고-문학	39. (문학의 창작)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정리하여 문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정리하여 적절한 갈래를 정해 문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	------	--	--

⑥ 역시 ‘문학적으로 표현한다’라는 부분이 특히 포괄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이를 평가기준으로 재진술할 경우 구체적으로 기술할 필요가 있다. 이에 여기에서는 ‘적절한 갈래를 정해’라는 활동의 조건을 줌으로써 평가기준으로 재진술하였다.

3) 내용 요소 구체화

①	중-읽기	11. (추론) 글쓴이의 의도나 목적을 파악하며 글을 읽을 수 있다.	글의 내용이나 자신의 배경 지식에 비추어 글쓴이의 의도나 목적을 파악하며 읽고, 그렇게 파악한 근거를 설명할 수 있다.
---	------	--	--

①의 성취 기준에서는 ‘글쓴이의 의도나 목적을 파악한다’는 내용 요소가, 평가 문항으로 구성하기에는 포괄적이다. 그리하여 평가 기준에서는 ‘글의 내용이나 자신의 배경 지식에 비추어’라는 단서를 덧붙여 실상 측정하는 내용 요소를 한정하고 있는 셈이 되었다.

②	초-읽기	10. (내용 확인) 글을 읽고, 사실을 나타내는 부분과 의견을 나타내는 부분을 구별할 수 있다.	글을 읽고, 사실을 나타내는 문장과 의견을 나타내는 문장을 구별할 수 있다.
---	------	--	--

②의 경우 평가 기준에서 재진술된 부분은 ‘문장’이다. 그러나 성취 기준에서 포괄적으로 제시된 ‘부분’이라는 용어를 평가 기준에서는 ‘문장’으로 바꾸어 제시한 것은, 성취 기준에서 이루어지는 언어 활동에서 초점을 단순히 구체화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평가 기준에서 측정하려는 ‘내용 요소’는 ‘언어적 근거’에 기반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취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는 활동에서의 학습자는 언어 요인에 많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평가 기준에 따라 문항에 접근할 경우에는 좀 더 구체적인 언어 지식을 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③	초-읽기	15. (추론) 글을 읽고, 알맞은 제목을 붙일 수 있다.	글을 읽고, 글감, 주제, 글쓴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제목을 붙일 수 있다.
---	------	----------------------------------	---

④	초-쓰기	24. (고쳐 쓰기)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 낱말이나 문장을 고쳐 쓸 수 있다.	표현의 효과를 고려하여 낱말이나 문장을 찾아 알맞게 고쳐 쓰고, 그 효과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	---	--

③의 평가 기준에서는 ‘글감, 주제, 글 쓴 목적을 고려하여’라는 요인을 덧붙임으로써 ‘제목 붙이기’ 활동에 동원되는 내용 요소를 구체화하고 이를 평가 문항으로 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④도 ③과 비슷한 논리로 평가 기준이 재진술된 경우이다. 성취 기준에서 다소 포괄적으로 기술된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판단을, 평가 기준에서는 ‘표현의 효과를 고려’하라는 구체적 기준에 근거하도록 함으로써, 평가 문항을 구성할 때 초점화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⑤	초-듣기	2. (내용 확인) 이야기를 듣고, 여러 가지 표현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이야기를 듣고, 여러 가지 표현(속담, 관용 표현, 격언, 명언 등)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	------	---	---

⑥	중-쓰기	22. (표현) 문법에 맞게 글을 쓸 수 있다.	우리말의 문법(어순, 문법 요소의 쓰임, 호응 관계 등)에 맞게 글을 쓸 수 있다.
---	------	----------------------------	--

⑦	중 - 쓰기	24. (고쳐쓰기)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을 고쳐쓸 수 있다.	주제에서 벗어난 낱말, 어구, 문장, 문단을 찾아 고쳐 쓰고, 고쳐 쓴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	--------	-----------------------------------	---

⑤, ⑥, ⑦ 공히, ‘여러 가지 표현’, ‘문법’,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 등, 성취 기준에서는 다소 포괄적으로 기술된 내용 요소를 평가 기준에서는 내용 요소의 범위를 한정함으로써 평가 문항 구성의 방향을 구체화하고 있다.

⑧	고 - 듣기	5. (평가와 감상) 들은 내용의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다.	이야기를 듣고, 내용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
---	--------	-----------------------------------	-------------------------------

⑧의 성취 기준에서의 ‘내용의 타당성’은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빠짐없이 등장함에도 아직까지 논란의 여지가 많은 개념이다. 그에 따라 이 평가기준에서는 ‘옳고 그름’이라는 용어로 내용 요소를 구체화함으로써 평가 문항 구성 방향을 확정하고 있다.

이제까지 살펴본 바를 정리할 때, 세 가지 정도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성취 기준’은 포괄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평가 기준’을 구성할 경우 유의해야 할 점이 많다는 것을 주목해 볼 수 있었다. 평가 기준 구성할 시에는 문항 제작자가 측정할 내용 요소와 행동 요소를 명확히 적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채점 기준 수준만큼 작위성을 떨 필요까지는 없다지만, 평가할 내용 요소가 명확하지 않아 문항 도구 제작자는 이전 기출 문제 유형을 어쩔 수 없이 답습하거나, 평가 기준에 대한 잘못된 해석은 야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평가 기준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내용 요소나 지식’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경우, 향후 문법 교육에서 내용 요소를 개발하여 구체화의 가능성과 다양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것이 발견된다. 타 영역의 성취기준·평가기준이기는 하나 마땅히 ‘평가 문항으로 구성할 내용’이 부족하거나 근거가 없는 예를 ‘국어지식’ 영역의 내용으로 이를 채워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3)의 ①②③④ 모두가 그러한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정치하게 연구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셋째, 문법 영역의 경우, 성취 기준과 평가 기준이 타 영역에 비해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발견된다. 성취 기준은 학습해야 할 내용 요소인 문법 지식에 대표격인 행동 요소인 ‘이해’가 단순 결합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나머지는 ‘이해’를 전제로 한 행동 요소인, ‘바르게 사용하다’는 행동 요소가 결합하는 경우이다. 물론 문법 영역이 지식 이해를 본질로 하고 있기는 하나, 지식을 탐구하고 평가하는 ‘사고력 평가의 틀’은 원천 봉쇄하고 있다는 점이 아쉽다.

4. 문항의 내용 타당도 분석¹⁴⁾: 문법 문항을 중심으로

성취도 평가 문항에 대해서는 시행 기관인 평가원에서 간행하는 연도별 결과 보고서에 자세히 분석되어 있다. 그럼에도 연구자가 이를 ‘참고하지 않고’ 여기에서 새삼스럽게 분석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다. 일차적인 이유는, 문항 분석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스스로 도출하여, 이후 독자적 문법 평가 이론을 구성하는 데 기반을 닦기 위함에 있다. 그러나 좀 더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는데, 막대한 예산과 노력을 들여 개발하고 시행한 ‘평가 도구’에 대해, 다양한 ‘해석과 평가’가 수반되지 않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

여기에서는 문법 영역을 평가 기준으로 하는 문항을 중심으로, 문항의 내용 타당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즉, 해당 문항이 묻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묻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또한 문법이 평가 기준은 아니지만 충분히 문법과 관련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는 문항도 일부 살펴보고자 한다. 이로써, 문법 영역 자체의 평가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해낼 뿐만 아니라, 또한 국어과 평가 전반의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후 문법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앞서 2장에서 언급했듯이 각 학교급별 평가에서 문법 영역이 차지하는 문항 수는, 선다형 4 문항과 수행형 2문항씩이다. 지면 관계상 여기에서 모든 문항을 다 세세히 분석할 수는 없으나, 연구자가 파악한 몇 가지 경향에 대표되는 문항을 예로 들며 분석하도록 하겠다.

1) 대학 수학 능력시험에 비해 강화·확장되어 있는 문법 내용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 있으나 수능에서는 절대로 평가하지 않는 범위의 문법 내용 요소들이 있다. 그러나 성취도 평가에서는 이들을 평가한다. 교육과정 내용을 분석한 결과로써 성취 기준·평가 기준을 설정한 후 그에 맞추어 문항 수와 유형이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 할 것이다. 성취도 평가에서 국어 능력을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문법 문항’을 개발하고 축적해 나아간다면, 학교 현장에서 문법 교육의 정상화를 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학교 교수 학습 현장을 강력히 견인하는 대입 시험을 변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여기에서는 세 개 문항을 살펴본다.

첫 번째로 살펴볼 2007년도 고등학교 선다형 19번 문제는, 문법적 개념이 직접적으로 제시되고 그에 근거하여 언어 자료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분명히 국어과 교육과정에는 등장하

14) 각 문항에 대한 정답률·변별도와 그에 대한 분석은 연도별 결과 보고서를 참고할 수 있다. 참고로, 2005년도 보고서에 나타난 문항 내용 분석 결과를 보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평가 문항 대부분(변별도가 낮게 나타난 문항은 초등학교 한 문항, 중학교·고등학교 각 두 문항이었음)이 변별력이 있거나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은 정답률과 변별도를 고려할 때 대체적으로 선다형 문항보다는 수행평가 문항에 다소 약점을 지니고 있으며, 우수한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 간의 차이가 수행평가 문항에서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내용 영역별 정답률을 보면, 쓰기와 국어지식, 문학 영역 평균 정답률이 다른 영역에 비해 많은 차이를 보인다. 특히 중학교는 문학과 듣기 영역의 평균 정답률 차이가 15.3점, 고등학교의 경우는 22.61점이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모든 학교급에서 국어지식 영역 평균 정답률은 낮다.

행동영역별 정답률을 비교해 보면, 4개 이상의 문항들이 출제된 행동영역 중 ‘추론하기’가 가장 높은 평균 정답률을 보이고 있으며, ‘평가와 감상하기’가 가장 낮은 정답률을 보이고 있다. 4개 이하의 문항이 출제된 행동영역 중에서는 ‘고쳐쓰기’가 가장 낮은 정답률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국어지식 및 문학 영역 평균 정답률이 낮은 것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수능 문항에서는 문법적 개념을 노출하지 않으려 한다. 이를 고려할 때, 아래 문항의 경우는 문항의 내용 타당도를 차치하더라도 일단 학교 현장에 대한 계도 효과가 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즉 현장에서는 학습자로 하여금 문법 개념을 설명한 자료가 병행하더라도, 언어 현상에서 해당 문법 개념을 파악해 내는 능력 정도는 갖추도록 교수 학습해야 교육과정을 제대로 실행하는 것이라는 계도 효과가 있는 것이다.

----- 2007-고등-선다형 19 -----

◆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을 설명하기 위한 예문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주어가 동작을 제 힘으로 하는 것을 능동이라 하고,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서 동작을 당하게 되는 것을 피동이라고 한다. 그런데 국어에서는 피동사가 있는 능동사보다 피동사가 없는 능동사가 훨씬 많다. 그래서 능동 표현과 피동 표현 모두가 가능한 동사는 드물고, 능동을 피동으로 또는 피동을 능동으로 바꾸지 못하거나, 바꾸었을 때는 그 의미가 달라지거나 어색한 경우가 많다.

- ① 포수가 토끼를 잡았다.
→ 토끼가 포수에게 잡혔다.
- ② 어머니가 아기를 안았다.
→ 아기가 어머니에게 안겼다.
- ③ 개구리가 파리를 먹었다.
→ 파리가 개구리에게 먹혔다.
- ④ 반장 선거에서 윤수는 진아에게 밀렸다.
→ 반장 선거에서 진아가 윤수를 밀었다.
- ⑤ 내가 아플 때마다 나는 누이에게 업혔다.
→ 내가 아플 때마다 누이는 나를 업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문항은 2005년도 중학교 선다형 15번 문항이다. 앞서 살펴본 2007년도 고등학교 선다형 19번 문제는 기본적 개념을 자료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개념적 지식을 숙지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은어’에 대한 개념적 지식이 선행되어야만 풀 수 있다. 답지 자체가 ‘은어’의 특성을 진술하고 있어 학습자 자신이 지니고 있는 개념적 지식에 근거하여 정답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문항 유형이 그러하다는 것이지, 실제로 학습자가 은어에 대한 개념적 지식이 없더라도 이 문제는 쉽게 풀 수는 있다. 답지 ①②③④의 의미가 다소 간접하여, 결국 서로 비슷한 속성을 진술하고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어찌되었든 수능에서는 이러한 유형, 즉 ‘기본적인 문법 개념’을 미리 숙지하여야만 풀 수 있는 유형의 문항은 좀처럼 등장하지 않는다.

◆ 다음과 같은 단어들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야리(담배), 큰집(감옥), 깔삼하다(멋져 보인다), 뿌리다(흠치다)

- ① 폐쇄적이고 암호의 성격을 띤다.
- ② 단어를 사용하는 구성원 간의 강한 유대감을 형성시킨다.
- ③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통용되는 단어이다.
- ④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이해하기 어려워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
- ⑤ 어법에서 벗어나며 상대를 얕잡아 보거나 경멸할 때 주로 쓰는 단어이다.

세 번째로 살펴볼 문항은 2007년도 중학교 수행평가 7번 문항이다. 이 문항은, 이제까지 수능에서는 시도조차 한 적이 없는 ‘탐구 학습’ 관련 문항이다. 문법 탐구 능력은 문법 교수 학습을 개선하기 위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시도되어야 함이 학문적으로는 역설되었지만, 실제로 입시 문제에서는 전혀 고려된 바가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 교사들은 문법 탐구 수업을 고려조차 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¹⁵⁾. 이러한 상황에서 아래 문항은 현장 교사에 대한 평가 연수 효과도 지닐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문항의 틀은 탐구 학습이긴 하나, 문항을 접한 학습자가 과연 실제로 문항에 제시된 탐구 과정을 일일이 점검하며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 2007-중학-[수행평가7] -----

◆ 철수는 제시된 낱말들을 <탐구 과정>을 통해 분류하려고 한다. ①~③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3점)

<탐구 과정>

- 문제 상황 : ‘책가방’, ‘병아리’, ‘멋쟁이’, ‘맨손’, ‘물병’, ‘다리’를 낱말의 형성 방법에 따라 분류하기

탐구 과정1
낱말이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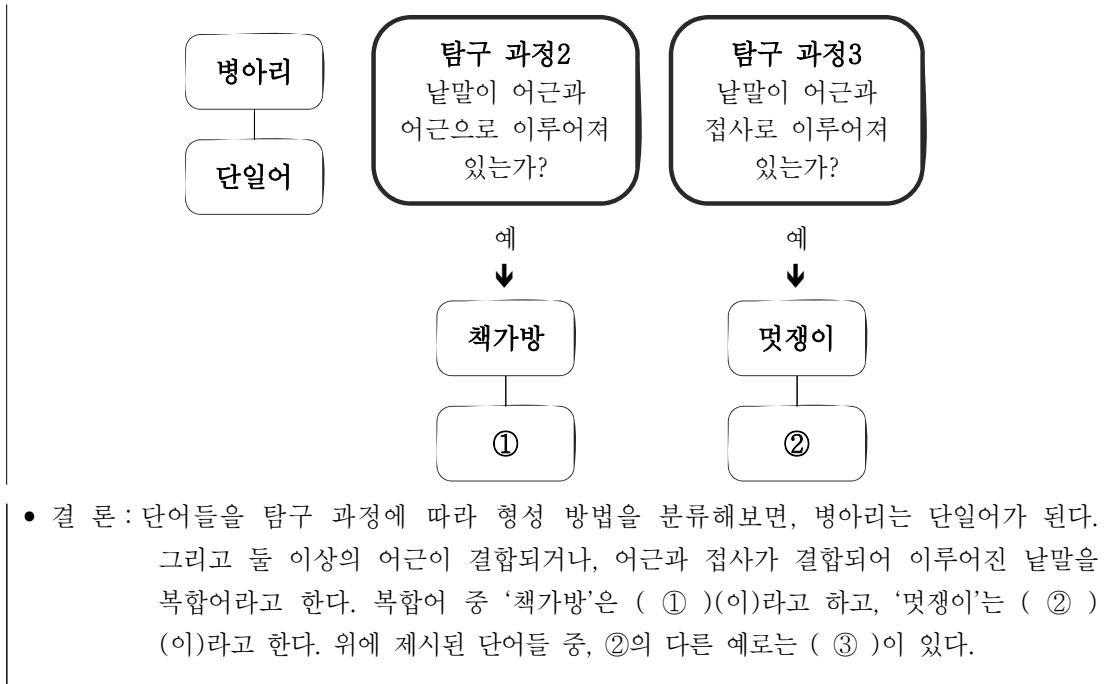
예

↙

아니요

↘

15) 이에 대해서는 주세형(2007a) 참고.



- ① _____
- ② _____
- ③ _____

2) 문법 영역의 수행형 문항 개발

흔히 '수행 평가'로 알려진 '대안적 평가'는, 학생들의 앎이나 탐구 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평가 항목을 개발하고, 또한 전문적이면서 고차원적인 사고 기술을 요구하는 성취 기준으로 학생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식을 가진 평가 체계를 개발할 필요성에서 대두된 것이다(김영천, 2007:23).

즉 수행 평가의 기본 취지는, Mueller(2005)가 언급했듯이 “학생들에게 필수적인 지식과 의미 있는 기술의 적용을 위한 실제적인 글쓰기 작업을 수행하는 평가의 한 방식”이며, Wiggins(1993:229)의 언급대로, ‘학생들이 효과적이고 창조적으로 과제를 수행해나가기 위해 사용해야만 하는 매력적이고 가치 있는 문제’를 일컫는다. 즉 수행 평가는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무엇을 알고 있으며 무엇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앎과 사고 기술, 탐구 방식의 성장을 돕기 위한 방식’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가 없이, 현장에서는 수행 평가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이미 팽배해 있다. 이를테면 아이들에게 정확한 지식을 주지 않고 혹시 ‘놀게 하는’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팽배하여, 교사는 수행평가 문항을 ‘편안하게 제시’하곤 한다는 것이다. 수행 평가의 기본 개념은 이러한 정황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 준다. 오히려 교사는 지식의 의미를 더욱 심각하게 고려하여 수행 평가를 고안할 필요가 있으며, 학생들에게 더 높은

성취 기준을 요구함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는 것이다.

성취도 평가 기출 문항이 이와 같은 취지를 온전히 반영하고 있는지는 좀 더 엄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장에서 문법 수행형 문항은 ‘우리말 바로 쓰기’, ‘외래어 고치기’ 등으로만 편중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¹⁶⁾, 문법 수행형 문항을 다양하게 개발함으로써 현장 교사를 연수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아래에 제시된 2007년도 고등학교 수행평가 6번 문항이 그 대표격이라 생각된다. 아래 문항은 무엇보다도 문법 지식을 ‘텍스트 기반’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교육과정에 명시된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물론 전국 단위의 시험에서 공정성 있는 채점 기준만을 설정해야 한다는 측면만 고려한다면, 아래와 같은 수행형 문항은 좀처럼 개발되기 어렵다. 그러나 최미숙(2004)의 언급처럼 평가 도구가 ‘공정성 있는 채점’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교육의 본질을 제고하는 평가 체제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 2007-고등학교-[수행평가6] -----

◆ <자료1>은 동일 제품에 대한 광고 문안들이다. (ㄱ)을 (ㄴ)으로 수정하는 과정에서 고려했을 표현 요소를 <자료2>에서 고르고, 표현 요소를 수정함으로써 나타날 효과에 관해 한 문장으로 쓰시오. (2점)

<자 료 1>	
(ㄱ)	(ㄴ)
참살이 음료 마음까지 깨끗해지는 맛을 원하세요? 현미로 만든 곡물 차 몸에도 좋고 맛도 좋습니다. 한번 드셔 보세요.	참살이 음료 마음까지 깨끗해지는 맛을 원하니? 현미로 만든 곡물 차 몸에도 좋고 맛도 좋아. 한번 마셔 봐.

<자 료 2>

① 지시 표현, ② 높임 표현, ③ 생략 표현

- (1) 고려했을 표현 요소 : _____
- (2) 표현 요소 수정에 따른 효과 : _____

그러나 문법 수행형 문항 중에는 편집만 수행형이지, 문항을 접하는 학생의 머릿속 사고 과정은 선다형 문항의 그것과 다름없을 것 같아 우려되는 경우가 있다. 이하 2007년도 초등학교 수행평가 문항이 대표적이다. 이 문항은 선다형 문항으로 바꾸어도 학습자의 머릿속 사고는 똑같은 과정으로 진행될 것이다. 전문성 있는 문항 출제자가 그럼에도 이러한 문항을 출제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전문한 바 있지만 ‘채점의 공정성’을 유난히

16) 이에 대해서는 주세형(2007b) 참고.

문제 삼는 우리나라 분위기가 한 몫 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 2007-초등-[수행평가8] -----

◆ 받침소리가 <자료1>과 같이 바뀌는 낱말을, <자료2>에서 찾아, ㉠~㉢에 소리 나는 대로 쓰시오.(3점)

<자 료 1>	
너의 속마음 을 잘 모르겠다. → [송마음]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보인다. → [잡는]	
나는 눈 위를 걷는 것을 좋아한다. → [긴는]	

<자 료 2>	
국밥을 먹을 때는, 국물을 남기지 마세요. → [㉠]	
밤을 줍는 다람쥐를 관찰해 봅시다. → [㉡]	
음악을 듣는 데 방해되니 문을 닫아라. → [㉢]	

- ㉠ : _____
- ㉡ : _____
- ㉢ : _____

3) 선다형 문항의 학습 가능성 제고

현장 교사뿐만 아니라 많은 연구자들도, 선다형 문항에 대해 격렬히 비판하곤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최지현(2000)의 지적대로, 선다형 문항의 한계점은 늘 ‘포괄적으로만’ 지적되어 왔을 뿐이다. 즉, 어떤 점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정치하게 논의되지 못한 채, 그저 현실적으로 그나마 ‘가장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하며 타당한 평가 도구형’임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해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선다형 문항의 가능성을 ‘답지 구성’에서 찾을 것을 요구한다. 어쩔 수 없이 늘 선택해야 한다면, 답지를 ‘가치 생성 과정을 드러내게 구성’하거나, ‘지식을 구성하고 일반화하게’ 구성하면 된다고 제안한다. 문법 선다형 문항을 개발하는 데에도 그의 지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기출 문법 문항 중에서도, 새로운 지식을 구성하고 일반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답지가 보인다. 2006년도 고등학교 선다형 7번 문항이 대표적이다. 이 문항은 언뜻 보기에는 전형적이고 단순한 유형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답지 구성을 자세히 분석하면, 학습자가 문항을 풀면서 ‘중의적 표현’에 대한 자신의 지식을 새로이 재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문제라 판단된다. 흔히 ‘중의적 표현’에 대해서는 ‘문법적 판단’만을 요구해 왔기에, ‘발문’을 읽은 직후 ①번 답지를 접한 학습자는 당황할 가능성이 높다. 일단 판단을 보류한 채, 전형적으로 익혀왔던 ‘비교’ 구문에 익숙한 학습자는 ②번 답지를 접하고 안도의 숨을 내쉬는다. 여기까지만 해도 학습자는 여전히 ‘자신의 지식을 재구성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동음이의어인 ‘배’가 주어로 제시되어 있는 ③번 답지를 접한 학습자는, 이제까지 자신이 지니고 있던 지식 체계를 재구성할 가능성이 크다. ‘이 문제는 문법적 판단뿐만 아니라 어휘적 판단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재구성

과정이 여기에서 일어나며, 이에 이르게 된 학습자는 ①번 답지로 다시 돌아가 ①번이 중의적임을 알게 된다.

평가 도구의 목적이 ‘선발, 서열화’라면 이러한 유형의 문항은 지양되어야 하겠으나, 현장 계도 효과를 노리는 성취도 평가의 경우는 적극 권장된다. 각급 학교에서의 ‘형성 평가’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 2006-고등학교-선다형 7 -----

◆ 다음 중 중의적 표현이 아닌 것은?

- ① 기수의 말이 재민이를 힘들게 했다.
- ② 민수는 영미보다 희자를 더 좋아한다.
- ③ 배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 ④ 현호는 지용이의 잘생긴 남동생을 어제 만났다.
- ⑤ 우리는 믿음직한 민호의 답변에 모두 만족했다.

그에 비하여 2007년도 고등학교 선다형 8번 문항은 새로운 유형의 문항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학습자에게 ‘문항을 푸는 과정에서 스스로 지식을 구성하고 학습하도록’ 유도하는 문항이 아니며, 지식을 숙지하도록 유도하는 문항도 더더욱 아니며, 모어 화자인 학습자에게 언어 자료를 감각적으로 판단하게 하는 정도로 격하시켜 버렸다. 이러한 문제점은 답지 구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각각의 답지에서 묻고자 하는 세부 지식을 그대로 드러냄으로써, 오히려 지식을 단순히 식별하고 확인하는 데 그치도록 하는 문항이 되어 버렸다.

----- 2007-고등학교-선다형 8 -----

◆ 다음은 모둠 활동의 과제와 수행 내용이다. 수행 결과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과제명 : 의미가 두 가지 이상으로 해석되는 사례를 찾아보자.

우리 모둠에서 찾은 사례들	
① 동음어에 의한 경우	(예) 배가 탈났다.
② 부정문에 의한 경우	(예) 사람들이 모두 모이지 않았다.
③ 수식에 의한 경우	(예) 소녀의 예쁜 우산이 없어졌다.
④ 병렬 구문에 의한 경우	(예) 나는 연필과 지우개 두 개를 샀다.
⑤ 비교 구문에 의한 경우	(예) 남편은 나보다 야구를 더 좋아한다.

4) 타 영역 문항의 평가 요소를 문법 내용으로 보완할 필요성

줄고(2006)에서는 문법 교육의 본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문서가 수시 개정되더라도 흔들림 없을 ‘본질적 문법 교육과정’을 구성해야 하며, 그 중 ‘통합적 문법 교육’은 본질적 문법 교육과정의 일부에 지나지 않음을 역설한 바 있다¹⁷⁾. ‘국어과 평가의 타당도 제고’라는 극히 현실적인 문제에서도, ‘통합적 입장에서의 문법 교육 내용 개발’은 특히 ‘국어과적 내용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중요하게 강조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로써 첫째, 교과 내에서의 문법 교육 위상을 더욱 강화할 수 있으며, 둘째, 국어과 평가 전반의 내용 타당도를 제고할 수 있다. 국어과 평가의 타당도는 ‘언어’를 평가하는 것에 초점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하 제시하는 2007년도 중학교 선다형 20번과 22번은 ‘문법’ 영역 문항이 아니라 ‘읽기’ 영역의 문항이다. 20번 문항처럼, 텍스트 이해 정도와 관련하여 ‘표지(marker)’는 읽기 문항의 단골이었다. 우리가 읽는 과정에서 주목하는 문법적 표지는 단지 ‘접속어류’뿐만이 아닐 것이다. 예를 들어 20번 지문에서도 ‘-게 됐다’, ‘-고 싶어 하다’, ‘-면서’, ‘-느라’, ‘-ㄴ 뿐이다’ 등의 표지 역시 텍스트의 의미를 확정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한다. 그런데 막상 문항 출제 과정에서 이를 문제로 구성하기에는 마땅치 않다. 22번 문항에서 보듯이 맥락적 단서에 근거하여 언어적 표현의 효과를 묻는 문제 역시 마찬가지로 읽기 문항에 단골로 등장하지만, ‘출제할 수 있는 소재’는 수사법 차원을 넘어서기 어렵다. 22번 문항 역시 ‘설의법’이라는 개념 하에 취급되었던 표현 아닌가. 다른 문항을 살펴보자.

----- 2007-중학-선다형 20, 선다형 22 -----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얼마 전 어느 대학에서 문학을 지망하는 학생들과 이야기를 하게 됐다. 그런데 진지한 표정의 꽤 잘생긴 학생이 집안의 기대와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일 사이의 갈등을 토로 하면서 거둬 ㉠ ‘저희 집’이라고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칭하는 게 아닌가. 나는 자꾸 그 말이 신경 쓰여 정작 그 학생의 고민에 대해서는 제대로 듣지도 못했다. ‘우리 집’이란 말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어머니’, ‘아버지’ 다음에 배우는 기초적인 낱말이다. 나는 아직 저희 집이란 낱말을 배우지 못했다. 그래서 어디서 그런 말을 알게 됐는지 물어보니 거기 모인 사람들 대부분이 우리 집이란 말보다는 저희 집이라고 하는 게 겸손한 표현이 아니냐고 되묻는 것이었다. 돌아오는 길에 택시 안에서 라디오를 듣는데, 외교 문제 전문가라는 분이 나와서, 우리나라를 칭하기를 ㉡ ‘저희 나라’라 하는 게 아닌가. 나는 또 저희 나라라는 말에 신경을 쓰느라, 한반도의 정세 변화는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의 치열한 경쟁과 자기 이익 확보라는 틀 안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의 냉철한 논지에 공감할 틈이 없었다. 저희 나라라는 말은 우리나라 안에서 우리나라 사람끼리 할 말은 결코 아니다. 남의 나라에 가서 그래 봐야 알보일 뿐이다.

(㉢) 저희라는 말은 어디에나 넘치고 있었다. ‘저희 회사, 저희 축구의 수준, 저희 문화계.....’. 알 만한 사람들,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은 저마다 저희를 앞세워 겸손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고 있었다. 태도는 보기 좋아도 그 말들은 들을 때마다 민망했다.

요즘 왜들 이렇게 겸손하지? 그걸 생각하면서 앉아 있는데 어느 보험회사 사원이 전화를 해왔다. 내 이름을 한자로 어떻게 쓰는지 알려 달라는 것이었다. 내가 이름을 부르자 그는 ㉣ ‘네, 성 자, 석 자, 제 자를 쓰시는군요.’ 하는 게 아닌가.

성과 이름을 한 자씩 부르면서 ‘자’를 붙이는 건 자신의 아버지를 호칭하는 것이니 그의 말대로라면 나는 마흔도 안 된 나이에 보험회사에 다니는 장성한 아들을 둔 꼴이 돼 버렸다. 전혀 고맙지 않았다.

- 성석제, <막무가내 겸손>

17) 통합적 문법 교육의 원리로 제시하였던 ‘기능(function) 중심성’은 ‘문법 교육 자체에서 고려해야 할 본질적인 요소’로 제시한 것인데, 종종 ‘기능(skill)’으로 오해되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와 결합하기 위한 이론으로 오독되고 있다.

20.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하물며 ② 그러니까 ③ 왜냐하면 ④ 그리고 보니 ⑤ 미루어 짐작하건대

22. ㉠~㉣에서 ‘아닌가’의 공통된 표현의 효과로 가장 알맞은 것은?

- ① 이중 부정을 통해 강한 긍정의 의지를 보여준다.
- ② 감탄문을 통해 세상에 몰입하는 태도를 표출한다.
- ③ 의문문을 통해 현실에 대한 자신의 무지함을 보여준다.
- ④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 현실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낸다.
- ⑤ 자신과 현실의 갈등을 억지로 화해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낸다.

2006년도 고등학교 선다형 18번 문제 역시 2007년도 중학교 선다형 20번처럼, 텍스트 이해에 필요한 표지에 주목하여 구성된 문항이다. 아래 문항의 평가 기준은 ‘여러 가지 표지들이 글의 짜임을 구성하는 데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설명할 수 있다.¹⁸⁾’이므로, 이 문항은 내용 타당도가 높다 하겠다. 원래 성취 기준상에서는 ‘내용 확인: 여러 가지 표지를 단서로 짜임을 파악하며 글을 읽을 수 있다.’로, 사실 ‘읽기 기능 활동’이 중심이고 표지 문제가 그 ‘단서’였으나, 평가 기준에서는 ‘표지’ 자체가 초점이 된 것이다.

2007년도 중학교 선다형 20번과 비교해 볼 때, 두 문항은 비슷해 보이지만, 학습자가 문항에 접근하는 과정은 다르다. 2007년도 중학교 선다형 20번은 반드시 텍스트를 이해해야만 풀 수 있기에 텍스트를 온전히 이해한 후 문항에 접근하겠지만, 아래 문항의 경우는 ‘그렇지만’이라는 표지에 대한 선행 지식에 기대어 미리 답지를 점검, 가능성 없는 답지를 배제한 후 텍스트를 읽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나 두 문항 모두, 그 자체의 완성도·타당도를 넘어서 아쉬운 점이 있다. 2007년도 중학교 선다형 20번 문항은 학습자가 초등학교 입학 이후 늘 접하는 전형적인 문항이다. 이와 같은 유형을 넘어선 더 깊은 사고를 요구하는 선다형 문제를 내고 싶어도, 답지 구성을 다양하게 할 만한 ‘소재’가 없다. 그 소재를 제공해 주는 것은 문법 교육에서 해야 할 일이라 판단된다. 2006년도 고등학교 선다형 18번은 표지 자체에 대한 ‘언어를 대상화’하는 메타적 사고까지 요구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항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메타 언어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다양한 표지’를 문법 교육에서 연구해 주어야만 한다.

----- 2006-고등학교-선다형 18번 -----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지난 20세기에 이루어진 국제적인 노력에 힘입어, 이제 인류는 인구 증가와 산업 발전이 야기하는 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게 되었다.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세계 환경 정상 회의 이후, 범지구적 환경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각종 국제 협약이 체결되고, 또 규제가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과학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인류는 훨씬 더 손쉽게 환경오염 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이미 휘

18) 보고서상에서 기술하고 있는 성취 기준을 미처 정확히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이 문항의 평가 기준은 명백히 이렇게 해석된다.

손된 환경을 복원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반세기 전과 비교해서 휘발유 1리터로 자동차가 주행할 수 있는 거리는 4배나 증가하였으며 1톤의 철강 생산에 소요되는 에너지의 양 또한 3분의 1로 감소했다. 농약과 비료 사용량은 과거보다 훨씬 많아졌지만 식량 1kg 생산에 사용되는 농약과 비료의 양은 1980년대를 고비로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농약의 환경 위해도(危害度)는 10년 전과 비교해 10분의 1에도 미치지 않는다. 이런 사례들은 과학 기술의 발전이 환경 파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임을 말해준다. 따라서 환경 문제 해결과 관련된 과학 기술에 대한 인류의 관심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

(나) 역사를 살펴보면, 한때 찬란했던 문명이 환경 파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종말을 맞이한 사례가 많다. 따라서 환경 파괴 문제를 등한시할 경우,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문명 역시 허망하게 사라질 수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 지난 세기 인류는 환경 파괴 문제를 해결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국제기구나 민간단체들은 다양한 환경 협약들을 체결함으로써 환경 파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제도 차원의 개선에 그쳐서는 그 효율성을 기대할 수 없다. 환경 파괴 문제는 제도적 요인에서 비롯하기보다는, 환경과 더불어 살고 있는 인류의 삶의 방식 그 자체로부터 비롯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환경 파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인류의 세계관과 생활양식을 바꾸는 것이다. 가치의 우선 순위를 바꾸고 그에 따라 생활양식을 변화시킴으로써, 환경 파괴의 원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지구 온난화와 오존층 파괴가 자동차 배출 가스나 냉장고의 프레온 가스와 연관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자동차나 냉장고 사용 방식을 개선하려 하고 있다. 또한 기업들마저도 당장의 이윤보다 환경적 가치를 우선시하려 하고 있다. 많은 기업들은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도 불구하고 공해를 줄이거나 방지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기업들도 ‘깨끗한 환경에서 강한 경제가 나온다’는 점을 인식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처럼 세계관과 생활양식 차원의 변화가 환경 파괴 문제를 개선하는 실질적인 해결책임을 좀더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실천할 필요가 있다.

18. (나)의 내용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그렇다면**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앞의 내용을 전환하여 화제를 바꾸고 있다.
- ② 앞의 내용과 관련지으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 ③ 앞의 내용을 부정하고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④ 앞의 내용을 전제로 문제의 원인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앞의 내용과 상반된 입장에서 내용을 확대하고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국어과 평가 이론의 발전’은 ‘내용 타당도’를 높이는 데에서 시작해야 함을 강조(이인제, 2003)하는 목소리에 공감하되, 그 중 국어과는 특히 평가 도구 제작 과정에서 문항의 내용 타당도를 제고하기가 가장 어려운 교과로 간주되는 형편이므로, 타당도를 높이기 위한 평가 이론을 본격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를 두 가지 측면에서 고찰, 분석하였다. ‘문항 제작 원리’ 수립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여 타당도를 높일 수 있는 ‘성취 기준 - 평가 기준’을 비교·분석하고, 기출 문항을 분석하여 향후 문항 제작 원리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은 구체적인 내용 요소와 결합한 성취 기준 중심의 교육과정을 개발하긴 하였으나, ‘언어적’ 내용이 마땅치 않은 경우가 많다. 바로 이러한 국어과 성취 기준에 기여할 수 있는 ‘언어적’ 내용 요소를 문법 교육학에서 채울 필요가 있음도 언급하였다.

국어과에서도 현실적으로도 ‘평가’의 세환효과(washback effect)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하고, 평가의 ‘힘’을 역이용하여, 교사가 수행할 수 있는 ‘대안적 평가(alternative assessment)’에서부터 ‘국가 수준의 평가’에 이르기까지, 평가 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에 힘을 쏟는다면, 오히려 교육 현장을 바람직하게 견인할 수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 참고 문헌 ◇

- 강현석 외 역(2005), 교육과정 수업 평가를 위한 새로운 분류학, 아카데미프레스.
 교육과학부(2008), 중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해설서.
 교육과학부(2008), 초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해설서.
 교육부(2007),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김경희, 김신영, 김성숙, 지은림, 반재천, 김수동(2006), 교사의 학생 평가 전문성 기준 개발, 교육평가 연구, 19-2, 89-112.
 김광해(1994), “국어교육 평가의 이상과 현실”, 선청어문 제22집, 서울대국어교육과.
 김광해(1997), 국어지식 교육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김대행(1997), “영국의 문학 교육: 평가를 통한 언어와 문학의 투시”, 국어교육연구 제4집.
 김동환(2004), “문학교육과 객관식 평가의 문제”, 국어교육학연구 제18집: 국어교육학회, pp.524 ~553pp.
 김봉순(1996), “국어과 평가 체제 연구: 읽기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학회.
 김수동, 이의갑, 김경희, 김선희, 박은아, 신명선, 김수진, 박가나, 서수현, 전영석(2005), 교사의 학생 평가 전문성 신장 연구Ⅱ,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E 2005-3.
 김신영(2007), “교사의 학생 평가 전문성과 중등교사 양성 과정”, 교육평가 연구 20-1: 1-16.
 김영천(2007), 현장 교사를 위한 교육 평가, 문음사.
 김창원(2003), “국어교육 평가의 구조와 원리”, 어문학교육 27: 한국어문교육학회.
 김호정 외(2007), “문법 용어를 통한 문법 지식 체계 구조화 연구(I): 음운”, 국어교육학연구 제28집.
 남가영 외(2007), “문법 용어를 통한 문법 지식 체계 구조화 연구(II): 형태”, 우리말연구 제21집.
 남민우(2008), 국가수준 국어과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의 현황과 개선 방향, 국어교육학회 제39회 정기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노명완·박창균(2006), “읽기 평가들에 대한 비교 연구”, 교육평가연구 제9-1:159-184.
 류수열(2004), “중등학교 국어 시험의 현황과 개선 방향 - 고등학교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를 중심으로 -”, 국어교육학연구 제20집: 국어교육학회, pp. 59 ~ pp. 83.
 민병곤(2004), “논증 교육의 내용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민현식(2002), “국어지식의 위계화 방안 연구”, 국어교육 제108집, 한국어교육학회.
 민현식(2007),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과 문법 교육의 과제”, 문법 교육 제4호.
 박경미(2003), 수학교육평가, 교과교육평가의 이론과 실제, 원미사.
 박상규(2004), “대학수학능력시험(언어영역)의 현황과 개선 방안”, 국어교육학연구 제20집.
 박영민(2003), “국어교과서에서 학습활동 진술의 구체화 방안”, 교육과정평가연구 제6집 제1호: 99쪽 -119쪽.
 박인기 외(1999), 국어과 수행 평가, 삼지원.
 박인기(2000), “국어교육 평가의 패러다임 변화와 실천”, 국어교육 102호, 한국어교육학회.

- 백순근 외(2003), 교과교육평가의 이론과 실제, 원미사.
- 백순근(1999), “교수-학습 활동에서 선택형 검사의 활용에 대한 비판적 논의”, 교육원리연구 4권1호, 교육원리연구회.
- 서혁(1999), “듣기 능력 평가의 개선 방안 연구”, 신청어문 제27집.
- 서혁(2004), “초등학교 국어과 시험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국어교육학연구 제20집: 국어교육학회,
- 송현정(2002), “국어지식 영역의 교과서 제시 방식에 대한 분석”, 국어교육 제109집.
- 송현정(2003), “국어지식 영역의 성취도 평가에 관한 분석 연구”, 이중언어학 제23호.
- 송현정(2004), “국어지식 교육과 사고력의 관계에 대한 일고”, 한국초등국어교육 제24집: 67-95쪽.
- 송현정(2004), 국어지식 영역의 성취도 평가 연구,
- 신명선(2006), “개정 문법 교육과정의 지향점과 교과서 개발의 방향에 관한 연구”, 문법교육 제5호.
- 심영택(2003), “국어교육 목표에 대한 재조명”, 어문교육 제31권 제4호 : 어문교육연구회.
- 윤여탁·민현식·김정우(2008), 국어과 교과학습 진단평가도구 개발 연구 - 중학교 과정을 중심으로, 국어교육학회 제39회 정기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 이관규(2002), 국어지식 영역의 연구 경향과 과제, 21세기 국어교육학의 현황과 과제, 한국문화사.
- 이관규(2003), “국어지식 교육의 평가 내용과 방법의 현황 및 문제점”, 이중언어학 23, 이중언어학회:
- 이관규(2007a), “제8차 국어과 교육과정(개정안)에서 문법 영역의 특징과 과제”, 한말연구 제20집.
- 이관규(2007b), “2007년 국어과 문법 교육과정의 개정 특징과 문법 교육의 방향”, 청람어문교육 제36집: 53-80.
- 이관규(2008), 학교 문법 교육론,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 이도영(2007), “문법 영역의 평가 방법 - 형성 평가를 중심으로 -”, 국어교육연구 제41집: 국어교육학회, pp.103~pp.126.
- 이삼형 외(1999), 국어교육과 평가: 국어교육평가의 일반원리, 연구보고서 99-2,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 이삼형 외(2007), 국어교육학과 사고, 역락.
- 이양락(2003), 과학교육평가, 교과교육평가의 이론과 실제, 원미사.
- 이완기(2007), 영어 교육 평가론, 문진미디어.
- 이은희(1999), “국어지식 영역 평가의 체계화 방안 연구”, 신청어문 제27집, 서울대 국어교육과.
- 이인제 외(2004), 국어과 교사의 학생평가 전문성 신장 모형과 기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E 2004-5-3.
- 이인제(2003), “국어 교육의 질 향상과 평가 체제 개선”, 국어교육 112집, 한국어교육학회: pp.131~pp.191.
- 이인제·이범홍·박정·진재관·김옥남·서수현·김신영(2004). 교사의 학생평가 전문성 신장 모형과 기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E 2004-5-2.
- 이충우(2005), “국어과 교사의 국어지식 영역 평가 전문성 기준과 모형”, 국어교육 제117집.
- 임찬빈·노은희·김정자·남민우·서현석·이경화·주세형(2006), 수업 평가 매뉴얼: 국어과 수업평가 기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연구자료 ORM 2006-24-3).
- 임천택(2002). 학습자 중심의 국어과 평가. 박이정.
- 임천택(2006), “국어과 쓰기 평가 문항 작성의 실태와 개선 방안”, 어문학교육 제33집: pp. 151~pp.191.
- 정구향 외(2001),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국어과 성취기준과 평가기준 예시평가도구 개발에 대한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정구향 외(2004). 2003년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연구 -총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E-2004-1-1.

- 정구향(2005), “21세기 국어과 평가의 발전 방향”, 새국어교육 제71호.
- 정소희(1997), “화용 학습의 전략 탐구”, 선청어문 25집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 정혜승(2007), 성취 기준 중심 국어과 교육과정 구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국어교육 제123집: pp.183~pp.209
- 조병영(2002), “국어과 교육 과정의 내용 조직과 진술에 관한 연구”, 국어교육 109집 : 한국어교육학회.
- 조운형(2007), “수능 언어 영역의 평가 목표 진술 연구”, 교육과정평가연구 제10-1:75-102.
- 조지민·이재기·김정우·남민우·박정·김수진(2006), 2005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 -국어-, KICE 연구보고 RRE 2006-1-1.
- 주세형(2006), 문법교육론과 국어학적 지식의 지평 확장, 도서출판 역락.
- 주세형(2007a), “‘문법 교사의 수업 전문성 평가 모형’에 대한 현장 교사의 인식 실태 연구”, 새국어교육 제77호.
- 주세형(2007b), “서울 K고 국어과 정기 교사에서의 문법 평가 실태 조사 연구”, 국어교육학회 제38회 정기 학술대회 자료집.
- 최미숙(2000), “국어교육 평가의 원리와 실제”, 국어국문학 126, 국어국문학회.
- 최미숙(2004), “국가 수준 국어과 교육성취도 평가의 실제와 발전 방안”, 국어교육학연구 제20집.
- 최미숙(2006), “국어과 평가의 반성과 탐색”, 국어교육 제121집, 한국어교육학회: 79-
- 최지현(2000), “선택형 지필 평가의 한계와 가능성”, 국어교육 103호, 한국어교육학회.

[부록]

‘국어지식 영역’은 음영 표시

초등학교 6학년

영역	성취기준	평가기준	정답률	학년
듣기	2. (내용 확인) 이야기를 듣고, 여러 가지 표현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이야기를 듣고, 여러 가지 표현(속담, 관용 표현, 격언, 명언 등)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중	6
듣기	3. (추론) 이야기를 듣고, 생략된 내용을 추론할 수 있다.	이야기를 듣고, 앞뒤 맥락을 활용하여 생략된 내용을 추론할 수 있다.	상	5
듣기	5. (평가와 감상) 이야기를 듣고, 어휘 사용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다.	이야기를 듣고, 내용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	상	5
듣기	6. (평가와 감상) 이야기를 듣고, 표현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다.	말하는 이가 사용한 표현(속담, 관용 표현, 격언, 명언 등)이 말하기 상황에 적절한지 판단하며 듣고, 판단의 근거를 설명할 수 있다.	하	6
쓰기	23. (내용 표현) 사물의 모습이 생생하게 드러나게 글을 쓸 수 있다.	사물의 모습이 대강 드러나도록 묘사하는 글을 쓸 수 있다.	상	6
쓰기	20. (내용 조직) 여러 가지 방법(분류, 분석, 예시, 비교, 대조 등)으로 내용을 조직하여 글을 쓸 수 있다.	여러 가지 방법(분류, 분석, 예시, 비교, 대조 등)으로 내용을 조직하여 글을 쓸 수 있다.	중	5/6
쓰기	21. (내용 조직)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알맞은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타당하고 설득력 있는 근거를 다양하게 제시하며 글을 쓸 수 있다.	하	6
국어지식	26. (문장) 시제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	주어진 글에서 시간을 표현하는 말을 찾아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눌 수 있다.	상	5
쓰기	22. (내용 표현) 사건이나 행동의 변화가 드러나게 글을 쓸 수 있다.	사건이나 인물의 행동 변화가 드러나게 글을 쓸 수 있다.	상	5
읽기	13. (추론) 글을 읽고, 생략된 내용을 추론할 수 있다.	글을 읽고, 문맥을 활용하여 생략된 내용을 추론할 수 있다.	상	5
읽기	10. (내용 확인) 글을 읽고, 사실을 나타내는 부분과 의견을 나타내는 부분을 구별할 수 있다.	글을 읽고, 사실을 나타내는 문장과 의견을 나타내는 문장을 구별할 수 있다.	중	5
읽기	9. (내용 확인) 글을 읽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글을 읽고, 중요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상	1/3
국어지식	28. (의미) 낱말과 낱말 사이의 유의 관계, 반의 관계, 하의 관계를 이해한다.	유의 관계와 반의 관계, 하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낱말을 찾아 말할 수 있다.	상	4
읽기	18. (평가와 감상) 글에 나오는 어휘나 표현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다.	글을 읽고, 글에 나오는 어휘나 여러 가지 표현이 적절한지 판단할 수 있다.	중	5/6
읽기	15. (추론) 글을 읽고, 알맞은 제목을 붙일 수 있다.	글을 읽고, 글감, 주제, 글쓴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제목을 붙일 수 있다.	상	4
읽기	14. (추론) 이어질 내용을 예측하며 글을 읽을 수 있다.	읽은 글에 이어질 내용을 예측하여 말하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나 근거를 설명할 수 있다.	하	5
읽기	7. (낱말 이해) 국어사전에서 낱말의 뜻을 찾을 수 있다.	어려운 낱말을 국어사전에서 찾고, 여러 가지 뜻 중에서 문맥에 가장 적절한 의미를 골라 낼 수 있다.	중	4
읽기	12. (추론) 글을 읽고, 주제를 파악할 수 있다.	글에서 글감, 제목, 내용 요약한 것 등을 토대로 주제를 파악할 수 있다.	상	4
읽기	8. (낱말 이해) 문맥의 흐름을 고려하여, 글에 나오는 낱말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글을 읽으며 앞뒤 문맥을 고려하여 낱말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중	5
읽기	17. (평가와 감상) 글쓴이가 제시한 문제 해결 방안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다.	글에서 글쓴이가 제시한 문제 해결 방안이 적절한지 판단하고, 판단의 근거를 설명할 수 있다.	하	6

		있다.		
국어 지식	25. (문장) 문장 성분의 기능을 이해한다.	여러 문장에서 같은 기능을 담당하는 성분을 찾아 그 구실을 설명할 수 있다.	중	5
문학	35. (작품의 미적 구조) 시에 나오는 여러 가지 감각적 표현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시에서 감각적 표현을 찾아보고, 표현의 특징과 느낌을 말할 수 있다.	하	6
문학	32. (작품의 미적 구조) 시의 구성 요소를 통하여 주제를 파악할 수 있다.	시의 행과 연, 운율, 분위기 등의 구성 요소를 통하여 작품의 주제를 파악할 수 있다.	상	4
문학	36. (작품의 창조적 재구성) 작품에서 인상적으로 표현한 부분의 표현 효과를 이해한다.	작품에서 인상적인 표현을 찾아보고, 그 표현이 인상적인 이유를 말할 수 있다.	중	5
문학	31. (작품의 미적 구조) 이야기의 구성 요소를 통하여 주제를 파악할 수 있다.	동화, 소설, 극본 등의 인물, 사건, 배경 등 구성 요소를 통하여 작품의 주제를 파악할 수 있다.	상	4
문학	38. (작품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양상) 작품에 반영된 배경과 인물을 통하여 그 시대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이해한다.	작품에서 작품의 배경과 인물의 생각이나 말, 행동 등을 통하여 그 시대의 가치나 문화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말할 수 있다.	하	6
문학	33. (작품의 미적 구조) 이야기를 읽고 사건의 전개 과정과 인물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작품에서 사건의 전개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상	5
문학	34. (작품의 미적 구조) 이야기를 읽고 사건의 전개 과정과 배경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작품에서 사건의 전개 과정과 배경의 관계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하	6
국어 지식	29. (담화) 문장과 문장 사이의 연결 관계를 이해한다.	주어진 글에서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중	6
문학	39. (작품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양상) 작품에 나타난 인물의 사고방식을 이해한다.	인물의 말과 행동을 종합하여 인물의 사고방식을 파악하고, 그 근거를 설명할 수 있다.	중	4
듣기	4. (추론) 이야기를 듣고, 말하는이의 의도나 목적을 추론할 수 있다.	말하는이의 의도나 목적을 파악하며 듣고, 그렇게 파악한 이유나 근거를 설명할 수 있다.	하	6
듣기	1. (내용 확인) 이야기를 듣고, 중요한 내용을 메모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말이나 이야기를 들으며 중요한 내용을 메모할 수 있다.	중	5
쓰기	24. (고쳐 쓰기)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 낱말이나 문장을 고쳐 쓸 수 있다.	표현의 효과를 고려하여 낱말이나 문장을 찾아 알맞게 고쳐 쓰고, 그 효과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하	5/6
국어 지식	27. (어휘)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의 개념을 이해한다.	주어진 글에서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를 찾아보고, 각각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하	6
쓰기	19. (내용 생성) 주제에 알맞은 내용을 선정하여 글을 쓸 수 있다.	주제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을 선정하여 글을 쓰고, 쓰는 과정에서 내용을 조절할 수 있다.	중	4
읽기	16. (평가와 감상) 주장에 대한 근거의 적절성을 평가하며 글을 읽을 수 있다.	글을 읽고, 주장에 대한 근거가 적절한지 판단하고, 그렇게 판단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하	6
읽기	11. (추론) 글을 읽고, 글 전체의 내용을 요약할 수 있다.	글을 읽으며 글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고, 요약한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하	6
문학	40. (문학의 창작) 작품의 일부분을 다른 갈래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주어진 조건에 맞게 작품(시, 이야기, 극본)의 일부분을 다른 갈래로 바꾸어 표현할 수 있다.	중	6
국어 지식	30. (국어 규범과 적용) 표준 발음법에 맞게 발음할 수 있다.	표준 발음법에 맞게 발음하고, 잘못된 발음을 찾아 고칠 수 있다.	하	6
문학	37. (작품의 창조적 재구성) 작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있다.	작품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나 느낌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중	5

중학교 3학년

영역	성취기준	평가기준	정답률	학년
듣기	1. (내용 확인) 이야기를 듣고, 사실과 의견을 구분할 수 있다.	이야기를 듣고, 언어적 단서나 내용을 통해서 사실과 의견을 구별할 수 있다.	상	7
듣기	2. (내용 확인) 여러 가지 표지에 유의하며 이야기를 듣고, 내용의 짜임을 파악할 수 있다.	여러 가지 표지에 유의하며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의 짜임에 대하여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하	7/8
듣기	3. (추론) 동일한 화제에 대한 여러 사람의 말을 듣고, 내용을 종합할 수 있다.	같은 화제에 대한 여러 사람의 말을 듣고, 내용을 종합할 수 있다.	중	8
듣기	5. (평가와 감상) 이야기를 듣고, 내용의 통일성을 평가할 수 있다.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을 찾을 수 있다.	상	7
쓰기	21. (표현)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여 글을 쓸 수 있다.	속담, 비유적 표현, 관용 표현, 격언, 명언, 예화 등을 문맥에 어울리게 인용하여 글을 쓸 수 있다.	상	7
쓰기	20. (내용 조직) 내용을 통일성, 일관성 있게 구조화하여 글을 쓸 수 있다.	내용을 통일성 있게 구조화하여 글을 쓸 수 있다.	상	7/8
쓰기	24. (고쳐쓰기)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을 고쳐쓸 수 있다.	주제에서 벗어난 낱말, 어구, 문장, 문단을 찾아 고쳐 쓰고, 고쳐 쓴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중	7
국어지식	29. (어휘) 은어, 전문어, 속어, 비어, 유행어의 개념을 이해한다.	은어, 전문어, 속어, 비어, 유행어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상	7
쓰기	22. (표현) 문법에 맞게 글을 쓸 수 있다.	우리말의 문법(어순, 문법 요소의 쓰임, 호응 관계 등)에 맞게 글을 쓸 수 있다.	중	8
국어지식	27. (낱말) 품사의 분류 기준과 각 품사의 특성을 이해한다.	품사의 분류 기준에 따라 낱말을 분류할 수 있다.	중	9
읽기	10. (추론) 문장의 중요도를 판정하여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문장의 중요도를 판정하며 글을 읽고, 중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중	9
읽기	16. (평가와 감상) 글을 읽고, 중심 내용과 뒷받침 내용 간의 관계가 긴밀한가를 평가할 수 있다.	글을 읽고, 중심 내용과 뒷받침 내용 간의 관계가 긴밀한지 판단하여 말할 수 있다.	중	8
읽기	12. (추론) 글을 읽고, 생략된 내용을 추론할 수 있다.	글을 읽고, 문맥이나 자신의 배경 지식에 비추어 생략된 내용을 추론할 수 있다.	상	5
읽기	7. (낱말 이해) 문맥의 흐름을 고려하여, 글에 나오는 낱말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글을 읽으며 앞뒤 문맥을 고려하여 낱말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상	5
읽기	14. (추론) 내용의 전개 방식을 파악하며 글을 읽을 수 있다.	읽은 글의 내용 전개 방식의 유형(비교, 인과, 예시, 분류 등)과 특징을 알고, 그 효과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하	8
읽기	8. (내용 확인) 글을 읽고, 세부 정보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글을 읽고, 글의 세부 정보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상	1/3/6/7
국어지식	26. (음운) 국어의 음운 변동 규칙을 이해한다.	국어의 음운 변동 규칙과 종류를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하	9
읽기	15. (평가와 감상) 글을 읽고, 내용의 통일성을 평가할 수 있다.	글을 읽고,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을 찾아 논리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다.	중	7
문학	35. (작품의 미적 구조) 작품이 누구의 눈을 통하여 전달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작품의 화자(서술자)를 파악하고, 그것과 관련하여 작품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중	8
읽기	9. (내용 확인) 여러 가지 표지를 단서로 짜임을 파악하며 글을 읽을 수 있다.	글을 읽고, 글의 개략적인 짜임을 파악할 수 있다.	상	8

읽기	11. (추론) 글쓴이의 의도나 목적을 파악하며 글을 읽을 수 있다.	글의 내용이나 자신의 배경 지식에 비추어 글쓴이의 의도나 목적을 파악하며 읽고, 그렇게 파악한 근거를 설명할 수 있다.	중	7
읽기	18. (평가와 감상) 표현의 효과를 평가하며 글을 읽을 수 있다.	글을 읽고, 표현상의 특징과 효과에 대하여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하	9
문학	31. (문학의 본질) 한국 문학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이해한다.	한국 문학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대표적인 작품을 예로 들어 설명할 수 있다.	중	9
문학	33. (작품의 미적 구조) 작품에 쓰인 여러 가지 표현 방식을 이해한다.	작품에서 여러 가지 표현 방식을 찾고, 그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상	9
문학	39. (작품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상황) 작품에 드러난 사회·문화적 상황을 이해한다.	작품에 드러난 사회·문화적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중	9
문학	40. (문학의 창작) 문학 작품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있다.	한국 문학의 대표적인 작품을 찾아 읽은 후,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글로 쓰고, 다른 사람이 쓴 글과 비교하여 평가할 수 있다.	하	9
국어지식	30. (의미) 동음이의어와 다의어의 개념을 이해한다.	동음이의어와 다의어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상	7
문학	36. (작품의 창조적 재구성) 다양한 시각과 방법으로 문학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할 수 있다.	같은 작품을 다양한 시각과 방법으로 대강 해석할 수 있다.	상	8/9
문학	32. (작품의 미적 구조) 작품에 쓰인 언어적 표현의 특징과 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	작가가 독자의 반응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사용한 언어적 표현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상	8
문학	38. (작품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상황) 작품에 드러난 작가의 세계관을 이해할 수 있다.	작품에 드러난 작가의 세계관을 그가 살았던 사회·문화적 상황과 관련하여 파악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다.	하	8
듣기	4. (추론) 이야기를 듣고, 전체 내용을 요약할 수 있다.	이야기를 듣고, 전체 내용을 요약할 수 있다.	중	9
듣기	6. (평가와 감상) 이야기를 듣고, 중심 내용과 뒷받침 내용 간의 관계를 평가할 수 있다.	듣은 말의 중심 내용과 뒷받침 내용 간의 관계가 긴밀한지 판단하고, 판단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하	8
쓰기	19. (내용 생성) 필요한 자료를 선별하고 정리하여 글을 쓸 수 있다.	글쓰기의 상황을 고려하여 자료를 수집, 선별, 정리해서 글을 쓰고, 자료 선정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다.	하	7/9
쓰기	23. (고쳐 쓰기) 문장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못한 부분을 고쳐 쓸 수 있다.	쓴 글을 읽고, 문장의 연결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못한 부분을 찾아 고쳐 쓰고, 고쳐 쓴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하	8
읽기	13. (추론) 같은 문제를 다루고 있는 여러 글을 읽고, 주제나 관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다.	같은 문제를 다루고 있는 여러 글에서 주제나 관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하	9
국어지식	25. (본질) 언어의 사회성, 역사성을 이해한다.	언어의 사회성과 역사성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하	8
읽기	17. (평가와 감상)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하며 글을 읽을 수 있다.	읽은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하고, 판단의 기준을 설명할 수 있다.	하	9
국어지식	28. (낱말) 국어의 조어법을 이해한다.	국어의 낱말 형성 원리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하	8
문학	37. (작품의 창조적 재구성) 작품 속에 드러난 갈등의 해결 과정과 인물의 심리 상태와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작품에서 갈등의 해결 과정과 인물의 심리 변화가 어떤 상호 관련성을 지니는지 설명할 수 있다.	중	7
문학	34. (작품의 미적 구조) 시에 나오는 여러 가지 감각적 표현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다.	시에 나오는 여러 가지 감각적 표현의 효과를 평가하고, 그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하	6/9

고등학교 1학년

영역	성취기준	평가기준	정답률	학년
듣기	2. (추론) 비교적 긴 이야기를 듣고, 내용을 요약할 수 있다.	이야기를 듣고, 전체 내용을 대강 요약할 수 있다.	상	5/8/9
듣기	6. (평가와 감상) 말하는 이의 반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다.	이야기를 듣고, 말하는 이의 반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이 상황에 적절한지 판단할 수 있다.	중	10
듣기	5. (평가와 감상) 들은 내용의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다.	이야기를 듣고, 내용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	상	9
듣기	4. (평가와 감상) 들은 내용의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다.	이야기를 듣고, 들은 내용의 신뢰성을 평가하고, 평가의 기준을 설명할 수 있다.	하	9
쓰기	24. (고쳐 쓰기) 고쳐 쓰기의 일반 원리(어휘, 어법, 문단, 내용 조직 등)를 사용하여 글을 고쳐 쓸 수 있다.	글쓰기의 상황에 따라 고쳐 쓰기의 일반 원리를 사용하여 글을 대강 고쳐 쓸 수 있다.	상	10
쓰기	21. (표현) 표현의 일반원리를 사용하여 글을 쓸 수 있다.	글쓰기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표현 방식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글을 쓸 수 있다.	중	10
쓰기	23. (고쳐 쓰기) 읽을 이, 주제, 목적을 고려하여 글을 고쳐 쓸 수 있다.	글쓰기 상황을 고려하여 쓴 글의 내용을 고쳐 쓰고, 고쳐 쓴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하	10
쓰기	19. (내용 생성) 글쓰기의 상황(글을 쓰는 목적, 주제, 독자)을 고려하여 다양한 자료에서 필요한 내용을 생성하여 글을 쓸 수 있다.	글을 쓰는 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글을 쓸 수 있다.	상	10
국어 지식	29. (어휘) 중의적인 표현을 이해한다.	중의적인 표현의 의미를 문맥에 맞게 파악할 수 있다.	상	9
국어 지식	25. (국어의 본질) 국어의 역사를 개략적으로 이해한다.	국어의 시대적으로 변화한 과정과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	중	10
읽기	11. (추론) 글을 읽고, 생략된 내용을 추론할 수 있다.	글을 읽고, 배경지식이나 문맥을 활용하여 생략된 내용을 추론할 수 있다.	상	5
읽기	10. (추론) 글을 읽고, 주제를 파악할 수 있다.	비교적 긴 글을 읽고, 주제를 파악할 수 있다.	상	4/9
읽기	17. (평가와 감상) 내용의 신뢰성을 평가하며 글을 읽을 수 있다.	읽은 내용의 신뢰성을 평가하고, 평가의 기준을 설명할 수 있다.	하	9/10
읽기	8. (내용 확인) 필요한 정보를 찾으며 글을 읽을 수 있다.	필요한 정보를 찾으며 글을 읽고, 읽기 목적과 관련하여 정보의 가치를 설명할 수 있다.	하	10
읽기	13. (추론) 내용의 전개 방식을 파악하며 글을 읽을 수 있다.	내용의 전개 방식의 유형과 특징을 알고, 그 효과를 설명할 수 있다.	중	8
읽기	18. (평가와 감상) 내용의 타당성을 평가하며 글을 읽을 수 있다.	읽은 내용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평가의 기준을 설명할 수 있다.	하	9/10
읽기	7. (낱말 이해) 문맥의 흐름을 고려하여, 글에 나오는 낱말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글을 읽고, 앞뒤 문맥을 고려하여 낱말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상	5
읽기	9. (내용 확인) 여러 가지 표지를 단서로 짜임을 파악하며 글을 읽을 수 있다.	여러 가지 표지들이 글의 짜임을 구성하는 데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설명할 수 있다.	중	8
국어 지식	26. (문장) 문법 요소들의 기능(문장 성분, 시제, 서법, 경어법 등)을 이해한다.	시제, 서법, 경어법이 잘못 사용된 예를 구별할 수 있다.	상	9/10
읽기	15. (평가와 감상) 글을 읽으며 표현상의 특징을 알아보고 그 효과를 평가할 수 있다.	글의 표현이 글쓴이의 목적이나 의도를 효과적으로 나타내는지 평가하고, 평가의 근거를 설명할 수 있다.	하	6/9/10
읽기	12. (추론) 글쓴이의 관점이나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내용을 재조직하며 글을 읽을 수 있다.	글을 읽고, 글쓴이의 관점이나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정보를 재조직할 수 있다.	중	10
문학	32. (작품의 미적 구조) 작품이 누구의 눈을 통하여 전달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작품의 화자(서술자)를 파악하고, 화자 설정의 효과를 설명할 수 있다.	중	8
문학	34. (작품의 창조적 재구성) 작가, 작품, 독자의 관계를 이해하며 작품을 능동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작가, 작품, 독자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자신의 경험과 관련지어 작품을 수용할 수 있다.	하	10

문학	33. (작품의 미적 구조) 문학의 갈래에 따른 작품의 미적 가치를 파악할 수 있다.	여러 갈래의 작품에서 미적 가치를 비교하여 보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작품을 예로 들어 설명할 수 있다.	하	10
문학	36. (작품의 창조적 재구성) 작품에 드러난 작가의 개성을 파악할 수 있다.	작품에서 작가의 인생관이나 성격, 안목 등의 개성을 파악할 수 있다.	상	9
국어 지식	27. (문장) 문장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문장을 분석하여 문장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중	10
문학	38. (작품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상황) 작품에 드러난 사회·문화적 상황을 파악하며 작품을 수용할 수 있다.	작품에 드러난 사회·문화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현재의 상황과 비교하며 자신의 생각을 설명할 수 있다.	하	4/7/8/9 / 10
문학	37. (작품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상황) 작품에 드러난 작가의 세계관을 평가할 수 있다.	작품에 드러난 작가의 세계관을 평가하여 설명할 수 있다.	하	8
문학	31. (본질) 작품의 구성 요소와 그 기능을 이해한다.	작품의 구성 요소를 파악하고, 그 요소가 작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할 수 있다.	상	4/10
문학	40. (태도) 작품에 드러난 전통이나 사상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지닌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작품에 드러난 민족의 전통이나 사상을 파악할 수 있다.	상	8/10
듣기	1. (내용 확인)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듣기 목적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중	10
듣기	3. (추론) 말하는 내용을 자신의 관점에 따라 재조직하면서 들을 수 있다.	이야기를 듣고,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말하는 이의 내용 조직 전략을 평가할 수 있다.	하	10
쓰기	22. (표현) 문체의 효과를 고려하여 글을 쓸 수 있다.	문체의 전달 효과를 고려하여, 글쓰기 상황에 알맞은 문체로 글을 쓸 수 있다.	하	9/10
쓰기	20. (내용 조직) 글쓰기의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내용 조직의 원리를 활용하여 글을 쓸 수 있다.	글쓰기의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내용 조직의 원리를 활용하여 글을 쓸 수 있다.	중	10
읽기	16. (평가와 감상) 내용의 일관성을 평가하며 글을 읽을 수 있다.	글을 읽고, 글쓴이의 관점이나 태도가 일관성에 어긋나는지 평가하고, 평가의 근거를 설명할 수 있다.	중	8
국어 지식	28. (담화) 담화 장면에 따라 표현 방식을 달리 할 수 있다.	담화 장면에 따라 표현 방식을 달리하고, 그 효과를 설명할 수 있다.	하	7/8/10
읽기	14. (추론) 같은 문제를 다루고 있는 여러 글을 읽고, 주제나 관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다.	같은 문제를 다루고 있는 여러 글을 읽고, 주제나 관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고, 그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중	9
국어 지식	30. (국어 규범과 적용) 문법에 맞게 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문법을 바르게 알고, 문법에 맞게 표현할 수 있다.	하	9/10
문학	35. (작품의 창조적 재구성) 다양한 시각과 방법으로 문학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할 수 있다.	같은 작품을 다양한 시각과 방법으로 해석하고 평가한 후, 각 관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다.	중	8/9
문학	39. (문학의 창작)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정리하여 문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정리하여 적절한 갈래를 정해 문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중	9/10

□ 토론 □

“국어과 평가의 타당도 제고를 위한 문법 교육 방향”에 대한 토론문

김 홍 범 (한남대학교)

★ 별 지 참조 ★

제28회 한말연구학회 전국학술대회

때 : 2008년 7월 12일 (토)

곳 : 공주대학교 산학연구원

한국어 말하기 평가 등급의 능력 기술 방안 연구

-중급 학습자를 중심으로-

김 주 연 (건국대학교)

□ 차 례 □

1. 머리말
2. 한국어 말하기 평가 등급
 - 2.1 평가 방법
 - 2.2 평가 기준
3. 한국어 말하기 능력 기술
 - 3.1 능력 기술에 의한 등급 표시의 의의
 - 3.2 자가 평가 등급 기술안
4. 평가 결과의 상관관계
5. 맺음말

1. 머리말

현재 한국어 교육에서 실시되고 있는 평가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한국어를 배우는 모든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한국어 숙달도 평가와 국내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실시되고 있는 성취도 평가이다. 대학 기관에서 실시되고 있는 성취도 평가에는 언어의 각 기능인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가 모두 이루어지고 있으나 한국어 숙달도 평가인 한국어능력시험(TOPIK:Test of Proficiency in Korean)과 세계한국말 인증시험(KLPT:Korea Language Proficiency Test)에서는 읽기, 쓰기, 듣기 위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말하기 평가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언어 능력을 평가할 때는 언어의 네 가지 기술인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의 네 영역을 모두 평가하여 학습자의 종합적인 언어능력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한국어 말하기 평가와 관련된 연구¹⁾들이 한국어 말하기 숙달도 평가에 아직 채택되지 못하고 있

1) 김정숙 외(1993)에서는 Canale & Swain(1980)의 언어능력 개념에 기초하여 문법적 언어능력(grammatical), 담화구성능력(discourse competence), 사회언어학적능력(sociolinguistic competence)을 말하기 평가 범주로 설정하였다. 전은주(1997)에서는 문법, 어휘, 발음, 구성력, 사회언어학적능력, 의사소통적 전략과 상호작용,

는 이유는 한국어 말하기 평가와 관련된 이론적인 연구는 많으나 실증적인 연구가 미흡하여 평가의 타당도, 신뢰도가 검증된 객관적인 한국어 말하기 평가를 실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와 같은 한국어 수업현장의 실험 연구와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증적인 말하기 평가와 관련된 연구가 필요하다.

국내 한국어 교육 기관은 기관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서울 및 대도시에 소재한 대부분의 교육 기관에서는 6등급 체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성취도 평가도 이 등급에 맞게 실시되고 있다. 한국어능력시험도 마찬가지로 등급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국내 한국어 교육 기관의 6등급 체제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학습자들이 이러한 평가들을 통해 해당 등급을 받게 되었을 때 그 학습자의 한국어 수준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말해 줄 수 있을지가 막연하다. 예를 들어, 3급의 평가를 받은 한국어 학습자들은 한국어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해야 하는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외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라면 누구든지 자신의 언어 능력을 검증 받고 싶어 한다. 그러나 평가를 하고 등급을 나누어 학습자가 속하는 수준을 알려주는 정도로는 부족하다. 3급의 평가를 받은 학습자들이 3급 수준의 문법과 어휘를 대체적으로 습득하고 있다는 결론을 얻게 되더라도 그 학습자들이 실제 한국인과의 담화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말할 수 있는지는 알기가 어렵다. 담화 상황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한국어의 텍스트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지도 알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이러한 평가에 따른 등급 구분은 등급 표시를 하는 기능을 충분히 수행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한국어 교육에서도 지금과 같은 성취도 평가에 의한 등급 분류에 그치지 말고 각 등급의 구체적인 능력에 관한 기술과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그 과정을 수료하면 학습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 등급은 어느 정도 가능한가 하는 보다 실질적이고 자세한 기술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한국어 말하기 성취도 평가 기준을 토대로 구체적인 하위 기능을 작성하여 학습자 스스로가 자가 평가하는 방법을 통하여 한국어 중급 학습자가 도달할 수 있는 능력 기술에 의한 한국어 말하기 평가 등급 표시 작성의 기초를 삼고자 한다. 이러한 평가 등급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등급 기술이 이루어진다면 한국어 말하기 숙달도 평가의 평가 범주와 기준 설정의 방향도 함께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2. 한국어 말하기 평가 등급

이를 위해 우선 이 논문에서는 대학 기관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중급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말하기 성취도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에 사용될 도구로는 이미 전 세계 언어를 대상으로 보편적인 말하기 숙달도 평가로 인정을 받고 있는 ACTFL(American Council on the Teaching of Foreign Language)의 OPI(Oral Proficiency Interview)를 채택하였다. 일반적으로 제 2언어 능력 평가에서는 숙달도 평가(Proficiency test)와 성취도 평가(Achievement test)를 실시하고 있다. 숙달도 평가는 학습자가 목표 언어에 어느 정도 숙달되어 있는가 하는 실제 생활에서의 언어 사용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고, 성취도 평가는 일정한 교수요목에 근거

과제수행력 7가지, 전나영 외(2007)에서는 음운, 문법, 어휘, 담화, 기능, 사회문화적 능력을 각각 한국어의 말하기 평가 범주로 제시하고 있다.

하여 학습한 것을 얼마나 잘 성취했는가 하는 것을 측정하는 평가이다. 그러나 김유정 외 (1998: 40)에서도 성취도 평가와 숙달도 평가의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고 하였듯이 제 2언어 습득의 궁극적인 목적을 의사소통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²⁾이라고 볼 때 두 평가 모두 의사소통능력을 측정한다는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OPI를 적용한 한국어 말하기 평가 기준이 말하기 등급을 기술하는 근거가 될 것이다.

2.1 평가 방법

한국어 말하기 성취도 평가는 건국대학교 언어교육원 3급 학생 12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OPI 평가를 위해서는 평가의 신뢰도를 위해 훈련 받은 평가자가 필요하다. 이번 평가의 평가자는 ACTFL에서 주관한 OPI 워크숍에 참석하여 OPI 평가 이론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으며 6개월 정도의 OPI 평가 연습을 통해 평가자로서 자격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

말하기 시험의 절차와 방법³⁾은 모두 ACTFL OPI에서 정한대로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학습자들이 수업을 받은 교실에서 행해졌으며 책상 위에는 녹음기, 녹음 테이프, 역할극 카드만 두었다. 그 외에 물건은 평가에 불필요하고 필기도구도 학습자의 긴장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역할극 카드는 학습자에게 먼저 읽게 하여 충분히 이해시킨 후 역할을 정해서 실시하였다. 인터뷰 시간은 중급이기 때문에 15~20분이며 인터뷰한 발화 내용은 모두 녹음을 하였다.

2.2 평가 기준

2.2.1 OPI의 평가 기준

ACTFL의 평가 기준은 1986년에 만들어졌으며 특정 언어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 아니라 보편적인 언어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 등 세계 37개 다른 언어로 시행되고 있는 신뢰도 있는 평가 방법이다. OPI는 종합적인 평가로 특정한 언어적 특징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언어 능력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이다. OPI의 평가 기준은 다음의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
- 2) Hymes(1972)에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언어능력은 언어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실제 언어상황에서 사용되는 언어의 사회 문화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범주에 따라 적절히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이라고 하였다.
 - 3) OPI는 준비(warm-up) 단계, 수준 점검(level checks) 단계, 탐색(probes) 단계, 마무리(wind-down) 단계의 4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단계를 반드시 모두 거쳐서 평가 관정을 해야 한다. 준비(warm-up) 단계에서는 심리적으로 학습자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학습자가 평가 대상 언어의 발화를 편하게 말하며 평가자의 발음이나 말투에도 익숙해지도록 한다. 이 단계에서 학습자의 수준을 잠정적으로 확인한다. 또한 평가자는 이 후 진행될 평가의 화제를 구상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수준 점검(level checks) 단계에서는 언어적 측면에서 정확하게 무리하지 않고 유창하게 해낼 수 있는 기능이나 화제 영역을 통해 학습자의 언어 운용 능력의 가장 낮은 수준을 확인한다. 탐색(probes) 단계에서는 학습자가 언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없는가를 확인한다. 언어적 측면에서는 언어적 좌절(linguistic breakdown)을 겪게 되어 언어 운용 능력의 한계를 확인하게 된다. 탐색 단계와 마무리 단계 사이에는 역할극이 포함된다. 역할극은 인터뷰에서 할 수 없었던 언어적 기능을 학습자가 해낼 수 있는지 알아보고 수준을 확인하는 단계이다. 마무리 (wind-down) 단계는 학습자의 운용 능력을 다시 편하게 하고 OPI를 만족스럽게 끝내는 단계로 학습자가 인터뷰가 끝났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단계이다.

첫 번째 평가기준은 종합적 과제(Task)/기능(Function)으로 학습자가 실생활에서 언어로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를 의미한다. 종합적인 과제를 수행하는 능력은 언어 능력을 결정하기 위한 결정적인 근거가 된다.

두 번째는 사회적 상황(Context)과 화제(Content)이다. 사회적 상황(Context)이라는 것은 사람이 과제를 수행할 때 언어를 사용하는 상황이나 장면을 의미한다. 화제(Content)는 대화의 화제나 주제를 의미한다.

세 번째는 정확성(Accuracy Features)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얼마나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가를 유창성, 문법, 어용론적 능력, 발음, 사회언어학적 능력, 어휘 등의 구성요소로 평가한다.

네 번째로는 텍스트 형태(Text Type)이다. 어떠한 발화 층위로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초급에서는 단어나 구로 시작하지만 레벨이 높아짐에 따라 문장, 단락, 두 개 이상의 단락 순으로 층위가 높아진다.

과제(Task) /기능(Function)	사회적 상황(Context) / 화제(Content)	정확성 (Accuracy Features)	텍스트 형태 (Text Type)
문장을 만들어 간단한 질문을 하거나 상대의 질문에 답함으로써 단순 대화를 이끌어 갈 수 있다.	일부분의 비공식적 상황 및 제한된 업무 상황. / 일상적인 활동이나 자기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한 것으로 예상 가능하고 자기와 관계가 깊은 주제.	외국인을 많이 접해본 원어민이 들어 약간의 반복 후에 알아들을 수 있다.	문장으로 말할 수 있다.

<표 1> OPI의 평가 기준

2.2.2 한국어 말하기 성취도 평가 기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OPI는 말하기 숙달도 평가이기 때문에 성취도 평가에서 적용할 때는 학습자들이 일정 기간에 습득한 것을 어떤 방식으로 평가에 포함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OPI의 평가 기준을 고려해 볼 때 학습한 것을 평가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선수 학습된 과제(Task)/기능(Function), 사회적 상황(Context)과 화제(Content)를 선정하여 인터뷰에 활용하고 이것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문법이나 어휘 등을 종합 평가 시 고려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학습자들이 학습한 과제와 기능을 평가 시 반영하였다. 또한 과제를 중심으로 역할극 카드도 6장 작성하였는데 평가할 때는 1장만 사용하였다. 역할극도 3급의 과제와 기능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다음의 <표 2>는 건국대학교 3급에 교재에 나오는 주제, 기능과 과제, 장면들 중에서 말하기 평가에 사용한 것이다.

주 제	기 능	과 제	장 면
-----	-----	-----	-----

소개	소개하기	친구 소개하기	만남
이사	정보 구하기, 조건 말하기	살고 싶은 집 비교해서 구하기	부동산, 하숙집
여가	감상 말하기	재미있었던 영화 설명하기	친구와의 대화
부탁	거절하기	친구의 부탁 거절하기	일상생활
첫인상	비교 설명하기	부모님 성격 비교해서 설명하기	만남
고장	요청하기, 불평하기	고장 난 물건 수리 요청하기	서비스 센터
음식	설명하기	할 수 있는 요리 방법 설명하기	일상생활
취향	의견 말하기	취미에 대해서 의견 말하기	학교
여가	경험 말하기	여행 경험 이야기하기	친구와의 대화
건강	기술하기	자신만의 건강법 말하기	일상생활

<표 2> 3급 평가 기준

OPI의 판정 척도는 모두 10등급 체계⁴⁾인데 이에 따르면 건국대학교 3급 학생들은 중급 학습자이므로 예상되는 수준이 ‘초급 상’에서 ‘중급 상’이다. 이 기관의 3급 학습자들은 적어도 문장으로 발화가 가능한 학습자들이며 개인적인 차이는 있겠으나 기관의 여러 급의 학생들을 평가해 본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 평가자의 판단으로는 아직 상급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러한 경우에 성취도 평가에서 수준은 네 등급으로 나눌 수밖에 없으므로 변별력에 다소 문제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채점 기준표를 작성하였다. <표 3>의 채점 기준표는 OPI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세분화 시킨 것이다.

평가 기준		점 수				
과제(Task)/기능(Function)		20	16	12	8	4
사회적 상황(Context)과 화제(Content)		10	8	6	4	2
정확성(Accuracy Features)	유창성	5	4	3	2	1
	문법	5	4	3	2	1
	어용론적 능력	5	4	3	2	1
	발음	5	4	3	2	1
	사회언어학적 능력	5	4	3	2	1
	어휘	5	4	3	2	1
텍스트 형태(Text Type)		5	4	3	2	1
역할극(Role Play)		5	4	3	2	1
총 점						

<표 3> 채점 기준표

4) 최상급(Superior), 상급 상(Advanced-High), 상급 중(Advanced-Mid), 상급 하(Advanced-Low), 중급 상(Intermediate-High), 중급 중(Intermediate-Mid), 중급 하(Intermediate-Low), 초급 상(Novice-High), 초급 중(Novice-Mid), 초급 하(Novice-Low)

건국대학교 한국어 과정의 3급 말하기 평가의 유형은 OPI 인터뷰와 발표의 두 가지 방법으로 실시되고 있다. 발표 점수⁵⁾가 30점에 해당되기 때문에 위의 <표 3>은 총점이 70점이다. 위의 평가 기준 중에서 상대적으로 ‘과제/기능’과 ‘사회적 상황과 화제’를 합해서 30점, ‘정확성’이 30점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초급 단계의 경우 아직 문장의 완성도가 낮기 때문에 정확성에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하지만 고급 단계에서는 정확성 보다는 ‘과제/기능’이나 ‘사회적 상황/ 화제’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중급의 경우는 정확성과 ‘과제/기능’이나 ‘사회적 상황/ 화제’ 기준을 대등한 비율로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OPI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인 ‘과제/기능’에 20점을 배정하고 ‘사회적 상황/ 화제’ 기준에 10점, 정확성에 30점, 텍스트 형태에 5점, 그리고 역할극에 5점을 배정하였다.

3. 한국어 말하기 능력 기술

3.1 능력 기술에 의한 등급 표시의 의의

- 1) 학습자의 경우 자신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 이해하기 쉬우며 목표를 세우기 쉽다.
- 2) 교사에게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서 ‘학습자가 습득할 수 있도록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인가?’와 같은 학습자를 주체로 한 발상의 전환이 생긴다.
- 3) 평가 방법을 어느 정도 엄두에 두고 목표 설정을 하기 때문에 교사는 지도의 결과를 어떠한 형태로 확인 할 것인가 목표를 정하기 쉽다.
- 4) 외부 사람, 예를 들면 학점 교환을 하고 있는 해외 담당자와 학내의 지도 교수 등에게도 코스 등급이나 내용을 전달하기 쉽다.
- 5) 학습자가 다른 기관으로 옮긴다든지 귀국한다든지 했을 때 그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에 관한 정보를 함께 가져 갈 수 있다.
- 6) 다른 기관의 기준이나 다른 기준과 비교가 가능하며 상호 정보교환이 용이하다.

위의 능력 기술에 의한 등급 표시가 갖는 의의⁶⁾를 살펴보면 1)과 2)의 경우 현재의 한국어 교육에서 학습자들은 교재를 가지고 교실 상황에서 교사의 입력에 의한 비주도적인 습득을 하는데 그치고 있다. 그러나 능력 기술에 의한 구체적인 등급 표시가 있다면 학습자 스스로가 자신의 요구와 목표를 알고 점검할 수 있고 교사도 학습자의 입장에서 교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3)의 경우에 있어서도 평가 기준을 근거로 등급이 기술 되고 다시 그것이 평가에 반영된다면 교수법에도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 항목을 살펴보면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습득하는 도중에 기관을 바꿀 경우 기관의 평가의 차이 때문에 실제로 등급이 달라지는 경우를 적지 않게 보는데 능력 기술에 의한 등급 표시가 가능하게 되면 평가의 기준이 보다 명확해지기 때문에 서로 정보 교환이 용이해

5) 몇 가지 주제를 학습자에게 미리 알려주고 그 중 한 가지 주제에 대해 미리 원고를 준비하게 한 후 발표하는 말하기 시험 형태이다.

6) 무라카미 료코(2007)

질 것으로 생각된다.

3.2 자가 평가 등급 기술안⁷⁾

이와 같은 시도는 일본 나고야대학의 일본어 교사들이 각 코스의 등급을 능력 기술에 의한 것으로 바꾸려고 노력, 검토하여 작성한 것으로 잠정적인 등급 기술 행동 목표 일람이다.

- 1) 가능한 한 외부 사람이나 학생이 이해하기 쉬우며 간결하게 하였다.
- 2) 행동 목표의 형태로 기술하였다.
- 3) 무엇을 가르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습득할 수 있는가와 같은 숙달도가 기술되도록 하였다.
- 4) 단순히 등급만을 기술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교재나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과의 관련성을 재고함으로 목표 자체도 진화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것으로 하였다.
- 5) 교사 간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완성해 나가도록 하였다.

이 연구에서 작성한 능력 기술 항목은 OPI 평가와의 비교를 위해 한국어 교육 상황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다음의 <표 4>는 구체적인 능력 기술 항목이다. 1~7번의 항목은 '과제/기능'에 대한 것이고 8~13번 항목은 '사회적 상황과 화제'에 관련된 것이다. 정확성 항목은 14~19번까지이며 20번은 텍스트 형태(Text Type)에 관한 것이다. 이 항목들은 한국어 말하기 자가 평가에 사용되었다.

※ 한국어로 무엇을 말할 수 있습니까? 알맞은 숫자에 ○ 해 주십시오.

5: 잘 할 수 있다 4: 조금 할 수 있다 3: 보통이다 2: 잘 할 수 없다 1: 전혀 할 수 없다

1. 나는 다른 사람에게 친구를 소개할 수 있다.	5	4	3	2	1
2. 나는 부동산에서 살고 싶은 집을 비교해서 구할 수 있다.	5	4	3	2	1
3. 나는 영화, 드라마, 책의 내용을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5	4	3	2	1
4. 나는 친구의 부탁을 친구가 기분 나쁘지 않게 거절할 수 있다.	5	4	3	2	1
5.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성격을 비교해서 설명할 수 있다.	5	4	3	2	1
6. 나는 수리 센터에서 고장 난 핸드폰에 대해서 설명하고 맡길 수 있다.	5	4	3	2	1
7. 나는 비빔밥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5	4	3	2	1
8. 나는 친구들에게 반말을 사용할 수 있다.	5	4	3	2	1
9. 나는 교수님께 높임말을 사용해서 말할 수 있다.	5	4	3	2	1

7) 무라카미 료코(2007)

10. 나는 발표를 할 때 높임말을 사용해서 할 수 있다.	5 4 3 2 1
11. 나는 나의 취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다.	5 4 3 2 1
12. 나는 여행 경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할 수 있다.	5 4 3 2 1
13. 나는 나의 건강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할 수 있다.	5 4 3 2 1
14. 나는 한국 사람처럼 한국어를 빨리 말할 수 있다.	5 4 3 2 1
15. 나는 배운 문법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다.	5 4 3 2 1
16. 나는 '~지 않아요?', '~지요?', '~는 거 아니에요?'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5 4 3 2 1
17. 나는 한국어의 발음이나 인토네이션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다.	5 4 3 2 1
18. 나는 '한잔 하자, 한 톱 내세요' 등의 말을 사용할 수 있다.	5 4 3 2 1
19. 나는 말하고 싶은 단어를 대부분 말할 수 있다.	5 4 3 2 1
20. 나는 중문, 복문 레벨로 말한다. 예) ① 저는 시간이 나면 친구를 만나서 영화를 봐요. 보통 한국 영화를 많이 보는데 한국어 공부에도 도움이 많이 돼요. ② 저는 기숙사에서 사는 것보다 혼자 자취를 하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먹고 싶은 요리도 마음대로 만들어 먹을 수 있고 늦게 들어가도 되니까요.	5 4 3 2 1

<표 4> 3급의 등급 기술안

4. 평가 결과의 상관관계

OPI를 적용한 한국어 말하기 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기준을 토대로 <표 4>의 등급 기술안을 작성하였다. 이 장에서는 이 두 평가 결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OPI로 실시한 한국어 말하기 성취도 평가에서 학습자가 수행해야 하는 과제와 기능의 수는 <표 2> 가운데 4개이다. 성취도 평가이기 때문에 학습자들에게 제공된 '과제와 기능'은 이미 선수학습 된 것이다. 채점은 과제의 수행 여부로 평가하였고 <표 3>의 채점표를 기준으로 점수가 주어졌다. 아래의 <표 5>은 자가 평가와의 비교를 위해서 '과제와 기능'에 해당하는 OPI의 실제 점수와 다르게 자가 평가 점수와 같은 등급으로 표시하였다. 자가 평가의 점수는 '과제와 기능'에 대한 7문항의 평균 점수이다.

이를 비교해 보면 2명의 학습자를 제외한 10명의 학습자의 경우는 모두 자가 평가한 결과와 평가자가 평가한 점수 사이에 큰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단, YJH는 미국인 학습자인데 성취도 평가보다 자가 평가의 결과가 낮은 것은 이번 학기에 처음 와서 자신감이 부족한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CG는 실제 평가 점수에 비해서 자신의 '과제와 기능' 수행 능력을 더 높이 평가 하였다.

평가	SHY	YJH	LCH	SKURA	ZGY	WSC	WG	YM	CG	SG	ZW	DY	평균
OPI ⁸⁾	3	4	2	3	4	4	2	3	2	4	4	3	3.17
자가	3.0	2.43	3.0	3.29	3.43	4.14	2.23	3.36	3.14	4.71	3.57	3.14	3.29

<표 5> 과제와 기능의 상관관계

한편, 다음 <표 6>의 ‘사회적 상황’의 상관관계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학습자의 자가 평가와 다른 사람에 의한 평가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 ‘사회적 상황’에 대한 질문의 경우 초급 때부터 반말과 높임말을 배웠기는 하지만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하기가 아직 어렵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학습자 스스로는 초급 때부터 학습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 할지도 모르지만 실제 발화에서는 적용하지 못했다. 이 결과를 통해서 학습과 습득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평가	SHY	YJH	LCH	SKURA	ZGY	WSC	WG	YM	CG	SG	ZW	DY	평균
OPI	1	2	2	1	3	3	2	1	1	3	2	2	1.92
자가	2.67	2.33	4.00	2.33	3.33	3.00	3.33	3.33	4.00	3.67	3.67	3.33	3.25

<표 6> 사회적 상황의 상관관계

아래의 <표 7>은 ‘화제’의 경우이다. ‘화제’는 학습자 자신의 취미나 여행 경험, 건강법 등 자신과 관계있는 주제가 대부분이므로 비교적 상관관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평가	SHY	YJH	LCH	SKURA	ZGY	WSC	WG	YM	CG	SG	ZW	DY	평균
OPI	2	3	4	3	3	4	3	4	2	4	3	3	3.17
자가	2.33	2.67	3.67	2.67	3.33	3.67	3.33	4.00	4.00	4.33	3.33	3.00	3.36

<표 7> 화제의 상관관계

다음은 ‘정확성’에 대한 상관관계이다. 두 평가의 정확성에 대한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유창성, 문법, 사회언어학적 능력, 어휘 등은 비슷한 결과가 나온 반면, 어용론적 능력과 발음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어용론적 능력과 발음 모두 학습자들의 성취도 평가 결과가 자가 평가의 결과보다 낮은 편이었다. 어용론적인 능력은 대화의 의도를 잘 전달하거나 언어력이 충분하지 않을 때 말하는 여러 가지 전략적인 측면에 대한 것인데 중급 단계에서 학습자들에게 쉽지 않은 영역일 것이다. 또한 발음도 학습자 스스로 평가할 때 보다 평가자인 모국어 화자가 평가하는 것이 더 엄격하게 측정되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8) 자가 평가 점수와 비교를 위해서 ‘과제와 기능’에 해당하는 OPI의 실제 점수와 다르게 자가 평가 점수와 같은 등급으로 표시하였다.

정확성	평가	SHY	YJH	LCH	SKURA	ZGY	WSC	WG	YM	CG	SG	ZW	DY	평균
유창성	OPI	2	3	3	2	3	3	3	3	2	3	2	3	2.67
	자가	2	2	4	2	3	3	3	3	3	3	2	3	2.75
문법	OPI	2	3	2	2	3	3	3	3	2	4	3	3	2.75
	자가	3	2	2	2	3	2	3	3	4	4	4	3	2.92
어용론적 능력	OPI	2	3	2	2	3	4	3	2	2	3	3	2	2.58
	자가	3	3	4	3	4	4	4	4	5	4	5	4	3.92
발음	OPI	1	4	2	2	2	3	3	2	2	3	3	2	2.42
	자가	3	4	4	3	3	3	3	4	4	3	4	3	3.42
사회언어학 적 능력	OPI	2	2	3	3	4	4	4	3	3	4	3	3	3.17
	자가	2	1	3	3	4	4	4	3	4	5	4	4	3.42
어휘	OPI	2	3	3	2	3	4	3	3	3	4	2	2	2.83
	자가	2	3	4	2	3	4	3	5	4	5	2	2	3.25

<표 8> 정확성의 상관관계

마지막으로 텍스트 형태에서는 두 평가 사이에 큰 차이가 없었으므로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학습자의 발화량에 대해서는 학습자 자신과 평가자 사이에 큰 차이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중급의 학습자라면 단문보다는 중문이나 복문 형태의 발화가 가능해야 하는데 이 결과에서 보면 중급 학습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단문으로 발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평가	SHY	YJH	LCH	SKURA	ZGY	WSC	WG	YM	CG	SG	ZW	DY	평균
OPI	2	2	1	1	2	3	2	3	2	3	3	3	2.25
자가	3	2	2	1	2	3	3	3	2	3	3	3	2.50

<표 9> 텍스트 형태의 상관관계

위의 결과를 토대로 두 평가는 평가 기준에 따라 상관관계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부분의 평가 기준은 상관관계가 높았으나 ‘사회적 상황’, ‘어용론적 능력’, ‘발음’에서는 상관관계가 낮게 나타났다. 상관관계가 낮은 경우에는 자가 평가의 결과가 낮은 경우와 높은 경우가 있었다. 자가 평가 결과가 낮은 경우는 학습자가 자신감이 없거나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는 실제로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할 수 없었던 경우이다. 그러나 두 평가 사이에 상관관계가 높다는 것은 자가 평가시 사용한 등급 기술을 3급의 구체적인 등급 기술로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5. 맺음말

평가의 목적은 학습자가 배운 것을 일정한 판단 기준에 근거하여 그 능력을 측정하고 교사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하는 교수요목에 반영하여 학습자의 행동목표를 세우기 위함이다. 그러나 평가에 앞서 교육목표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한재영 외(2005:598)에서는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교육목표의 내용이 추상적이거나 모호한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교육목표가 막연하다면 구체적인 평가의 내용도 구성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평가의 결과

도 교수법이나 다음 교육 과정에 반영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평가가 교사 중심이 되기 쉽다.

평가는 평가자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학습자도 평가를 위해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기존의 말하기 평가 결과에 의한 등급 표시만으로는 학습자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말해 줄 수 없었다. 공신력 있는 평가 도구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초급, 중급, 고급의 판정만으로는 학습자가 자신의 한국어 말하기 수준을 알기 어려웠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한국어 말하기 평가 등급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이러한 능력 기술안이 있다면 학습자 스스로 자신이 요구와 목표를 알고 점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 단계의 판정을 받은 학습자가 한국어로 무엇을 말할 수 있는지 행동 목표가 될 것이다. 즉 말하기 평가의 등급 기술이 완성된다면 학습자 스스로가 무엇을 습득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어 학습자 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두 평가의 상관관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OPI는 이미 공인된 평가 도구이기 때문에 자기 평가 결과와의 상관관계가 높다면 두 평가 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목표가 충분히 같고 공인타당도도 높다고 할 수 있으며 학습자들도 OPI 평가의 신뢰성을 인정하고 무엇을 해야 할 지 구체적으로 노력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OPI를 적용한 한국어 말하기 평가의 기준을 토대로 작성한 <표 4>의 중급 단계 학습자의 등급 기술은 학습자의 동기부여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교수요목 작성, 교수법 등에도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앞으로 한국어 말하기 평가는 대학 기관뿐만 아니라 한국어능력시험이나 세계한국말 인증시험에서도 가까운 시일 내에 도입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자가 평가 등을 통하여 한국어 말하기 평가의 초급, 중급, 고급의 모든 등급에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능력 기술을 제시하여 등급 기술안을 완성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 김유정 외(1998). 한국어 능력 평가 방안 연구-성취도 평가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제9권 1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김정숙 외(1993). 한국어 말하기능력 평가기준 설정을 위한 연구, 이중언어학 10, 이중언어학회.
- 김종국 외(2006). 인터뷰평가의 담화분석 연구 -상호작용 담화모형 관점에서-, 한국어 교육, Vol.17, No.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박성원(2002). 인터뷰 담화 분석을 이용한 한국어 말하기 숙달도 평가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이완기(2003). 『영어 평가 방법론』, 문진미디어.
- 정광 외(1994). 한국어 능력 평가 방안 연구-언어숙달도(proficiency)의 측정을 중심으로-, 「한국어학」 1, 한국어학연구회.
- 전나영 외(2007). 한국어 말하기 능력 평가 도구 개발 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 전은주(1997). 한국어 능력 평가, 「한국어학」 6권, 한국어학회.
- 지현숙(2005). 인터뷰 시험 담화 분석을 통한 한국어 구어 능력 평가의 구인 연구, 국어교육연구, Vol.16, No.0,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한재영 외(2005). 『한국어 교수법』, 태학사.

Hymes.D(1972). On Communicative Competence, In J.B.Pride and J. Holmes. des,
Sociolinguistics. Harmondsworth. England : Penguin Books.

牧野成一(1999). 『ACTFL-OPI 試験管養成用眼マニュアル』, アルク.

村上京子(2007). 學習者は日本語で何ができるようになっていくおか, 日本文化言語學會 第4回 國際學術シンポジウム資料集, p18-25.

櫻井恵子・齋藤麻子(2007). OPIのロールプレイに見る韓國人日本語學習者の斷り方, 일본학보 Vol 72, 한국일본학회.

□ 토 론 □

“한국어 말하기 평가 등급의 능력 기술 방안 연구”에 대한 토론문

허 재 영 (단국대학교)

교육에서 평가의 의미는 학습자의 능력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교육적 처치를 하는데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평가 도구를 개발하고,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학습자의 능력을 바르게 측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논문은 평가의 일반 원리에 바탕을 둔 실증적인 연구라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 특히 구체적인 평가 사례를 바탕으로 ‘말하기 능력을 기술하는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학문적 성과도 높다. 다만 논문에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 이를 연구자에게 질문하는 형식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능력 기술에 의한 등급 표시와 자가 평가는 평가의 주체와 방법이 전혀 다른 방식이다. 연구자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능력 기술법과 자가 평가의 결과가 대체로 비슷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12명을 대상으로 한 평가를 바탕으로 이러한 결론을 추론할 수 있는가? 특히 자가 평가의 경우 평가자의 주관이 전제된 상태에서 답을 진술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소개한 자가 평가 도구가 능력별 진술을 유도할 수 있다는 뜻인가? (말하기 능력이 우수한 사람은 여기의 자가 평가 도구의 높은 점수 항목에 기록하는가?)

둘째, 능력 기술법과 자가 평가법의 효용성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능력 평가는 교사를 중심으로 한 점수화가 가능하지만 자가 평가는 그렇지 않다. 능력 평가가 학습자의 능력을 평가하여 부족한 한국어 능력을 기르도록 하거나 그 결과를 다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데 비해 자가 평가의 결과는 그러한 활용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자가 평가가 단순히 학습자 스스로의 자기 진단에만 그친다면 그다지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하기 어렵다. 이 점에서 능력 평가와 자가 평가의 상호 관계를 좀더 보완해 보는 일도 좋지 않을까 제안한다.

끝으로 좋은 논문을 읽도록 허락해 주신 연구자에게 감사드린다.

재외 동포를 위한 웹 교재 개발에 관한 기초 연구

-중급 이상을 중심으로-

김 은 영 (경기대학교)

□ 차 례 □

1. 머리말
2. 재외 동포의 현황과 특성
3. 웹 교재의 특성과 웹 교재의 분석
 - 3.1 웹 교재의 일반적 특성
 - 3.2 기존 웹 교재의 분석
4. 재외 동포 학습자를 위한 웹 교재 구성의 원리
5. 구성 원리에 따른 웹 교재의 내용
6. 맺음말

1. 머리말

본 연구는 재외 동포¹⁾를 대상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보급하기 위해 웹 교재²⁾ 개발을 제안하려는 것이다.

90년대 이후 지금까지 한국어 학습이나 한국어 교육에 관한 관심은 비약적으로 증가해 왔다. 한국어 관련 기관의 설립과 연구물들은 한국어 교육에 대한 관심을 대변하며³⁾ 학습자나

1)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민족을 교포, 교민, 동포, 해외 교포 재외 교포 등 여러 명칭으로 불려왔지만 1997년 '재외동포재단법'과 1999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넓은 의미의 '재외 동포'라는 명칭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외교통상부에서는 재외 동포의 개념을 국적을 불문하며 외국에 거주하는 우리 민족으로 보고 있다. 재외 국민, 일시 체류자, 영주권자, 시민권자는 물론 부모나 조부모의 한쪽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자로 그 직계 자손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재외 동포의 개념은 일시 체류자나 한국 국적의 외국 유학생은 포함하지 않는다. 재외 동포에서 제외된 부류는 한국어 학습이 실질적으로 필요 없기 때문이다.

2) 웹은 교육의 유형과 결합하여 웹 기반 교육(Web based Instruction)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웹에 교육적 정보를 저장한 집합체의 개념인 웹 사이트(web site)로 설명하기도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웹 기반 교육이나 웹 사이트가 광범위한 개념의 교육이나 교육 모형이 아닌 교육 도구로서의 보조 교재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웹 교재라고 하였다.

웹은 90년 12월에 첫 등장하였고 91년 여름에 인터넷에 도입되었다. (나일주, 1999)

3) 강승혜(2005)에서는 한국어 교육에 관한 연구를 10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60년대는 1편, 70년대는 8편, 80년대는 82편, 90년대 345편, 2000년에서 2005년까지는 727편으로 연구주제나 방법 면에서 연구

교재에 대한 논의는 한국어 교육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연구 주제 중의 하나다.

첨단 정보 기술은 교육의 변화를 가져왔는데 교육용 소프트웨어나 웹사이트의 등장은 한국어 교육에서도 웹 교재를 등장시켰다. 인터넷 망이나 서버구축에 관한 논의는 1990년대 중반부터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한국어 교육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하여 2000년대에 들어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초창기에는 컴퓨터를 이용한 언어 교육의 의의나 이론적 배경을 언급했다면 최근에는 웹 교재를 비교, 정리하거나 웹 교재의 모형 개발에 관한 논의가 나타나고 있다.

지현숙(2001)은 모나시 대학, 국제교육진흥원(KOSNET), 서강대, Koreantutor에 나온 웹 교재를 비교 검토하면서 웹 교재 개발의 6가지 쟁점⁴⁾을 논의하였다. 그러나 원리에 가까운 쟁점을 논의한 것이어서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박건숙(2003)은 한국교육진흥원(KOSNET), 문화관광부, 서강대학교, 재외동포재단의 4곳을 비교·분석하였지만 학습자의 대상이 광범위하여 대상마다 특성을 고려한 논의였다면 한국어 학습에 더 효율적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남애리(2004)는 한국어 학습에 취약한 미주 지역의 아동을 대상으로 웹 교재의 기본 원리와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한국어 학습자가 아동뿐 아니라 청소년, 성인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대상이 좁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웹 교재의 필요성은 시대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한국어 교육은 급성장하였고 또한 한국어 교육 환경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교육 환경은 빠른 변화를 수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변화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 웹 교재가 필요한 것이다. 앞선 논의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웹 교재가 학습 대상을 고려하지 않았고 외국인이나 재외 동포를 모두 포함하고 있었다. 웹 교재가 특수한 대상을 지정하지 않고 학습자 모두를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상 학습자를 구분하여 웹 교재를 개발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대상이 다른 만큼 그 특성에 따라 구분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학습 대상자를 재외 동포로 한 웹 교재 개발에 관해 논의가 필요한 것이다.

한국어 학습자는 크게 외국인과 재외 동포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 재외 동포는 수적으로 많은 편이며 존재의 의미가 있다. 특히, 재외 동포는 한국어와 친근한 환경에 놓일 수 있고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이며 심리적인 거리는 외국인 학습자보다는 가까워서 한국어 중, 고급 학습자가 될 가능성이 많다. 중, 고급 학습자들 중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재외 동포여서 외국인 학습자와는 차별성을 가진다. 또한 한국어의 평생 학습자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에서 재외 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본 연구의 2장에서는 재외 동포의 현황을 살펴보고 외국인 학습자와 구분되는, 한국어 학습자로서의 특성을 살펴볼 것이다. 3장에서는 논의의 기반이 되는 한국어 교육에서의 웹 교재 현황을 정리하고 재외 동포와 관련이 있는 웹 교재를 자세하게 분석할 것이다. 4장에서는 재외 동포의 특성과 웹 교재의 특성을 살펴 웹 교재의 원리를 찾고 5장에서는 그 원리에 따라 웹 교재 일부 내용을 구성하려고 한다.

물들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국내의 한국어 교육기관도 90년도 중반부터 2005년까지 60여 개가 설립되고 있으며 그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전국 대학에서 한국어 강좌 및 한국어 양성 과정, 학위나 비학위 과정이 개설되고 있다.

4) 지현숙(2001)이 논의한 6가지 쟁점은 사용 환경의 수준, 구조(단선적, 복선적)의 문제, 언어 4기능의 통합 문제, 멀티미디어 자료의 활용 문제, 교육 과정(정규, 비정규)의 문제, 가상 교육과 면대면 교육의 관계이다.

2. 재외 동포의 현황과 특성

외교통상부 자료에 의하면 2008년 5월 현재, 재외 동포의 수가 175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약 683만 8천여 명에 달하고 있다. 재외 동포의 수는 2004년 약 633만 6천에서 2008년 약 683만 8천여 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인구⁵⁾와 비교하면 재외 동포의 수는 약 1/7에 해당한다. 재외 동포 모두가 한국어 학습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시 체류자를 제외하고 많은 수가 한국어 학습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재외 동포의 한국어 학습은 국제적 교량 역할⁶⁾은 물론 한국어의 세계화를 꾀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재외 동포의 한국어 학습은 외국인의 한국어 학습에 비해 여러 특징을 가진다.

손호민(2005)에서는 재외 동포의 한국어 학습은 한국과 한국인을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으며 재외동포 1세대와 2세대 이후의 가족의 화합을 이끌 수 있다고 하였다. 또 현지 한국인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고 하였다. 한국어 학습은 재외 동포의 정체성 갈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재외 동포만이 완전한 한국어 학습이 가능하다⁷⁾는 면에도 장점이라고 하였다. 한국어 학습을 통해 한국으로의 역진출이나 취업, 한국과 관계된 일에 관여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므로 취업과 성공의 가능성이 그만큼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대학 진학⁸⁾과 학문 연구에도 유리하다고 하였다.

이동재(2005)는 재외 동포 2세대 이후는 1세대 간의 의사 교환 수단으로 어느 정도 듣기나 말하기가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다. 그들의 요구 조사에 의하면 쓰기, 읽기, 단어, 철자 순이 한국어 학습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대답을 하였다.

따라서 재외 동포를 위한 교재나 도구는 중급 이상의 수준을 갖춘 내용도 담겨져야 학습자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적으로는 재외 동포가 한국어 학습을 통해 한국 문화를 익혀 전파시킬 수 있는 매개가 될 수 있다. 재외 동포를 통한 문화 교류는 또 다시 한국어 학습을 할 수 있는 동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재외 동포는 한국어 학습에도 유리하며 접근성에서도 외국인보다 가깝다. 한국에 대한 배경지식도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국가적으로는 재외 동포인 한국어 학습자가 일정 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한국어 교육의 경쟁력에서도 큰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재외 동포에게 한국어 학습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그 중요성만큼 연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또한 재외 동포의 수에 비해 교육 기관도 지역적 편차가 심하다 다

5) 2005년 대한민국 총 인구 조사에 따르면 47,041,434명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한민국 총 인구 조사에는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모두 포함한다.

6) 이동재(2005)는 미국의 경우 한국어를 전략적 언어로 규정하고 있으며 80여개의 연방 기관에서는 최상급의 언어 능력을 가지는 인재를 구하기 위해 heritage learner 중에서 후보자 가능성을 찾고 있다고 하였다. 완벽한 이중언어 화자를 만들기 위해 정책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7) 재외 동포인 경우 어려서부터 한국어와 현지어를 모두 사용하면서 자라는 경우 완벽한 이중언어 구사자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설명한 것이다. 반면 외국인은 언어학습의 외적 환경도 재외 동포에 비해 좋지 않고 한국어가 어렵기 때문에 자신의 모어와 한국어를 완벽하고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은 힘들다고 보았다. (손호민, 2005)

8) 미국의 경우 1997년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인 SATⅡ에서 한국어 시험이 시행되고 있다.

음은 지역별 재외 동포 교육 기관과 재외 동포의 수를 나타낸 표이다.

<표 1> 재외 동포 교육 기관과 재외 동포

지역별	한국학교	한국교육원	한글학교	재외 동포 수
일본	4	14	7	901,284
아주	13	1	152	249,732+2,439,395(중국) = 2,689,127
북미	0	7	1116	2,285,666
중남미	3	3	57	107,162
구주/ CIS(구소련)	1	10	612	640,276
중동	3	0	14	6,923
아프리카	1	0	19	7,900
계	25	35	1977	6,638,338

(출처: 외교 통상부, 통계청 자료, 2006년 기준)

<표1>을 보더라도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등 몇 개의 지역에만 재외 동포의 교육 기관이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재외 동포의 수에 비해서는 교육 기관의 수가 적다는 것도 알 수 있다. 한국 정부가 설립한 한국학교나 주민 공동체에 의해 세워진 한글학교를 통해 한국어를 학습할 수 있지만 지역적으로 거리가 먼 경우는 이러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교육 기관을 많이 세울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해 줄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이외에도 외적인 환경으로 전문 교사나 교재 등의 부족도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다. 기존에 개발된 교재들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⁹⁾. 개발된 교재는 재외 동포의 지역적 특수성이나 재외 동포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고 또 빠르게 변화하는 한국어 환경을 반영하지 못했다.

시대의 흐름, 재외 동포의 특성, 빠른 한국어 교육 환경을 반영해 줄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것이 웹 교재인 것이다. 웹 교재의 특성상 다변하는 교육 환경을 뒤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3. 웹 교재의 특성과 웹 교재의 분석

3.1 웹 교재의 일반적 특성

교재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한국어 교재는 종이로 이루어진 텍스트북의 형태가 대부분이었다. 텍스트북은 지금까지 가장 오래 사용되어서 친숙하고 접근성이나 휴대성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지만 학습자에게 흥미를 유발하기가 쉽지 않고 언어 학습에 있어서 학습 활

9) 류재택(2002)에서는 재외 동포용 교재가 기초 연구 없이 개발된 것이어서 개발 공급측과 수요측에서 모두 불만족스러워한다고 하였다. 외형적 측면이나 내용면에서도 질적으로 떨어져서 학습 동기나 흥미 유발에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이동재(2005)는 하와이에 있는 한인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요구조사를 실시한 결과 선호하는 교육 매체로 컴퓨터나 인터넷을 통해 한국어 학습을 하고 싶다고 하는 학생의 수가 많은 편이었다.

동 상황을 적용하기가 어려워 효율적이지 않다는 단점을 가진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갖는 한국어 교육에서는 텍스트북은 한계점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기술 발전에 힘입어 교재가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디스크 형태(CD-ROM, DVD 등)나 테이프, 비디오테이프 등의 교재가 그것이다. 이것은 텍스트북 형태를 음성, 화상, 비디오 등의 형태로 저장한 것이어서 텍스트북보다는 진화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학습자들은 보고 들으면서 학습하기 때문에 텍스트북보다는 흥미를 유발시키는데 유용하고 반복적으로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디스크 형태는 독자적인 역할로서가 아니라 대부분 텍스트북의 보조적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고 제작할 때 비용이 많이 들며 시간이 많이 걸린다. 또 학습자가 디스크 형태로 언어 학습을 할 경우 언어 표현 상황을 알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진다.

다양한 교재의 한 형태인 웹 교재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웹 교재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없어서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추어지면 학습자의 접근이 용이하다. 즉, 다수의 학습자에게 언제, 어디서나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멀리 떨어져 있거나 어떤 일정한 공간이 없어도 한국어 교육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웹 교재는 많은 수의 학습자를 동시에 교육하거나 같은 내용을 교육할 수도 있다. 재외 동포에게 맞는 웹 교재가 있다면 쉽게 가정에서도 학습할 수 있고 부족한 한국어 학습 시간을 보충해 줄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한국어 학습을 할 수 없는 상황¹⁰⁾의 재외 동포에게 학습의 기회도 제공해 주는 것이 된다. 재외 동포의 수가 한국 인구의 1/7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재외 동포에 맞는 웹 교재가 필요한 시점이다.

둘째, 웹 교재는 학습자에게 생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텍스트북에 반영되지 못한 현실적인 언어 환경과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것이다. 한국의 현재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텍스트는 물론 이미지나 동영상, 소리 등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의 소개와 한국의 문화는 물론 유행어나 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언어 상황의 예를 제시해 줄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재외 동포 학습자에게 실용적인 도움을 줄 수 있고 한국어 학습에 있어서도 흥미와 동기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셋째, 웹 교재는 자기 주도적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 스스로 학습하거나 반복 학습이 가능하다는 측면이 장점인 것이다. 또한 학습자는 어떤 주제에 당면해도 학습자 자신이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한국어 학습 내용을 수동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의 주제에 대해서도 주체적이고 입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습자를 학습의 주체로 만든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학습 정도를 평가하고 점검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웹 교재는 단순히 자료만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교육 방법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으며 학습자에게는 흥미 유발을 돕는 학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10) 공식적인 한국어 교육 기관이 없는 지역이나 가정 내에서도 현지 적응을 위해 시간적으로 한국어 학습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개발자는 웹 교재 안에 여러 콘텐츠를 구현할 수 있으며 웹 교재의 내용을 쉽게 보완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학습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계속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어 학습에 관심이 없던 재외 동포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며 흥미나 학습 동기를 부여해 줄 수 있다. 더 나아가 재외 동포에게 한국어 학습의 연장의 기회가 되며 능력을 유지시키거나 향상시킬 수 있어 평생 교육의 장으로도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웹 교재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러한 특성을 가진 웹 교재는 실제적으로 한국어 교육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3.2 기존 웹 교재의 분석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기존의 한국어 교육 웹 교재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공식적인 기관이나 학교에서 한국어 교육을 웹 교재의 형태로 제공하는 곳은 9곳으로 국제교육진흥원, 문화관광부, 서강대, 서울대, 재외동포재단, 한국방송공사, 한국어세계화 재단, 모나시대학, 미시간대학이다. 개인이나 기업이 한국어 학습을 위해 만든 웹 교재도 있다. 재외 동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재외동포재단의 Study Korean¹¹⁾은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다음은 한국어 학습을 할 수 있는 웹 교재들이다¹²⁾.

<표 2> 기존 웹 교재의 현황

기관 명칭/ 웹 교재 명칭	학습 대상	학습 목표	교재 구성	교재 특징
국제교육진흥원 KOSNET (http://www.interedu.co.kr/frmstudy.htm)	외국인 재외 동포 유아, 어린이 청년, 성인	기초적 한국어 학습 과 문화. -학습에 필요한 자 료 내려 받기 -채팅 가능.	초급 : 연령별 r 사전 시험 ┆ 준비 단계 ┆ 유아·유치원 단계 ┆ 어린이 단계1 ┆ 어린이 단계2 ┆ 청년·성인 단계	-영어, 일어 중국어 스페인 어로 제공. -한국어와 관련 있는 다른 링크(Link)와의 접속용어. -능력에 따른 자가진단 -한국 문화(춘과 김치)에 대 한 VOD 제공.
문화관광부 ¹³⁾ Korean through English (http://www.mcst.go.kr/hangeul/index.html)	외국인 재외 동포	기초적 한국어 학습 - 듣기, 읽기 쓰기	초급: 능력별 1~5단계: 자모의 설명 및 듣고 따 라 읽기, 글자 쓰기 6~10단계: 어휘, 발음, 문법, 연습	-한글의 '글자'에 초점 (가장 기초적인 발음정보와 듣기 읽기에 중점) -웹 교재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평면적이다.
서강대 Sogang Korean	외국인 재외	한국의 이해(역사, 경제, 정치, 철학,	-기초 한국어 -초급 1,2,3 각각 10과로	-시각적인 요소가 많이 적용 (애니메이션, 그래픽, 사진,

11)재외동포재단에서 2003년부터 운영하는 웹 교재로 Teen Korean은 Study korean으로 공식 명칭을 바꾸었다.

12) 개인이나 기업, 외국에서 개발된 웹 교재 중 이 연구에서 미처 찾지 못한 웹 교재가 더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밝혀둔다. 공식적인 기관이 아닌 곳에서 개발된 웹 교재 중에서는 접속이 잘 되는 웹 교재만을 선택해서 실었다.

Program http://korean.sogang.ac.kr/	동포	종교 여성, 문학, 예술)와 한국어 학습 (한글의 소개와 일상생활의 대화)	구성. -중급 1,2,3 각각 10과로 구성. -각 단계별 문법과 어휘의 제공. -형성평가 형태의 점검	게임) -듣기 영역에 초점 -한 과의 내용이 다른 웹 교재에 비해 많은 편이다.
서울대 Click Korean (http://lei.snu.ac.kr/kor/pages/SK00023_01.jsp)	외국인 재외 동포	기본적인 한국어 학습 (한글의 소개와 일상생활의 대화 중심)	-초급 수준 -20과로 구성 -각 과마다 어휘, 대화, 문법과 표현, 읽기, 문화, 사전으로 구성되어 있음.	-각 과의 내용이 모두 영어로 그대로 번역되어 있다. -사전의 경우는 어휘의 의미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단순히 영어 표현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방송공사 Let's learn Korean (http://rki.kbs.co.kr/learn_korean/lessons/e_index.htm#)	외국인	기본적인 한글 학습과 실생활에서 필요한 상황별 대화 학습	3단계 총 30과 1단계: 한국어의 이해 2단계: 한국에 도착해서 3단계: 한국에 살면서 각 과마다 어휘와 표현으로 구성	-9개의 언어로 지원(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아랍어, 러시아어, 인도네시아어, 중국어 일본어) -대화에서 듣기에 초점. (정확한 발음) -한국어 대화발음을 알파벳으로 제공.
한국어세계화재단 (http://www.glokor.com/)	외국인 재외동포	기본적인 한국어 학습	초급과 중급으로 구성	-로그인해야 볼 수 있어 접근성이 떨어짐. -문형 사전이 제공 -다른 사이트와 접속용이. -메뉴가 한국어로만 제공.
재외동포재단 Study Korean (http://study.korean.net/index.jsp)	재외 동포 (청소 년 대상)	한국어에 대한 흥미 유발을 통한 한국어 보급	능력별 3단계로 구성 basic -plus- advanced	-영어, 일어, 중국어 러시아어로 제공 -게임, 만화, 노래, 퀴즈 (아바타와 포인트제도) -한글 학교 소개 -국내 한국어 유학 연계 -웹팔 가능
모나시 대학(호주) klec http://www.arts.monash.edu.au/korean/klec/	모나시 대학 한국학 학습자 (학부, 대학원)	한국 언어와 문화의 보급, 자료 제공	1단계(5개 소단원) 2단계(24단원) 3단계(23 단원) 4단계(62 단원) 5단계(35 단원)	-교사와 학습자 모두 한국어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음. -다양한 사진, 클립아트 -사진으로 보는 읽기와 듣기로 구성된 문제 형식
Koreantutor http://www.Koreantutor.com	영어권 외국인 및 재외 동포	한국의 문화 이해 한국어 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 마련	-15개의 관련 검색 -12개의 관련 인기 검색 링크	-직접적인 한국어 학습을 할 수 없음. - 다양한 관련 검색 링크 - 웹팔이나 교사를 구할 수 있음.
Say Hello in the		한글의 이해	-Korean Alphabet	-영어로 제공

korea Language (미시간 대학교) http://www.ipl.org/youth/hello/korean.html	외국인	한국 문화의 이해	-Learning Korean -Korean culture	-북한과 남한의 소개 -영한사전 제공 -간단한 어휘의 발음제공
유키의 한국 생활어 http://www.urigul.net/	일본인	생활에 필요한 한국어 학습	단어- 의성어, 의태어, 속담, 사자성어 등 강좌- 5단계, 능력시험, 동화 생활 한국어로 구성	- 일어와 한국어를 비교하여 제공 - 한국 신문 읽기 - 한국의 오늘(10개 항목)
한국어교육 http://okkorean.com/	외국인 국제 결혼자	생활에 필요한 한국어 학습	1,2단계의 초급으로 구성	-VOD강좌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제공 -유료 -교안 자료실의 자료는 무료 제공(1단계10만원)
Hankorean http://hankorean.net/index.jsp	외국인 국제 결혼자	생활에 필요한 한국어 학습	1단계- 20개의 상황과 5개의 평가로 구성 -프영의 한국생활 -마이와 동건의 만남 -어휘와 문법 -색깔에 따른 문화소개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제공 -역할극을 통한 말하기와 주요표현 쓰기, 연습문제 -유료 -친구사귀기

국외에서 만들어진 웹 교재는 호주의 모나시대학의 웹 교재와 미시간대학의 <Say Hello in the korea Language>, 일본인이 만든 <유키의 한국 생활어> 3개이다. 영리의 목적으로 만든 유료 웹 교재는 기업에서 만든 것으로 <한국어 교육>과 <hankorean>이다. <Koreantutor>의 경우만 발행한 곳이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 위에서 제시된 웹 교재 중 재외동포재단에서 운영하는 Study Korean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재외동포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Study Korean은 학습 대상자가 재외 동포라는 점에서 다른 웹 교재에 비해 차별성을 갖는다. 재외 동포 중에서도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한글 깨치기'라는 초급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영어, 일어, 중국어, 러시아어로 제공되어 있으며 학습자의 수준을 3단계로 나누고 있다. Basic 단계에서는 Hangeul, Family, Friends, Favorites으로 구성되어 있다.

Family는 20개의 단원, Friends는 16개의 단원, Favorites은 10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Plus 단계에서는 Fuzzy, Fever, Fest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은 10개의 단원으로 되어 있다. 마지막 Advanced 단계에서는 humanity, social science, science 부분으로 나누어 제공하고 있으며 각각 8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외에 한국어 학습과 한글학교나 한국에 있는 학교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또 한국 문화와 역사, 한국의 에티켓, 한국 음악과 예술, 전통 한국 놀이, 만화와 게임, 스포츠와 채팅이나 펜팔 등 상호작용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고 있다.

13) 문화관광부 사이트 안에 문화상징과 외국인 노동자 문화 가이드북이 제공되고 있다. 문화 상징은 8개의 언어로 제공되어 있고 문화 가이드북은 9개(방글라데시, 베트남, 중국, 미국, 인도네시아 몽고, 네팔, 필리핀, 태국)의 언어로 제공되어 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국가의 언어로 소개되어 있다는 점을 높이 살 수 있다.

다. 그러나 회원 가입을 해야 3단계에 해당하는 한국어 학습에 대한 내용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접근성은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 외 나머지는 자유롭게 볼 수 있어 학습자의 관심을 끌어들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학습 내용 외의 내용은 9개의 영역(Korean Report, 드라마, Wow Land, 동화, 만화, 게임, 노래, 퀴즈, e-북)으로 나누어 소개되어 있으며 이것은 로그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노래의 경우 어린이 노래와 클래식이 구성되어 있는데 어린이 노래도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노래가 아니고 클래식의 경우 왜 콘텐츠로 구성되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Korean Report에서는 한국의 과거와 현재를 57개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문화의 내용은 전통 문화에만 국한되지 않고 현재의 모습도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체적으로 한국어 학습을 하는데 청소년 대상으로 개발된 웹 교재이지만 내용의 대부분이 청소년보다는 아동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9개의 영역에 있는 내용이 한국의 초등 교과 수준과 아동의 인지와 발달 수준에 근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웹 교재의 특성 중 수정 보완이 쉬운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만들어질 당시의 모습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었다.

재외 동포 중 한국어 학습자가 꼭 청소년에만 국한하는 것은 다른 연령층의 학습자의 학습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초급 단계의 내용은 중급이나 고급 학습자의 학습을 방해하며 학습의 동기나 흥미를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학습 단계를 중심으로 연령, 신분, 흥미와 동기에 맞춰 웹 교재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

4. 재외 동포 학습자를 위한 웹 교재 구성의 원리

지금까지 살펴 본 한국어 교육 웹 교재는 기초적인 수준에서 머물렀다고 할 수 있다. 재외 동포의 경우 중, 고급의 수준의 웹 교재도 개발되어야 학습자의 요구와 특성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한국어 능력이 중급 이상의 재외 동포를 위한 웹 교재를 구성할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두 축을 이루는 것은 웹 교재의 특성을 살리면서 재외 동포의 특성을 적절하게 고려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중심이 되는 웹 교재 구성의 원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학습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학습 목표를 정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학습자이다. 재외 동포는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한국어를 학습하려고 할 것이다. 세부 목적에 맞게 모든 내용을 웹 교재 안에 담을 수는 없지만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의 안내나 그것과 관계가 있는 다른 링크로 연결할 수 있도록 배치할 수 있을 것이다. 재외 동포를 위한 웹 교재의 목표는 거시적으로 보았을 때 한국어의 보급을 통한 한국어의 유지와 향상이다. 나머지 하위 목표는 재외 동포의 학습 목적을 고려하여 더 구체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학습자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 한국어 학습자가 크게 외국인과 재외 동포라고 할 수 있다. 재외 동포는 외국인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는데 전통이나 민족애를 강조하는 것만으로 한국어 학습을 하도록 끌어내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한국을

하는 것이 한국어 학습을 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변화하는 현재 한국의 모습을 반영한 자료나 재외 동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 예를 들면 유학 정보나 취업 정보, 여행 정보, 한국의 시사적 문제, 현재의 한국의 모습, 놀이 문화 등을 선별하여 제공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재외 동포와 내국인과의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장이 마련되는 것이 좋다. 한국의 시사 문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써보거나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며 학습의 효과는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중급 이상 고급 학습자일수록 어휘에 따라 한국어 실력이 달라질 수 있다. 재외 동포 요구조사에서도 어휘를 더 많이 배우고 싶다고 했던 것처럼 어휘를 학습할 수 있는 인터넷 어휘 사전이 배치되어야 한다.

셋째, 통합성을 구현해야 한다. 한국어 학습에서 언어의 4기능은 물론 문화와 사회를 모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2장에서 언급했듯이 재외 동포 학습자는 쓰거나 읽기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¹⁴⁾. 읽기, 듣기의 자료는 한국 문학이 될 수도 있고 신문에 나온 기사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초급에서는 읽고 이해하는 것으로 평가를 마쳤다면 중급 이상에서는 요약하고 자신의 의견을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듣기에 있어서도 단순 받아쓰기를 할 수도 있고 긴 텍스트를 듣고 요약하게 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쓸 수 있도록 단계를 나누어 구성할 수도 있다. 말하기 부분은 웹 교재에서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기술의 발전으로 화상 채팅으로 가능하며 상황별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역할 놀이를 통해서도 가능한 부분이다. 네트워크에 접속하고 있는 사람과 함께 말하기를 연습해 볼 수도 있다. 이처럼 통합적으로 웹 교재를 구성할 수 있지만 모든 영역에서 웹 교재가 적절한 것은 아니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웹 교재를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웹 교재의 특성인 복선적 구조로 개발되어야 한다. 웹 교재는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그 특성을 살려 하위 구조나 다른 링크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학습자에게 유용하다고 본다. 재외 동포의 학습자인 경우 한국에 대한 지식이나 기본 배경지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선적 구조로 학습에 집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재외 동포 아동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선적 구조로 개발되어도 학습자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학습자 자신이 내용을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은 학습 동기를 높이는 역할을 할 것이다. 학습자 자신이 부족한 학습 영역에 들어가 학습하도록 구조화하는 것이다. 중급 이상의 수준인 만큼 개발자가 개발한 선형적이고 단순한 구조를 따를 필요는 없고 부족한 부분이나 관심 있는 분야를 마음대로 학습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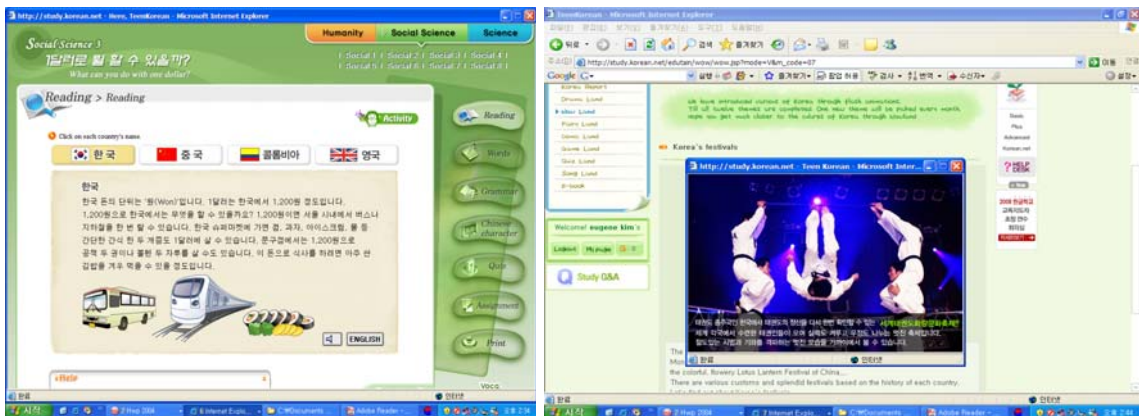
5. 구성 원리에 따른 웹 교재의 내용

2장에서 재외 동포의 일반적인 특징을 살펴보았지만 재외 동포도 지역별, 언어권별 따라 특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일반적인 재외 동포를 위한 중급 수준이상의 웹 교

14) 이동재(2005) 참고

재를 구성해 보려고 한다.

기존의 웹 교재들 대부분이 기초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에 재외 동포의 특성상 중급 이상의 웹 교재가 개발될 필요성이 있으며 재외 동포의 한국어 교육의 연계성면에서도 중급, 고급 수준의 웹 교재는 반드시 개발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3장에서 제시한 원리 중에서 통합성의 원리를 중점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1> <http://study.korean.net/> 재외동포재단의 Studykorean 중 Advanced 단계와 Wow Land의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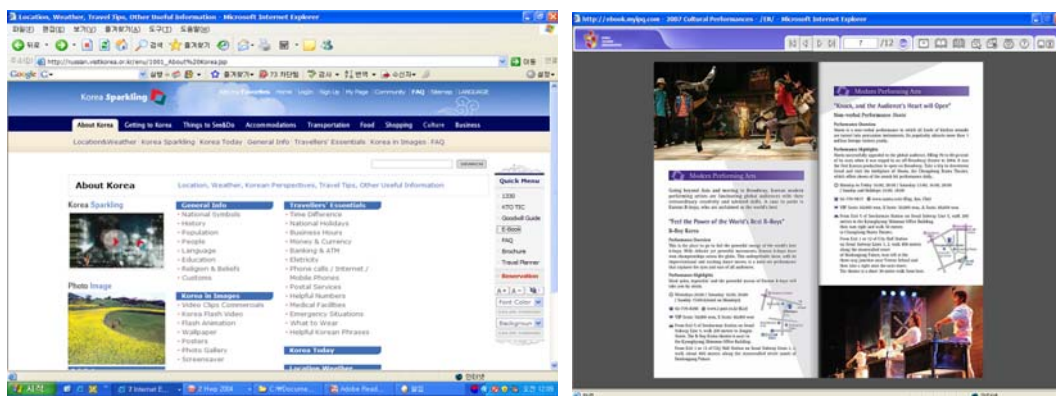
<그림 1> 왼쪽은 Advanced 단계 중에서 social science에 속한 한 단원의 모습이다. 한글로 읽기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영어로 듣기가 가능하다. 그러나 통합성을 고려한다면 지문 없이 한국어로도 듣기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학습자의 언어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는 빈칸 채우기로 어휘를 넣어 읽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밑에 제공되는 자료는 우리나라 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기존 화폐 이미지만이 제공되고 있다. 2007년도 화폐의 문양이 바뀐 만큼 최신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웹 교재로의 장점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중급 이상의 자료라면 한국의 지폐 문양에 대한 읽기 자료가 첨부되어도 좋을 것이다. 주제가 <1달러로 뭘 할 수 있을까요?>인 만큼 실생활과 연결 지어 1달러를 환전을 하는 상황이나 물건을 사는 상황으로 구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이렇게 읽기 자료를 주는 경우에는 어려운 어휘를 설명하고 또 어휘 사전 옆에 배치하는 것이 좋다. 어휘 사전은 오른쪽의 Wow Land에서는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축제를 설명하는 장면인데 나머지 9개의 영역 내용 중에서 난이도가 높은 편이다. 그러나 읽기 자료만이 있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이 경우에도 배경 음악만을 제공하지 말고 읽기 자료를 듣기로도 구성하고 듣고 난 후에 그것을 다시 요약해 보기 등의 쓰기로 다양하게 구현해 볼 수 있다.

웹 교재에서 복선적 구조를 가져야 한다고 했지만 교육의 내용 없이 모든 것을 링크로 연결 지을 수는 없다. 한국어 학습과 관계가 있는 것들과 연결 지을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통합적인 관점을 고려하되 여기에서는 재외 동포의 요구 조사 중에서 우위를 차지한 쓰기의 영역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한다.



<그림 2> <http://www.klti.or.kr/> 한국 문학 번역원에서의 듣기

예를 들어 재외 동포가 문학 텍스트로 읽기를 한다면 위에서 제시한 한국 문학 번역원에서 시 낭송과 작가 인터뷰 등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중급 이상의 수준이므로 듣기는 다시 쓰기와 연결 지을 수가 있다. 시 낭송을 듣고 그대로 써 보거나 자신의 느낌을 쓸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다. 또 작가 인터뷰를 듣고 텍스트를 요약하기로 발전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더 관심이 있다면 작가의 작품을 현지어와 한국어와 비교하며 읽을 수 있게 구성해도 좋을 것이다. 각각의 수준은 난이도를 고려하여 중급과 고급으로 나누어 구성할 수 있다. 중·고급의 수준은 어휘 사용 능력이 많이 좌우하므로 옆에는 인터넷 한글 사전이 배치되면 좋을 것이다.



<그림 3> <http://russian.visitkorea.or.kr/rus/index.kto> 한국관광공사의 문화 소개

<그림 3>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우리 문화를 소개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 웹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재외 동포의 한국어 학습과 연결 지어도 좋은 텍스트가 될 수 있을 것

이다. 왼쪽의 이미지는 e-book의 형태로 비보이를 소개하는 장면이다. 이것을 VOD로 제공할 수도 있다. 전통적인 문화를 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의 현재의 문화를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국 문화의 현대적 해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자료는 한국어 유지에 관심이 없는 재외 동포들도 취미의 수준이나 학습 동기나 흥미를 유발시킨다는 점에서 유용할 것으로 본다. 텍스트를 읽고 ‘비보이 소개하기’의 쓰거나 감상평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비보이나 음식 등 한국의 문화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쓰기를 구성할 수도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문학텍스트와 연계하여 문화에 대한 소개를 할 수도 있는데 문학과 여행지를 연결시키는 것이다. 한국의 여행지를 소개하면서 교통 문화나 가는 방법, 음식, 비용 등을 찾아 볼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그 외에 취업 정보나 유학 정보, 한국 초청 정보 등은 학습자들이 게시판이나 자료실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좋다.

인터넷에서 한국어를 학습할 수 있는 정보는 매우 많지만 이것을 재외 동포에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교육시킬 것인가는 항상 개발자가 염두 해 두어야 할 문제이다. 특히 재외동포의 특성과 요구를 얼마나 잘 반영하느냐에 따라 웹 교재의 효율성을 논할 수 있을 것이다.

6. 맺음말

한국어 교육에서 재외 동포를 위한 웹 교재의 개발은 어느 매체보다도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많은 수의 재외 동포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과 재외 동포가 교재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점을 보더라도 보조적으로 웹 교재 개발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본 연구에서는 재외 동포의 특성과 수를 고려하여 웹 교재의 원리를 찾고 그 원리에 따라 웹 교재 일부를 제안해 보았다. 웹 교재를 개발할 때에는 이러한 원리를 바탕으로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컴퓨터의 기종, 인터넷이나 네트워크의 연결과 속도, 사용자의 환경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재외 동포의 웹 교재 외적인 사용 환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식적인 교육기관이나 한글학교에서라도 웹 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몇 가지 버전을 나누어 웹 교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전 세계에 퍼져있는 재외 동포에게 고루 한국어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웹 교재는 정규 과정이 아니며 한국어 학습에 도움을 주는 비정규 과정에 속한다. 재외 동포 중급 이상을 위한 웹 교재 역시 비정규과정으로 규정하는 것이 좋다. 웹 교재는 공식적인 교육 기관과 함께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겠지만 공식적인 교육 기관이 없는 곳이라면 최소한의 한국어를 학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거나 유지를 위한 목적을 가지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살펴본 것 이외에도 웹 교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점이 많을 것이다. 보다 많은 자료와 검토를 통한 세부 논의는 다음으로 미루기로 한다. 그러나 재외 동포의 특

성을 바탕으로 그들의 요구를 맞출 수 있는 웹 교재의 개발에 관한 논의는 한국어 교육의 위상을 높이고 한국과 한국 문화의 위상을 높이는 길이 될 것이며 앞으로 한국어 교육에서 재외 동포를 위한 실제적인 웹 교재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참고 문헌 ◇

- 강승혜(2005), 교육과정의 연구사와 변천사, 『한국어 교육론 1』, 한국문화사.
- 강승혜(2005), 한국어 교육 연구 목록, 『한국어 교육론 3』, 한국문화사.
- 강정희(1996), 해외 동포 자녀들에 대한 모국어 교육 실태 조사 연구, 『한국어 교육 7』,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김재욱(2002), 재외동포 아동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회화 교재의 구성 원리 및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어 교육 13-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나일주(1999), 『웹기반 교육』, 교육과학사.
- 나찬연(2005),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교수 학습, 『한국어 교육론 1』, 한국문화사.
- 남애리(2004), 5~8세 미주 지역 교포 아동 대상 웹기반 한국어 교재 개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류재택(2002), 재외동포용 한국어 교재 개선을 위한 교육 과정 연구, 교육과정평가원.
- 류재택(2004), 재외동포용 한국어 교육 과정 및 교재 체제 개발 연구, 교육과정평가원
- 박갑수(2007), 재외 동포 한국어 교육의 오늘과 내일, 『이중언어학 제33호』, 이중언어학회.
- 박건숙(2003), 국내 웹 기반 한국어 교육 사이트에 대한 비교·분석 연구, 『한국어 교육 14-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손호민(2005), 세계 한국어 교육의 과제와 발전 방향, 『한국어 교육론 1』, 한국문화사.
- 이동재(2005), 최상급과정을 위한 초기 교육의 발전 방향, 『한국어 교육론 1』, 한국문화사.
- 이선근(2007), 재미동포의 한국어 교육, 『이중언어학 33호』, 이중언어학회.
- 이지영(2005), 교재의 연구사와 변천사, 『한국어 교육론 1』, 한국문화사.
- 이태욱(1999), 『컴퓨터 교재 연구』, 좋은 소프트.
- 조수진(2005), 한국어 교육 포털 사이트 구현 방안 연구, 『이중언어학 27호』, 이중언어학회.
- 조항록(2004), 재외 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 정책의 실제와 관제, 『한국어 교육 15-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지현숙(2001), 웹 기반 한국어 교재 개발의 쟁점, 『한국어 교육 12-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지현숙(2002), 웹 기반 한국어 교육의 교수 전략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 논문,
- 진동섭 외(2006), 재외동포교육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비교교육연구 16-2』, 한국비교교육학회.
- 차도현(2000), 인터넷을 활용한 한국어 읽기 교육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논문.
- 최성욱(2000), 웹 기반 한국어 교육의 구성 원리 연구, 서울대 대학원 석사논문.
- 최정순(2002), 영어권 청소년 교포를 위한 웹 교재 개발 - 재외동포재단의 Teenkorean 사이트 개발을 중심으로-, 『21세기 한국어 교육학의 현황과 과제』, 한국문화사.
- 홍종선(2007), 해외 이민 초기 사회의 한국어 사용과 교육 실태-뉴질랜드 한인 사회를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35호』, 이중언어학회.

□ 토론 □

“재외 동포를 위한 웹 교재 개발에 관한 기초 연구”에 대한 토론문

임 소 영 (한성대학교)

★ 별 지 참 조 ★